

博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教書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魯仁煥

博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教書 研究

指導教授 全炅穆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專攻：魯仁煥

# 朝鮮時代 敎書 研究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 3. 31.)

韓國學 中央 研究院  
韓國學 大學 院  
古文獻管理學專攻 : 魯 仁 煥

이 論文을 魯仁煥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4年 6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 目 次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	4
II. 敎書의 기원과 시행 .....	6
1. 고려시대 詔書와 敎書의 시행 .....	6
1.1 고려시대 詔書와 敎書의 유형 .....	6
1.2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 .....	9
2. 조선시대 敎書의 시행 .....	13
III. 敎書의 양식 .....	17
1. 문서식 .....	17
1.1 始面 .....	17
1.2 본문 .....	20
1.3 발급 일자 .....	23
2. 寶印 .....	24
2.1 조선 전기 寶印의 변화 .....	24
2.2 「施命之寶」의 특징 .....	29
3. 敎書紙 .....	31
IV. 敎書의 발급 과정 .....	35
1. 敎書의 製述과 製進單子 .....	36
1.1 敎書製述官의 임명 .....	36
1.2 製進單子の 작성 .....	38
2. 승정원의 入啓와 국왕의 裁可 .....	42
3. 敎書의 書寫와 安寶 .....	46
4. 敎書의 재발급 .....	48
4.1 文廟從祀敎書의 재발급 .....	48

4.2 功臣敎書의 發給	50
V. 敎書의 유형과 제도	55
1. 任命  관련 敎書	55
1.1 使命訓諭敎書	55
1) 使命訓諭敎書의 시행과 傳存	56
2) 使命訓諭敎書의 수취자	58
3) 使命訓諭敎書의 수취 과정	63
4) 使命訓諭敎書의 문서식	70
5) 使命訓諭敎書의 특징	74
2. 褒賞  관련 敎書	79
2.1 功臣敎書	79
1) 조선시대 功臣의 錄勳과 削勳	79
2) 功臣敎書의 傳存	83
3) 功臣敎書의 문서식	84
4) 功臣都監의 설치와 功臣敎書의 發給	88
2.2 賞加敎書	95
1) 賞加敎書의 시행과 소멸	95
2) 賞加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97
3) 수취자의 관직과 품계	99
4) 加資 사유	101
2.3 致仕敎書와 賜几杖敎書	103
1) 조선시대 이전의 致仕와 賜几杖	103
2) 조선시대 致仕 제도	105
3) 致仕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107
4) 조선시대 賜几杖 제도	111
5) 賜几杖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115
3. 儀禮  관련 敎書	119
3.1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	119
1) 국왕 혼례의 納采·納徵·告期	119
2) 納采敎書·納徵敎書·告期敎書의 문서식	122

3) 納徵教書·告期教書의 傳存과 특징 .....	125
4) 納幣教書의 傳存과 특징 .....	127
3.2 冠禮教書 .....	132
1) 冠禮教書의 淵源 .....	132
2) 조선시대 王世子の 冠禮 .....	136
3) 冠禮教書의 傳存과 특징 .....	140
3.3 配享功臣教書와 宗廟配享教書 .....	146
1) 고려시대 配享功臣과 教書 .....	146
2) 조선시대 配享功臣의 現況과 선정 과정 .....	150
3) 配享功臣教書의 시행 .....	155
4) 配享功臣教書의 傳存과 문서식 .....	159
5) 宗廟配享教書의 시행과 특징 .....	161
3.4 文廟從祀教書 .....	165
1) 文廟從祀의 역사 .....	165
2) 文廟從祀 과정과 文廟從祀教書 시행 .....	167
3) 文廟從祀 致祭文 .....	171
4) 文廟從祀教書의 傳存과 문서식 .....	173
4. 中外 頒布 관련 교서 .....	177
4.1. 中外頒教書 .....	177
1) 중외반교서의 발급 사유 .....	177
2) 中外頒教書의 傳存과 특징 .....	179
5. 其他 教書 .....	185
5.1 李澄石 教書 .....	185
5.2 李滉 批答教書 .....	187
5.3 趙憲 教書 .....	188
5.4 宣諭稿賞教書 .....	191
5.5 無學大師 贈號教書 .....	192
VI. 教書의 위상과 의의 .....	196
1. 教書와 다른 國王文書의 비교 .....	196
1.1 教書와 敎命·竹冊 .....	196

1.2 敎書와 批答 .....	200
1.3 敎書와 綸音·訓諭諭書 .....	203
1.4 敎書와 閣臣敎旨·春坊敎旨 .....	206
2. 敎書 관련 처벌 규정과 사례 .....	211
3. 敎書의 의의 .....	214
VII. 결론 .....	216
參考文獻 .....	220
ABSTRACT .....	229
附錄 1 .....	233
附錄 2 .....	248

## 表 目 次

〈表 Ⅲ-1〉 조선 전기 教書의 始面 변화 .....	18
〈表 Ⅲ-2〉 教書 始面の 기재 방식 비교 .....	19
〈表 Ⅲ-3〉 조선 전기 教書의 起頭語와 結辭 비교 .....	21
〈表 Ⅲ-4〉 教書의 본문 기재 방식 .....	22
〈表 Ⅲ-5〉 教書의 발급 일자 기재 방식 .....	23
〈表 Ⅲ-6〉 『寶印符信總數』·『寶印所儀軌』의 「施命之寶」 형태 사항 .....	30
〈表 Ⅲ-7〉 『度支準折』에 수록된 供上草注紙·草注紙·楮注紙 .....	32
〈表 Ⅲ-8〉 조선시대 教書의 규격 .....	33
〈表 Ⅳ-1〉 文廟從祀教書의 製述官 .....	37
〈表 Ⅳ-2〉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啓字印과 判付의 사례 .....	45
〈表 Ⅳ-3〉 조선 후기 教書의 발급 과정 .....	47
〈表 Ⅳ-4〉 현전하는 재발급 功臣教書 .....	52
〈表 Ⅴ-1〉 조선시대 教書의 傳存 現況 .....	55
〈表 Ⅴ-2〉 使命訓諭教書에 기재된 京畿觀察使의 兼職 변화 .....	60
〈表 Ⅴ-3〉 使命訓諭教書의 始面 .....	71
〈表 Ⅴ-4〉 使命訓諭教書의 부임지 관련 용어와 사례 .....	72
〈表 Ⅴ-5〉 使命訓諭教書의 수취자와 임명 관련 내용 .....	73
〈表 Ⅴ-6〉 使命訓諭教書의 본문이 동일한 사례 .....	74
〈表 Ⅴ-7〉 조선시대 功臣의 錄勳과 功臣教書 傳存 現況 .....	80
〈表 Ⅴ-8〉 功臣都鑑과 錄勳都監의 儀軌와 謄錄 .....	90
〈表 Ⅴ-9〉 賞加教書의 始面 .....	98
〈表 Ⅴ-10〉 賞加教書의 본문 .....	99
〈表 Ⅴ-11〉 賞加教書 수취자의 官職 .....	100
〈表 Ⅴ-12〉 賞加教書에서 加資된 品階 .....	100
〈表 Ⅴ-13〉 賞加教書의 加資 사유 .....	101
〈表 Ⅴ-14〉 致仕 前後 祿俸의 변화 .....	106
〈表 Ⅴ-15〉 致仕教書의 傳存 現況 .....	107
〈表 Ⅴ-16〉 致仕教書의 始面 .....	108
〈表 Ⅴ-17〉 致仕教書의 본문 1 .....	109

<表 V-18> 致仕敎書의 본문 2 .....	110
<表 V-19> 賜几杖敎書의 본문 1 .....	116
<表 V-20> 賜几杖敎書의 본문 2 .....	117
<表 V-21> 國王 혼례의 納采·納徵·告期 .....	120
<表 V-22> 國王 혼례의 嘉禮正使와 嘉禮副使 .....	121
<表 V-23> 『世宗實錄』 「五禮」의 納采敎書·納徵敎書·告期敎書 .....	123
<表 V-24> 『晉書』·『宋史』·『世宗實錄』 「五禮」의 納采·納徵·告期 .....	125
<表 V-25> 현전하는 納徵敎書와 告期敎書 .....	125
<表 V-26> 1787년(정조 11)·1847년(헌종 13) 納采敎書와 納幣敎書 .....	129
<表 V-27> 冠禮 관련 制書·詔書·敎書의 문서식 .....	135
<表 V-28> 王世子·王世孫의 冠禮 現況 .....	138
<表 V-29> 冠禮敎書의 傳存 現況 .....	140
<表 V-30> 『國朝五禮儀』와 『冊禮都監儀軌』의 冠禮敎書 비교 .....	141
<表 V-31> 1800년(정조 24)~1882년(고종 19) 王世子 冠禮敎書 .....	144
<表 V-32> 고려시대 配享功臣 現況 .....	148
<表 V-33> 조선시대 配享功臣의 現況 .....	152
<表 V-34> 配享功臣敎書의 傳存 現況 .....	159
<表 V-35> 配享功臣敎書의 始面과 본문 .....	160
<表 V-36> 고려·조선시대 18賢의 文廟從祀 現況 .....	167
<表 V-37> 文廟從祀 致祭文 .....	171
<表 V-38> 文廟從祀敎書의 傳存 現況 .....	174
<表 V-39>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の 傳存 現況 .....	175
<表 V-40> 文廟從祀敎書의 始面과 본문 .....	175
<表 V-41> 中外頒敎書의 傳存 現況 .....	180
<表 V-42> 文廟從祀 中外頒敎書와 文廟從祀敎書의 製述官과 발급 일자 .....	182
<表 VI-1> 使命訓諭敎書와 敎命·竹冊의 비교 .....	198
<表 VI-2> 敎書와 不允批答의 비교 .....	202
<表 VI-3> 中外頒敎書와 綸音·訓諭諭書의 비교 .....	204
<表 VI-4> 敎書와 閣臣敎旨·春坊敎旨의 비교 .....	210

## 圖 目 次

<圖 II-1>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와 寶印 .....	10
<圖 III-1> 「朝鮮國王之印」의 비교 .....	27
<圖 III-2> 朝鮮時代 敎書의 寶印 變化 .....	28
<圖 III-3> 『寶印所儀軌』의 「施命之寶」 관련 물품 .....	31
<圖 III-4> 敎書의 세로와 가로의 비율 變化 .....	33
<圖 IV-1> 宋時烈과 宋浚吉의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 .....	39
<圖 IV-2> 製進單子の 작성 방식 .....	40
<圖 IV-3> 尹趾完 使命訓諭敎書 製進單子와 李師命 保社功臣敎書의 製進單子 .....	41
<圖 IV-4> 啓字印·判付와 承旨의 長銜 .....	43
<圖 IV-5> 製進單子와 文廟從祀敎書에 기재된 宋時烈 官職 .....	49
<圖 IV-6> 1680년(숙종 6)에 재발급 된 朴東亮 扈聖功臣敎書 .....	53
<圖 V-1> 1538년(중종 33) 慶尙道觀察使 權機 使命訓諭敎書 .....	58
<圖 V-2> 1785년(정조 9) 三道統制使 金永綬 使命訓諭敎書와 敎書筒 .....	65
<圖 V-3> 觀察使·留守의 赴任 行列과 使命訓諭敎書·密符諭書 .....	66
<圖 V-4> 1894년(고종 31) 忠淸道觀察使 趙秉鎬 祇受狀啓 .....	70
<圖 V-5> 三道統制使 金鍵의 使命訓諭敎書 비교 .....	75
<圖 V-6> 南漢山城守禦使 鄭弘淳의 令書와 使命訓諭敎書 .....	77
<圖 V-7> 功臣敎書의 始面 .....	85
<圖 V-8> 1625년(인조 3) 靖社功臣敎書의 공신 명단 .....	88
<圖 V-9> 1604년(선조 37) 李山甫 扈聖功臣敎書와 敎書函 .....	93
<圖 V-10> 1617년(광해군 9) 申之悌 告身 .....	96
<圖 V-11> 1617년(광해군 9) 申之悌 賞加敎書 .....	96
<圖 V-12> 1774년(영조 50) 李最中 致仕敎書 .....	108
<圖 V-13> 『賜几杖宴會圖帖』 .....	113
<圖 V-14> 李景奭 賜几杖敎書 抄本과 几杖 .....	114
<圖 V-15> 1668년(현종 9) 李景奭 賜几杖敎書 .....	115
<圖 V-16> 1802년(순조 2) 金祖淳 納徵敎書 .....	126
<圖 V-17> 1802년(순조 2) 金祖淳 告期敎書 .....	126
<圖 V-18> 1780년(정조 4) 尹昌胤 納幣敎書 .....	128

<圖 V-19>	1727년(영조 3) 孝章世子(李緯, 眞宗) 冠禮敎書 .....	142
<圖 V-20>	1882년(고종 19) 王世子(李坻, 純宗) 冠禮敎書 .....	144
<圖 V-21>	1882년(고종 19) 王世子(李坻, 純宗) 冠禮敎書 草本 .....	144
<圖 V-22>	1651년(효종 2) 李元翼 配享功臣敎書 .....	161
<圖 V-23>	1661년(현종 2) 金尙憲 配享功臣敎書 .....	161
<圖 V-24>	1837년(헌종 3) 純祖 配享功臣 宗廟配享敎書 抄本 .....	164
<圖 V-25>	1610년(광해군 2) 李滉 文廟從祀 致祭文 .....	172
<圖 V-26>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 .....	174
<圖 V-27>	1796년(정조 20)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敎書 .....	180
<圖 V-28>	1890년(고종 27) 翼宗·神貞王后 尊號追上 中外頒敎書 .....	184
<圖 V-29>	1433년(세종 15) 李澄石 敎書 .....	185
<圖 V-30>	1567년(선조 즉위년) 李滉 敎書 .....	187
<圖 V-31>	1568년(선조 1) 李滉 敎書 .....	188
<圖 V-32>	1592년(선조 25) 趙憲 敎書 .....	190
<圖 V-33>	1596년(선조 29) 宣諭犒賞敎書 .....	192
<圖 V-34>	1792년(정조 16) 無學大師 贈號敎書 .....	194
<圖 V-35>	1792년(정조 16) 無學大師 贈號敎旨 .....	195
<圖 V-36>	1792년(정조 16) 懶翁禪師 贈號敎旨 .....	195
<圖 V-37>	1792년(정조 16) 指空禪師 贈號敎旨 .....	195
<圖 VI-1>	1736년(영조 12) 思悼世子(李愔) 敎命 .....	197
<圖 VI-2>	1736년(영조 12) 思悼世子(李愔) 竹冊 .....	197
<圖 VI-3>	1638년(인조 16) 金堉 使命訓諭敎書 .....	201
<圖 VI-4>	1653년(효종 4) 金堉 不允批答 .....	202
<圖 VI-5>	1757년(영조 33) 畿民 綸音 .....	204
<圖 VI-6>	1761년(영조 37) 江原道方伯守宰軍民 訓諭諭書 .....	204
<圖 VI-7>	金憲와 金商憲의 閣臣敎旨 .....	208
<圖 VI-8>	1892년(고종 29) 金商憲 春坊敎旨 .....	209

朝鮮時代 敎書 研究

노인환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국왕의 명령과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敎書에 대한 고문서학적인 연구 결과물이다. 먼저 조선시대 교서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고, 교서의 양식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서의 발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교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유형과 제도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를 비교하고 교서의 처벌 규정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교서의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였다.

교서의 기원과 시행에서는 중국과 고려의 문서 제도에서 교서의 기원을 규명하였고,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교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 唐의 論事勅書는 宋의 詔書가 되었고, 고려에서 송의 조서를 수용하여 조서와 교서를 시행하였다. 이후 고려시대 조서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起頭語·結辭 등의 문서 양식이 일부 변화하였다.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는 왕실의 각종 의례 거행, 재상 및 지방 관원 임명, 辭職 不允, 致仕, 공신 錄勳과 配享 등의 경우에 발급되었다. 조선 초기에 교서는 고려시대 교서의 영향을 받아 개국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교서의 양식에서는 始面·본문·발급 일자 등의 문서식과 교서에 사용된 寶印·敎書紙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서의 始面은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品階·官職·姓名 등을 기재하였다. 본문은 ‘王若曰’의 起頭語와 ‘故茲敎示 想宜知悉’의 結辭로 구성되었으며, 전반부에는 수취자의 성품·행실·학문·명성·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후반부에는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발급 일자는 중국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으며, 일부는 연호 대신에 干支를 기재하였다. 寶印은 조선의 개국 직후에는 고려의 寶印인 「高麗國王之印」을 사용하였고, 이후 「朝鮮王寶」·「朝鮮國王之印」·「國王信寶」·「施命之寶」·「施命」·「朝鮮國王之印」의 변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敎書紙는 조선 전기에 供上紙를 사용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草注紙와 楮注紙로 변경되었다.

교서의 발급 과정에서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가 문서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교서의 발급이 결정된 후에 국왕은 예문관의 관원이나 지제교 등을 敎書製述官으로

임명하였다. 교서제술관은 교서의 본문을 製述하여 그 내용을 製進單子로 작성하였으며, 승정원의 승지는 제진단자를 국왕에게 入啓하였다. 국왕은 제진단자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裁可하였고, 이후 敎書書寫官이 제진단자의 내용을 書寫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왕이 「施命之寶」를 安寶함으로써 교서가 발급되었다.

교서의 유형과 제도에서는 국왕이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에 따라 크게 任命·褒賞·儀禮·中外頒布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임명 관련 교서인 使命訓諭敎書는 국왕이 한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관찰자·유수·통제사·통어사 등에게 임명된 사실을 알리는 使命의 내용과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訓諭의 내용으로 내려주는 교서이다. 국왕은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고 지방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명훈유교서를 발급하였다.

포상 관련 교서로는 功臣敎書·賞加敎書·致仕敎書·賜几杖敎書가 있다. 공신교서는 조선의 개국, 반정을 통한 정권교체, 역모 및 반란의 진압, 전란 등에 공을 세워 錄勳된 공신에게 내리는 교서이다. 상가교서는 功臣, 善政, 군량·군기 마련, 오랑캐·명화적 체포 등의 功을 세운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加資하거나 무관을 2품 이상으로 加資할 때에 내려주는 교서이다.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는 국왕이 연로한 관원을 禮遇하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치사교서는 나이가 많은 관원이 관직을 사직하고 奉朝賀에 임명될 때 내려주는 교서이며, 사궤장교서는 연로한 대신의 致仕를 윤택하지 않고, 几와 杖을 下賜할 때에 내려주는 교서이다. 국왕은 이러한 포상 관련 교서를 발급함으로써 관원들의 충성을 유발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의례 관련 교서로는 국왕의 혼례와 왕세자의 관례, 그리고 종묘와 문묘의 제례를 거행할 때에 발급하는 교서로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 冠禮敎書, 配享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 文廟從祀敎書가 있다. 납채교서·납징교서·납폐교서·고기교서는 국왕이 혼례를 거행하여 妃·嬪을 맞이할 때에 婚書를 대신하여 비·빈의 부친에게 내리는 교서이며, 관례교서는 왕세자·왕세손이 관례를 거행할 때에 내리는 교서이다. 배향공신교서는 재위 기간 동안에 선왕을 보좌한 공으로 配享功臣에 선정된 관원에게 致祭를 지낼 때에 내리는 교서이며, 종묘배향교서는 종묘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 사실을 반포하는 교서이다. 문묘종사교서는 孔子와 四聖·孔門十哲·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에 儒賢의 위패를 從祀할 때 국왕이 내려주는 교서이다.

중외반교서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거나 국가의 儀禮·祭享을 거행하거나 왕실의 慶

事가 있을 때 中外의 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교서이다. 국왕은 중외반교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罪를 赦宥하거나 관원들을 포상하기도 하였다.

교서의 위상과 의의에서는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의 비교하고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敎命·竹冊, 批答, 綸音·諭書, 閣臣敎旨·春坊敎旨와 교서를 비교하여 교서가 다른 국왕문서에 문서 양식·제도 등에 영향을 준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과 사례를 통해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교서로써 문서화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시대 교서의 역사, 양식, 발급 과정, 유형과 제도, 위상과 의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교서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서 이외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綸音·批答·傳敎·備忘記·有旨 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주제어 : 敎書, 使命訓諭敎書, 功臣敎書, 賞加敎書, 致仕敎書, 賜几杖敎書, 納采敎書, 納徵敎書, 納幣敎書, 告期敎書, 冠禮敎書, 配享功臣敎書, 宗廟配享敎書, 文廟從祀敎書, 中外頒敎書.

# I. 서론

## 1. 연구 목적

조선시대에 국왕은 명령이나 의지를 문서로 전달하는 경우에 敎書·敎命·玉冊·竹冊·告身·諭書·綸音·批答·傳敎·備忘記 등의 국왕문서를 해당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다. 문서를 통해 전달되는 국왕의 명령은 국왕의 卽位와 禪位, 왕세자·왕비 등의 冊封, 관원의 임명, 군사권의 운용, 공신이나 관원의 포상, 嘉禮·冠禮·文廟從祀·宗廟配享 등 국가적인 儀禮와 祭享의 거행, 관원이나 백성들에 대한 訓諭, 죄인의 赦宥 등으로 다양하였다. 국왕문서를 통해 국왕의 명령을 연구하는 것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제도나 국정의 운영을 연구하는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 가운데 교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교서는 국왕문서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서이며,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현재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약 200여 점의 교서가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와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각종 개인 문집에는 다수의 교서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서의 역사, 양식, 발급과 수취 과정, 유형과 제도, 위상과 의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교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서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교서가 시행된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서의 양식을 통해 교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어서 교서의 발급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가 문서화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왕과 승정원 사이에 문서를 통한 명령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批答·綸音·有旨 등의 다른 문서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시대에 국왕이 내린 명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현전하는 교서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남아있는 使命訓諭敎書를 통해 지방의 觀察使·留守·統制使·統禦使를 임명할 때에 국왕이 내리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 사명훈유교서 이외에 功臣敎書·賞加敎書·致仕敎書·賜几杖敎書·冠禮敎書·配享功臣敎書·文廟從祀敎書·中外頒敎書 등을 통해 교서로 발급되는 국왕의 다양한 명령도 규명할 수 있다. 국왕의 명령

을 규명함으로써 국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교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sup>1)</sup>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국왕문서를 연구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조선시대 교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문화재보존학과 고문서학에서도 연구되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최승희·노명호·임민혁·박재우의 선행연구가 있다. 최승희는 『韓國古文書研究』에서 교서를 ‘國王이 發하는 命令書·訓諭書·宣布文’으로 정의하고, 교서의 발급 사유에 따라 卽位敎書·求言敎書·功臣錄勳敎書·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頒赦敎書·賜與敎書·勸農敎書·使命訓諭敎書·封爵敎書·冊封敎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사명훈유 교서와 공신교서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sup>2)</sup> 노명호는 고려시대의 공신문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鄭仁卿과 金汝孟의 功臣敎書を 분석하고, 고려 전기의 功臣詔書에서 고려 후기의 공신교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sup>3)</sup> 임민혁은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교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교서의 내용·성격·작성·頒奉儀式 등을 연구하였다.<sup>4)</sup> 박재우는 고려의 王命에 대한 연구에서 교서에 대해 중서문하성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中樞院을 통해 반포되는 왕명으로 규정하였다.<sup>5)</sup>

문화재보존학 분야에서는 김나형과 이진희의 선행연구가 있는데, 모두 공신교서의

1)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전경목은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에서 고문서학을 고문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내적연구와 고문서의 재질이나 형태 등을 연구하는 외적연구로 나누었다. 내적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경제사·사회사·문화사·법제사·국어학·역사학 등에서 시행해 온 연구 방법이며, 외적연구는 조사방법론·분류정리론·보존방법론·양식론·해석론·재료학·기록관리론·감정론·활용론 등의 연구 방법이다. 본 논문은 외적연구 가운데 분류정리론·양식론·재료학·기록관리론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교서에 대해 고문서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전경목,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정신문화연구』 9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21~230쪽.

2) 최승희,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64~69쪽.

3) 노명호, 「高麗後期の 功臣錄券과 功臣敎書」, 『고문서연구』 13, 한국고문서학회, 1998.

노명호 외, 「高麗後期の 功臣錄券과 功臣敎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 『民族文化』 16, 한성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 1999.

임민혁, 「敎書의 작성 및 성격」,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5) 박재우, 「제2장 王命의 종류와 반포」,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신구문화사, 2005.

粧纒에 주목하였다. 김나형은 현전하는 73건의 조선시대 공신교서에 대한 장황 형식을 분석하고 원형 보존처리를 위한 복원에 대해 연구하였다.<sup>6)</sup> 이진희는 扈聖功臣敎書 및 靖社功臣敎書を 중심으로 추후에 改造된 공신교서의 장황을 연구하였다.<sup>7)</sup>

고문서학 분야에서는 심영환·박성호·조미은·노인환의 선행연구가 있다. 심영환은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を 통해 고려시대 獎諭敎書の 기원과 양식의 변화를 연구하고,<sup>8)</sup> 몽골시대에 고려 국왕의 王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공신문서의 양식을 연구하였으며,<sup>9)</sup>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교서의 淵源을 연구하였다.<sup>10)</sup> 박성호는 1392년(태조 1)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태종 1) 馬天牧 佐命功臣敎書を 통해 공신교서의 문서식과 寶印을 연구하였고,<sup>11)</sup> 이어서 고려 후기부터 經國大典體制의 成立까지 발급된 조선 초기 王命文書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의 교서를 문서 양식론과 文書史的인 관점으로 연구하였다.<sup>12)</sup> 조미은은 조선시대 王世子文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왕세자가 관례를 거행할 때에 국왕이 왕세자에게 내려준 冠禮敎書에 대해 연구하였다.<sup>13)</sup> 노인환은 조선시대 공신교서의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sup>14)</sup> 현전하는 교서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の 발급 과정을 통해 조선 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연구하였다.<sup>15)</sup>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교서의 선행연구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교서에 대한 文書史的인 연구와 교서의 여러 유형 가운데 공신교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서는 조선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후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급된 국왕문서이며, 공신교서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교서가 발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 시기에 발급된 교서에 대하여 고문서학적인 연

6)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7) 이진희, 「조선시대 改造本 功臣敎書の 粧纒 연구 -扈聖功臣敎書 및 靖社功臣敎書を 중심으로-」, 『장서각』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8) 심영환, 「高麗時代 獎諭敎書 樣式」, 『藏書閣』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심영환, 「몽골시대 高麗의 王命」, 『泰東古典研究』 29, 태동고전연구소, 2012.

10)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敎書の 淵源과 分類」, 『漢文學論集』 34, 근역한문학회, 2012.

11)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の 文書史的 의의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全北史學』 36, 전북사학회, 2010.

12) 박성호,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 -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3)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4)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15) 노인환, 「조선후기 敎書の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を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구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 조선시대 교서를 연구하는 방법은 고문서학의 다양한 연구 방법 가운데 1종 문서에 대한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1종 문서에 대한 연구는 문서의 역사, 양식, 발급과 수취, 유형과 제도, 위상과 의의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먼저 文書史에서는 문서의 기원과 전래 과정, 그리고 시대에 따라 문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규명한다. 문서의 양식에서는 해당 문서를 정의하고 문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문서식·보인·서체·재질 등을 살펴본다. 문서의 발급과 수취는 발급자와 수취자 사이에 문서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문서의 유형과 제도에서는 문서의 내용과 발급 사유를 통해 문서를 유형화하고, 각 문서별로 관련된 제도와 특징 등을 파악한다. 문서의 위상과 의의에서는 동일한 범주에 속한 다른 문서와 양식·내용 등을 비교하여 문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서와 관련된 처벌 사례를 통해 해당 문서의 특수성을 파악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문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1종 문서에 대한 연구 방법을 조선시대 교서에 적용해서 본 논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은 文書史的인 관점에서 조선시대 교서의 기원과 시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서는 조선시대에 독자적으로 생성된 문서가 아니라 고려시대 詔書와 敎書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도 중국 문서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의 시행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현전하는 고려시대 교서인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교서가 시행되었는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수록되어 있는 교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은 문서 양식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시대 교서의 문서식과 寶印과 敎書紙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서의 문서식과 보인은 여러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교서의 문서식은 始面·본문·발급 일자의 기재 방식에 대해 현전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사례를 정리하고 문서식을 규정하고자

한다. 교서의 寶印은 조선 초기에 각종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조선 중·후기에 교서에 사용된 「施命之寶」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敎書紙는 교서에 사용된 종이를 규명하고, 교서가 발급된 시기별로 종이의 규격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은 문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조선시대 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교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으며, 製述·入啓·裁可·書寫·安寶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발급되었다. 교서의 발급 과정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까지 범위를 넓혀서 교서의 발급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V장은 문서의 유형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현전하는 교서를 내용과 발급 사유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교서의 제도와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교서를 발급 사유에 따라 任命·褒賞·儀禮·中外頒布 등으로 나누고, 하위 항목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임명 관련 교서에는 使命訓諭敎書, 포상 관련 교서에는 功臣敎書·賞加敎書·致仕敎書·賜几杖敎書, 의례 관련 교서에는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冠禮敎書·配享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 중외에 반포하는 교서에는 中外頒敎書, 이 밖에 其他 敎書로 나누어 보았다. 분류된 교서에 대하여 전존된 현황·문서식·시행 과정·수취 방식뿐만 아니라 교서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VI장은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를 비교하고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서의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교서와 비교 대상이 되는 국왕문서는 敎命과 竹冊, 不允批答, 綸音과 訓諭諭書, 閣臣敎旨와 春坊敎旨 등으로 이들 문서는 교서와 비슷한 문서 양식으로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이다. 먼저 각 문서의 정의·제도·특징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현전하는 문서를 사례로 제시하여 교서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어서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살펴보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 교서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가 갖는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敎書의 기원과 시행

조선시대 교서의 기원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와 고려시대에 시행된 詔書와 교서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 唐의 論事敎書가 宋의 조서로 되었고, 고려에서는 송의 조서를 수용하여 조서와 교서를 시행하였다.<sup>16)</sup> 이후 고려시대에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起頭語·結辭 등의 문서 양식이 일부 변화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문서 제도를 수용하여 교서를 시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먼저 고려시대에 어떠한 유형의 조서와 교서가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전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교서인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조선시대에 시행된 교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려시대 詔書와 敎書의 시행

#### 1.1 고려시대 詔書와 敎書의 유형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의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료의 부족으로 시행 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고려사』를 보면 986년(성종 5)에 국왕의 명령을 詔에서 敎로 개칭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詔에서 敎로 변경함에 따라 조서도 교서로 변경되었지만, 실제로 『고려사』에서는 성종 연간 이후에 조서와 교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1108년(예종 3)에 여진을 평정한 尹瓘을 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로 임명하면서 조서와 고신을 내렸고,<sup>18)</sup> 1131년(인종 9)에 왕비가 왕자를 낳았을 때에 교서와 예물을 내렸으며,<sup>19)</sup> 1143년(인종 21)에 태자비에게 조서와 예물을 내렸다.<sup>20)</sup> 1276년(충렬왕 2)에는 元의 압력에 의하여 국왕과 관련된 용어인 ‘宣旨·朕·赦·奏’를 각각 ‘王旨·孤·宥·呈’으로 개칭하였는데,<sup>21)</sup> 이 때 조서도 교서로 개칭

16) 심영환, 앞의 논문, 2007, 163~185쪽 ; 심영환, 앞의 논문, 2012, 189~226쪽 ; 심영환·노인환, 앞의 논문, 2012, 9~49쪽 ; 박성호, 앞의 논문, 2012, 25~66쪽.

17) 『高麗史』世家3 成宗 5년(986): 五年春正月, 契丹遣厥烈來請和. 三月, 賜崔英藺及第. 始以詔稱敎.

18) 『高麗史』世家12 睿宗 3년(1108): 夏四月壬午, 以尹瓘爲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吳延寵爲尙書左僕射·叅知政事, 遣內侍郎中韓敏如, 齎詔書·告身及紫繡鞍具廐馬二匹, 至雄州分賜之.

19) 『高麗史』世家16 仁宗 9년(1131): 冬十月, … 庚辰, 王妃任氏生子皓, 遣御史大夫任元濬, 賜敎書·禮物.

20) 『高麗史』世家17 仁宗 21년(1143): 夏四月, … 丁未, 賜太子妃詔書·禮物.

되었으며, 이후 원 간섭기와 고려 말에는 교서만 시행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는 현재 실물로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 1건이 전해지고 있으며,<sup>22)</sup> 나머지는 『고려사』·『동문선』·『동국이상국집』·『동인지문사록』 등의 사료에 일부 조서와 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관련 사료를 통해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왕은 왕실과 관련된 각종 의례를 거행할 때에 조서나 교서를 내려주었다. 국왕이 조서나 교서를 내려주는 왕실의 의례에는 왕비·왕태자·왕자·王姬 등을 책봉하는 경우, 왕태자의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 왕태자·공주의 혼례를 거행하는 경우이다. 元子の 탄생을 축하하거나 왕태자에게 稱名하고 立府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도 국왕은 조서나 교서를 내려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사』에서는 왕실의 의례를 거행할 때에 조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수록하고 있으며,<sup>23)</sup>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에서는 왕태자 관례조서의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또한 1212년(강종 1)에 강종이 왕태자인 고종의 관례를 거행할 때 내린 王太子加元服敎書,<sup>25)</sup> 1235년(고종 22)에 고종이 원종을 왕태자에 책봉할 때에 내린 太子封冊敎書,<sup>26)</sup> 왕태자(원종)와 金若先의 딸인 順敬太后 金氏가 嘉禮를 거행할 때에 고종이 내린 太子嘉禮敎書 등이 있다.<sup>27)</sup> 고려시대에 왕실과 관련된 각종 의례에 조서나 교서를 내리는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의례에만 적용되었다. 왕비와 왕세자 등을 책봉할 때에는 교서 대신에 敎命·玉冊·竹冊 등의 다른 문서로 대체되었으며, 국왕이 혼례를 거행하거나 왕세자·왕세손 등이 관례를 거행하는 경우에만 교서를 내려주었다.

두 번째로 국왕은 재상을 임명하거나 지방의 관원을 임명할 때에 교서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교서로는 李延壽를 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로 임명하는 교서, 金義元를 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로 임명하는 교서, 崔瑀를 金紫光祿大夫·

21) 『高麗史』 世家28 忠烈王 2년(1276): 甲申,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赦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22)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3) 『高麗史』 志19 禮7 嘉禮1 「冊王妃儀」, 「元子誕生賀儀」.

『高麗史』 志20 禮8 嘉禮2 「冊王太子儀」, 「王太子稱名立府儀」, 「王太子加元服儀」, 「王太子納妃儀」.

『高麗史』 志21 禮9 嘉禮3 「冊王子王姬儀」, 「公主下嫁儀」.

24) 고려시대 왕태자의 冠禮詔書 문서식은 “V. 교서의 유형과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5) 『高麗史』 世家21 康宗 1년(1212): 秋七月, … 乙丑, 冊子曠爲王太子, 加元服立府.

『東文選』 卷23 敎書 「王太子加元服敎書」.

26) 『東國李相國全集』 卷33 敎書○批答○詔書 「太子封冊敎書」.

『東文選』 卷28 冊 「封太子敎書」.

27) 『高麗史』 列傳1 后妃1 順敬太后金氏: 元宗順敬太后金氏, 慶州人, 莊翼公若先之女. 封爲敬穆賢妃. 高宗二十二年元宗爲太子, 納爲妃, 生忠烈王而薨. 元宗三年追封爲靜順王后, 忠烈王即位, 追尊順敬太后.

『東國李相國全集』 卷33 敎書○批答○詔書 「太子嘉禮敎書」.

參知政事·吏兵部尙書·判御史臺事로 임명하는 교서, 崔瑀를 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吏部尙書·判工部事로 임명하는 교서가 있다.<sup>28)</sup> 또한 고려 말에는 각 道에 都觀察黜陟使를 임명할 때에 교서를 내려주었다.<sup>29)</sup> 고려시대에 관원의 임명과 관련된 교서는 조선 시대에도 시행되었는데, 국왕은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 등과 같이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관원을 임명할 때에 교서를 내려주었다.

세 번째로 국왕은 사직을 청하는 관원에게 사직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不允教書를 내려주었고, 사직을 허락할 때에는 依允教書를 내려주었으며, 연로한 관원이 致仕를 요청할 때에 치사를 허락하면서 致仕教書를 내려주었다. 고려시대 불운교서·의윤교서·치사교서는 『동국이상국집』과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柳光植·蔡靖·崔球의 불운교서,<sup>30)</sup> 司空左僕射 文孝軾·樞密副使 朴玄珪의 의윤교서,<sup>31)</sup> 崔正華의 치사교서 등이 있다.<sup>32)</sup> 고려시대의 불운교서와 의윤교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지 않았으며, 대신에 조선시대에 국왕은 대신이 올린 사직 상소에 대하여 不允批答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치사교서는 조선시대에도 시행되어 致仕를 요청한 연로한 관원에게 치사를 허락할 때에 국왕은 치사교서를 내려주었다.

네 번째로 국왕은 공이 있는 관원을 공신으로 녹훈할 때에 공신교서를 내렸다. 고려시대 공신교서는 족보와 문집에 세 건이 轉寫되었는데, 1292년(충렬왕 18) 金汝孟 공신교서가 『扶寧金氏族譜』에 수록되어 있고, 鄭仁卿 공신교서가 『扶寧金氏族譜』에 수록되어 있으며,<sup>33)</sup> 洪奎 공신교서가 『拙翁集』에 수록되어 있다.<sup>34)</sup> 세 건의 공신교서는 元 간섭기에 원의 문서 제도를 차용하여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起頭語는 몽골어 직해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문과 結辭는 한어체인 조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였다.<sup>35)</sup> 이러한 고려시대 공신교서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조선이 개국한 후에 태

28) 『東國李相國集』 卷34 教書 麻制 官誥 「李延壽爲守大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金義元爲中書侍郎平章事判兵部事·崔瑀爲金紫光祿大夫參知政事吏兵部尙書判御史臺事·史洪紀爲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吏部尙書判工部事教書·麻制各一道」.

29) 『高麗史』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教書斧鉞以遣之.

30) 『東國李相國集』 卷33 教書 批答 詔書 「柳光植讓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尙書右僕射判三司事不允教書」; 「蔡靖讓樞密院副使左散騎常侍翰林學士丞旨不允教書」; 「崔球讓守司空柱國不允教書」.

31) 『東國李相國集』 卷33 教書 批答 詔書 「司空左僕射文孝軾三度乞致仕依允教書」; 「樞密副使朴玄珪乞退三度依允教書」.

32) 『高麗史』 世家22 高宗 15년(1228): 十二月, … 戊辰, … 崔正華爲樞密院使, 仍令致仕.

『東國李相國集』 卷34 教書 麻制 官誥 「崔正華爲銀青光祿大夫樞密使戶部尙書致仕教書官誥各一道」.

『東文選』 卷25 制誥 「崔正華爲銀青光祿大夫樞密使戶部尙書致仕教書」.

33) 노명호 외, 앞의 책, 2000, 28~34쪽.

34) 『拙翁集』 卷10 慕遠錄 「十代祖麗朝奮策扶危安社功臣·壁上三韓三重大臣·都僉議中贊·上護軍·判典理司事·益城府院君·匡定公洪公」.

조는 개국공신에게 공신교서를 내려주었으며, 이후 오백여년 동안 국왕은 28번 공신을 녹훈하고 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

다섯 번째로 국왕은 종묘에 배향되는 관원에게 配享功臣教書를 내려주었고, 종묘에 배향공신을 배향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宗廟配享教書를 내려주었다. 고려시대 배향공신교서는睿宗의 묘정에 魏繼廷을 배향하는 배향공신교서와 康宗의 묘정에 鄭克溫을 배향하는 배향공신교서가 있으며,<sup>36)</sup> 종묘배향교서는 1376년(우왕 2)에 공민왕의 배향공신인 王煦·李齊賢·曹益清·李公遂·柳淑을 종묘에 배향하는 종묘배향교서가 있다.<sup>37)</sup> 고려시대에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는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조선시대에 선왕이 승하하고 2년 후에 배향공신을 선정하고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밖에 고려시대에 국왕이 교서를 내리는 경우는 왕실의 종친을 侯나 公으로 봉하는 교서,<sup>38)</sup> 승려를 贈諡하는 교서,<sup>39)</sup> 과거에 급제한 사실을 알리는 교서,<sup>40)</sup> 農桑을 권면하는 교서,<sup>41)</sup> 공이 있는 관원을 獎諡하는 교서 등이 있다.<sup>42)</sup>

## 1.2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教書

고려시대에 발급된 교서 가운데 1360년(공민왕 9) 정광도 교서는 유일하게 실물 문서로 현전하는 교서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359년(공민왕 8) 12월에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로 침입하여 서경을 함락시켰다.<sup>43)</sup> 이에 공민왕은 안우·이방실 등을 파견하여 1360년(공민왕 9) 2월에 홍건적을 격퇴시켰다.<sup>44)</sup> 같은 해 3월에 福州

35) 심영환, 앞의 논문, 2012, 209~216쪽.

36) 『東文選』 卷23 教書 「故門下侍中魏繼廷配享睿宗教書」; 「故參知政事鄭克溫配享神<康>宗教書」.

『東國李相國集』 卷33 教書 批答 詔書 「故參知政事鄭克溫配享神<康>宗大王教書」.

37) 『東文選』 卷24 教書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權近」.

『陽村集』 卷30 教書類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38) 『東國李相國集』 卷34 教書 麻制 官誥 「改封壽春侯沆爲桂城侯教書官誥」; 「始興伯佖爲淮安公教書」.

39) 『東國李相國集』 卷34 教書 麻制 官誥 「故寶鏡寺住持大禪師贈諡圓眞國師教書官誥」.

40) 『東文選』 卷23 教書 「及第放榜教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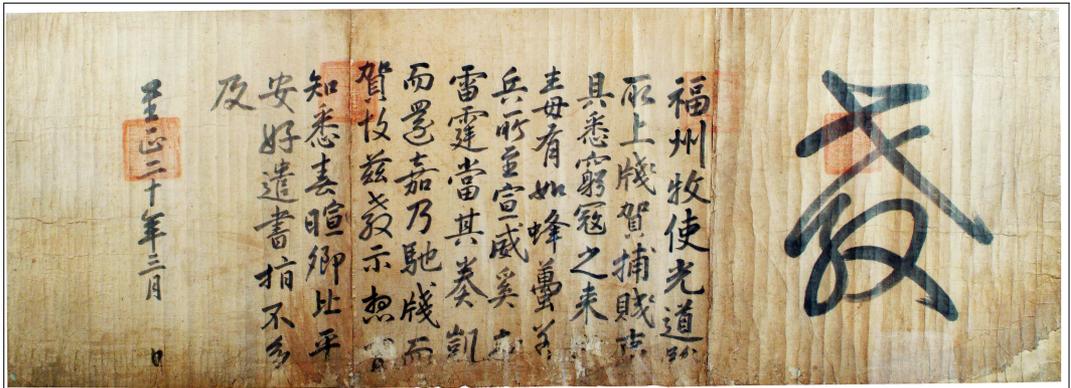
41) 『東文選』 卷23 教書 「勸勉農桑教書」.

42) 『東文選』 卷23 教書 「獎諡征西元帥金富軾教書」; 「獎諡征西都知兵馬金正純教書」.

43) 『高麗史』 世家39 공민왕 8년(1359): 十二月丁卯, 紅頭賊魁僞平章毛居敬, 衆號四萬, 冰渡鴨綠江, 陷義州, 殺副使朱永世及州民千餘人. … 庚午, 以守門下侍中李岳爲西北面都元帥, 慶千興爲副元帥, 金得培爲都指揮使, 李春富爲西京尹, 李仁任爲西京存撫使. 賊入鐵州, 安祐·李芳實等擊却之. 賊退, 屯麟靜等州. … 丁亥, 賊陷西京.

44) 『高麗史』 世家39 공민왕 9년(1360): 二月, … 癸酉, 安祐·李芳實等追賊, 至古宣州, 斬數百級餘, 賊三

牧使 정광도는 공민왕에게 흥건적을 물리친 것을 慶賀하는 牋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 공민왕이 가상하게 생각하여 정광도에게 교서를 내려주었다.



(01) 教	(08) 而還 嘉乃馳牋而	
(02) 福州牧使光道 [覽]	(09) 賀 故茲教示 想[宜]	
(03) 所上牋 賀捕賊事	(10) 知悉 春暄 卿比平	
(04) 具悉 窮寇之來 [肆]	(11) 安好 遣書 指不多	
(05) 毒有如蜂蠆 義	(12) 及	
(06) 兵所至 宣威奚[音]	(13) 至正二十年三月 日	
(07) 雷霆 當其奏凱		

<圖 II-1>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와 寶印<sup>45)</sup>

정광도 교서는 현전 문서 가운데 유일한 고려시대 교서이기 때문에 文書史的인 측면에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정광도 교서는 고려 후기 獎諭敎書의 양식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唐 論事勅書의 영향을 받은 宋 詔書가 고려 중기 교서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元 간섭기에 일부 용어가 변화되어 고려 후기 장유교서 양식으로 정착되었다.<sup>46)</sup> 또한 정광도 교서의 結辭인 ‘故茲教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은 고려 후기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교서에서도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百餘人渡鴨綠江而走.

45) 1360년(공민왕 9), 174.0×61.0cm, 보물 제451-11호 安東太師廟三功臣遺物-敎書, 安東 太師廟 所藏. 필자는 鄭光道 敎書의 寶印을 「○王璽寶」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동 태사묘에 소장되어 있는 정광도 교서를 살펴보았으나 「○王璽寶」에서 첫 번째 글자는 印文이 滅失되어서 판독하기가 어렵다.

46) 심영환, 앞의 논문, 2007, 179~192쪽.

정광도 교서의 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첫 행에 ‘敎’字를 草書로 크게 쓰고 그 다음 행에 수취자인 ‘福州牧使 光道’를 기재하였다. 본문은 ‘覽所上牋’으로 시작해서 ‘故茲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遣 書指不多及’으로 끝맺고 있다. 발급 일자는 ‘至正二十年三月 日’로 元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으며, 4곳에 寶印이 安寶되어 있다.

정광도 교서의 보인은 1344년(충목왕 즉위년) 申祐 告身에서 八思巴 문자로 새겨진 「駙馬高麗國王印」<sup>48)</sup>을 안보한 것과 차이가 있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문서와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고신과 교서의 문서 양식의 차이, 元 간섭기와 공민왕의 반원 정책 시기라는 발급 시기의 차이 등을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정광도 교서의 보인은 1370년(공민왕 19) 5월에 고려가 明으로부터 「高麗國王之印」을 받기 전까지 고려 후기에 교서에 안보된 보인으로 추정된다.<sup>49)</sup>

정광도 교서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邑誌인 『永嘉誌』와 文集인 『退憂堂集』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608년(선조 41)에 편찬된 『영가지』는 安東府의 읍지로 안동의 沿革·邑號·疆域·任官·古跡·姓氏·人物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任官에서는 정광도가 복주목사에 부임한 기간과 부임할 당시의 품계를 수록하였다. 정광도는 1359년(공민왕 8)에 복주목사에 부임하여 1360년(공민왕 9)에 遞職되었으며, 부임할 때의 품계는 종3품 大中大夫이었다.<sup>50)</sup> 『영가지』의 古跡에는 ‘恭愍王手筆敎旨’라는 내용과 그 아래 細註에 정광도 교서의 원문을 수록하고 있어 정광도 교서의 하단에 걸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sup>51)</sup> 그런데 ‘恭愍王手筆敎旨’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국왕이 직접 교서를 書寫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敎旨’는 『영가지』의 편찬자가 고려시대 교서의 문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첫 행에 기재된 ‘敎’字를 보고 敎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710년(숙종 36)에 간행된 『退憂堂集』은 金壽興(1626~1690)의 문집으로 卷10 雜著 중에 「南征錄」에는 당시 安東府의 太師廟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교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52)</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흥이 1660년(현종 1) 3월 7일

47) 박성호, 앞의 논문, 2012, 30~32쪽.

48) 川西裕也, 「高麗末·朝鮮初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検討」, 『朝鮮學報』 220, 朝鮮學會, 2011, 117~120쪽.  
川西裕也, 「第二章 高麗事元期から朝鮮初期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検討」,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九州大學出版會, 2014, 82~84쪽.

49) 『高麗史』 志26 輿服1 印章 王印章: …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賜金印一顆, 龜紐盤綬, 其文曰高麗國王之印.

50) 『永嘉誌』 卷6 「任官」: … 牧使鄭光道 [大中. 至正己亥赴, 庚子遞.] …

51) 『永嘉誌』 卷6 「古跡」: … 恭愍王手筆敎旨 [敎福州牧使光道曰, 覽所上牋, 賀捕賊事具悉. 窮寇之來, 肆毒有如蜂蟻, 義兵所至, 宣威奚啻雷霆. 當其奏凱而還, 嘉乃馳牋而賀. 故茲敎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 至正二十年三月日. 光道姓鄭.] …

52) 『退憂堂集』은 金壽興의 아들인 金昌說이 1710년(숙종 36)에 간행하였으며, 『退憂堂集』에 수록된 「南

에 태사묘를 拜謁할 때에 태사묘의 전체 모습과 태사묘에서 소장하고 있는 玉篋·古器·金帶 등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고려시대 교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退憂堂集』卷10 雜著「南征錄」

… 福州牧使張志處教書一度，此皆恭愍王避紅巾駐此邑，還都時留賜本府戶長之物云。教書紙品長短，有如詩軸之樣，初面以草大書教字，而其年乃至正二十五年也。御寶宛然，而篆文與今所用大異，不可識也。…

… 福州牧使 張志에게 내리는 教書 1度. 이것은 모두 恭愍王이 紅巾賊을 피하여 이 邑에 머무르고 還都할 때에 本府의 戶長에게 내려준 물건이라고 한다. 教書의 紙品과 長短은 詩軸의 모양과 같으며, 첫 면에 草書로 ‘教’字를 크게 썼고, 그 연도는 至正 25년(1365)이다. 御寶는 뚜렷하지만, 篆文이 지금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달라서 알 수 없다. …53)

위에 제시한 「남정록」에서 ‘初面以草大書教字’는 정광도 교서의 첫 행에 ‘教’字를 草書로 크게 쓴 것과 일치하여 고려시대 교서의 양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御寶의 篆文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1344년(충목왕 즉위년) 申祐 告身에서 八思巴 문자로 새겨진 「駙馬高麗國王印」이 안보된 경우로 비추어 볼 때, 元 간섭기에 漢字가 아닌 다른 문자로 새겨진 御寶의 篆文을 김수흥이 판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정록」의 내용에는 교서의 수취자와 발급년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福州牧使張志處教書一度’에서 교서의 수취자인 張志가 복주목사를 재임한 기간은 1317년(충숙왕 4)부터 1318년(충숙왕 5)까지인데, 교서에 기재된 것은 ‘至正二十五年’인 1365년(공민왕 14)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sup>54)</sup> 또한 1361년(공민왕 10)에 福州牧은 안동대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sup>55)</sup> 실제로 至正 25년인 1365년(공민왕 14)에 安東府使를 역임한 관원은 洪永通과 孫涌이었다.<sup>56)</sup> 이러한 점

征錄」은 金壽興이 1660년(현종 1) 2월 30일에 文康公 張顯光과 貞武公 崔震立의 賜諡官으로 현종에게 辭朝한 후에 漢陽을 출발해서 慶州와 仁同에서 각각 諡號를 전해주고, 3월 26일에 漢陽으로 돌아와서 顯宗에게 復命하는 동안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53) 『退憂堂集』卷10 雜著「南征錄」: 庚子二月三十日，以文康公張顯光，貞武公崔震立賜諡官，辭朝出城。… 初七日，朝謁太師廟。廟在客館之北，祠宇三間。金太師神位在東，權太師居中，張太師在西，… 中門外有享官廳，謁廟後退坐于此，題名于廟見錄。戶長言廟中有古器一櫃，謁廟諸人必看玩焉。使之陳列，則有白玉篋一條，以金爲帶，匝以銀絲，宛然如新，吹之聲甚響亮云。又有青紅各色段五六端·荔枝金帶·荔枝銅帶·銀金帶·玉貫子·雙銀行器·銀匙筋各一·象笏·紅漆小大盤各一·紅漆木如瓢木卓具各一·福州牧使張志處教書一度，此皆恭愍王避紅巾駐此邑，還都時留賜本府戶長之物云。教書紙品長短，有如詩軸之樣，初面以草大書教字，而其年乃至正二十五年也。御寶宛然，而篆文與今所用大異，不可識也。… 二十六日，朝飯于細村，午入京城，復命。

54) 『永嘉誌』卷3 「任官」: …牧使張志〔中顯，延祐丁巳赴，戊午遶。〕…

55) 『高麗史』志11 地理2 安東府: … 忠烈王三十四年，改爲福州牧。恭愍王十年，避紅賊，南巡駐輦，以州人盡心供頓，復陞爲安東大都護府。

56) 『永嘉誌』卷3 「任官」: … 府使洪永通，〔奉翊。至正甲辰赴，乙巳遞。〕司錄鄭可宗，〔參軍事。至正癸卯

에서 김수홍은 안동 태사묘에서 張志의 교서를 보고 「남정록」에 기록할 때에 발급년도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7)</sup>

## 2. 조선시대 敎書의 시행

고려시대 교서를 수용한 조선시대 교서는 1392년(태조 1) 7월 28일에 태조가 처음으로 반포하였고, 이후 조선 후기까지 국왕은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교서를 발급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17일에 즉위한 태조는 조선을 개국하였고, 같은 해 7월 28일에 中外의 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에게 처음으로 교서를 반포하여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 때 태조가 내린 교서에는 태조가 왕위에 오른 당위성을 밝히고 국호를 이전 그대로 고려로 하며, 고려의 儀章과 法制를 따른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宗廟·社稷·科擧·守令·救恤·賦稅·刑法 등과 관련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17개의 조항을 후록하고, 끝부분에 백성들의 죄를 赦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태조가 반포한 교서의 내용은 鄭道傳이 제출하였다.<sup>58)</sup>

태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 국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 차례 교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392년(태조 1) 9월에 태조는 각 道에 按廉使를 임명하여 보낼 때에 교서를 내려 보냈는데, 교서의 내용은 지방관들에게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59)</sup> 같은 해 9월과 11월에는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공을 세운 개국공신에게 개국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60)</sup> 1393년(태조 2) 2월에는 국호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변경할 때에 中外에 교서

赴, 甲辰遞.] 判官宋玄植, [通直. 至正乙巳赴, 丙午遞.] 府使孫涌, [奉翊. 至正乙巳赴, 丙午遞.] …

57) 또 다른 추정은 1608년(선조 41)에 편찬된 『영가지』에는 정광도 교서만 수록하였고, 장지 교서의 내용은 없었으며, 현재 안동 태사묘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서도 정광도 교서라는 점에서 김수홍이 안동 태사묘에서 정광도 교서를 보았으나 「남정록」을 쓸 때에 교서 수취자와 발급년도를 둘 다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58)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丁未):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有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이하 『朝鮮王朝實錄』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원문을 참조하였다.

59) 『太祖實錄』 1년(1392) 9월 11일(己丑): 分遣諸道按廉使. 敎京畿左道左諫議大夫李文和·右道三司左丞李舉曰, … 敎楊廣道禮曹典書趙瑛·慶尙道司憲中丞沈孝生·全羅道戶曹典書金希善·交州江陵道大將軍直門下鄭擢·西海道司農卿鄭當等曰, …

60) 『太祖實錄』 1년(1392) 9월 21일(己亥): 宴開國功臣于便殿, 各賜紀功敎書一通及錄券金銀帶·表裏有差. 特賜侍中裴克廉·趙浚·高頂·筮·玉頂子·玉纓具. 是日, 賜姓駙馬興安君李濟, 許同宗姓.

를 반포하였는데, 교서에 국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리고 관대한 恩典을 베풀기 위해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sup>61)</sup> 1395년(태조 4) 1월에는 『고려사』를 편찬한 鄭道傳과 鄭摠에게 포상으로 白金·廐馬·綵段·絹 등을 하사하면서 교서를 내려주었고,<sup>62)</sup> 같은 해 10월에는 종묘에 선대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사실을 中外에 알리고 아울러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교서를 반포하였다.<sup>63)</sup> 1398년(태조 7) 9월에 태조는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왕세자에게 禪位하는 내용으로 정종에게 교서를 내려주었다.<sup>64)</sup>

태조 이후에 국왕은 국가를 통치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서를 발급하여 명령을 전달하였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고 지방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觀察使·留守·統制使·統禦使·摠戎使·守禦使 등으로 임명된 관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使命訓諭教書를 내려주었다. 조선시대에 각 지역의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총융사·수어사 등이 정기적으로 임명될 때마다 국왕은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가장 많이 발급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교서로 볼 수 있다.

국왕은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포상을 내려 관원들의 충성을 유발하였는데, 이에 공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해 교서를 내려주었다. 관원의 포상을 위한 교서로는 공신으로 錄勳된 관원에게 내려주는 功臣教書와 공을 세운 관원에게 품계를 올려줄 때 내려주는 賞加教書가 있으며, 연로한 대신에게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할 때 내려주는 致仕教書와 几와 杖을 하사할 때에 내려주는 賜几杖教書 등이 있다.

국왕은 왕실의 혼례·관례 및 국가적인 제향 등 국가의 중요한 의례를 거행할 때에

『太祖實錄』 1년(1392) 11월 6일(癸未): 賜開國功臣等教書及諸翁主宅主印信. 功臣等享上.

61) 『太祖實錄』 2년(1393) 2월 15일(庚寅): … 下教境內. 王若曰, 予以涼德, 荷天休命, 肇有邦國. … 可自今除高麗國名, 遵用朝鮮之號. 屬茲初服, 宜示寬恩, 其在洪武二十六年二月十五日昧爽以前, 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 咸有除之, 敢以有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創業垂統, 既得更國之稱, 發政施仁, 當布勤民之治.

62) 『太祖實錄』 4년(1395) 1월 25일(庚申): 判三司事鄭道傳·政堂文學鄭摠等, 撰前朝『高麗史』自太祖至恭讓君三十七卷以進. 上親覽, 教鄭道傳曰, … 今賜卿白金一錠·廐馬一匹·綵段一匹·絹一匹·至可領也. 教鄭摠曰, 今賜卿廐馬一匹·白銀五十兩·段子一匹·綵絹一匹, 至可領也.

63) 『太祖實錄』 4년(1395) 10월 5일(乙未): 上服冕服, 親醑酌獻, 世子亞獻, 右政丞金士衡終獻. 禮畢, 還大次, 受中外朝賀. … 至午門帳次, 頒降教書. 王若曰, … 宜施寬大之恩, 以布惟新之令, 可有境內. 自洪武二十八年十月初五日昧爽以前, 常赦所不原外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 咸有除之. …

64) 『太祖實錄』 7년(1398) 9월 5일(丁丑): 上令近侍內官扶起, 召世子. 世子具公服, 詣上前伏地, 上親授教書, 世子受納懷中. 其書曰, 王若曰, 余以否德, 承祖宗之蔭, 奉天子之靈, 肇造邦家, 撫有臣庶, 于今七年. … 惟爾王世子芳果, 身居嫡長, 夙著仁孝, 且當開國之初, 贊襄弘多, 一國臣民, 咸共知之. 肆於洪武三十一年九月初五日, 告于宗廟, 乃命以位. …

도 교서를 발급하였다. 혼례를 거행하여 왕비를 맞이할 때에 국왕은 왕비의 부친에게 納采敎書·納徵敎書·告期敎書를 내려주었으며, 왕세자·왕세손이 관례를 거행할 때에 왕세자·왕세손에게 冠禮敎書를 내려주었다. 국가에서 지내는 제향과 관련해서 국왕은 賜祭敎書·配享功臣敎書·文廟從祀敎書 등을 내려주었다. 사제교서는 조선 전기에 국왕이 왕실의 구성원이나 3품 이상의 관원에게 賜祭할 때에 祭文으로 내려준 교서이다.<sup>65)</sup> 예를 들어 1418년(태종 18) 3월에 태종은 誠寧大君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제교서를 내려주었고,<sup>66)</sup> 세종은 貞善公主·金承霖·趙庸·安天保·李從茂 등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제교서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사제교서는 1435년(세종 17)에 大臣의 致祭에서 교서 대신에 제문을 사용하면서 점차 폐지되었다.<sup>67)</sup> 배향공신교서는 재위 기간 동안에 선왕을 보좌한 공으로 배향공신에 선정된 관원에게 내려준 교서이며, 문묘종사교서는 孔子와 그 제자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에 儒賢의 위패를 從祀할 때에 내려준 교서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거행할 때에 국왕은 中外의 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에게 中外頒敎書를 반포하여 그 내용을 전국에 알렸다.<sup>68)</sup> 이 경우에 교서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였고, 일부 교서의 경우에는 국가의 행사를 기념하여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내용과 관원들을 포상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하였다.

이상으로 제시한 교서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발급되었다. 이 가운데 사제교서와 상가교서와 같이 일정 기간만 시행되었고 중간에 소멸된 교서도 있었다. 또한 고종 연간에 麟坪大君·南延君·豐恩府院君 趙萬永의 배향공신교서를 告書라고 잠시 개칭하기도 하였다.<sup>69)</sup> 이후 1894년(고종 31) 11월에 勅令 제1호에서 제8호

65) 『世宗實錄』 14년(1432) 9월 7일(壬戌): 禮曹啓, 曾下傳旨, 三品以下各品及軍官軍民, 因公遇變隕命者, 只令致賻, 於義未盡, 宜令所在官致祭, 其祭品詳定以啓. 曹與詳定所同議, 從二品依正二品致祭例, 油白餅三行卓九味饌物, 三品以下, 油白餅三行卓七味饌物, 無職軍民, 油白餅十一果卓五味饌物. 祭文則三品以上敎書, 四品以下至軍民, 京中禮曹·外方所在官, 奉教撰文行之. 雖四品以下, 若受命統事, 爲國亡身者, 臨時取旨, 賜以敎書. 從之.

66) 『太宗實錄』 18년(1418) 3월 3일(癸丑): 命同副代言成掄如津寬寺, 爲誠寧大君設水陸齋, 故奉香以往也. 賜祭敎書曰, 嗚呼. 壽夭之不齊, 稟之天命而不可易, 父子之至恩, 本乎天性而不容已. … 汝其知也耶, 其其不知也耶. 卞季良之辭也. 兩殿悲哀之極, 凡薦導誠寧之事, 無所不至. 上覽敎書至半, 不覺嗷唏, 不忍終篇, 乃却之曰, 予之情意盡矣.

67) 『世宗實錄』 17년(1435) 2월 26일(戊辰): 賜祭于朴齡. 其文曰, 惟卿風神魁偉, 性行質直. 沈毅有勇, 才優將略. … 茲遣禮官, 侷陳菲薄. 靈其有知, 庶幾敬格. 前此大臣致祭, 皆用敎書, 至是考古制, 始用祭文.

68) 본 논문에서 中外의 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에게 내리는 교서를 ‘中外頒敎書’라고 하고, “V. 敎書の 유형과 제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69) 『承政院日記』 고종 2년(1865) 3월 15일(庚戌): 傳曰, 予於麟坪大君·南延君·豐恩府院君, 尊敬自別矣. 今於配享, 敎書改稱告書, 又不當稱之以卿, 改稱爲公.

이하 『承政院日記』는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홈페이지(<http://sjw.history.go.kr/main/main.jsp>)에서 원문을 참조하였다.

와 公文式 제1조에서 제19조를 반포할 때에 교서는 詔書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sup>70)</sup>

---

70) 勅令과 公文式에는 敎書와 詔書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나, 『高宗實錄』에서 敎書에 대한 기록이 1894년(고종 31) 10월 6일이었고, 같은 해 11월 26일에 ‘詔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敎書에서 詔書로의 변화는 勅令과 公文式的 반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高宗實錄』 31년(1894) 11월 21일(癸巳): 勅令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 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 自本日廢止, 承宣院公事廳, 竝罷之. … 公文式. 第一條. 法律·勅令, 以上諭公布之. … 第十九條. 勅任官任命, 則鈐御璽於辭令書, 奏任官任命, 則鈐御璽於其奏薦書.

『高宗實錄』 31년(1894) 10월 6일(己酉): 初六日. 議政府啓, 洪牧移拜完伯, 今已多日矣. 聞此州處在湖沿衝要, 而該倖備豫有方, 匪類不敢入境, 附近七八邑, 倚以爲重. 耆紳士民, 踵至願借, 誠有臨陣易將之歎. 前洪州, 牧使李勝宇, 特爲仍任, 全羅監司之代, 以工務協辦李道宰差下, 使之除朝辭, 自鄉第罔夜赴任. 密符以前監司所佩仍授, 敎諭書令承宣院成出, 安寶下送何如. 允之.

『高宗實錄』 31년(1894) 11월 26일(戊戌): 二十六日. 詔曰, 朕有所愼, 廟社誓告, 當卜日退行.

### III. 敎書의 양식

교서의 양식은 여러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를 정의하고, 교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장에서는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교서를 중심으로 문서식을 설정하고, 교서에 사용된 寶印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서식은 始面·본문·발급 일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인은 조선 전기에 보인이 변화하는 과정과 조선 중기 이후에 교서에 사용된 「施命之寶」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문서식

##### 1.1 始面

교서의 始面은 교서의 가장 앞부분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시면을 통해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 즉 교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sup>71)</sup> 시면을 기재하는 방식은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字와 수취자의 품계·관직·성명 등을 기재하고, 성명의 다음에 ‘書’字를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교서의 시면을 기재하는 방식은 교서의 발급 시기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의 문서 가운데 일반적으로 문서의 始面에서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가 기재된 문서를 교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서의 시면에는 ‘敎’字를 기재하였지만, 조선 초기에 발급된 교서에는 ‘書’字를 기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392년(태조 1) 李濟 開國功臣敎書의 시면은 ‘敎純忠佐命開國功臣·興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知書筵事李濟’이고, 1507년(중종 2) 辛殷尹 靖國功臣敎書의 시면은 ‘敎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鷲山君辛殷尹’이었다. 현전하는 교서 가운데 교서의 시면에 ‘書’字가 기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교서는 1538년(중종 33) 權機 使命訓諭敎書로 볼 수 있다. 이후 교

71) 始面은 각종 고문서에서 가장 앞부분에 반복되는 투식을 말하며, 본 논문에서 始面은 교서의 첫 행에 ‘敎’字로 시작하여 수취자의 정보를 기재한 부분을 의미한다.

『世祖實錄』 1년(1455) 12월 13일(甲寅): 禮曹啓, 中朝諸衙門題本, 卽本朝啓目也. 題本格例, 始面及日用印, 堂上與該司郎官僉書姓名, …

『光海君日記』 4년(1612) 10월 1일(辛酉): /司諫院啓曰, 臣等伏見政院啓辭, 鎮江中軍移咨始面, 有處字, 語意不遜, 爲邊臣者, 所當據例開諭, 使之卽改. …

김성갑, 「朝鮮時代 明文에 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5쪽.

서에서는 1590년(선조 23) 柳成龍 光國功臣敎書를 제외하고는 시면에 ‘敎’字와 ‘書’字가 기재되었다. 이러한 시면의 변화 과정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교서의 시면은 1507년(중종 2)부터 1538년(중종 33) 사이에 ‘敎’字와 ‘書’字를 기재하는 양식으로 완성되었다.<sup>72)</sup>

<表 Ⅲ-1> 조선 전기 敎書의 始面 변화

번호	발급 연도	발급	수취	始面	교서 유형
1	1392년(태조 1)	太祖	李濟	敎純忠佐命開國功臣·興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知[書]筵事李濟	功臣敎書
2	1401년(태종 1)	太宗	馬天牧	敎翊戴佐命功臣·折衝將軍·雄武侍衛司上將軍馬天牧	功臣敎書
3	1433년(세종 15)	世宗	李澄石	敎助戰節制使·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李澄石	其他
4	1467년(세조 13)	世祖	李從生	敎精忠出氣敵愾功臣·嘉善大夫·行龍驤衛上護軍·咸城君李從生	功臣敎書
5	1472년(성종 3)	成宗	李崇元	敎純誠明亮佐理功臣·嘉善大夫·行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延源君李崇元	功臣敎書
6	1497년(연산군 3)	燕山君	權柱	敎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權柱	使命訓諭敎書
7	1507년(중종 2)	中宗	辛殷尹	敎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鷲山君辛殷尹	功臣敎書
8	1538년(중종 33)	中宗	權楨	敎慶尙道觀察使權楨書	使命訓諭敎書
9	1567년(선조 즉위년)	宣祖	李滉	敎知中樞府事李滉書	批答敎書
10	1568년(선조 1)	宣祖	李滉	敎議政府右贊成李滉書	批答敎書
11	1590년(선조 23)	宣祖	柳成龍	敎翰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豐原府院君柳成龍	功臣敎書
12	1592년(선조 25)	宣祖	金誠一	敎慶尙左道觀察使金誠一書	使命訓諭敎書
13	1604년(선조 37)	宣祖	李忠元	敎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書	功臣敎書

始面은 교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사명훈유교서는 시면에 수취자가 임명된 관직을 기재하였고, 공신교서는 공신의 명칭과 관직을 기재하였다. 또한 각 교서마다 교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를 시면에 기재하였는데, 배향공신교서는 ‘配享臣’, 문묘종사교서에는 ‘從祀文廟’, 치사교서는 ‘致仕奉朝賀’, 상가교서는 ‘賞加’를 기재하였다. 이 밖에 관례교서의 시면은 ‘王世子冠禮敎書’이고, 중외반교서는 始面에 수취자인 ‘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을 기재하였다. 조선시대 각종 교서에서 始面의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2) 조선 후기에 발급된 교서 가운데 1802년(순조 2) 9월 金祖淳 納徵敎書와 1802년(순조 2) 10월 金祖淳 告期敎書는 始面에 ‘書’字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世宗實錄』 「五禮」에 수록된 문서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表 III-2> 敎書 始面の 기재 방식 비교

분류	발급 일자	발급	수취	始面	기재방식
使命 訓諭 敎書	1497년(연산군 3) 8월 8일	燕山君	權柱	敎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權柱	敎+官職+姓名
	1538년(중종 33) 3월 3일	中宗	權楨	敎慶尙道觀察使權楨	
	1592년(선조 25) 6월 1일	宣祖	金誠一	敎慶尙左道觀察使金誠一書	敎+官職+姓名+書
功臣 敎書	1392년(태조 1) 10월	太祖	李濟	敎純忠佐命開國功臣·興安君·兼義興親 軍衛節制使·知[書]筵事李濟	敎+功臣號+品階+官 職+姓名
	1590년(선조 23) 8월	宣祖	柳成龍	敎輸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 事·豐原府院君柳成龍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柳成龍	敎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劾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豐原府院君 柳成龍書	敎+功臣號+品階+官 職+姓名+書
配享 功臣 敎書	1661년(현종 2) 6월 30일	顯宗	金尙憲	配享[臣]□□…□[文正]公金尙憲敎書	配享臣+[品階+官職+ 諡號]+姓名+敎書
	1778년(정조 2) 4월	正祖	宋時烈	敎孝宗大王廟庭配享臣·贈領議政宋時 烈書	敎+某大王廟庭配享臣 +追贈 官職+姓名+書
文廟 從祀 敎書	1717년(숙종 43) 5월 18일	肅宗	金長生	敎贈領議政·文元公金長生從祀文廟書	敎+追贈 官職+諡號+ 姓名+從祀文廟+書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時烈	敎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文廟書	敎+官職+諡號+姓名+ 從祀文廟+書
致仕 敎書	1746년(영조 22) 7월 20일	英祖	金有慶	敎致仕奉朝賀金有慶書	敎+致仕奉朝賀+姓名 +書
賞加 敎書	1596년(선조 29) 7월 21일	宣祖	洪可臣	敎忠清道洪州牧使洪可臣賞加書	敎+官職+姓名+賞加+ 書
	1613년(광해군 5) 3월 20일	光海君	李止孝	敎忠洪道水軍節度使李止孝措備軍糧軍 器賞加書	敎+官職+姓名+功績+ 賞加+書
納徵 敎書	1802년(순조 2) 9월 20일	純祖	金祖淳	敎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永安府院 君金祖淳	敎+品階+官職+姓名
告期 敎書	1802년(순조 2) 10월 3일	純祖	金祖淳	敎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永安府院 君金祖淳	
冠禮 敎書	1727년(영조 3) 9월 9일	英祖	孝章世子 (李緯, 眞宗)	王世子冠禮敎書	
中外 頒敎 書	1796년(정조 20) 11월 9일	正祖	中外大小臣 僚耆老軍民 閑良人等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 1.2 본문

교서의 본문은 始面과 발급 일자 사이에 기재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국왕이 교서의 수취자에게 내리는 명령을 의미한다. 본문의 내용은 駢儷文이라는 어려운 형식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에 문장이 뛰어난 敎書製述官이 제술하였다. 이러한 교서의 본문은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용어와 교서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용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문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용어는 起頭語와 結辭가 있다. 기두어는 始面の 바로 다음 행에 기재하는 ‘王若曰(왕은 이렇게 말한다)’이며, 결사는 발급 일자의 바로 앞 행에 기재하는 ‘故茲敎示 想宜知悉(그러므로 이에 敎示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잘 알도록 하라)’이었다. 이러한 교서의 기두어와 결사가 조선시대에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서 唐·宋·高麗의 문서 제도와 연관시킨 선행연구가 있다.<sup>73)</sup> 고려시대의 교서는 唐의 王言 중에 하나인 論事勅書와 宋의 命書 중에 하나인 詔書의 양식을 혼합하여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唐代 논사칙서의 결사는 ‘想宜知悉 時候 卿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이었고,<sup>74)</sup> 北宋代 조서의 결사는 ‘故茲詔示 想宜知悉’이었는데, 『동인지문사륙』에 수록된 고려시대 교서의 결사는 ‘故茲詔示 想宜知悉 春暄 卿比平安好 遣書 指不多及’이었다. 이후 고려시대 교서는 元의 내정 간섭과 明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기두어에 ‘王若曰’을 사용하였고, 결사에 ‘詔’字가 ‘敎’字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조선시대 교서에서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정착되었다.

현전하는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기두어와 결사를 살펴보면, 1392년(태조 1)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태종 1) 馬天牧 佐命功臣敎書의 기두어와 결사는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이며, 이후에 발급된 공신교서도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나 1433년(세종 15) 李澄石 교서의 결사는 ‘故敎’이고, 1497년(연산군 3) 權柱 使命訓諭敎書는 결사는 ‘卿體予意 以紓肝食之虞’인데,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 발급된 교서의 기두어와 결사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38년(중종 33) 權機 使命訓諭敎書에서 기두어와 결사는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이며, 이후에 발급된 교서도 모두 동일한 것에서 볼 때 교서의 기두어와 결사는 조선 중기에 정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5)</sup> 기두어와 결사 이외에 교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용어는 於戲 또는 嗚呼와

73) 심영환, 앞의 논문, 2007, 163~185쪽 ; 심영환, 앞의 논문, 2012, 189~226쪽 ; 심영환·노인환, 앞의 논문, 2012, 9~49쪽 ; 박성호, 앞의 논문, 2012, 25~66쪽.

74) 中村裕一,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1991, 611쪽.

75) 1727년(영조 3) 孝章世子(李緯, 眞宗)의 冠禮敎書는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이지만, 1800년(정조 24)부터 1882년(고종 19) 사이에 발급된 王世子 冠禮敎書는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의

같이 탄식하는 용어를 본문의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기재하였다.

<表 Ⅲ-3> 조선 전기 敎書의 起頭語와 結辭 비교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起頭語	結辭
1	1392년(태조 1) 10월	太祖	李濟	開國功臣 一等에 錄勳하는 功臣敎書	王若曰	故茲敎示 想宜知悉
2	1401년(태종 1) 2월	太宗	馬天牧	佐命功臣 三等에 錄勳하는 功臣敎書	王若曰	故茲敎示 想宜知悉
3	1433년(세종 15) 3월 22일	世宗	李澄石	국경을 침략한 아인을 토벌하라는 敎書	王若曰	故敎
4	1497년(연산군 3) 8월 8일	燕山君	權柱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에 임명하는 使命訓諭敎書	王若曰	卿體予意 以紓肝食之虞
5	1538년(중종 33) 3월 3일	中宗	權檢	慶尙道觀察使에 임명하는 使命訓諭敎書	王若曰	故茲敎示 想宜知悉

본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용어는 수취자에 대한 내용과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이다. 수취자에 대한 내용은 교서제술관이 수취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술하였기 때문에 교서마다 각각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취자의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주로 ‘惟卿’의 용어를 기재하고,<sup>76)</sup> 그 다음에는 수취자의 성품·행실·학문·명성·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는 교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사명훈유교서는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 등에 임명된 내용을 기재하였고, 공신교서는 ‘肆策卿爲佐理四等功臣’와 같이 功臣號와 錄勳된 등수를 기재하였다. 배향공신교서는 ‘茲以卿配享孝宗大王廟庭’과 같이 某大王의 廟庭에 배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문묘종사교서는 ‘茲以卿從祀于文廟之廡’와 같이 문묘에 종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상가교서는 加資된 품계를 기재하고, 관직은 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였다. 교서의 유형별로 본문에 기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起頭語와 結辭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V-3.2. 冠禮敎書”에서 살펴볼 것이다.

76) 賞加敎書에서 수취자가 3품 이하의 관원일 경우에 ‘惟卿’ 대신에 ‘惟爾’을 기재하였으며, 冠禮敎書와 納采·納徵·告期敎書와 中外頒敎書의 경우에는 수취자가 관원이 아니거나 정해진 문서식이 있었기 때문에 ‘惟卿’을 기재하지 않았다.

<表 III-4> 敎書의 본문 기재 방식

분류	발급 연도	발급	수취	수취자 관련 내용	발급 사유
使命 訓諭 敎書	1497년(연산군 3)	燕山君	權柱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權柱 稟性端雅 處事精研	可特受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
	1538년(중종 33)	中宗	權檣	惟卿行義有素 雅望夙著	茲命卿爲本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1592년(선조 25)	宣祖	金誠一	惟卿剛直方嚴 聞乎縉紳	茲授卿通政大夫·守慶尚左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功臣 敎書	1392년(태조 1)	太祖	李濟	卿稟性淑均 秉心謹恪	是以加爵命之敎
	1467년(세조 13)	世祖	張末孫	維爾性資醇愨 學識疏通	肆策爾爲敵愾二等功臣
	1472년(성종 3)	成宗	金吉通	惟卿少負經邦之才 裒官大庭之對	肆策卿爲佐理四等功臣
配享 功臣 敎書	1651년(효종 2)	孝宗	李元翼	嗟我宗英 允爲國老	茲以卿從享于仁祖大王廟庭
	1661년(현종 2)	顯宗	金尙憲	惟卿峻潔而清 直方而大	茲以卿配享孝宗大王廟庭
文廟 從祀 敎書	1717년(숙종 43)	肅宗	金長生	惟卿早歲志學 大賢爲師	茲以卿從祀于_文廟之廡
	1756년(영조 32)	英祖	宋時烈	惟卿得賢爲師 信道不惑	茲以卿從祀于_文廟之廡
賞加 敎書	1596년(선조 29)	宣祖	洪可臣	惟爾氣標剛方 材資典雅	茲加爾一階爲通政大夫 職仍洪州牧使如故

한편 조선시대 교서의 본문은 대부분 駢儷文으로 작성되었는데, 宋 詔書의 문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 南宋의 학자인 呂祖謙이 조서의 문체에 대하여 散文을 사용하거나 四六駢儷文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내용과<sup>77)</sup> 조선 후기에 正祖가 교서에 대해 宋의 詔書體라고 인식하였던 점에서 규명할 수 있다.<sup>78)</sup> 또한 조선시대에 변려문의 형식에 맞지 않은 교서를 제출한 지제교나 교서를 입계한 承旨를 처벌한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교서에 변려문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79)</sup>

77) 『玉海』卷202 「辭學指南」: 東萊先生曰, 詔書, 或用散文, 或用四六皆得, 唯四六者, 下語須渾全, 不可如表, 求新奇之對, 而失大體, 但觀前人之詔, 自可見.

78) 『正祖實錄』 5년(1781) 2월 13일(丙辰): 敎曰, 內閣每事取倣龍圖閣, 所有於閣學士者, 可不爲於閣提學乎. 從今提學, 至待敎新拜之人, 自本閣撰敎書, 安奎章之實以傳. 敎書與敎旨差間, 敎書卽宋詔體也, 敎旨卽宋告身也. 今以宣敎之文, 稱以敎旨, 則可謂倣古酌今, 有據無礙. 至於篇作句數, 宜簡不宜煩. 此不必煩於外廷, 只是自內閣撰出, 宣於內閣之臣. 卿等照此.

79) 『承政院日記』 정조 15년(1791) 4월 22일(丙寅): 以摠戎使李邦一敎書, 傳于洪仁浩曰, 代撰王言, 不宜屑越, 此敎書, 似戲語, 似弄題, 專不致慎, 間多有不覺噴飯之句語, 此豈不嫻於四六而然乎. 蓋不致力之致, 捧納承旨從重推考, 當該玉堂, 遞差.

『日省錄』 정조 15년(1791) 5월 22일(丙申): 因總戎使李柱國敎書敎曰, 代撰之文, 申飭何如. 而玉堂不善作, 旣命更撰, 則承宣之以不叶儷文書入, 豈有如許事體. 當該知製敎爲先從重推考, 更令撰進.

### 1.3 발급 일자

조선시대 교서에서 발급 일자는 敎書書寫官이 교서 내용의 書寫를 완료하고 국왕의 명에 의해 어보를 안보하는 것이 완료된 날짜이며, 아울러 국왕의 명령이 교서라는 문서로 문서화가 완료된 날짜를 의미한다. 교서의 발급 일자를 통해 교서의 始面이나 寶印 등이 변화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서에 발급 일자를 기재하는 위치는 결사인 ‘故茲敎示 想宜知悉’의 다음 행이며,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공신 명단의 다음 행에 발급 일자를 기재하였다. 교서의 발급 일자를 기재하는 방식은 대부분 당시 明·淸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다. 공신교서와 일부 교서의 발급 일자는 明·淸의 연호와 年月까지만 기재하고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신을 錄勳할 때에 한 번에 녹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추가로 공신을 녹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신교서를 내려주는 날짜도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신교서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취자의 경우에는 淸의 연호 대신에 干支를 기재하였는데, 현전하는 교서 중에서 김상헌과 송시열에게 발급된 교서에서 淸의 연호 대신에 干支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李元翼과 申景禛의 配享功臣敎書에서 발급 일자는 ‘順治八年六月三十日’로 淸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지만, 김상헌과 송시열의 배향공신교서에서 발급 일자는 淸의 연호 대신에 ‘辛丑六月三十日’과 ‘戊戌四月’로 기재하였다. 또한 송시열의 文廟從祀敎書에서는 ‘丙子二月■…■’로 기재하였다. 이것은 김상헌이 대표적인 척화신이기 때문이며, 송시열도 崇明排淸하고 효종과 함께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배향공신교서와 문묘종사교서에서 淸의 연호 대신에 干支가 기재되었다.

<表 III-5> 敎書의 발급 일자 기재 방식

분류	발급 연도	발급	수취	내용	발급 일자 원문	비고
功臣敎書	1392년(태조 1)	太祖	李濟	純忠佐命開國功臣 1等 錄勳	[洪武]貳拾伍年拾月 日	날짜 미기재
	1401년(태종 1)	太宗	馬天牧	翊戴佐命功臣 3等 錄勳	建文三年二月 日	
	1728년(영조 4)	英祖	朴東亨	輸忠竭誠決幾揚武功臣 2等 錄勳	雍正六年七月 日	
配享功臣敎書	1651년(효종 2)	孝宗	李元翼	仁祖의 廟庭에 配享	順治八年六月三十日	
	1661년(현종 2)	顯宗	金尙憲	孝宗의 廟庭에 配享	辛丑六月三十日	干支
	1778년(정조 2)	正祖	宋時烈	孝宗의 廟庭에 配享	戊戌四月	干支
文廟從祀敎書	1717년(숙종 43)	肅宗	金長生	文廟에 從祀	康熙五十六年五月十八日	
	1756년(영조 32)	英祖	宋時烈	文廟에 從祀	丙子二月■…■	干支

## 2. 寶印

### 2.1 조선 전기 寶印의 변화

조선의 개국 직후에 교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려시대의 寶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였고,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교서에 安寶된 보인은 여러 차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교서에는 「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sup>80)</sup> 현전하는 실물 문서와 『조선왕조실록』 등을 통해서 조선 전기에 보인이 변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개국 직후에는 교서에 고려의 보인인 「高麗國王之印」을 안보하였다.<sup>81)</sup> 「고려국왕지인」은 1370년(공민왕 19) 5월에 고려가 명으로부터 받은 印信으로 재질은 금이고, 형태는 龜紐이며, 크기는 方 3寸이었다.<sup>82)</sup> 명나라 초기에 洪武帝는 명에 入貢하였던 高麗·安南·占城·吐蕃 등에 印信을 내려주었는데, 이 때 고려에는 「고려국왕지인」, 安南에는 「安南國王之印」, 占城에는 「占城國王之印」, 土蕃에는 「白蘭王印」을 각각 내려주었다.<sup>83)</sup> 「고려국왕지인」은 1393년(태조 2) 3월에 태조가 政堂文學 李恬을

80) 조선시대 敎書에 사용된 御寶의 印文은 ‘○○○○之印’ 또는 ‘○○○寶’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寶印’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敎書의 寶印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성인근, 『韓國印章史』, 다운샘, 2013.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文書樣式の變遷」, 『朝鮮學報』 205, 2007.

川西裕也, 「第三章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敎の体式の變遷」,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 -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九州大學出版會, 2014.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全北史學』 36, 전북사학회, 2010.

박성호,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 -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81) 川西裕也는 『承政院日記』·『高麗史』·『朝鮮王朝實錄』 등의 사료를 통해 官敎에 「高麗國王之印」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박성호는 실물 문서로 남아있는 李濟 開國功臣敎書を 통해 「高麗國王之印」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川西裕也, 위의 논문, 2007, 104~105쪽 ; 박성호, 위의 논문, 2010, 80~82쪽.

82) 『高麗史』 志26 輿服1 印章 王印章: … 恭愍王十九年五月, 太祖高皇帝賜金印一顆, 龜紐盤綬, 其文曰高麗國王之印.

83) 『明史』 本紀2 太祖2: 是年(洪武二年), 占城·安南·高麗入貢.

『明史』 志44 輿服4 印信: … 明初, 賜高麗金印, 龜紐, 方三寸, 文曰高麗國王之印. 賜安南鍍金銀印, 駝紐, 方三寸, 文曰安南國王之印. 賜占城鍍金銀印, 駝紐, 方三寸, 文曰占城國王之印. 賜吐蕃金印, 駝紐, 方五寸, 文曰白蘭王印.

明에 보내어 고려 공민왕 때에 내려진 金印을 반납할 때까지 교서에 사용되었으며,<sup>84)</sup> 실제로 「고려국왕지인」이 안보된 교서는 1392년(태조 1) 10월에 李濟를 開國功臣 1등에 錄勳할 때 내려준 開國功臣敎書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려국왕지인」 다음으로 조선 초기 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인은 「朝鮮王寶」이다.<sup>85)</sup> 「조선왕보」는 고려국왕지인을 명에 반납한 이후에 조선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것으로 1401년(태종 1) 6월에 명으로부터 「朝鮮國王之印」을 받을 때까지 교서에 「조선왕보」를 안보하였다. 실제로 1401년(태종 1) 2월에 馬天牧을 佐命功臣 3등, 徐愈를 좌명공신 4등으로 각각 錄勳할 때에 내려준 佐命功臣敎書에서도 「조선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서뿐만 아니라 「조선왕보」가 안보되어 있는 告身과 紅牌 등의 국왕문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sup>86)</sup>

1401년(태종 1) 6월과 1403년(태종 3) 4월에 명으로부터 두 차례 「朝鮮國王之印」의 金印을 받았는데,<sup>87)</sup> 이후 교서에는 「조선왕보」 대신에 「조선국왕지인」을 안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선국왕지인」이 안보된 교서가 현전하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조선국왕지인」이 안보된 고신 등을 통해 교서에 「조선국왕지인」이 안보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sup>88)</sup>

1433년(세종 15) 3월부터 교서에는 「國王信寶」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32년

84) 『太祖實錄』 2년(1393) 3월 9일(甲寅): 遣門下侍郎贊成事崔永沚赴京, 奉表謝恩. 其表曰, 睿恩洋溢, 聖訓丁寧, … 載寢載興, 恒切康寧之祝. 又遣政堂文學李恬, 送納高麗恭愍王時所降金印一顆.

85) 1393년(태조 2) 4월에 都評議使司에서 朝廷의 印章이 내려오기 전에 頒行하는 教旨와 差除 등의 일은 「國王信寶」를 사용할 것을 아뢰고 후에 태조의 윤허를 받았으나, 이 시기에 「國王信寶」가 안보된 교서 및 다른 국왕문서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太祖實錄』 2년(1393) 4월 2일(丙子): 都評議使司啓, 朝廷印章未降間, 凡頒行教旨·差除等事, 用國王信寶. 允之.

86) 「朝鮮王寶」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전문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1393년(태조 2) 10월 都膺을 朝奉大夫·典醫少監에 임명하는 告身이며, 가장 늦은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1401년(태종 1) 4월에 盧革이 同進士 제 23인으로 합격하는 紅牌이다.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의 名家』, 2009, 126쪽 ; 박성호, 앞의 논문, 2012, 79~80쪽, 107~108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1 -告身·王旨·教旨·令旨-, 2012, 34~35쪽.

87) 『太宗實錄』 1년(1401) 6월 12일(己巳): 上服絳紗袍·遠遊冠, 受群臣賀. 是日, 三司右使李稷·摠制尹坤等, 齎捧禮部咨文而來, 各賜鞍馬. 其咨曰, 建文三年四月十五日, 準朝鮮國權署國事李咨. … 誥命一道, 朝鮮國王金印一顆, 四角篆文, 并金印池一箇, 鎖匣全.

『太宗實錄』 3년(1403) 4월 8일(甲寅): 禮部爲給賜事. 欽差內官太監黃儼等·同正副使都指揮使高得等, 齎奉誥命金印并永樂元年大統曆, 前去朝鮮國外, 擬合移咨本國知會. 仍將先與誥命舊印, 并印池繳回. 須至咨者. 一給賜朝鮮國王誥命一道·金印一顆·金印池一箇.

88) 「朝鮮國王之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전문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1402년(태종 2) 4월 尹臨을 嘉善大夫·黃州牧使·兼勸農兵馬團練使에 임명하는 告身이며, 가장 늦은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1429년(세종 11) 2월에 馬天牧을 推忠翊戴佐命功臣·輔國崇祿大夫·長興府院君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박성호, 앞의 논문, 2012, 80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1 -告身·王旨·教旨·令旨-, 2012, 54쪽, 82~83쪽.

(세종 14) 10월에 예조에서 「조선국왕지인」을 境內의 常事に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國王信寶」와 「國王行寶」를 만들 것을 아뢰었고,<sup>89)</sup> 이에 따라 세종은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국왕신보」와 「국왕행보」를 改鑄하게 하였다. 이 때 만든 「국왕신보」와 「국왕행보」는 재질이 모두 금이고, 무게는 각각 164兩과 176兩이며, 「국왕신보」는 事神과 教宥 등의 일에 사용하였고, 「국왕행보」는 冊封과 除授 등의 일에 사용하였다.<sup>90)</sup> 『세종실록』의 기사에는 「국왕신보」와 「국왕행보」를 교서에 사용한다는 기록은 없지만, 현전하는 교서 가운데 1433년(세종 15) 3월에 助戰節制使 李澄石에게 내리는 교서에서 「국왕신보」가 안보된 것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교서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43년(세종 25) 10월부터 교서에는 「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당시 의정부에서 옛날에 美名으로 印文을 만든 전례를 따라 『周易』의 뜻을 취하여 「시명지보」를 만들어 冊封除授와 常行하는 교서에 「시명지보」를 사용할 것을 아뢰었고, 이에 대해 세종이 윤허하여 「시명지보」를 사용하였다.<sup>91)</sup> 또한 1447년(세종 29) 11월에 세종은 승정원에 傳旨를 내려 「시명지보」의 용도를 책봉과 교서 등의 일로 정하고, 除授하는 일에는 大寶를 사용할 것을 명하였다.<sup>92)</sup> 세종대에 「시명지보」가 안보된 교서가 현전하지 않지만, 『세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교서에 「시명지보」가 안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466년(세조 12) 1월부터 교서에는 「시명지보」 대신에 玉으로 제작된 「施命」을 사용하였다.<sup>93)</sup> 세조는 특별히 權宜로써 「시명」을 사용하였는데, 아마도 官制를 바꾸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94)</sup> 「시명」은 재질·서체·크기에서 앞서 교서에 사용된 보인과

89) 『世宗實錄』 14년(1432) 10월 12일(丁酉): 禮曹啓. 歷代帝王璽寶之制, 漢六璽·唐八璽·宋八璽, 隨事施用. 若唐之神璽·宋之鎮國神寶, 以鎮中國, 藏而不用, 其信璽信寶, 用之於事神發兵等事, 行璽行寶, 用之於封國冊封等事, 其他璽寶之文與用之之事, 代各不同. 我朝帝賜大寶之文, 稱朝鮮國王, 不宜用於境內常事. 乞依古制鑄成國王信寶, 用之於事神教宥貢舉等事, 國王行寶, 用之於冊封除授等事, 其帝賜大寶, 除事大文書外, 勿用. 從之.

90) 『世宗實錄』 15년(1433) 3월 2일(乙卯): 行寶信寶成. 舊有傳國寶, 文曰國王信寶. 上命集賢殿, 稽古制改鑄此兩寶, 其制一依欽賜大寶, 皆用金, 信寶重一百六十四兩, 行寶重一百七十六兩. 信寶文曰國王信寶, 行寶文曰國王行寶. 信寶用之於事神教宥等事, 行(寶) [寶] 用之於冊命除授等事, 欽賜大寶, 則只用於事大文書.

91) 『世宗實錄』 25년(1443) 10월 2일(癸未): 議政府據禮曹呈啓. … 今更參詳, 行寶信寶, 既是用於境內, 其文竝稱國王, 殊無意謂. 且古以美名爲文, 謹稽經傳, 易云, 施命誥四方. 國語云, 言以昭信. 宜取此意, 改行寶以施命之寶, 信寶以昭信之寶. 施命之寶, 用之於冊封除授常行教書等事, 昭信之寶, 用之於事神發兵賜物等事, 則庶合行令示信之義矣. …

92) 『世宗實錄』 29년(1447) 11월 9일(戊戌): 傳旨承政院, 施命之寶, 用於冊封教書等事, 凡干除授之事, 皆用大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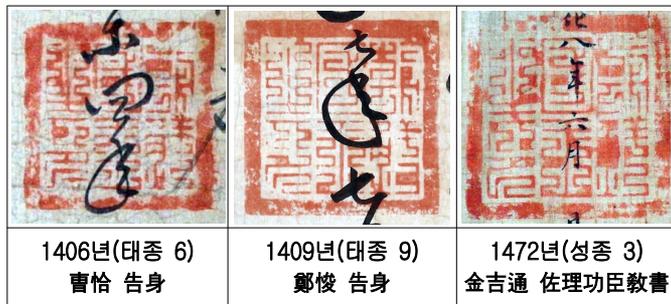
93) 『世祖實錄』 12년(1466) 1월 10일(癸丑): 傳于尙瑞寺曰, 勿用施命金寶, 常用新造玉寶.

94) 『成宗實錄』 24년(1493) 7월 6일(戊戌): 應箕啓曰, 我國禮樂制度, 至世宗朝極備, 今日遵守者, 皆世宗朝制度也. 用施命之寶, 迄至成化元年, 而至二年, 世祖特以權宜用施命小寶, 所以改用小寶者, 疑改官制而始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 교서에 사용된 보인은 재질이 금이고, 印文의 書體가 疊篆이었지만, 「시명」은 재질이 玉이고 인문의 서체가 小篆이며 기존의 보인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 것이 특징이다.<sup>95)</sup> 현전하는 교서에서 「시명」이 안보된 사례는 1467년(세조 13) 11월에 발급된 許琮·金嶠·李從生·張末孫·孫昭·李溥·鄭種의 敵愾功臣教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서와 고신 등에 「시명」이 사용되었던 성종 연간에는 「朝鮮國王之印」도 함께 사용되었다. 이것은 1493년(성종 24) 3월에 성종이 의정부에 내린 傳旨에서 土田과 臧獲을 하사할 때에는 大寶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96)</sup> 이 때 사용한 大寶는 명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으로 印文을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1403년(태종 3) 4월에 명으로부터 받은 「조선국왕지인」과 동일하였다. 국왕은 공신으로 녹훈된 관원에게 伴尙·奴婢·丘史·田·表裏·內廐馬 등을 하사하면서 공신교서를 내려주었는데, 성종 연간에 공신교서를 발급할 때에 「조선국왕지인」을 안보하였다.<sup>97)</sup> 이러한 「조선국왕지인」이 안보된 공신교서는 1472년(성종 3) 6월에 발급된 洪允成·李崇元·金吉通·李淑琦의 佐理功臣教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실물 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신교서를 제외한 다른 교서에서는 「시명」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圖 Ⅲ-1> 「朝鮮國王之印」의 비교<sup>98)</sup>



교서의 보인은 1493년(성종 24) 9월부터는 「시명」 대신에 다시 「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玉寶인 「시명」은 體制가 조금 작아서 사용할 때에 적합하지 않았기

用也. … 至世祖始用施命玉寶, 其由則考之日記, 亦不詳錄也.

95) 성인근, 앞의 논문, 2008, 91쪽.

96) 『成宗實錄』 24년(1493) 3월 28일(癸巳): 傳旨議政府曰, 人主命令, 莫重於爵賞, 而舊例政批官教, 用施命之寶, 賜土田·臧獲用大寶, 輕重失宜, 有乖事體. 自今月二十八日政批官教, 用大寶, 一應賜牌, 用施命之寶.

97) 성종 연간에 「朝鮮국왕지인」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98)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1 -告身·王旨·教旨·令旨-, 2012, 59쪽, 6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3 -教書·令書-, 2013, 84~85쪽.

때문에 大寶의 체제에 따라 金을 사용하여 새로 「시명지보」를 만들었다. 「시명지보」와 관련해서 성종은 몇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1493년(성종 24) 3월 28일에 성종은 의정부에 傳旨를 내려 大寶인 「조선국왕지인」과 「시명지보」의 사용 규정을 정하였다.<sup>99)</sup> 같은 해 7월 3일과 6일에 성종은 두 차례에 걸쳐 領敦寧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 관원에게 대보와 「시명지보」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sup>100)</sup> 최종적으로 9월 30일에 상의원에서 새로운 「시명지보」를 올린 후에 교서에 「시명지보」를 사용하였다.<sup>101)</sup> 1493년(성종 24) 9월 이후에 교서에서 「시명지보」가 사용된 사례는 1497년(연산군 3) 8월에 충청도관찰사 權柱에게 발급된 使命訓諭教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 전기에 교서에 안보된 보인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圖 Ⅲ-2> 朝鮮時代 敎書의 寶印 變化

번호	印文	도판	사용 시기	출처
1	高麗國王之印		1392년(태조 1) 7월 ~1393년(태조 2) 3월	1392년(태조 1) 李濟 開國功臣敎書
2	朝鮮王寶		1393년(태조 2) 3월 ~1401년(태종 1) 6월	1401년(태종 1)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3	朝鮮國王之印	未詳	1401년(태종 1) 6월 ~1433년(세종 15) 3월	未詳

99) 『成宗實錄』 24년(1493) 3월 28일(癸巳): 傳旨議政府曰, 人主命令, 莫重於爵賞, 而舊例政批官敎, 用施命之寶, 賜土田·臧獲用大寶, 輕重失宜, 有乖事體. 自今月二十八日政批官敎, 用大寶, 一應賜牌, 用施命之寶.

100) 『成宗實錄』 24년(1493) 7월 3일(乙未); 24년(1493) 7월 6일(戊戌).

101) 『成宗實錄』 24년(1493) 9월 30일(辛酉): 尙衣院進新造施命寶, 傳旨議政府曰, 人主命令, 莫重於爵賞, 而舊例政批官敎, 用施命玉寶, 賜土田臧獲及倭野人官敎用大寶, 輕重失宜, 有乖事體. 故自癸丑三月二十八日政批官敎, 用大寶, 賜牌用施命玉寶, 但於政批, 每用大寶, 則印跡已泐, 此非細故, 而施命玉寶, 體制差小, 不合於用, 故今依大寶體制, 用黃金新造施命之寶. 自今九月三十日政批官敎及倭野人官敎, 一應賜牌, 皆用新寶, 其以此意曉諭中外.

번호	印文	도판	사용 시기	출처
4	國王信寶		1433년(세종 15) 3월 ~1443년(세종 25) 10월	1433년(세종 15) 助戰節制使 李澄石 教書
5	施命之寶	未詳	1443년(세종 25) 10월 ~1466년(세조 12) 1월	未詳
6	施命		1466년(세조 12) 1월 ~1493년(성종 24) 9월	1467년(세조 13) 李從生 敵愾功臣教書
7	朝鮮國王之印		성종 연간 ~1493년(성종 24) 9월	1472년(성종 3) 金吉通 佐理功臣教書
8	施命之寶		1493년(성종 24) 9월 ~조선 후기	1497년(연산군 3) 權柱 使命訓諭教書

## 2.2 「施命之寶」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에 「施命之寶」는 1443년(세종 25) 10월부터 1466년(세조 12) 1월까지 교서에 안보되었고, 이후 1493년(성종 24) 9월부터 조선 후기가

지 교서에 안보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시명지보」는 교서뿐만 아니라 국왕이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을 책봉할 때 내리는 敕命, 文武官四品以上과 堂上官妻의 告身, 追贈教旨·諡號教旨·賜牌教旨 등의 각종 教旨, 功臣錄券 등에도 안보되었다.<sup>102)</sup> 이러한 「시명지보」에서 ‘施命’은 『周易』의 ‘施命誥四方(命을 베풀어 四方을 가르친다)’에서 인용한 것으로,<sup>103)</sup> 「시명지보」의 印文은 중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조선시대에 고유한 印文으로 볼 수 있다.<sup>104)</sup>

「시명지보」의 형태 사항은 1876년(고종 13)에 편찬된 『寶印所儀軌』와 고종 연간에 『寶印符信總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05)</sup> 「시명지보」의 재질은 純金에 금을 도금하였고, 손잡이는 거북의 모양이며, 印面의 크기는 4寸으로 약 10cm이었다. 이 밖에 「시명지보」의 臺高·郭廣·刻深·鈕長·鈕廣·紐高는 다음과 같다.

<表 III-6> 「寶印符信總數」·「寶印所儀軌」의 「施命之寶」 형태 사항<sup>106)</sup>

材質	印面廣	臺高	郭廣	刻深	鈕式	鈕長	鈕廣	紐高
純金鍍金	4寸	9分	3分 5里	1分	龜紐	4寸	2寸	1寸 2分

「시명지보」의 제작 기록은 1876년(고종 13)에 「朝鮮國王之印」·「大朝鮮主上之寶」·「朝鮮王寶」·「爲政以德」·「諭書之寶」 등과 함께 「시명지보」를 제작할 때의 과정을 기록한 『寶印所儀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76년(고종 13) 11월 8일에 고종은 武衛所와 戶曹에 傳敕을 내려 大內에 있는 寶와 印이 화재를 당해 많이 닳아 없어졌으므로 다시 주조하여 만들고 보수할 것을 명하였다.<sup>107)</sup> 고종의 명에 따라 武衛所와 戶曹에서는 11월

102) 『大典會通』 「禮典」 璽寶: 《增》 御寶有大寶. [用於事大文書.] 施命之寶. [用於敕命·敕書·敕旨.]  
『六典條例』 「吏典」 尙瑞院 璽寶: 大寶. [朝鮮國王之印, 用於事大文書.] 施命之寶. [用於敕命·敕書·敕旨.]  
『銀臺便攷』 「吏房攷」 大寶: 施命之寶, 安於敕命敕旨敕書. 167~168쪽

103) 『世宗實錄』 25년(1443) 10월 2일(癸未): 議政府據禮曹呈啓. … 今更參詳, 行寶信寶, 既是用於境內, 其文竝稱國王, 殊無意謂. 且古以美名爲文, 謹稽經傳, 易云, 施命誥四方. 國語云, 言以昭信. 宜取此意, 改行寶以施命之寶, 信寶以昭信之寶. 施命之寶, 用之於冊封除授常行敕書等事, 昭信之寶, 用之於事神發兵賜物等事, 則庶合行令示信之義矣. …

104) 성인근, 앞의 논문, 2008, 88쪽.

105) 1443년(세종 25) 10월부터 1466년(세조 12) 1월까지, 1493년(성종 24) 9월부터 1876년(고종 13)까지 사용되었던 「施命之寶」의 형태 사항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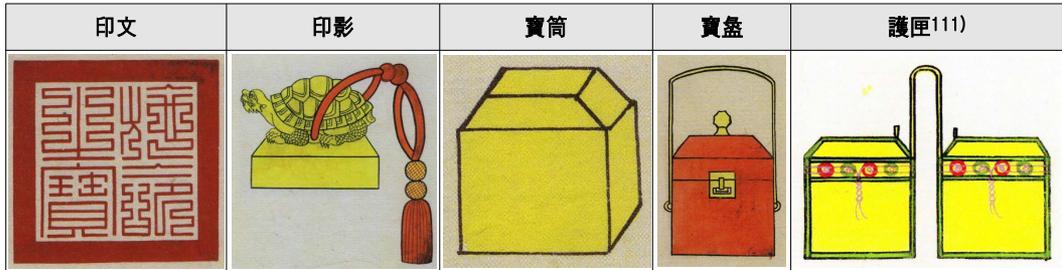
106) 施命之寶, 純金鍍金, 方四寸, 臺高九分, 龜紐長四寸, 廣二寸, 高一寸二分, 覺深一分, 郭廣三分五里.(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130쪽)  
施命之寶, [金鍍黃金龜紐] 以金改鑄, 方四寸, 高九分, 郭三分半, 龜長四寸, 廣二寸, 高一寸二分. [用禮器尺] 腹下有橫穴, 全體并鍍黃金.(한국정신문화연구원, 『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63~64쪽)

107) 『承政院日記』 고종 13년(1876) 11월 8일(乙丑): 傳曰, 大內所在寶與印, 入於回祿中多剝矣. 改鑄改造修補, 令本所戶曹舉行.  
丙子十一月初八日, 傳曰 大內所在寶與印, 入於回祿中, 多剝矣. 改鑄改造修補, 令本所戶曹舉行.(한국정

16일부터 寶와 印의 제작을 시작하였고,108) 12월 15일에 「朝鮮國王之印」·「施命之寶」·「諭書之寶」·「王世子印」을 먼저 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16일 巽時에 大內로 들였다.109)

「시명지보」 1顆를 鑄造할 때에 金 190兩이 소용되었으며, 이 밖에 鍍黃金 4錢, 水銀 2兩 6錢, 汗音黃銀 5錢 5分, 礪砂 2錢, 砒礪 1錢, 黃蜜 1錢 5分이 소용되었다.110) 또한 「시명지보」를 보관하는 寶筒·寶盞·護匣도 함께 제작하였다.

〈圖 Ⅲ-3〉 「寶印所儀軌」의 「施命之寶」 관련 물품



### 3. 敎書紙

조선시대 敎서의 재질은 크게 종이와 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敎서에서 사용되었고,112) 비단의 경우에는 공신敎서에만 사용되었다.113) 敎

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11쪽)

108) 丙子十一月十一日. 武衛所·戶曹啓曰, 大內所在寶與印, 入於回祿中, 多剝矣. 改鑄·改造·修補事, 命下矣. 寶印與世子宮玉印, 始役吉日時, 令日官池有達推擇, 則今月十六日午時爲吉云. 以此日時定行, 何如. 傳曰, 允.(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11쪽)

109) 丙子十二月十五日. 武衛所·戶曹啓曰, 以司謁口傳下敎曰, 寶與印隨其造成內入事, 命下矣. 大寶·施命之寶·諭書之寶·世子宮玉印 先爲改鑄·改造·修補矣. 內入吉日時, 令日官池有達推擇, 則今月十六日巽時爲吉云. 以此日時舉行之意敢啓. 傳曰, 知道.(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12쪽)

110) 施命之寶一顆所入. 金寶一顆 [改鑄後 從寶實入次] 鍍黃金四錢, 水銀二兩六錢, 汗音黃銀五錢五分, 礪砂二錢, 砒礪一錢, 黃蜜一錢五分.(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122쪽)

丙子十二月二十九日. 昭信之寶, 當初內出時稱量, 重二百二十四兩, 施命之寶, 內出時稱量, 重一百六十兩, 合金, 重三百八十四兩內, 施命之寶改鑄金, 重一百九十兩, 又十兩重, 作菓子次上下, 板鈕鑄成及治鍊時縮六兩, 稱子相左縮十四兩, 合二百二十兩, 除實餘在金一百六十四兩, 移送武衛所, 別庫次上下, 何如. [手決內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141쪽)

111) 施命之寶護匣一隻, 諭書之寶護匣一隻合一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4, 74쪽)

112) 敎서에 사용되는 종이의 관련해서 손계영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4~66쪽.

113) 공신敎서에 사용된 비단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존학 분야에서 김나형과 이진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

書紙의 종류와 규격은 교서가 발급된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교서에 供上紙를 사용하였는데, 공상지는 지방의 각 읍에서 상납하는 종이로 품질이 정결하고 두꺼웠으며 길이가 길고 폭이 넓었다. 이러한 공상지는 교서뿐만 아니라 諭書·不允批答·啓辭·傳旨 등에 사용되었다.<sup>114)</sup>

<表 Ⅲ-7> 『度支準折』에 수록된 供上草注紙·草注紙·楮注紙<sup>115)</sup>

구분	가격(1張)	용도
供上草注紙	8錢	各殿宮供上紙
草注紙	2錢 6分 6里	卜相單子, 大落點紙, 圈點, 吏曹政事, 儒生試紙, 進上春帖子, 褒貶啓本, 敎書, 端午帖, 諭書, 狀啓, 族譜廳正案, 承文院覆啓, 御覽單抄
楮注紙	6分 6里	知製敎製進, 各樣祭文祝文, 敎書, 不允批答, 御覽疏決, 承文院啓辭, 草記, 儀軌, 侍講院朝報, 單子, 啓辭, 啓目, 族譜廳式年設廳正案, 加資, 陵圖形草, 侍講院自止單子, 義禁府啓目, 咨文所入啓單子, 司憲府啓目, 有旨, 立筭, 寶置簿冊, 司諫院啓目, 承政院啓單子, 朔書, 吏曹啓目, 備邊司啓目, 扈衛廳啓單子, 官敎, 宗簿寺啓目, 承文院啓單子, 香室受押單子, 內侍府批書, 司諫院錄啓目, 卜相啓辭, 各處先生案, 狀啓

1603년(선조 36) 5월에 호조에서 교서·유서·불운비답을 내릴 경우에 공상지 대신에 草注紙를 사용할 것을 아뢰었고, 이에 대하여 선조가 윤허함으로써 교서에는 초주지가 사용되었다. 당시 호조에서는 임진왜란이 지난 후에 백성들의 재물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공상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는데, 이것은 종이의 가격에서 비교해 볼 때 『度支準折』의 기록된 供上草注紙의 가격은 초주지와 저주지의 가격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공상지의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sup>116)</sup> 이후 조선 후기에는 교서에 초주지와 함께 楮注紙도 교서에 사용되었다.

敎書紙의 규격은 교서가 발급된 시기와 교서의 본문 내용에 따라 변화하였다. 교서

으로 연구하였다.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진희, 「조선시대 改造本 功臣敎書의 粧綴 연구 -扈聖功臣敎書 및 靖社功臣敎書を 중심으로-」, 『장서각』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14) 『宣祖實錄』 36년(1603) 5월 19일(甲戌): 戶曹啓曰, 國家該用之物, 一毫一髮, 皆出於民力. 雖在平時, 所當十分撙節, 爲民惜財. 況當大亂之餘, 民力漸竭之時乎. 供上紙, 紙品精潔, 亦甚長廣, 列邑上納之際, 其難備窘迫之狀, 難以形言. 供上之外, 決不可移用於他處, 而如諭敎書及不允批答, 皆以供上紙用之, 非徒極爲未安, 以此, 紙地未免缺乏, 其勢將至於加定民間. 自今以後, 請一切勿用, 敎書等紙, 以草注紙, 行用何如. 允.

『宣祖實錄』 37년(1604) 9월 5일(壬子): 傳曰, 近觀啓辭及傳旨所書, 紙品過厚, 卽是供上紙矣. 供上紙, 乃外方別爲封進者. 常時御供, 該司猶不能措備, 啓辭所書, 一覽之後, 卽歸休紙. 今後勿爲如是.

115) 『度支準折』 「紙地」(규장각 所藏, 가람古 336.2-T126t), 종이의 용도는 문서로 추정되는 것을 정리하였다.

116) 손계영, 앞의 논문, 2005, 64쪽.

의 세로 길이는 조선 전기부터 1700년대 중반까지 80~100cm이고, 17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100cm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 길이는 대부분 100cm 이상이였으며, 1739년(영조 15) 趙明謙의 使命訓諭敎書는 가로 길이가 750cm에 이르렀다.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비율은 조선 전기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었지만, 1800년대 중반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졌다가, 1800년대 후반에는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형태로 변경되었다.<sup>117)</sup>

<圖 Ⅲ-4> 敎書의 세로와 가로의 비율 변화

<p>1497년(연산군 3) 權柱 使命訓諭敎書<sup>118)</sup></p>	<p>1846년(헌종 12) 朴宗吉 使命訓諭敎書<sup>119)</sup></p>	<p>1890년(고종 27) 宋世憲 使命訓諭敎書<sup>120)</sup></p>

<表 Ⅲ-8> 조선시대 敎書의 규격

번호	발급 연대	발급	수취	내용	규격(cm)		비율
					세로	가로	
1	1497년(연산군 3)	燕山君	權柱	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84.0	158.2	1:1.9
2	1538년(중종 33)	中宗	權楫	慶尙道觀察使	87.2	286.7	1:3.3
3	1592년(선조 25)	宣祖	金誠一	慶尙左道觀察使	88.0	135.0	1:1.5
4	1596년(선조 29)	宣祖	洪可臣	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84.0	212.0	1:2.5
5	1597년(선조 30)	宣祖	李舜臣	忠淸·全羅·慶尙等三道水軍統制使	89.0	193.0	1:2.2
6	1604년(선조 37)	宣祖	申汝樑	戰功으로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78.5	248.5	1:3.2

117) 納幣敎書·納徵敎書·告期敎書와 冠禮敎書는 교서의 문서식이 일정하거나 본문의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교서의 종이 규격에서 예외의 경우로 둔다.  
 118) 1497년(연산군 3), 84.0×158.2cm, 보물 제1002-1-1호, 安東權氏 權柱 宗家 所藏.  
 119) 1846년(헌종 12), 112.0×119.0cm, 西溪 朴世堂 宗宅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寄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2002, 33쪽.  
 120) 1890년(고종 27), 116.0×96.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30(160881).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75~76쪽.

번호	발급 연대	발급	수취	내용	규격(cm)		비율
					세로	가로	
7	1613년(광해군 5)	光海君	李止孝	군량과 군기를 마련한 공으로 嘉善大夫(종2품)에 加資	86.5	168.0	1:1.9
8	1621년(광해군 13)	光海君	鄭起龍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80.0	300.0	1:3.8
9	1633년(인조 11)	仁祖	李敬輿	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85.0	306.5	1:3.6
10	1651년(효종 2)	孝宗	李元翼	仁祖의 廟庭에 配享	88.5	364.0	1:4.1
11	1658년(효종 9)	孝宗	元萬石	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82.0	291.0	1:3.5
12	1661년(현종 2)	顯宗	金尙憲	孝宗의 廟庭에 配享	83.0	483.0	1:5.8
13	1675년(숙종 1)	肅宗	鄭重徽	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府使	100.4	393.3	1:3.9
14	1684년(숙종 10)	肅宗	李師命	善治한 공으로 嘉善大夫(종2품)에 加資	88.0	338.0	1:3.8
15	1701년(숙종 27)	肅宗	李德成	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91.1	458.0	1:5.0
16	1717년(숙종 43)	肅宗	金長生	文廟에 從祀	88.0	630.0	1:7.2
17	1724년(경종 4)	景宗	尹行教	開城府留守·兼管理使	88.3	503.7	1:5.7
18	1739년(영조 15)	英祖	趙明謙	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	86.5	750.0	1:8.7
19	1759년(영조 35)	英祖	李成中	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	92.0	344.0	1:3.7
20	1756년(영조 32)	英祖	宋時烈	文廟에 從祀	117.0	374.0	1:3.2
21	1765년(영조 41)	英祖	元景濂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喬桐府使	92.0	335.0	1:3.6
22	1774년(영조 50)	英祖	李最中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102.0	179.0	1:1.8
23	1778년(정조 2)	正祖	宋時烈	孝宗의 廟庭에 配享	118.5	714.0	1:6.0
24	1787년(정조 11)	正祖	李崇祐	資憲大夫·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116.0	195.0	1:1.7
25	1796년(정조 20)	正祖	金麟厚	文廟에 從祀	104.0	400.0	1:3.8
26	1811년(순조 11)	純祖	柳相祚	嘉善大夫·開城府留守·兼管理使·豐安君	117.0	189.5	1:1.6
27	1822년(순조 22)	純祖	尹魯東	資憲大夫·江華府留守·兼鎮撫使	115.0	164.3	1:1.4
28	1832년(순조 32)	純祖	朴綺壽	資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	115.0	155.0	1:1.3
29	1846년(헌종 12)	憲宗	朴宗吉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	112.0	119.0	1:1.1
30	1861년(철종 12)	哲宗	申觀浩	嘉善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1.0	120.0	1:1.1
31	1869년(고종 6)	高宗	李載元	正憲大夫·知宗正卿府事·水原府留守·兼摠理使	110.0	100.0	1:0.9
32	1883년(고종 20)	高宗	趙憲	文廟에 從祀	110.6	78.0	1:0.7
33	1886년(고종 23)	高宗	尹榮信	資憲大夫·行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鈴春君	106.0	80.0	1:0.8
34	1890년(고종 27)	高宗	宋世憲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116.0	96.0	1:0.8

#### IV. 敎書의 발급 과정<sup>121)</sup>

조선시대 교서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로 국가의 공식적인 제도 속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것은 『경국대전』·『대전회통』 등과 같은 법전이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과 같은 사료에 교서의 발급 과정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교서는 최종적으로 발급된 문서만 남아 있고 중간에 발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급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1756년(영조 32) 2월에 宋時烈이 文廟에 從祀될 때 발급된 文廟從祀敎書는 교서의 발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고문서학적인 측면에서 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시열이 문묘에 종사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된 문묘종사교서는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문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조의 재가를 받은 문서로 볼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문서는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당시 『승정원일기』의 기사에 근거하여 ‘宋時烈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이하 製進單子라고 함)’라고 하였다.<sup>122)</sup>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제진단자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지만 송시열의 관직, 제술관원과 담당 승지의 기재, 국왕의 재가, 御寶의 安寶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발급 과정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에 편찬된 사료와 법전 등을 참고하고, 아울러 문묘종사교서 이외에 다른 교서의 사례를 제시하여 조선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1) “IV. 敎書의 발급 과정”은 『한국문화』 62에 수록된 「조선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노인환, 「조선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129~159쪽)

122)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3일(辛酉): 拓基曰, 提學製進單子, 改付標以下, 然後可以改題矣.

# 1. 敎書의 製述과 製進單子

## 1.1 敎書製述官의 임명

조선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국왕이 敎書製述官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국왕의 명령에 의해 교서의 발급이 결정된 이후에 국왕은 교서를 제출할 敎書製述官을 임명하였는데, 대부분 당대에 학식이 있고 문장이 뛰어난 관원을 敎書製述官으로 임명하였다. 敎書製述官으로 임명된 관원은 교서의 본문을 제출한 후에 그 내용을 제진단자로 작성하였다.

敎書製述官으로 임명된 관원의 관직과 성명은 교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敎書製述官과 書寫官의 성명이 籤紙로 붙어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경우에는 교서의 원문 마지막에 敎書製述官의 관직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개인 문집에 교서가 수록된 경우에도 敎書製述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통하여 敎書製述官을 살펴보고, 『승정원일기』나 문집 등의 자료를 통해서 다른 문묘종사교서의 敎書製述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조선 후기에 어떠한 관원이 敎書製述官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敎書製述官은 교서의 製進單子에 기재된 ‘嘉善大夫行龍驤衛副司直兼藝文館提學臣南有容製進’이란 기록을 통해서 南有容이 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유용은 문묘종사교서를 제출하기 전에 홍문관·세자시강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원손보양관으로 정조의 원손 시절에 훈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유용의 문집인 『雷淵集』에는 「仁顯王后加上尊號玉冊文」·「宗廟祈晴祭文」·「追配鄂王信公紀事碑」 등과 같이 여러 편의 應製文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유용은 당대에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에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敎書製述官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남유용은 敎書製述官으로 임명된 이후에 敎書製述官과 관련된 관직인 예문관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송시열의 문묘종사 이전인 1755년(영조 31)에 남유용은 동지성균관사·비변사제조·용양위부사직 등을 지냈는데,<sup>123)</sup> 송시열의 문묘종사가 결정된 이후인 1756년(영조 32) 2월 4일에 예문관제학으로 임명되었다.<sup>124)</sup> 이후 남유용은 송시

123) 『雷淵集』附錄, 年譜: 乙亥 公五十八歲 二月奉敎撰進鄂王信公碑文. ○五月差闡義昭鑑纂修廳堂上. ○七月拜同知成均館事. ○十一月製進闡義昭鑑跋文. ○十二月差備邊司提調. 丙子 公五十九歲 二月拜藝文提學. ○製進尤菴同春兩先正從享文廟敎書及頒敎文.

124) 『承政院日記』영조 32년(1756) 2월 4일(壬寅): 南有容爲藝文提學.

열의 문묘종사교서뿐만 아니라 송시열과 함께 문묘에 종사된 송준길의 문묘종사교서도 제출하였다.<sup>125)</sup> 또한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한 다음 날인 2월 15일에 영조가 창경궁 명정전에 친림하여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한다는 내용으로 中外頒敎書를 반포하였는데, 이 때 반포한 교서도 남유용이 제출하였다.<sup>126)</sup>

남유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묘종사교서의 제출관은 예문관의 관원이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1681년(숙종 8) 이후에 발급된 문묘종사교서 중에서 『승정원일기』나 각종 문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묘종사교서의 제출관은 대부분 예문관의 대제학이나 제학이었다.<表 IV-1> 참조) 예를 들면 李敏敍와 宋相琦의 경우에는 대제학이었고, 金萬重·尹汲·具庠·韓章錫은 모두 예문관의 제학이었다. 특히 尹汲·具庠·韓章錫의 경우에도 남유용의 사례와 같이 문묘종사교서의 제출관으로 임명된 후에 예문관제학으로 임명되었다.<sup>127)</sup> 즉, 예문관의 관원 이외에 다른 관원이 문묘종사교서의 제출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문관제학으로 임명된 후에 문묘종사교서를 제출하였다.

<表 IV-1> 文廟從祀敎書의 製述官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敎書製述官	
				관직	성명
1	1681년(숙종 8) 5월	肅宗	李珥	大提學	李敏敍
2	1681년(숙종 8) 5월	肅宗	成渾	藝文館提學	金萬重
3	1717년(숙종 43) 5월	肅宗	金長生	大提學	宋相琦
4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時烈	藝文館提學	南有容
5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浚吉	藝文館提學	南有容
6	1764년(영조 40) 5월	英祖	朴世采	左參贊·兼藝文館提學	尹汲
7	1796년(정조 20) 10월	正祖	金麟厚	藝文館提學	具庠
8	1883년(고종 20) 11월	高宗	金集	藝文館提學	韓章錫
9	1883년(고종 20) 11월	高宗	趙憲	藝文館提學	韓章錫

125)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5일(癸卯): 敎贈領議政文正公宋浚吉從祀文廟書. 王若曰, 惟天篤生眞儒, 式贊休明之敎, 大德必得常祀, 聿舉崇報之章, … 景行斯仰, 佇期作興之休, 故茲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南有容製進.

126)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15일(癸丑):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茲於本月十四日, 以文正公宋時烈, 文正公宋浚吉, 從祀于文廟東西廡, … 故茲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南有容製進.

127) 『承政院日記』 영조 40년(1764) 5월 21일(壬申): 上曰, 從享敎書, 當爲製述, 而今無文任, 前判書尹汲·韓翼蕃敍用, 待開門政官牌招, 開政舉行.

具庠은 1796년(정조 20) 10월 18일에 左參贊이었으나, 이후 藝文館 提學으로 임명되었고, 韓章錫도 1883년(고종 20) 11월 15일에 藝文館 提學으로 임명되었다.

이어서 문묘종사교서 이외에 다른 교서의 제술관에 대해 살펴보면, 『은대편고』와 『육전조례』에서는 ‘各樣의 교서 및 대신의 불윤비답은 모두 예문관에서 排定하여 製進한다’<sup>128)</sup>는 규정과 配享功臣敎書는 예문관의 관원이 제술하고 賜几杖敎書는 예문관의 관원이나 지제교가 제술한다는 규정이 있다.<sup>129)</sup> 『은대편고』와 『육전조례』 뿐만 아니라 功臣都監儀軌나 『승정원일기』에서도 교서제술관을 확인할 수 있다.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에서는 공신교서의 제술에 대하여 ‘각 공신교서는 예문관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 製進하게 한다’고 하였다.<sup>130)</sup> 또한 『승정원일기』에서는 교서의 원문을 수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술한 관원을 기재하였는데, 대부분 지제교를 겸직한 관원이 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묘종사교서와 다른 교서의 제술관을 통해서 볼 때, 조선후기 교서는 예문관의 관원이 제술하거나 또는 지제교를 겸직한 관원으로 학문이나 문장이 뛰어난 관원이 교서를 제술한 것으로 보인다.

## 1.2 製進單子の 작성

제진단자는 교서제술관이 제술한 교서의 내용에 대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製進單子’라는 명칭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관련된 『승정원일기』 1756년(영조 32) 2월 23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약방도제조 兪拓基가 영조에게 말한 내용 중에서 ‘제학이 製述해서 올린 單子를 다시 標를 붙여서 내린 후에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提學製進單子, 改付標以下, 然後可以改題矣.)’라고 하였는데, 이 때 ‘製述해서 올린 單子’라는 의미로 ‘제진단자’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제진단자는 현전하는 문서가 매우 적는데, 규장각에 남유용이 제술한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종사교서의 제진단자가 소장되어 있으며,<sup>131)</sup> 羅州林氏 滄溪後孫

128) 『銀臺便攷』 禮房攷 弘文館: 凡時急詞命, 行公玉堂代撰, 如各樣祭文各樣敎書, 及大臣不允批答, 皆自藝文館, 排定製進.

129)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敎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銀臺便攷』 禮房攷 宣麻: 親臨宣麻時, 有侍臣·有時刻單子[單嚴]·有處所取 稟, 無百官進參之例, 敎書知製敎製進[啓下後, 依敎書例安寶, 敎書筒令戶曹待令], 服色黑團領, 宣敎官吏曹 啓下, 行禮先後四拜如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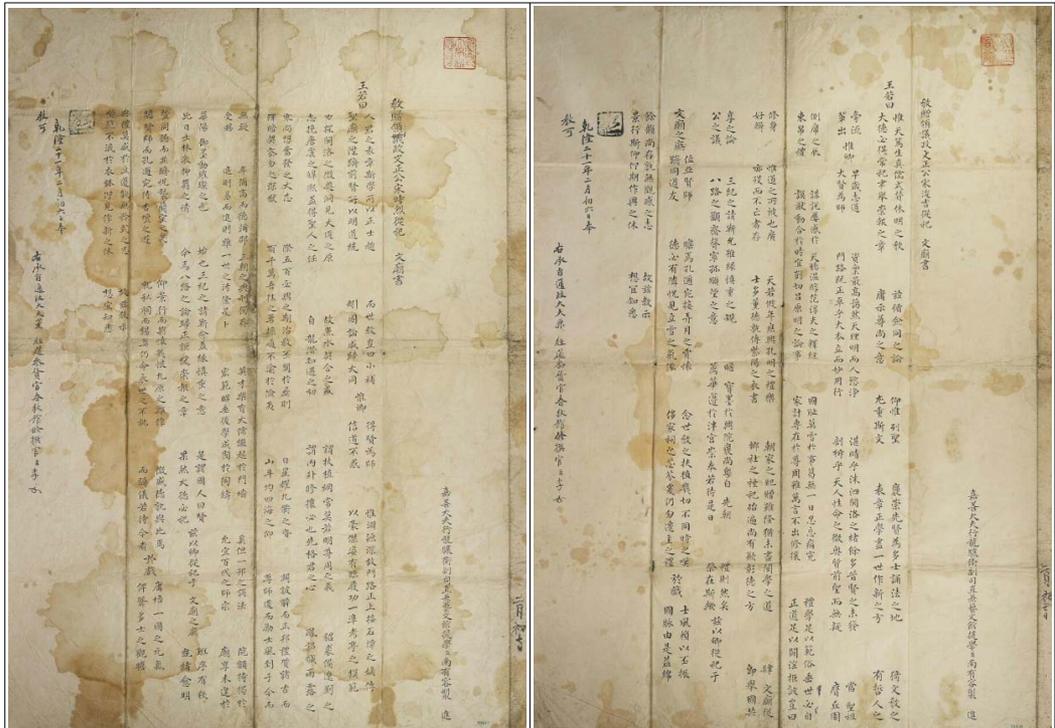
『六典條例』 禮典 禮曹 典客司 賜與: 賜几杖敎書,[藝文館撰出] 注書陪進宣讀, 几杖[工曹造成], 承旨傳授, 翌日進箋謝恩.[親臨賜几杖則即日進箋謝恩]

130) 一 各功臣敎書, 令藝文館, 刻日製進, 啓下後, 依前例, 大提學都監任進擇用.(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1999, 272쪽)

131)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0~63쪽.

家에 林泳이 제술한 尹趾完 使命訓諭敎書 製進單子와 李師命 保社功臣敎書의 製進單子가 소장되어 있다.<sup>132)</sup>

〈圖 IV-1〉 宋時烈과 宋浚吉의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133)

1756년(영조 32) 宋浚吉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134)

남유용이 제술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제진단자를 중심으로 제진단자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진단자에는 먼저 교서의 수취자를 기재하였는데, 수취자를 기재하는 방식은 ‘敎’자와 ‘書’자 사이에 수취자의 최종 관직과 시호와 성명을 쓰고 문묘에 종사한다는 의미로 ‘從祀 文廟’를 기재하였다. 이 때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자의 위치는 본문 보다는 한 글자 높게 擡頭하였고, ②王若曰 보다는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文廟’의 경우에는 한 글자를 띄우고 기재하였다. 즉,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제진단자에서는 ①敎贈領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로 기재하였다.

1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7 -羅州 會津 羅州林氏 滄溪後孫家篇-, 2003, 1~2쪽.

133) 1756년(영조 32), 118.0×8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10(71417).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60~61쪽.

134) 1756년(영조 32), 118.0×8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11(71416).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62~63쪽.

이어서 교서의 본문에서 ②王若曰은 다른 본문의 내용보다 항상 높게 대두하여 시작하였고, 교서 본문의 중간 부분 이후에는 ⑤於戲를 기재하였으며, 끝부분에는 ⑥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마치고 있다. ②王若曰과 ⑥故茲教示 想宜知悉의 사이에는 송시열을 문묘에 종사한다는 내용을 駢儷文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진단자에서는 변려문의 특징인 對句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본문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본문에서 對句가 되는 문장을 두 줄로 나란히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면, ②王若曰의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 ‘人君之表章斯學所以正士趨’와 ‘聖廟之陞躋前賢所以明道統’의 경우에는 ②王若曰 아래에 나란히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②王若曰, ③惟卿, ④茲以卿從祀於文廟之廡, ⑤於戲와 같이 본문에서 對句가 아닌 용어나 문장의 경우에는 對句가 되는 문장의 가운데 기재하였다.

<圖 IV-2> 製進單子の 작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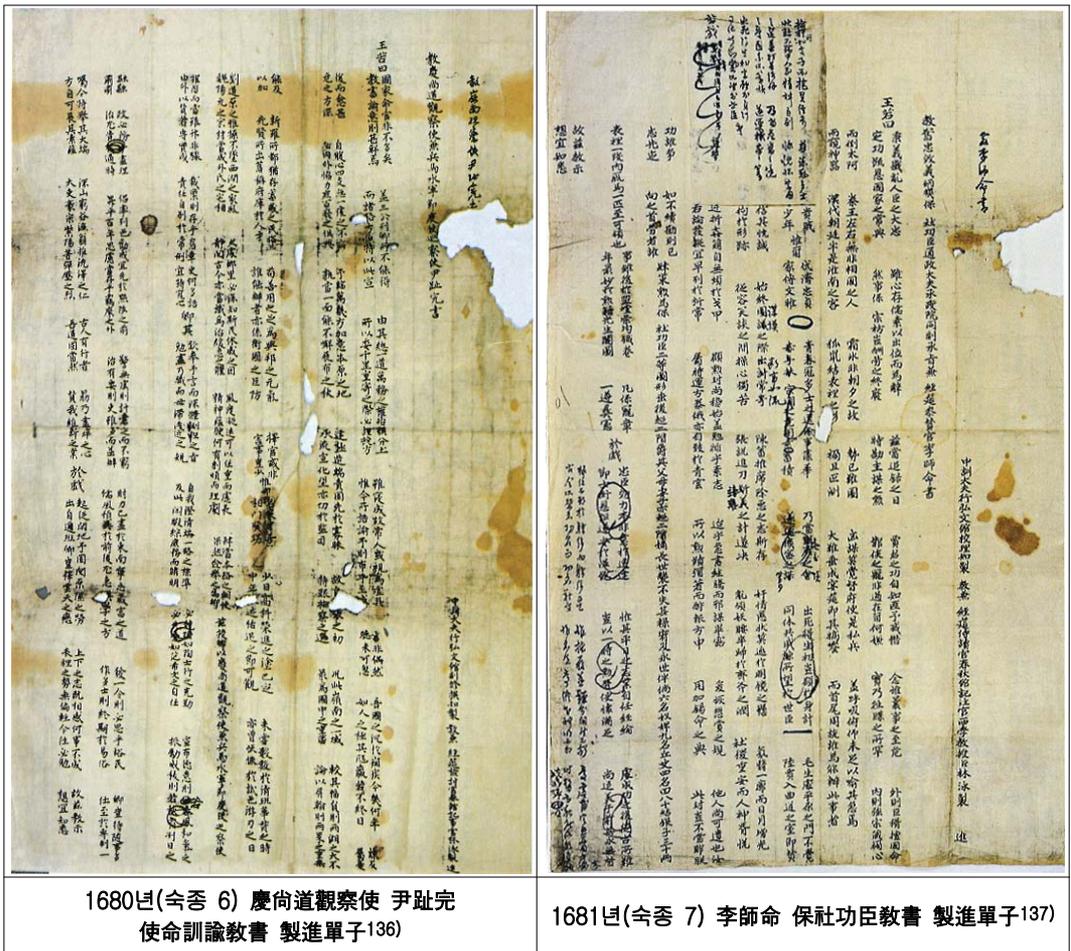
<p>교서제술관의 품계·관직·성명</p>	<p>⑥故茲教示 想宜知悉</p>	<p>④茲以卿從祀於文廟之廡 ⑤於戲</p>	<p>③惟卿</p>	<p>①教贈領議政文正公 宋時烈從祀 文廟書 ②王若曰</p>

제진단자에는 교서의 본문과 함께 교서제술관의 품계와 관직과 성명을 문서의 오른쪽 하단에 기재하였다. 기재 방식은 품계와 관직을 쓰고 이어서 ‘臣’字를 작게 쓴 뒤에 성명을 기재하였다. 성명 다음에는 ‘製述하여 국왕에게 올린다’는 의미로 ‘進’字를

한 글자 띄워서 '製進'으로 기재하였다. 남유용의 경우에는 '嘉善大夫行龍驤衛副司直兼藝文館提學臣南有容製進'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진단자에서 교서의 본문과 제술관의 품계·관직·성명을 작성한 후에 교서의 본문을 검토하고 교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林泳이 제술한 윤지원 사명훈유교서 제진단자와 이사명 보사공신교서의 제진단자에서 국왕의 재가를 받기 전에 교서의 본문을 교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지원 사명훈유교서 제진단자와 이사명 보사공신교서의 제진단자에서는 원을 그려 교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내용을 제진단자의 여백에 기재하였다.

<圖 IV-3> 尹趾完 使命訓諭教書 製進單子와 李師命 保社功臣教書의 製進單子135)



1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2003, 1~2쪽.

조선후기에 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제진단자가 작성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제진단자는 교서에 비하여 그 수량이 매우 적다. 그 이유는 교서가 발급된 이후에 기존의 제진단자는 그 효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승정원의 入啓와 국왕의 裁可

제진단자가 교서제술관에 의해 작성된 이후에는 승정원의 승지가 제진단자를 국왕에게 入啓하였는데, 이 때 입계는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문서를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sup>138)</sup> 국왕은 승지가 입계한 제진단자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재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진단자에서 본문과는 다른 서체로 기재된 부분과 본문의 좌측에 踏印된 검정색 印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송시열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를 중심으로 승정원의 입계와 국왕의 재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은대조례』·『은대편고』와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통하여 다른 교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시열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는 당시 승정원의 우승지인 李永暉가 영조에게 入啓하였다. 이것은 제진단자의 좌측에 교서 본문과는 다른 서체로 기재된 이영휘의 長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휘의 장함인 ‘右承旨通政大夫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李<着名>’은 『은대조례』 判付規式에서 장함을 기재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판부규식에서는 장함을 기재할 때에 ‘某承旨’를 기재하고 이어서 품계와 검직을 기재하며 그 다음에 ‘臣’字와 姓을 쓰고 着名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39)</sup>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에는 동일한 장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이영휘가 송시열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와 함께 송준길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도 영조에게 입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영휘가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중사교서의 제진단자를 영조에게 入啓한 날짜는 1756년(영조 32) 2월 5일로 추정된다. 제진단자에는 입계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지

136) 1680년(숙종 6), 114.5×81.6cm, 羅州 會津 羅州林氏 滄溪後孫家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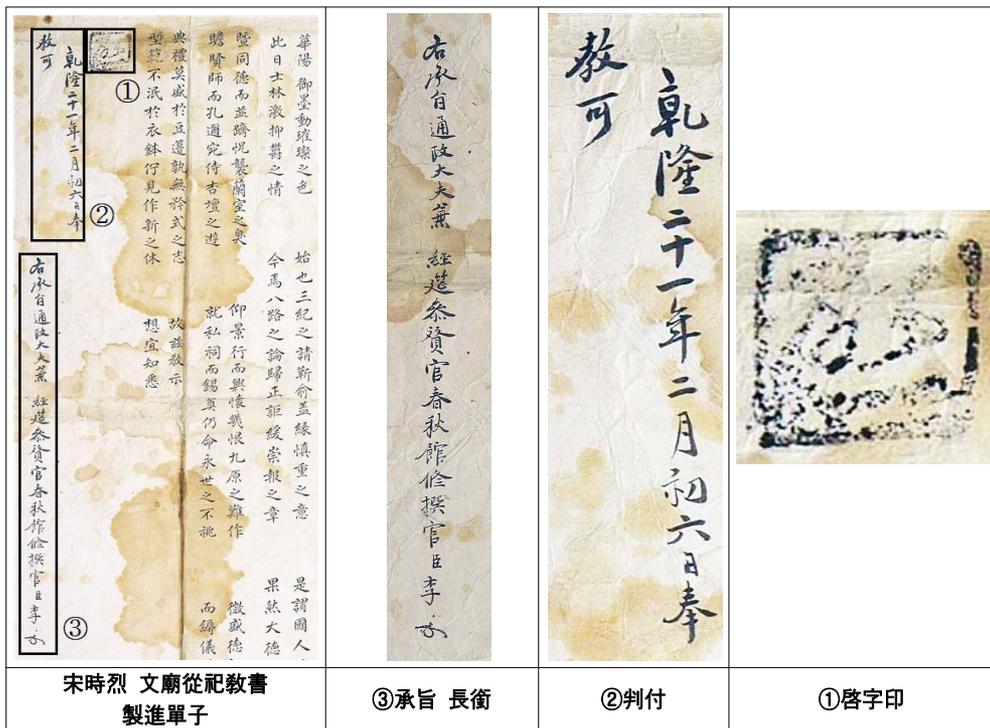
137) 1681년(숙종 7), 113.8×74.0cm, 羅州 會津 羅州林氏 滄溪後孫家 所藏.

138) 이강욱 옮김, 『銀臺條例』, 한국고전번역원, 2012, 39쪽, 62쪽.

139) 『銀臺條例』 附錄 判付規式: 親上致詞箋文·玉冊文·樂章文·議號單子, 書奉教[數字高一字]敬依[大殿中宮殿則奉教可]. 頒教文, 奉教可. 他行并書長銜[某承旨某階兼職臣姓着銜]. 社稷·宗廟·各陵殿·肇慶廟祭文, 書奉教[數字高一字]敬依. 景慕宮·顯隆園, 奉教恭依. 文廟·關王廟·各宮廟園墓及諸臣致祭文, 與教書, 奉教可. 并書長銜.

만, 『승정원일기』에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종사교서가 수록된 날짜가 모두 1756년(영조 32) 2월 5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sup>140)</sup> 이영회가 제진단자를 영조에게 입계한 다음 날인 1756년(영조 32) 2월 6일에 영조의 재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제진단자에서 교서 본문의 좌측에 踏印된 검정색 印文과 인문의 좌측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진단자에서 검정색 印文은 草書로 쓴 ‘啓’字를 새겨서 만든 啓字印이다. 계자인은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入啓하여 재가를 받은 문서에 踏印하는 인장으로 주로 啓下文書에 사용되었다.<sup>141)</sup> 계자인보다 크기가 작은 小啓字印도 있는데, 소계자인은 국왕에게 입계한 문서에 籤紙를 붙일 경우에 사용되었다.<sup>142)</sup>

<圖 IV-4> 啓字印·判付와 承旨의 長衡



140)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5일(癸卯): 教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文廟書, 王若曰, 人君之表章斯學, 所以正士趨, … 型範不泯於衣鉢, 佇見作新之休, 故茲教示, 想宜知悉. 藝文提學南有容製進. … 教贈領議政文正公宋凌吉從祀文廟書, 王若曰, 惟天篤生真儒, 式贊休明之教, … 景行斯仰, 佇期作興之休, 故茲教示, 想宜知悉. 藝文提學南有容製進.

141) 『銀臺便攷』 兵房攷 標信: 啓字大小各一[下方, 刻草書啓字], 用於啓下文書.

142) 『銀臺便攷』 吏房攷 政事: 國恤公除前政事望, 不爲落點, 以付籤踏小啓字施行.

『承政院日記』 경종 3년(1723) 4월 25일(戊戌): 崔錫恒曰, 頃日筵中, 臣以列聖御筆斯速頒賜之意, 有所仰達矣, 尙無處分, 故留政院. 或不無傷汚之患, 豈非未安之甚乎. 數多卷帙, 若以落點爲難, 則付以黃籤, 踏小啓字以下, 亦有已行之前例, 故更此仰稟. 上曰, 依爲之.

啓字印의 좌측에는 判付가 기재되어 있는데, 관부는 국왕에게 入啓한 문서에 국왕의 재가를 받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제진단자의 관부는 영조에게 재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가 받은 날짜는 ‘乾隆二十一年二月初六日’이며, 재가 받은 내용은 ‘奉教可’이다.<sup>143)</sup> 여기에서 ‘奉教可’는 ‘승낙한다는 하교를 받습니다’라는 의미이며,<sup>144)</sup> 이 때 ‘教’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므로 行을 바꾸고 擡頭하였다. 재가를 받은 날짜나 ‘奉教可’의 내용은 제진단자의 入啓를 담당할 승정원 우승지 이영휘가 직접 기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제진단자를 통해서 승정원 우승지 이영휘가 제진단자를 영조에게 入啓한 것과 영조의 재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문묘종사교서 이외에 다른 교서의 경우에도 승정원의 承旨가 제진단자를 입계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은대조례』와 『은대편고』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은대조례』에는 頒教文과 교서의 경우에 奉教可를 기재하고 다른 행에 담당 승지의 長銜을 기재한다는 규정이 있다.<sup>145)</sup> 그리고 『은대편고』의 「禮房攷」에서는 구체적으로 배향공신교서의 경우에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入啓하고 啓字印을 踏印한 후에 奉教可로 判付한다는 규정이 있다.<sup>146)</sup>

『은대조례』와 『은대편고』의 규정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서도 교서를 발급할 때, 국왕에게 재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서는 조선후기에 발급된 교서를 일부 수록하고 있는데, 교서의 본문만 수록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교서의 본문과 함께 啓字印을 踏印한 내용이나 判付의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表 IV-2>에서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啓字印과 判付의 사례를 살펴보면, ‘踏啓下’·‘踏啓字’·‘啓下’라는 용어는 교서의 제진단자에 啓字印을 踏印한 것을 의미하며, ‘教可’·‘奉教可’의 용어는 교서의 제진단자에 ‘教可’·‘奉教可’라는 判付가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吏曹判書藝文館提學臣李宜顯製進’·‘知製教申魯製進’ 등은 교서를 발급할 때에 지제교 또는 예문관 관원이 교서를 제출한 것이며, ‘右承旨李挺周

143) ‘奉教可’는 조선 초기에 ‘申判可’를 ‘奉教可’로 개칭하면서 사용되었다.

『太宗實錄』 11년(1411) 9월 26일(甲申): 乞以申判依申, 爲奉教依允, 以申判可爲奉教可, 以申判付爲奉教下, 庶合禮文. 從之.

144) 이강욱 옮김, 앞의 책, 2012, 494쪽.

145) 『銀臺條例』 附錄 判付規式: 親上致詞箋文·玉冊文·樂章文·議號單子, 書奉教[教字高一字]敬依[大殿中宮殿則奉教可]. 頒教文, 奉教可. 他行并書長銜[某承旨某階兼職臣姓着銜]. 社稷·宗廟·各陵殿·肇慶廟祭文, 書奉教[教字高一字]敬依. 景慕宮·顯隆園, 奉教恭依. 文廟·關王廟·各宮廟園墓及諸臣致祭文, 與教書, 奉教可. 并書長銜.

146)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教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啓下後, 奉教可判付.

入啓 教可’·‘啓下 同副承旨朴弼均奉教可’ 등은 승정원의 승지가 제진단자를 入啓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表 IV-2>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啓字印과 判付의 사례

번호	발급 일자	啓字印과 判付 사례
1	1639년(인조 17) 3월 21일	敎三道統制使柳琳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踏啓下.</u>
2	1672년(현종 13) 윤7월 27일	黃海監司崔寬敎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踏啓字, 敎可.</u>
3	1725년(영조 1) 5월 20일	敎全羅監司金祖澤書. 知製敎洪鉉輔製進.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右承旨李挺周入啓, 敎可.</u>
4	1725년(영조 1) 6월 13일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雍正三年六月十三日, 奉敎可. 史曹判書·藝文館提學臣李宜顯製進.</u>
5	1727년(영조 3) 5월 27일	敎守禦使申思詰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知製敎申魯製進, 右承旨慶聖會奉敎可.</u>
6	1740년(영조 16) 7월 18일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工曹參判兼守大提學吳瑗製進. 啓下. 同副承旨朴弼均奉敎可.</u>
7	1764년(영조 40) 7월 26일	敎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營使喬桐府使李潤成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奉敎可. 知制敎李徽中製進.</u>
8	1775년(영조 51) 7월 7일	敎忠清道觀察使閔百奮書. 知製敎鄭一祥製進.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同副承旨李世奭奉敎可. 啓下.</u>
9	1799년(정조 23) 10월 3일	敎摠戎使申大謙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知製敎臣曹允遂製進. 踏啓字.</u>
10	1808년(순조 8) 2월 10일	奉朝賀李敬一敎書. 王若曰, … 故茲敎示, 想宜知悉. <u>踏啓字. 知製敎權焄製進.</u>
11	1819년(순조 19) 4월 10일	行咸鏡監司鄭尙愚敎書. 王若曰, … 故茲敎示, 相[想]宜知悉云云. <u>踏啓字. 知製敎李若愚製進.</u>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제진단자와 『은대조례』·『은대편고』·『승정원일기』의 내용을 통하여 조선후기에 교서를 발급할 때 승정원에서 제진단자를 입계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은 과정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서제술관이 교서를 제술한 후에 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교정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입계하고 국왕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교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교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교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 3. 敎書의 書寫와 安寶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入啓한 제진단자에 대해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이후에는 승정원의 注書 또는 敎書書寫官이 교서의 내용을 書寫하였다.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는 1756년(영조 32) 2월 23일에 재발급 될 때에 假注書 安鼎大가 교서의 書寫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뒷면에 ‘假注書安鼎大書’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안정대는 2월 21일에 승정원의 가주서로 임명되었고,<sup>147)</sup> 2일 후인 2월 23일에 영조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재발급하라는 명에 따라 교서를 書寫하였다. 문묘종사교서뿐만 아니라 사명훈유교서·치사교서·종묘배향교서의 경우에도 대부분 승정원의 주서가 교서의 書寫를 담당하였다.<sup>148)</sup>

그러나 공신교서·관례교서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발급되는 교서는 별도로 敎書書寫官을 선발하였다. 공신교서의 교서서사관은 승정원 주서 이외에 기존의 관원 중에서 名筆로 유명한 관원이 선발되었다. 예를 들면, 선조 연간에 扈聖·宣武·清難功臣 敎書を 발급할 때에 공신도감에서는 文臣·門蔭·生進·幼學 중에 善寫者를 선발하였으며, 교서서사관에 뽑힌 후에 外方에 있거나 外官에 補職된 자를 모두 올라오게 하였다.<sup>149)</sup> 또한 관례교서의 교서서사관도 마찬가지로 현직 관원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이들 관원에게는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후에 포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625년(인조 3) 2월에 소현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후에 관례교서를 서사한 교서서사관인 홍문관수찬 吳竣에게 上弦弓 1張을 내려 주었고,<sup>150)</sup> 1727년(영조 3) 9월에 효장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이후에는 교서서사관인 형조참판 尹淳에게 兒馬를 내려 주었다.<sup>151)</sup>

승정원의 주서 또는 敎書書寫官이 교서의 내용을 서사한 이후에는 국왕에게 교서에 御寶를 安寶하기 위해 어보를 내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왕이 윤허하고 교서에 어보를 안보하면 최종적으로 교서가 발급되었다.

국왕에게 어보를 청하거나 어보의 안보를 아뢰는 것은 書寫의 사례와 비슷한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사명훈유교서·치사교서·종묘배향교서·문묘종사교서의 경우에는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에게 어보를 청하였다.<sup>152)</sup> 그러나 공신교서와 관례교서 등과 같이

147)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1일(己未): 注書柳巖病, 代以安鼎大爲假注書.

148)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敎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啓下後, 奉敎可判付, 自堂后, 依道臣敎書例正書.

149) 甲辰七月初二日, 都監啓曰, … 一 敎書書寫官, 文臣門蔭生進幼學中, 擇善寫者, 都監仕進, 已曾被抄後, 或在外, 或補外者, 竝令上來行移.(서울대학교 규장각, 앞의 책, 1999, 272~2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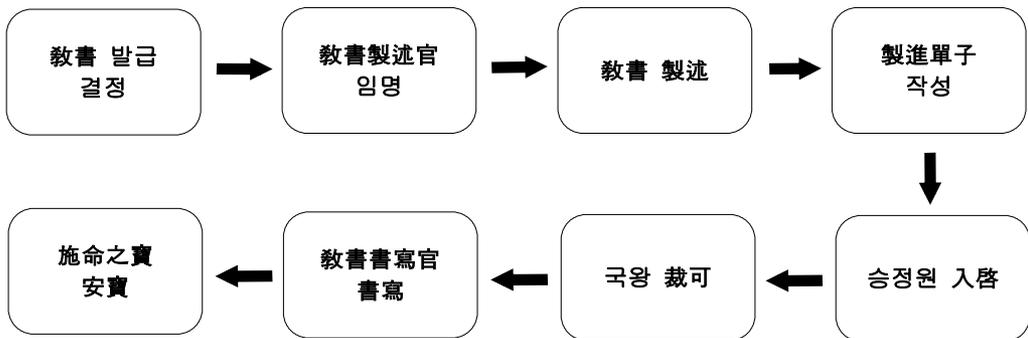
150) 『仁祖實錄』 3년(1625) 2월 6일(乙酉): 世子冠冊禮時諸執事及東宮僚屬, 論賞有差. … 敎書書寫官吳竣, 上弦弓一張賜給.

151) 『英祖實錄』 3년(1727) 9월 11일(甲子): 王世子冠禮時, 賓以下諸人, 賞賜有差. … 敎書書寫官參判尹淳 [兒馬].

특별한 경우에 발급되는 교서는 해당 아문에서 담당하였다.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녹훈도감에서 국왕에게 공신교서에 어보를 안보할 것을 아뢰었고,<sup>153)</sup> 왕세자·왕세손의 관례교서는 왕세자·왕세손의 관례를 담당하는 예조에서 국왕에게 관례교서에 어보를 안보할 것을 아뢰었다.<sup>154)</sup> 교서에 어보를 안보하는 곳은 교서 본문의 다음 행에 기재되는 연호 위에 1顆를 안보하고 이외에는 문서의 연결 부분이나 문서 중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홀수로 安寶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발급 과정과 『승정원일기』·『은대편고』·『은대조례』 등의 사료를 통해서 조선 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表 IV-3> 조선 후기 敎書의 발급 과정



152)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敎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啓下後, 奉敎可判付, 自堂后, 依道臣敎書例正書. 耐廟前期入啓, 寶啓請, 安寶.

『承政院日記』 인조 3년(1625) 7월 10일(丙辰): 又啓曰, 慶尙監司敎書安寶, 請出寶. 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인조 6년(1628) 5월 24일(甲申) 李民成以江原監司諭·敎書啓曰, 此諭·敎書安寶, 請出寶及密匣. 傳曰, 知道.

153) 『承政院日記』 인조 6년(1628) 8월 27일(乙卯): 錄勳都監啓曰, 兩功臣敎書, 今已畢書矣. 頒敎日月書填, 來二十九日, 安寶之意, 敢啓. 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인조 24년(1646) 8월 27일(庚子): 錄勳都監啓曰, 功臣敎書, 今已畢書矣. 頒敎日月書填, 來三十日安寶之意, 敢啓. 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7월 15일(甲子): 洪景輔, 以奮武錄勳都監言啓曰, 奮武功臣十五員敎書, 今已畢書矣. 頒敎日月書填, 今十六日預爲安寶之意, 敢啓. 傳曰, 知道.

154) 『承政院日記』 현종 11년(1670) 2월 12일(庚午): 禮曹啓曰, 王世子冠禮時敎書, 前一日安寶事, 啓下矣. 依冊禮時敎命文例, 安施命之寶宜當, 敢此仰稟. 傳曰, 知道.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8월 20일(癸卯): 趙錫命, 以禮曹言啓曰, 今此王世子冠禮時敎書, 前一日安寶事, 已爲啓下矣. 依前例安施命之寶,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영조 19년(1742) 2월 22일(丙午): 南泰齊, 以禮曹言啓曰, 今此王世子冠禮時敎書, 前一日安寶事, 已爲啓下矣. 依前例安施命之寶,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2월 29일(己亥): 韓光會, 以禮曹言啓曰, 今此王世孫冠禮時敎書, 前一日安寶事, 啓下矣. 安施命之寶, 何如. 傳曰, 允.

## 4. 敎書의 재발급

국왕의 어보인 「施命之寶」이 安寶되어 최종적으로 발급된 교서는 이후 교서의 수취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일부 교서의 경우에는 교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교서 자체가 消失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발급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서가 다시 발급되는 사례는 지금까지 살펴본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공신교서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공신교서와 같이 다시 발급된 교서에 대해 각각의 사유와 그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文廟從祀敎書의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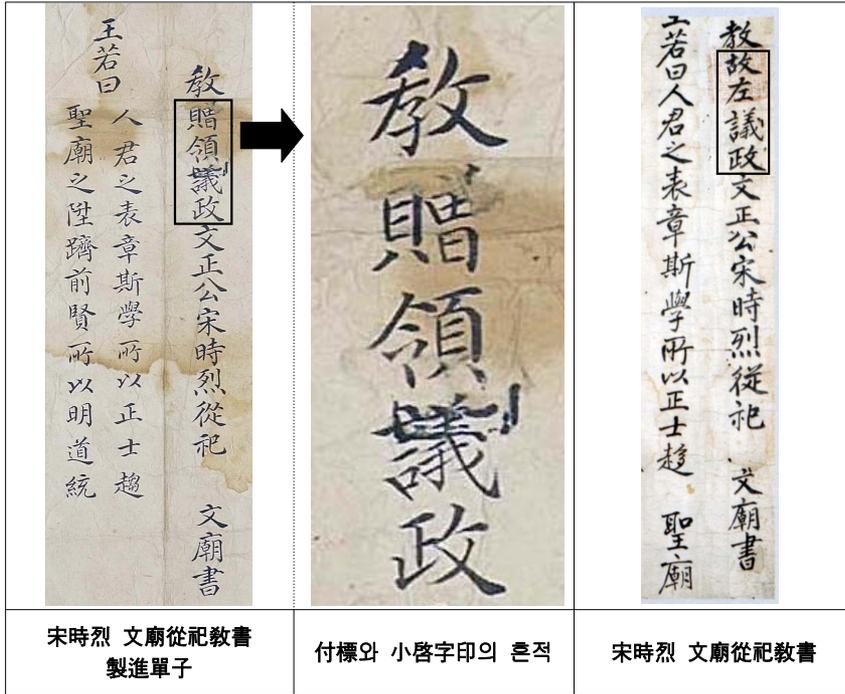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제진단자는 수록된 교서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두 문서에 기재된 송시열의 관직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유용이 작성한 제진단자에는 ‘敎贈領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로 기재되어 있지만, 문묘종사교서에는 ‘敎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재발급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1756년(영조 32) 2월 14일에 발급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는 9일 후인 2월 23일에 다시 발급되었다. 이러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재발급 과정은 당시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조는 1756년(영조 32) 2월 14일에 발급된 송시열의 문묘종사교서를 송시열 후손들에게 내려주었으며, 관원을 보내서 致祭하게 하였다. 송시열에게 致祭할 때에 영조가 보낸 讀敎官이 문묘종사교서를 읽었는데, 이 때 송시열의 후손이 문묘종사교서에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sup>155)</sup> 즉, 송시열이 생존할 당시에 최종 관직은 좌의정이었고 사후에도 영의정으로 추증된 사실이 없었는데,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에는 ‘敎贈領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진단자에 기재된 송시열의 관직이 ‘贈領議政’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진단자를 바탕으로 書寫한 문묘종사교서에서도 당연히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다.<sup>156)</sup>

155)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3일(辛酉): 上曰, 其家初何以知之耶 拓基曰, 其家初不知矣. 及設祭讀告時, 始知之, 來言於小臣, 而小臣則雖如是出入前席, 至於陳達, 則有所不敢矣. 都承旨, 與其家有世誼, 故今茲稟達矣.

156) 당시 남유용은 송시열과 송준길 문묘종사교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송준길의 경우에는 문묘에 중

<圖 IV-5> 製進單子와 文廟從祀敎書에 기재된 宋時烈 官職



송시열의 후손은 문묘종사교서에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兪拓基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실을 1756년(영조 32) 2월 23일에 약방도제조 유척기와 도승지 吳彦儒가 영조에게 아뢰었다. 이 때 오언유는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교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아울러 어보를 安寶한 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아뢰었다.<sup>157)</sup> 이에 따라 영조는 교서에 標를 붙이는 것은 구차하므로 승정원에서 문묘종사교서를 재발급하고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舊本의 교서는 洗草하라고 하였다.<sup>158)</sup> 즉, 문묘종사교서에 잘못 기재된 송시열의 관직을 수정하고 아울러 교서의 본문을 다시 서사한 후에 어보를 안보해서 재발급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영조는 재발급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와 禮官을 송시열 후손들에게 보내어 다시

사되기 이전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남유용이 송시열도 송준길과 마찬가지로 영의정으로 추증된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제진단자에 송시열의 관직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157)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3일(辛酉): 彦儒曰, 先正臣文正公宋時烈官銜, 是左議政, 本無贈職之事, 而今番文廟從享時敎文中, 誤書以贈領相, 至於安寶, 先正廟告辭, 以誤書贈職讀告云, 當初誤書入啓之人, 難免不審之失, 宜有推考警責, 而先正官銜, 不可以誤書者, 因置, 宜有釐正, 御寶安寶, 事體至重, 釐正後舊本, 亦宜有區處之道, 問于大臣而處之, 何如. 拓基曰, 先正, 初未有贈職之事, 而敎書中, 誤書以贈議政事, 當改下矣.

158)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3일(辛酉): 上曰, 付標苟且, 令政院更書安寶以傳, 舊本洗草, 分付時做錯, 製述時亦做錯, 竝推考.

致祭하라고 하였다.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재발급하는 과정은 먼저 영조의 재가를 받은 제진단자에서 송시열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標를 붙여 수정하였다.<sup>159)</sup> 제진단자에 標를 붙인 것은 규장각에 소장된 제진단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圖 IV-5>를 보면 ‘敎’자 다음에 기재된 ‘贈領’ 위에 標를 붙인 흔적이 있으며, 標 위에는 ‘故左’ 두 글자가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sup>160)</sup> 또한 ‘議’자 위에는 검은색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小啓字印을 踏印한 흔적으로 볼 수 있다.<sup>161)</sup> 이렇게 제진단자에 송시열의 관직을 수정한 후에 假注書 安鼎大가 제진단자를 서사하였고, 이후 「施命之寶」을 안보한 후에 송시열 문묘종사교서가 재발급되었다.

영조는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재발급으로 인하여 송시열의 최종 관직이 좌의정이었으며, 송시열을 追贈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따라 영조는 先正臣을 우대하고 褒忠하기 위해 특별히 송시열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라는 명을 내렸고, 송시열은 1756년(영조 32) 2월 23일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sup>162)</sup>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재발급은 수취자의 관직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재발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보가 안보된 舊本의 교서를 洗草한 것은 잘못 발급된 교서의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진단자에 標를 붙이고 小啓字印을 踏印한 것은 교서를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標와 小啓字印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송시열이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지만 재발급된 문묘종사교서에서 좌의정으로 기재한 것은 처음 발급된 교서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功臣敎書의 재발급

공신교서가 재발급된 사례는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159)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2월 23일(辛酉): 拓基曰, 提學製進單子, 改付標以下, 然後可以改題矣.

160)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1753년(영조 29) 都摠府望單에서도 노란색 標를 붙이고 小啓字印을 踏印한 것과 標위에 수정된 사항을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영조대왕』, 2011, 77쪽)

161) 『承政院日記』에서는 문서에 標를 붙인 후에 小啓字印을 답인한 사례를 볼 수 있다.

『承政院日記』 숙종 44년(1718) 8월 9일(乙酉): 南道揆啓曰, 密符冊修正之規, 案某官親受之下, 存其餘地, 以備他日還納時修正矣. … 今此誤修正處, 不得不付標還納, 自內踏小啓字以下, 然後依次序改修正以入, 似合事宜, 敢啓.

『承政院日記』 영조 48년(1772) 10월 29일(庚寅): 李滄持明聖王后玉冊文以入, 上命讀付標後, 親付小啓字於兩處, 仍命奉去, 陪以龍亭也.

162) 『英祖實錄』 32년(1756) 2월 23일(辛酉): 贈文正公宋時烈領議政.

로 재발급 공신교서도 실물 문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사료를 통해 조선후기에 공신교서가 재발급 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신교서의 재발급 사유는 敎書書寫官이 공신교서의 내용을 잘못 書寫한 경우이다. 寧國功臣 黃濼의 공신교서는 서사관 吳挺漢이 한 글자를 누락하였고, 한 글자를 잘못 기재하였다. 이로 인해 녹훈도감에서 황헌의 공신교서를 洗濯한 후에 改書한 것을 인조에게 아뢰었고, 인조는 공신교서의 軸도 아울러 改造할 것을 명하였다.<sup>163)</sup> 당시 황헌은 평안병사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황헌의 子婿 및 가족 중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頒給하였다.<sup>164)</sup>

공신교서가 消失된 경우에 그 후손이 공신교서를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靖社功臣 李曙의 공신교서가 兵火 중에 소실된 후에 이서의 손자는 녹훈도감에 呈狀하여 공신교서를 改造해 줄 것을 청하였다. 숙종은 이전에 정사공신인 金鑾·申景禎의 공신교서를 改造해 준 전례에 따라 이서의 공신교서를 改造해 줄 것을 명하였다.<sup>165)</sup> 또한 공신교서가 소실된 경우에 그 후손이 공신교서를 書寫해서 올리면, 「施命之寶」을 안보해서 다시 내려주기도 하였다. 광국·호성공신 윤두수의 공신교서가 소실된 후에 그 본가에서 공신교서를 改造한 후에 「시명지보」를 안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조는 분무공신교서에 「시명지보」를 안보할 때 함께 윤두수의 공신교서에 「시명지보」를 함께 안보해 줄 것을 명하였다.<sup>166)</sup>

정치적인 이유로 공신교서가 재발급 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보사공신의 공신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사공신은 庚申換局 때 공을 세운 공신으로 1680년(숙종 6) 8월에 보사공신교서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1689년(숙종 15)에 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같은 해 7월에 보사공신을 삭훈하고, 공신교서와 공신녹권을 불태웠다.<sup>167)</sup> 이후 1694년(숙종 20) 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같은 해 10월에 보사공신을 復

163) 『承政院日記』 인조 24년(1646) 9월 19일(壬戌): 錄勳都監啓曰, 功臣頒軸中, 黃濼軸, 累處改之, 何如是耶. 問啓事, 傳教矣. 問于檜興君黃濼, 則書寫時, 一字落一字誤書, 不得已洗濯改書云矣, 敢啓. 傳曰, 此軸何人書寫乎. 又啓曰, 此軸何人書寫乎事, 傳教矣. 問于檜興君黃濼, 則前都事吳挺漢書寫云矣. 敢啓. 傳曰, 知道. 其軸甚麤, 令都監改造以給.

164) 『承政院日記』 인조 24년(1646) 11월 8일(庚戌): 錄勳都監啓曰, 寧國功臣平安兵使黃濼, 漆原縣監李碩龍等敎書軸, 不正書填, 故改書安寶, 而兩人皆在任所, 子婿及族屬中在京者, 令政院, 招致頒給, 何如. 答曰, 允.

165) 『承政院日記』 숙종 6년(1680) 7월 27일(甲寅): 金錫胄曰, 曾以靖社元勳昇平府院君金鑾, 平城府院君申景禎等敎書軸, 改造以給事, 陳達蒙允矣. 靖社一等功臣完豐府院君李曙敎書軸, 亦失於兵火中, 而其孫呈狀于錄勳都監, 請得改造. 李曙既是一等功臣, 依金鑾·申景禎兩臣例, 造給, 似當矣. 上曰, 一體造給, 可也.

166)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7월 16일(乙丑): 李世瑾, 以奮武錄勳都監言啓曰, 取考謄錄, 則功臣敎書軸見失者, 因其子孫改造以納, 有安寶以給之例矣. 光國扈聖功臣海原府院君尹斗壽敎書見失, 故其本家改造敎書軸, 願爲安寶, 以爲傳家寶藏之地云, 今日奮武功臣敎書軸安寶時, 一體安寶以給, 何如. 傳曰, 允.

167) 『肅宗實錄』 15년(1689) 7월 25일(己未): 削保社勳, 告宗廟, 頒教于中外. 其文曰, 王若曰, ‘誣獄爲一世所冤, 已洗刑書之枉, … 故茲教示, 想宜知悉. 大提學閔黯所製也. 仍焚功臣敎書及錄券.

勳시키고 공신교서를 다시 발급해 주었다.

재발급 공신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공신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물 문서나 도판으로 74점의 공신교서가 전존하고 있는데,<sup>168)</sup> 이 가운데 재발급 된 공신교서로는 扈聖功臣 朴東亮, 靖社功臣 金瑩·具宏·朴烜, 保社功臣 金萬基의 공신교서가 있다. 박동량·김류·구굉·박정의 공신교서는 모두 병자호란 때 消失되었다가 숙종 연간에 모두 재발급 되었다. 박동량의 호성공신교서는 보사공신의 공신교서를 頒軸할 때인 1680년(숙종 6)에 재발급 되었고, 김류·구굉·박정의 정사공신교서는 숙종의 特命이나 傳敎로 인해 각각 1680년(숙종 6)과 1681년(숙종 7)에 재발급 되었다. 김만기의 공신교서는 보사공신이 復勳되는 과정에서 1694년(숙종 20)에 재발급 되었다.

<表 IV-4> 현전하는 재발급 功臣敎書

번호	성명	功臣號	발급 연도	재발급 연도	製述	書寫	재발급 사유	비고
1	朴東亮	扈聖功臣	1604년 (선조 36)	1680년 (숙종 6)	李春英	朴泰萬	敎書本軸佚於丙子兵燹 今因保社功臣頒軸時 依他舊功臣例 安寶追給	消失
2	金瑩	靖社功臣	1625년 (인조 3)	1680년 (숙종 6)	未詳	未詳	因舊券闕失於丙子兵亂 至康熙十九年八月 日 特命改造	消失
3	具宏	靖社功臣	1625년 (인조 3)	1680년 (숙종 6)	李植	李縉長	因舊券闕失於丙子兵亂 至崇禎紀元五十三年庚申八月 日 特命改造	消失
4	朴烜	靖社功臣	1625년 (인조 3)	1681년 (숙종 7)	李明漢	朴泰維	舊軸失於丙子兵難 今上七年辛酉五月二十一日 因傳敎改造	消失
5	金萬基	保社功臣	1680년 (숙종 6)	1694년 (숙종 20)	吳道一	李德成	己巳罷勳 甲戌復勳	復勳

박동량·김류·구굉·박정·김만기의 재발급 공신교서를 살펴보면,<sup>169)</sup> 공신교서의 본문 내용은 처음 발급될 때의 본문 내용과 동일하였다. 특히 공신교서에 기재된 발급 일자 재발급 된 날짜가 아닌 처음에 발급된 날짜가 기재되었다. 발급 일자의 다음 행에는 공신교서를 재발급한 시기와 사유가 기재되었다. 예를 들어 박동량의 호성공신교서를 살펴보면, 발급 일자의 다음 행에 ‘敎書本軸佚於丙子兵燹 今因保社功臣頒軸時

168) 노인환, 앞의 논문, 2011, 29~32쪽 ; 김나형, 앞의 논문, 2012, 15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공신』, 2012, 325~3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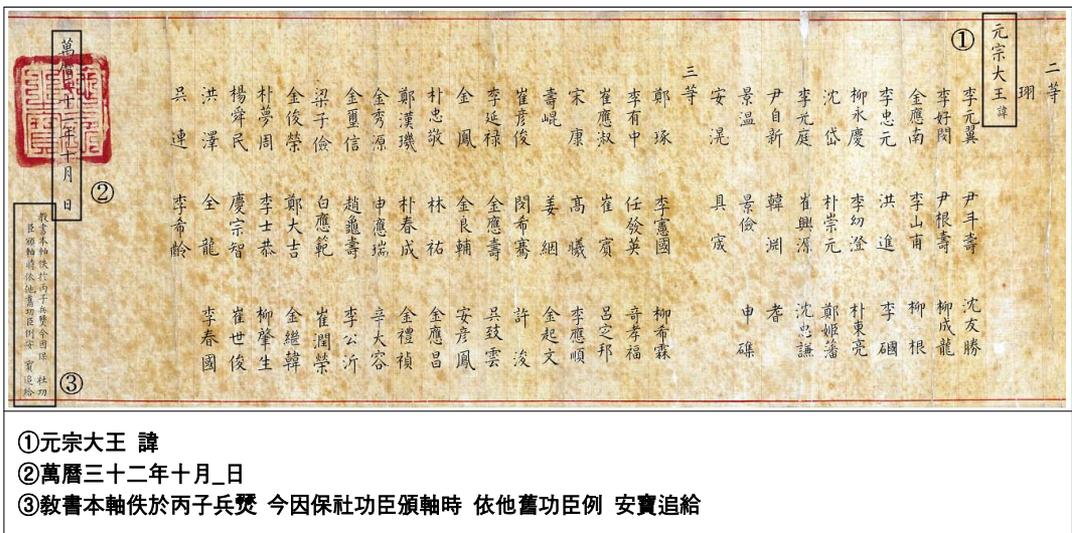
169) 박동량·구굉·박정의 재발급 공신교서는 공신 가문에서 善寫者가 書寫를 담당하였다. 박동량의 공신교서는 증손인 朴泰萬, 구굉의 공신교서는 曾孫婿인 李縉長, 박정의 공신교서는 손자인 朴泰維가 공신교서를 書寫하였다. 그러나 김만기 공신교서는 復勳都監에서 書寫官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당시 병조참지 李德成이 書寫를 담당하였다.

이진희, 앞의 논문, 2013, 29쪽 ; 심영환·이진희, 「조선시대 재발급 공신교서 양식 연구」, 『문화재』 6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9~13쪽.

依他舊功臣例 安寶追給'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자호란 때 분실한 공신교서를 보사공신의 공신교서를 頒軸할 때 「施命之寶」을 안보해서 追給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감기의 보사공신교서에 기재된 '己巳罷勳 甲戌復勳'은 1689년(숙종 15)에 보사공신을 삭훈하였다가 1694년(숙종 20)에 다시 복훈한다는 내용이였다.

공신 명단은 공신교서를 재발급하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박동량의 호성공신교서에서 二等 공신인 '琿'를 '元宗大王 諱'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1627년(인조 5)에 인조의 아버지인 '琿'를 元宗으로 추존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김류·구광·박정익의 정사공신교서에서는 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에 削勳된 金自點·金鍊·沈器遠·沈器成의 성명을 기재한 후에 그 위에 먹으로 검게 칠해서 삭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70)</sup>

<圖 IV-6> 1680년(숙종 6)에 재발급 된 朴東亮 扈聖功臣敎書<sup>171)</sup>



공신교서와 송시열 문묘종사교서의 재발급 과정에서 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직 명·발급 일자·삭훈된 공신의 성명까지 동일하게 기재한다는 점은 기존에 발급되었던 국왕의 교서를 중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조선시대에 법전을 편찬할 때에 지켜졌던 祖宗成憲 尊重主義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인다.<sup>172)</sup> 그러나 공신교서에서 공신 명단을 변

170) 노인환, 앞의 논문, 2011, 15쪽.

171) 1680년(숙종 6), 36.5×203.5cm, 潘南朴氏 錦溪君宗宅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寄託.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獻 寄贈寄託目錄』 19, 2013, 70~71쪽.

172)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408쪽 ; 『近世의 法과 法思想』, 도서출판 진원, 1996, 438쪽.

경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재발급하는 사유와 날짜 등을 追錄하는 것은 공신교서를 재발급할 때의 儀禮와 時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상으로 1756년(영조 32년)에 발급된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교서는 교서제술관의 임명, 교서의 제술, 製進單子의 작성, 승정원의 入啓, 국왕의 재가, 교서서사관의 書寫, 「施命之寶」의 安寶와 같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발급되었다. 이것은 교서에 수록된 내용이 길고 駢儷文의 문장이 어려우며, 교서에 수록되는 용어나 문장도 국가의 법도와 격식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왕은 교서를 통해서 지방의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국가의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교서를 발급하였다.

문서의 발급 과정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문서 제도, 즉 문서와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교서의 발급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조선시대 국왕문서의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서의 발급 과정에서 등장하는 교서제술관·교서서사관·승정원 승지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조선시대 중앙관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V. 敎書의 유형과 제도

본 장에서는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조선시대 교서를 내용과 발급 사유에 따라 분류하고 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서를 발급 사유에 따라 任命·褒賞·儀禮·中外頒布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항목을 세부 분류하여 국왕의 명령을 유형화하였다. 임명 관련 교서에는 使命訓諭敎書, 포상 관련 교서에는 功臣敎書·賞加敎書·致仕敎書·賜几杖敎書, 의례 관련 교서에는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冠禮敎書·配享功臣敎書·宗廟配享敎書·文廟從祀敎書, 중외에 반포하는 교서에는 각종 中外頒敎書로 각각 분류하였고, 이 밖에 교서는 기타로 설정하였다. 분류된 교서에 대하여 현전하는 교서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각종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된 교서를 살펴보고, 각각의 교서에 대하여 정의·제도·수취 과정·문서식·특징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表 V-1> 조선시대 敎書의 傳存 現況

유형	任命	褒賞				儀禮				中外頒布	其他	합계
분류	使命訓諭敎書	功臣敎書	賞加敎書	致仕敎書	賜几杖敎書	納徵·納幣·告期敎書	冠禮敎書	配享功臣敎書	文廟從祀敎書	中外頒敎書	其他	
수량	110	74	13	4	1	3	2	4	5	2	7	225

### 1. 任命 관련 敎書

#### 1.1 使命訓諭敎書

조선시대에 사명훈유교서는 국왕이 한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관원에게 임명된 사실을 알리는 使命의 내용과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訓諭의 내용으로 내려주는 교서이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국왕이 觀察使·留守·統制使·統禦使 등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가장 많이 발급되었다. 먼저 사명훈유교서의 시행과 전존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관원과 수취 과정, 그리고 문서식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使命訓諭敕書의 시행과 傳存

고려시대에 국왕이 지방의 관원에게 使命과 訓諭의 내용으로 교서를 발급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사명훈유교서와 관련해서 『고려사』 「百官志」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388년(창왕 1) 8월에 창왕은 각 道에 파견하는 按廉使의 품계가 낮기 때문에 都觀察黜陟使로 고치고 兩府의 대신을 임명하였으며, 교서와 斧鉞을 내려주어 파견하였다.<sup>173)</sup> 이를 통해 당시 국왕은 도관찰출척사를 임명할 때에 부월과 함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국왕은 都統處置使·都宣撫巡察使·都巡問察理使·都觀察使·都宣撫處置使·都體察使 등과 같이 국왕의 使命을 받는 관원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1396년(태조 5) 12월에 태조는 一歧島와 對馬島를 공격할 때에 門下右政丞 金士衡을 五道兵馬都統處置使에 임명하면서 아울러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sup>174)</sup> 이후 1397년(태조 6) 12월에 東北面都宣撫巡察使 鄭道傳,<sup>175)</sup> 1398년(태조 7) 1월에 西北面都巡問察理使 崔永洙,<sup>176)</sup> 1398년(태조 7) 8월에 忠淸道都觀察使 河崙과 京畿左道觀察使 李廷備,<sup>177)</sup> 1410년(태종 10) 6월에 東北面都宣撫處置使 柳廷顯,<sup>178)</sup> 1461년(세조 7) 11월에 平安黃海道都體察使 申叔舟에게 각각 사명훈유교서와 鈇鉞를 내려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179)</sup> 그러나 조선 초기에 사명훈유교서가 내려진 都統處置使·都宣撫巡察使·都巡問察理使·都宣撫處置使 등의 관직은 관직 제도가 점차 정비됨에 따라서 세종대 이전에 모두 폐지되었다.

173) 『高麗史』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敕書斧鉞以遣之.

174) 『太祖實錄』 5년(1396) 12월 3일(丁亥): 以門下右政丞金士衡爲五道兵馬都統處置使, 以藝文春秋館大學士南在爲都兵馬使, 中樞院副使辛克恭爲兵馬使, 前都觀察使李茂爲都體察使, 聚五道兵船, 擊一歧·對馬島. 將行, 上出南門外餞之, 授士衡鈇鉞敕書, 賜鞍馬·毛冠·甲·弓矢·藥箱, 賜在·茂·克恭各毛冠·甲·弓矢. 敕書曰, 自古王者, 常以撫綏中外爲務. … 是用命爲諸道兵馬都統處置使, 授以節鉞, 佐以同列, 廣置僚案, …

175) 『太祖實錄』 6년(1397) 12월 22일(庚子): 以奉化伯鄭道傳, 爲東北面都宣撫巡察使. 敕曰, 予以否德, 承祖宗積累之德, 奄有東方, 六年于茲, … 卿學通古今, 才兼文武, 一代典章, 由卿制作. 今命卿爲東北面都宣撫巡察使, 卿其往也, 凡所以奉安園陵者, 悉從盛典, 舉行無遺, 繕完城堡, 以安居民, 量置站戶, …

176) 『太祖實錄』 7년(1398) 1월 17일(乙丑): 上遣前司水監朴有孫, 賜西北面都巡問察理使崔永洙敕書鈇鉞, 仍賜醢.

177) 『太祖實錄』 7년(1398) 8월 2일(乙巳): 坐西涼亭, 以敕書鈇鉞, 親授忠淸道都觀察使河崙·京畿左道觀察使李廷備.

178) 『太宗實錄』 10년(1410) 6월 1일(丙申): 以柳廷顯判恭安府事兼判義勇巡禁司事, 仍命爲東北面都宣撫處置使, 金南秀吉州道都安撫察理使, 河敬復慶源兵馬使, 崔閔德鏡城兵馬使, 金加勿爲護軍. 賜廷顯斧鉞敕書以遣之. 敕曰, 邊鎮, 國之保障, 豈敢致爲憑陵. 相臣, 君之股肱, 茲令得專處置. … 惟卿秉心堅確, 威聲夙著, 命卿爲東北面都宣撫處置使. … 於戲. 非威無以制敵, 非惠無以輯民, 惟威惟惠, 用集厥功.

179) 『世祖實錄』 7년(1461) 11월 25일(辛酉): 上引見右副承旨金謙光問平安道事, 召左議政申叔舟·南陽府院君洪達孫·楊山君楊汀·禮曹判書洪允成·兵曹判書金師禹等議之, 命叔舟爲平安·黃海道都體察使, 授敕書. 其書曰, 以卿爲平安·黃海道都體察使, 兩道觀察使·節制使以下如有(達) [達] 卿節度, 卿宜軍法從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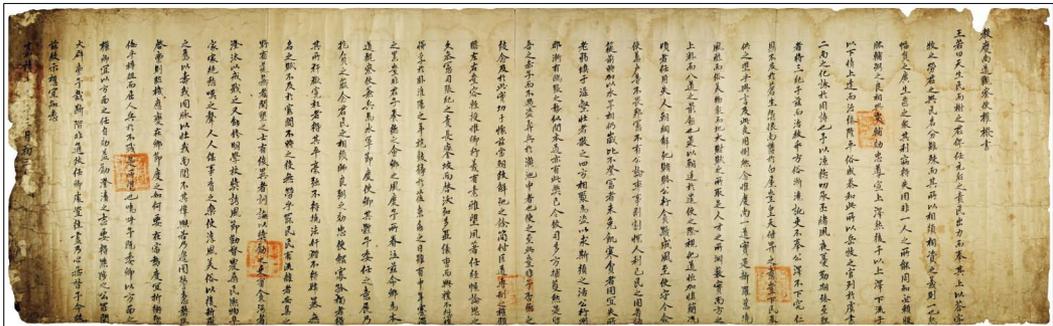
조선시대 국왕은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觀察使·留守와 각 지역의 군사를 통솔하는 統制使·統禦使 등을 임명할 때에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1392년(태조 1) 9월에 태조는 각 도에 按廉使를 임명할 때에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sup>180)</sup> 안렴사가 몇 차례 변화를 거쳐 관찰사로 개칭된 후인 1430년(세종 12) 12월에 세종은 태조가 시행하였던 제도를 계승하여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할 때에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sup>181)</sup> 이후 조선 후기까지 국왕은 각 도의 관찰사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으며, 『승정원일기』에서는 1894년(고종 31) 11월 7일에 황해도관찰사 趙熙一와 1895년(고종 32) 1월 17일에 강화유수 申正熙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 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182)</sup>

조선시대 국왕이 내려준 사명훈유교서 가운데 현재까지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명훈유교서는 총 110점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사명훈유교서는 1497년(연산군 3)에 충청도관찰사 權柱 사명훈유교서이다. 권주의 사명훈유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교서의 문서식과 비교해보면,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結辭가 없고 ‘경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旣食하는 근심을 풀어달라(卿體予意以紓旣食之虞)’로 끝맺고 있다. 이것은 조선 초기 사명훈유교서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권주의 사명훈유교서 다음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사명훈유교서는 1538년(중종 33)에 경상도관찰사 權機 사명훈유교서로 ‘王若曰’과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문서식과 「施命之寶」이 安寶된 전형적인 양식의 사명훈유교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명훈유교서의 문서 양식은 조선 후기까지 발급되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 발급된 1890년(고종 27)에 충청도관찰사 宋世憲 사명훈유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0) 『太祖實錄』 1년(1392) 9월 11일(己丑): 分遣諸道按廉使. 教京畿左道左諫議大夫李文和·右道三司左丞李舉曰, … 教楊廣道禮曹典書趙璞·慶尙道司憲中丞沈孝生·全羅道戶曹典書金希善·交州江陵道大將軍直門下鄭擢·西海道司農卿鄭當等曰, …

181) 『世宗實錄』 12년(1430) 12월 16일(壬午): 上曰, 欲於差遣各道監司之時, 倣太祖之良法, 授教書以遣, 已令立草, 時未議于大臣矣. 贊成許稠等皆曰, 可.

182) 『承政院日記』 고종 31년(1894) 11월 7일(己卯) ; 고종 32년(1895) 1월 17일(己丑).



- |  |  |
|--|--|
| <p>(01) 教慶尚道觀察使權機發書</p> <p>(02) 王若曰 天生民而樹之君 俾任元后之責 民出力而奉其上 以答字</p> <p>(03) 牧之勞 君之與民 名分雖殊 而其所以相須相資之義則一也 然</p> <p>(04) 幅員之廣 生齒之衆 其利病得失固非一人之所能周知 必賴股</p> <p>(05) 肱輔弼之良相與夾輔効忠 導宣上澤 然後 于以上澤下流 于</p> <p>(06) 以下情上達 而治臻隆平 俗成泰和 此所以岳牧之官 列於虞書</p> <p>(07) 二南之化 詠於周詩也 予以涼德 叨承丕緒 夙夜憂勤 期臻至理</p> <p>(08) 者 將三紀于茲 而治教乖方 俗漸澆訛 吏不奉公 澤不下究 仁</p> <p>(09) 恩不及於蒼生 怨恨尚鬱於白屋 豈皇天付畀之意 豈下民奉</p> <p>(10) 供之望乎 興言及此 良用惻然 念惟慶尚一道 實是新羅舊境</p> <p>(11) 風醇而俗美 物衆而地大 財賦之所取足 人才之所淵藪 實南方之</p> <p>(12) 上游 而八道之最鉅也 是以朝廷於遣使之際 視他道 恒加慎簡 況</p> <p>(13) 頃者 任用失人 朝綱鞠弛 賄賂公行 貪黷成風 至使守令貪</p> <p>(14) 使萬戶等 不畏邦憲 不有公論 專事剝削 悅人利己 民之困苦 倍</p> <p>(15) 蓰前時 加以水旱相仍 歲比不登 富者未免飢寒 貧者固且失所</p> <p>(16) 老弱填于溝壑 壯者散之四方 相聚爲盜 以求斯須之活 公行州</p> <p>(17) 郡 漸有騷擾之勢 似聞本道 亦有此弊 已令攸司 多方捕獲 然是皆</p> <p>(18) 吾之赤子 而不過盜弄兵於蒿池中者也 使之至此 豈非予否德之</p> <p>(19) 致 念及於此 實切于懷 茲當朝政解弛之餘 簡付巨道專制之權 顧</p> | <p>(20) 瞻左右 豈容輕授 惟卿 行義有素 雅望夙著 任經幄論思之</p> <p>(21) 久 參憲司張紀之責 長鑿坡而啓沃弘多 亞轡書而典禮不愆 愷</p> <p>(22) 悌孚於卧淮陽之年 袍鼓靜於苜蓿京兆之日 雖有中年蹇滯</p> <p>(23) 之累 豈非君子養德之會 卿之風度 予所眷注 茲命卿爲本</p> <p>(24) 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卿其體予委任之意 展乃</p> <p>(25) 抱負之蘊 念君民之相須 節良弼之效忠 使緝寡孤獨者 得</p> <p>(26) 其所 狎賦冤枉者 得其平 豪強不得撓法 奸猾不得肆暴 無</p> <p>(27) 名之賦 不及於窮閭 不時之役 無勞乎罷民 民有流離者 安集之</p> <p>(28) 野有荒蕪者 開墾之 士有俊異者 訓誨以獎勵之 吏有貪污者</p> <p>(29) 澄汰以戒戢之 又能修明學校 獎誘農節 勸督農桑 民熙物阜</p> <p>(30) 家家絕愁嘆之聲 人人保事育之樂 使淳風美俗 以復新羅</p> <p>(31) 之舊 以壽我國脉 以壯我南關 不其偉歟 若乃邊圉警急 勢阻</p> <p>(32) 啓稟 則臨機應變 在卿節度之如何 要在審勢度宜 折衝禦</p> <p>(33) 侮乎櫛俎 而屈人兵於不戰 是所望也 嗚呼 予既委卿以方面之</p> <p>(34) 權 卿宜以方面之任自效 益勸登清之志 要得黜陟之公 罪關</p> <p>(35) 大辟 稟予裁斷 階非通政 任卿處置 往盡乃心 無替予命 故</p> <p>(36) 茲教示 想宜知悉</p> <p>(37) 嘉靖十[七年]三月初三日</p> |
|--|--|

<圖 V-1> 1538년(중종 33) 慶尚道觀察使 權機 使命訓諭教書183)

## 2) 使命訓諭教書의 수취자

조선시대에 국왕이 내린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관원은 각 道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지방 관원인 觀察使, 開城府·江華府·廣州府·水原府의 留守,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三道水軍統制使·三道水軍統御使, 軍務와 관련에서 삼정승이 겸직하였던 都體察使 등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사명훈유교서의 수취자인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도체찰사 등의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관찰사는 고려시대에 안렴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려시대 안렴사에 대해서는 『고려사』 「百官志」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83) 1538년(중종 33), 28.5×84.0cm, 奉化 安東權氏 冲齋 權機 宗家 所藏.

按廉使. 方面을 專制하여 黜陟을 행하였으니, 곧 국초에 節度使의 임무이다. 顯宗 3년(1012)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후에 按察使를 두었다. 文宗 18년(1064)에 안찰사를 고쳐서 都部署로 삼았다. 睿宗 8년(1113)에 다시 도부서를 고쳐서 안찰사로 삼았다. 忠烈王 2년(1276)에 안찰사를 고쳐서 按廉使로 삼았다. 24년(1298)에 충선왕이 즉위하자 경상·전라·충청의 세 道는 땅이 넓고 일이 복잡하다 하여 按廉副使를 더 두었고, 交州·西海의 두 道는 땅이 좁다 하여 副使를 두지 않았다. 또 東界安集使를 폐지하고, 交州按廉使가 겸직하였다. 昌王(1388) 8월에 안렴사의 품계가 낮다 하여 안찰사를 고쳐서 都觀察黜陟使로 삼았고 兩府의 大臣을 임명하였으며 敎書와 斧鉞을 내려서 파견하였다. 恭讓王 원년(1389)에 京官을 口傳으로 별도로 제수하는 것을 비로소 혁파하여 그 임무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2년(1390)에는 각 道에 觀察使經歷司를 설치하였다. 4년(1392)에 각 도의 관찰사를 폐지하고 다시 안렴사를 두었다.<sup>184)</sup>

『고려사』 「백관지」를 살펴보면, 고려 초기에 각 지방에 파견된 節度使가 추후에 按察使·都府署·都觀察黜陟使 등으로 변경된 후에 고려 말에 최종적으로 안렴사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이 개국한 후에는 고려의 관직 제도를 수용해서 각 道에 안렴사를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안렴사는 조선 초기에 관직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명칭이 몇 차례 변화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393년(태조 2) 9월에 태조는 안렴사를 폐지하고 관찰출척사라고 하였고,<sup>185)</sup> 1401년(태종 1) 1월에 태종은 각 道의 도관찰출척사를 안렴사로 변경하였으며,<sup>186)</sup> 같은 해 11월에 사간원의 건의에 따라 안렴사를 폐지하고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다.<sup>187)</sup> 1402년(태종 2) 1월에 태종이 도관찰출척사를 복구한 기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각 道에 관찰사를 파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188)</sup> 최종적으로 1466년(세조 12) 1월에 세조는 관직 제도를 개정할 때에 도관찰출척사를 관찰사로 개칭하였다.<sup>189)</sup>

조선시대에 관찰사가 부임한 각 道의 명칭은 各道의 界首官 邑名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道의 명칭이 정착되었고, 이후 도내 계수관이나 大邑의 邑號가 陞降되는 경우에는 道의 명칭까지도 함께 변경되었다.<sup>190)</sup> 道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국왕은 해당 관

184) 『高麗史』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按廉使. 專制方面, 以行黜陟, 卽國初節度使之任. 顯宗三年, 罷節度使, 後置按察使. 文宗十八年, 改爲都部署. 睿宗八年, 復改爲按察使. 忠烈王二年, 改按察使爲按廉使. 二十四年, 忠宣卽位, 以慶尙·全羅·忠清三道地大事劇, 加置按廉副使, 交州·西海兩道地小, 不置副使. 又罷東界安集使, 以交州按廉兼之. 辛昌八月, 以按廉秩卑, 改爲都觀察黜陟使, 以兩府大臣爲之, 賜敎書·斧鉞以遣之. 恭讓王元年, 始革京官口傳別用除授, 以專其任. 二年, 置各道觀察使經歷司. 四年, 罷諸道觀察使, 復按廉使.

185) 『太祖實錄』 2년(1393) 9월 13일(乙卯): 罷按廉, 復觀察黜陟使.

186) 『太宗實錄』 1년(1401) 1월 24일(甲申): 改各道都觀察黜陟使, 爲按廉使.

187) 『太宗實錄』 1년(1401) 11월 7일(辛卯): 復遣觀察使於諸道. 司諫院上疏, 略曰, 諸道巡問節制等使, 皆遣大臣, 而府州之使, 率用嘉善已上官. … 上允之. 若其罷按廉, 而復置觀察使, 則依經濟六典, 更相迭遣.

188) 『太宗實錄』 2년(1402) 1월 20일(癸卯): 復諸道都觀察黜陟使.

189) 『世祖實錄』 12년(1466) 1월 15일(戊午): … 都觀察黜陟使改爲觀察使. …

찰사에게 사명훈유교서를 추가로 발급해서 내려주었다.<sup>191)</sup> 또한 경상도의 경우에는 1519년(중종 14)에 6월에 左道와 右道로 분리되었다가 12월에 다시 통합되었고,<sup>192)</sup> 이후 선조대에도 左道와 右道로 분리·통합되었는데, 좌도와 우도로 분리될 때에는 경상좌도관찰사와 경상우도관찰사에게 모두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sup>193)</sup>

관찰사는 본인의 관직과 함께 해당 지역의 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巡察使와 지방 수령을 兼職하였다. 관찰사의 겸직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겸직의 변화는 사명훈유교서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 전기에 京畿觀察使는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개성부유수를 겸직하였지만, 이후 인조대에 강화부유수, 숙종대에 광주부유수, 정조대에 수원부유수, 고종대 춘천부유수를 각각 추가로 겸직하였다.

<表 V-2> 使命訓諭敎書에 기재된 京畿觀察使의 兼職 변화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관직
1	1626년(인조 4) 8월 16일	仁祖	權盡己	京畿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開城府留守
2	1637년(인조 15) 6월 21일	仁祖	呂爾徵	京畿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開城府江華府留守
3	1759년(영조 35) 5월 12일	英祖	金相福	京畿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開城府留守 江華府留守 廣州府留守 巡察使
4	1801년(순조 1) 1월 29일	純祖	金勉柱	嘉善大夫 京畿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水原府留守 開城府留守 江華府留守 廣州府留守 巡察使
5	1888년(고종 25) 7월 12일	高宗	吳俊泳	京畿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水原府留守 廣州府留守 春川府留守 開城府留守 江華府留守 都巡察使

조선시대에 留守는 1438년(세종 20) 10월에 세종이 開城留後司를 개성부로 변경하고 아울러 留後를 유수로 변경하면서 설치되었다.<sup>194)</sup> 조선 후기에 국왕이 기존에 개

190) 임승표, 「朝鮮時代 賞罰의 邑號陞降制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20~122쪽.

191) 『承政院日記』 영조 11년(1735) 5월 2일(辛丑): 又啓曰, 忠淸道改以公洪道, 全羅道改以全光道, 江原道改以江春道事單子, 既已啓下矣. 監司及兵水使·防禦使, 敎·諭書改書下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192) 『中宗實錄』 14년(1519) 6월 9일(辛未): 以李沆爲慶尙左道觀察使, 文瑾爲右道觀察使.

『中宗實錄』 14년(1519) 11월 30일(庚申): 政院以罷監司久任之法, 有旨于八道曰, … 慶尙道復合爲一道, 遵祖宗久行之制.

193) 1519년(중종 14) 8월 4일: … 分左右, 右道敎書·諭書·發兵符, 左監司下來時賚來, 付昌樂察訪 傳右道也. … (嶺南文化研究院, 『脫草·譯註 在嶺南日記』, 學民文化社, 2006, 161·440쪽)

1592년(선조 25) 6월 1일에 宣祖가 慶尙左道觀察使 金誠一에게 발급한 使命訓諭敎書가 현전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5 - 義城金氏篇 1-, 1989, 153쪽)

194) 『世宗實錄』 20년(1438) 10월 15일(丙寅): 議政府據吏曹呈啓曰, 竊謂昔周成王命周公留後治洛, 留後之名昉於此, 非以是爲稱號也. 開城乃高麗舊都, 今稱留後司, 而官職又稱留後·副留後, 殊無意謂. 稽諸史典,

성부와 함께 강화부·광주부·수원부·춘천부에 추가로 유수를 설치하면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유수가 증가하였다. 유수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627년(인조 5)에 인조는 강화부를 府尹에서 유수로 승격하였고,<sup>195)</sup> 1678년(숙종 4)에 숙종은 강화부유수가 鎭撫使를 겸직하게 하였다.<sup>196)</sup> 1683년(숙종 9)에 숙종은 광주부를 府尹에서 留守로 승격하고 守禦使를 겸직하게 하였다.<sup>197)</sup> 1793년(정조 17)에 정조는 수원부를 府使에서 유수로 승격하였고,<sup>198)</sup> 1802년(순조 2)에 순조는 수원부유수가 摠理使를 겸직하게 하였다.<sup>199)</sup> 1888년(고종 25년)에 고종은 춘천부를 府使에서 유수로 승격하고 鎭禦使를 겸직하게 하였다.<sup>200)</sup> 개성부·강화부·광주부·수원부·춘천부에는 각각 2명의 유수를 두었으며, 2명 중에 1명은 모두 경기관찰사가 겸직하였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가 발급되었으며, 경기관찰사가 겸직하지 않은 五都의 유수에게도 사명훈유교서가 발급되었다.

관찰사와 유수 이외에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관직으로는 統制使·統禦使와 都體察使·都巡察使·巡察使와 海防摠管이 있다. 통제사는 임진왜란 중인 1593년(선조 26)에 설치되어 조선 후기에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였으며, 慶尙右道水軍節度使를 겸직하였다.<sup>201)</sup> 통어사는 1632년(인조 10)에 설치되어 경기·충청·황해도의 수군

唐於東都置留守，宋高宗卽位於應天府，亦於東京置留守，紹興八年，移蹕錢塘，置行宮留守。乞依唐·宋之制，開城留後司，改稱開城府，留後·副留後，改稱留守·副留守。從之。

195) 『仁祖實錄』 5년(1626) 4월 2일(戊戌): 備局啓曰, 江華留守·郎廳, 當建置, 而群議皆曰, 苟非曾經而諳練, 則不可. 以沈悅除授留守, 郎廳則經歷·都事一員, 令該曹極擇差出. 答曰, 還都後差除.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從二品衙門 江華府: 《續》 掌治江都. 《增》 原, 都護府, 光海戊午, 陞府尹, 仁祖朝丁卯, 置留守.

196) 『肅宗實錄』 4년(1678) 10월 17일(甲申): 以江華留守兼鎭撫使. 先是, 尹深建言, 江華與廣州無異, 而獨無密符, 似當變通. 李元禎言, 留守視同內職, 舊無此例. 今別立名號, 如防禦使之例, 始賜密符諭書爲宜. 上命大臣議定其號. 至是乃定.

197) 『肅宗實錄』 9년(1683) 1월 28일(庚午).

『肅宗實錄』 9년(1683) 2월 2일(甲戌): 以申琬爲承旨, 權斗紀爲執義, 黃玠爲副校理, 呂聖齊爲廣州留守.

198)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水原府: 《補》 掌治華城《原》 都護府, 正宗朝癸丑, 置留守, 今移錄.

『正祖實錄』 17년(1793) 1월 12일(丙午): 改號水原府爲華城, 御筆揭額于壯南軒. 陞府使爲留守, 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 置判官一員佐之.

199) 『純祖實錄』 2년(1802) 2월 7일(戊申): … 外營軍制釐正別單. [壯勇外使·行宮整理使一員, 留守兼內營與整理所, 旣已撤罷, 則外使與整理使之名, 竝減下, 依守禦鎭撫管理使例, 以摠理使稱號, 令該曹啓下, …]

200) 『承政院日記』 고종 25년(1888) 4월 19일(庚子): 上命書傳教曰, 關防之重, 所以固屏翰而嚴捍衛, 綢繆之備, 統轄之專, 邦畿以壯, 緩急可恃, 此四都之所由設也. 若其制置之隨宜創始, 名稱之因時變通, 蓋亦屢矣, 而皆相度地宜, 參酌時措而然也. 春川, 乃東北咽喉之最爲要阨, 不可無另置留臺. 鎭禦使, 改以春川府留守兼鎭禦使下批. 畿甸及關東之附近幾邑, 竝使之管攝, 其規例, 一如四都之有屬邑, 諸般制置之方略, 該守臣商確磨鍊, 就議總理大臣稟處.

201)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 宣祖朝, 慶尙道置統制使, 統慶尙·忠清·全羅舟師.

『宣祖修正實錄』 26년(1593) 8월 1일(壬午): 以李舜臣兼三道水軍統制使, 本職如故. 朝議以三道水使, 不相統攝, 特置統制以主之.

을 통솔하였으며, 京畿水軍節度使를 겸직하였다.<sup>202)</sup> 도체찰사·도순찰사·순찰사는 軍務로 국왕의 명을 받는 관직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경우에는 도체찰사, 1품 이하는 도순찰사, 종2품은 순찰사로 불리었다.<sup>203)</sup> 도체찰사로 임명된 관원에게 국왕이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는데, 이러한 사례로 임진왜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도체찰사로 임명된 柳成龍에게 발급된 사명훈유교서가 있다. 또한 도순찰사·순찰사는 관찰사가 겸직하였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海防總管은 1884년(고종 21) 8월부터 사명훈유교서가 내려졌는데, 당시 고종은 해방총관이 경기·충청·황해도와 수군과 육군의 군무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방총관에게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와 밀부를 내려줄 것을 명하였다.<sup>204)</sup>

지금까지 살펴본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관원은 국왕이 각종 법전에 수록된 추천 과정을 거쳐서 임명하였다. 관찰사는 매년 1월에 의정부와 호·예·병·형·공조의 당상관 및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 從二品<sup>205)</sup>의 時官·散官 중에서 각각 세 사람씩 추천하였다.<sup>206)</sup> 개성부·강화부·광주부·수원부의 우수와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찰사는 의정부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sup>207)</sup> 관찰사와 우수로 추천한 후보자의 명단이 승정원에 도착하면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入啓한 후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朝報에 내었으며, 최종적으로 해당 관직에 임명되었다.<sup>208)</sup>

202) 『大典會通』 「兵典」 外官職: 《續》 … 仁祖朝, 諸道置鎮營將兼討捕使, 京畿·江原·咸鏡·平安道置防禦使以守令·邊將兼, 京畿置統禦使, 統京畿·黃海·忠清舟師.

『仁祖實錄』 10년(1632) 9월 19일(甲寅): 知中樞府事鄭應聖上疏曰, 江都, 卽京城之保障. 脫有虜賊長驅之患, 則舟楫不備, 何策可濟. 請依前規, 復立京江舟師, 定一武將, 整頓待變, 則必無蒼黃顛倒之事. 且以京畿水使, 稱統禦之號, 兼制公清·黃海舟師, 則可能相須而濟矣. … 答曰, 依啓. 赴京船亦令移隸於江都.

203)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續》 … 宰相以軍務奉命者, 隨品稱號. [議政則都體察使, 一品以下則都巡察使, 從二品則巡察使, 三品則察使.]

204) 『承政院日記』 고종 21년(1884) 8월 26일(丁酉): 傳于金文鉉曰, 海防總管, 既領三道西沿水陸軍務, 體任非輕, 不可無信驗, 密符及教諭書傳授, 造給兵符, 以重節制, 著爲定式.

205) 觀察使는 원칙적으로 從二品 이상인 자를 임명하고 있었으나 正三品の 通政大夫가 관찰사에 임명된 경우도 있고, 從一品인 崇祿이나 崇政大夫가 임명된 예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從二品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다.(李存熙,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1990, 92쪽)

206) 『經國大典』 「吏典」 薦舉: 每年春孟月, 議政府·六曹堂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 各薦堪爲觀察使·節度使者. 『銀臺便攷』 「吏房攷」 守令邊將薦舉: 每年春孟月, 議政府·六曹堂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 各薦堪爲觀察使節度使者. [通編]

『六典條例』 「吏典」 議政府 總例: 每歲首議東西壁, 議薦觀察使·節度使. [毋過三人○有故則頗稟]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觀察使·節度使薦, 隨其入來, 入啓, 出朝報. [每年正月內, 議政府·六曹·兩司, 各薦三人, 而吏曹不薦觀察使, 兵曹不薦節度使]

『兩銓便攷』 「東銓」 薦舉: 每年春孟月, 議政府·戶禮兵刑工曹·兩司, 各薦堪爲觀察使者.

207) 『大典會通』 「吏典」 薦舉: 《續》 吏·兵·戶曹判書, 及兩都留守·兩界觀察使·廣州 [《補》留守] 義州府尹·水原 [《補》留守] 東萊府使, 廟堂薦擬. [兵批之兩局大將·守禦使·摠戎使·統制使·咸鏡北道·平安道兵使同.]

『銀臺條例』 「吏攷」 遷選: 三都 [廣州·水原·開城] 留守·兩界 [平安·咸鏡] 監司·義州府尹·東萊府使, 政府備三望受點, 南北兵使·平安兵使·東萊水使·會寧江界府使·濟州牧使, 武府備三望受點.

이러한 임명 과정을 거친 후에 국왕은 관찰사·유수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먼저 임명장인 告身을 내려주었다. 이어서 국왕은 해당 지역을 잘 다스리라는 내용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 주었고, 아울러 密符諭書와 밀부유서에 기재된 숫자의 密符 우측 1개를 함께 내려주었다.<sup>209)</sup> 이 때 교서제술관이 사명훈유교서의 본문을 제술하고 교서서사관이 書寫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告身을 내려주고 며칠 후에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내려주었다.<sup>210)</sup>

### 3) 使命訓諭教書의 수취 과정

관찰사·유수 등이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과정은 궁궐에서 수취하는 경우와 관원을 파견하여 부임지에서 수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명훈유교서를 궁궐에서 수취하는 경우는 관찰사·유수 등에 임명된 관원이 궁궐에서 국왕에게 辭朝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였다. 辭朝는 ‘朝辭’라고도 불리었는데, 이것은 국왕이 지방관에 새로 임명된 관원을 인견할 때에 해당 관원이 국왕에게 숙배하고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을 뜻한다. 관찰사·유수 등은 ‘朝辭를 하지 말고 바로 부임하라(除朝辭赴任)’는 국왕의 명령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 내에 국왕에게 辭朝를 거행하였다. 관찰사의 辭朝 기한은 전임 관찰사가 罷職일 경우에는 20일, 拿推일 경우에는 15일, 身故인 경우에는 10일을 기한으로 하였고,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sup>211)</sup>

조선 전기에 관찰사 등이 국왕에게 辭朝할 때에 국왕은 관찰사를 인견하고 교서와 鈇鉞을 내려주었다. 예를 들어 1398년(태조 7) 8월에 태조는 忠淸道都觀察使 河崙과 京畿左道觀察使 李廷輔에게 교서와 부월을 친히 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212)</sup> 1430년(세종 12) 윤12월에 예조에서 세종에게 관찰사가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과정을

208) 『銀臺條例』 「吏攷」 遷選: 觀察使·節度使, 政府·六曹堂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 每年正月, 各薦三人. 吏曹只薦節度使, 兵曹只薦觀察使, 隨到入啓頒布.

『銀臺便攷』 「吏房攷」 守令邊將薦舉: 觀察使·節度使薦, 隨其入來, 卽爲入啓, 啓下後, 出朝報. [每年正月內, 議政府·六曹·司憲府·司諫院薦進, 而吏曹只薦節度使, 兵曹只薦觀察使.]

209)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5~37쪽.

210) 노인환, 위의 논문, 2009, 51~57쪽.

211) 『銀臺便攷』 「吏房攷」 監司: 監司罷職代, 二十日, 拿推代, 十五日內辭朝. [己未二月十八日改定式]

『大典會通』 「吏典」 外官職: 《續》 … 觀察使拿來代, 限十五日, 身故代, 限十日辭朝, 過限者論責, 節度使·邊守同. 《增》 京畿觀察使亦二周年計限.

212) 『太祖實錄』 7년(1398) 8월 2일(乙巳): 坐西涼亭, 以教書鈇鉞, 親授忠淸道都觀察使河崙·京畿左道觀察使李廷輔.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관찰사가 국왕에게 배사한 후에 代言이 교서를 받들어 관찰사에게 주면 관찰사는 꿰어앉아서 교서를 받았고, 교서를 從者에게 주고 나서 四拜禮를 거행하고 다시 교서를 받들고 나왔다.<sup>213)</sup>

조선 후기에는 관찰사가 국왕에게 辭朝하는 과정과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관찰사는 국왕에게 辭朝하기 위해 국왕이 거처하는 곳에 入侍한 후에 국왕 앞에 進伏하였다. 국왕은 부임한 지역을 잘 다스리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 말하였고, 관찰사는 국왕의 당부에 대해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국왕과 관찰사가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국왕은 함께 入侍한 승지에게 교서를 宣讀할 것을 명하였고, 승지가 교서를 선독한 후에 교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국왕은 宣諭하라는 명을 내렸고, 입시한 승지가 宣諭를 읽었으며,<sup>214)</sup> 국왕이 別諭하라는 명이 있으면 추가로 승지가 別諭를 읽었다. 宣諭를 끝낸 후에 국왕은 密符諭書와 密符를 내려주었으며, 아울러 節鉞·弓矢·藥物 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에 국왕이 관찰사에게 먼저 물러날 것을 명하면, 관찰사가 나가면서 辭朝하는 과정이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이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 등이 궁궐에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과정은 『승정원일기』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797년(정조 21) 4월 15일에 정조는 李燁를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喬桐府使에 임명하였고,<sup>215)</sup> 같은 날에 승정원에서는 이엽에게 내리는 교서를 정조에게 入啓하고 재가를 받았다.<sup>216)</sup> 다음 날인 4월 16일에 이엽이 정조에게 辭朝를 거행하였는데, 이 때 정조는 좌승지 金履翼에게 교서를 宣讀할 것과 宣諭할 것을 명하였으며, 李燁에게 부임지에 가서 잘 다스릴 것을 당부하였다.<sup>217)</sup> 또한 정조는 備忘記를 통해 李燁에게 長弓 1張·長箭 1部·片箭 1部·筒兒 1箇를 賜給하였다.<sup>218)</sup>

213) 『世宗實錄』 12년(1430) 윤12월 16일(壬子): 禮曹啓, 觀察使拜辭後, 代言奉教書授使臣, 使臣跪受, 以授從者, 行四拜禮, 還奉教書出, 其外方各官迎接禮, 一依《元典》格例, 從之.

214) 宣諭는 지방의 관직에 임명되어 내려가는 관원에게 국왕이 당부하는 글을 승정원의 승지가 읽어주는 것이다. (이강욱 옮김, 앞의 책, 2012, 456쪽)

『銀臺條例』 「工攷」 宣諭: 監司·兵水使·守令·邊將, 下直日, 皆聽諭於本院, 而 [入侍時, 稟旨, 楹外舉行.] 違者, 道·帥臣請推, 守令以下請罪. [曾經政府堂上及承旨人, 勿聽, 而入侍時, 依例爲之.]

215)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4월 15일(乙酉): 兵曹口傳政事, 以李燁爲京畿水使.

216)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4월 15일(乙酉): 教京畿水使李燁書. 王若曰, 掌一面之關防, 爲任最重, 統三路之舸艦, … 茲授卿以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喬桐府使, 卿其克體予意, 勉竭乃心, … 於戲, 宣壯圖於仗鉞, 壁壘之光彩改觀, 弛宸憂於聽鼙, 海門之風波不競. 故茲教示, 想宜知悉. 知製教李翼晉製進.

217)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4월 16일(丙戌): 是時喬桐府使李燁辭朝, 命履翼宣教書, 又命宣諭, 仍教燁曰, 下往善爲之也. 命先退.

218)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4월 16일(丙戌): 備忘記, 喬桐水使李燁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조선 후기에 관찰사 등이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할 때에 승정원에 직접 가서 수취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洪忠道觀察使 金文淳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82년에 (정조 6) 8월 18일에 정조는 金文淳을 洪忠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山府使에 임명하였고,<sup>219)</sup> 8월 20일에 승정원에서는 金文淳에게 내리는 교서를 정조에게 入啓하고 재가를 받았다.<sup>220)</sup> 이후 8월 22일에 金文淳은 入侍하여 정조에게 朝辭를 하였는데, 이 때 정조는 金文淳에게 승정원에 가서 교서를 받으라고 하였다.<sup>221)</sup>

관찰사·유수 등은 국왕에게 辭朝를 하고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수취한 후에 부임하는데, 이 때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부임 행렬의 앞부분에 세우고 이동하였다. 『平生圖』에서 관찰사와 유수의 부임을 살펴보면 부임 행렬의 앞부분에 붉은 색 원통을 메고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붉은 색 원통은 각각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넣은 敎書筒과 諭書筒이다.(〈圖 V-3〉 참조) 관찰사와 유수가 국왕의 명령이 담긴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앞에 세운 부임 행렬은 국왕의 명령에 대한 위엄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찰사와 유수가 지방을 통치하는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로 볼 수 있다.

〈圖 V-2〉 1785년(정조 9) 三道統制使 金永綬 使命訓諭敎書와 敎書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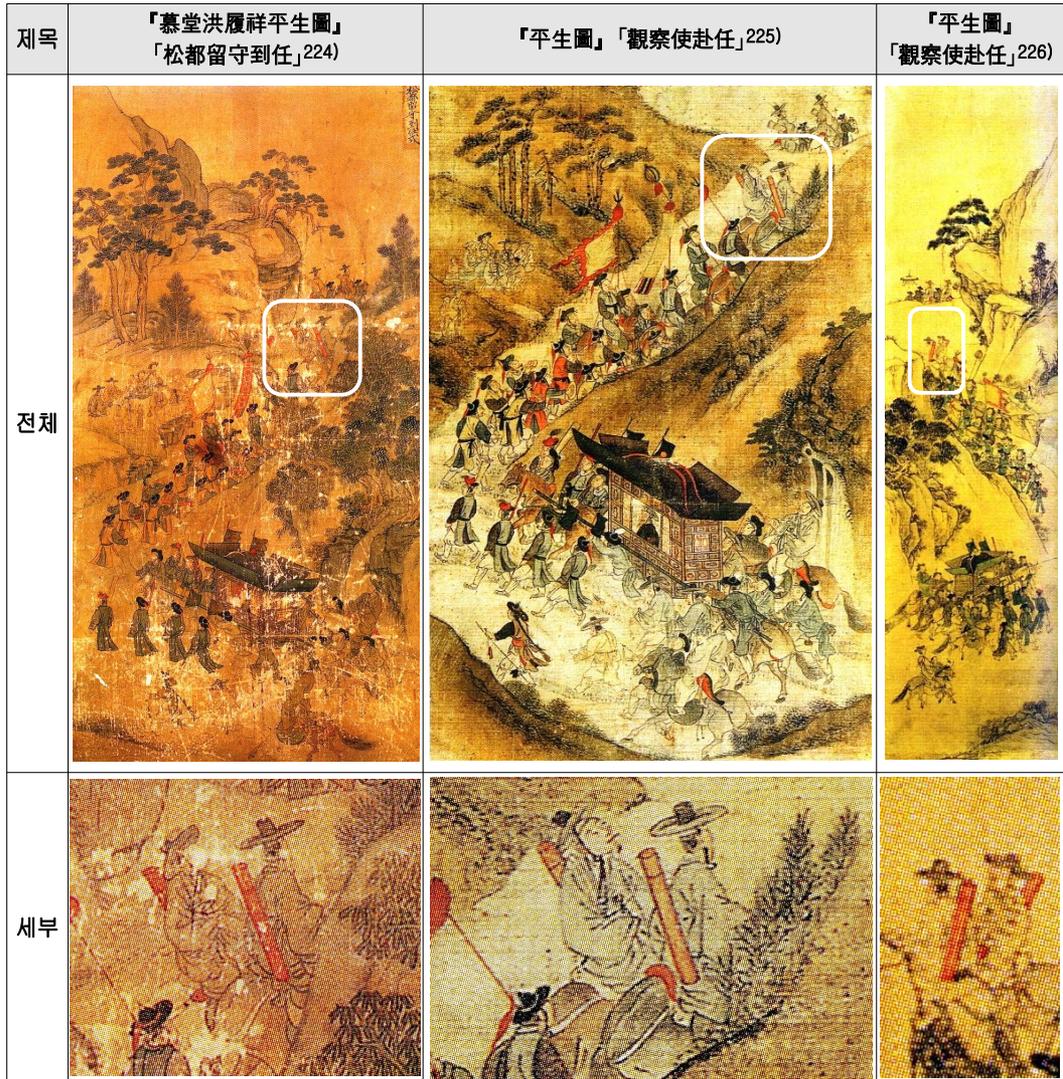
219)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8일(壬午): 有政. 吏批, … 金文淳爲洪忠監司, …

220)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20일(甲申): 敎洪忠監司金文淳書, 王若曰, 國家有用人之規, 固宜難慎, … 茲授卿以洪忠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山府使, 卿其祇膺寵章, 克懋治績, … 於戲, 都界五十州生靈, 想卿風采, 須盡千百計區劃, 弛予宵憂, 故茲教示, 想宜知悉. 知製敎沈樂洙製進.

221)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22일(丙戌): 又命書榻敎曰, 洪忠監司入侍. 賤臣承命出, 與金文淳偕入進伏. 上曰, 本道年事, 已致大歎, 人心尚未底定, 是可悶也. … 文淳曰, 臣才疎, 叨此重任, 前頭債事, 自料必至, … 上曰, 敎書, 往受政院也. 命讀宣諭別諭訖. 命退.

222) 1785년(정조 9), 안동김씨 통제사공 증중회 所藏.

<圖 V-3> 觀察使·留守의 赴任 行列과 使命訓諭教書·密符諭書



223) [1785년(정조 9)], 길이 127.0cm 직경 11.5cm, 안동김씨 통제사공 증중회 所藏.

224) 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2002, 151쪽.

傳 金弘道, 18세기, 지본담채, 122.7×47.9cm, 8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所藏(덕수5768).

225) 국립국악원, 위의 책, 2002, 157쪽.

傳 金弘道, 19세기, 견본채색, 53.9×35.2cm, 8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所藏(덕수1681).

226) 국립국악원, 위의 책, 2002, 160쪽.

필자미상, 19세기, 지본담채, 130.0×36.0cm, 10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所藏(본관11267).

이어서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가 부임지에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하는 경우는 국왕이 관찰사·통제사·통어사에게 除朝辭赴任의 명령을 내렸을 경우이다. 除朝辭赴任은 기존에 외관직에 있는 관원이 인근 지역의 외관직에 임명되었을 때에 국왕에게 辭朝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바로 부임지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외관직에 있는 관원이 국왕에게 辭朝할 때에 도리가 멀고 공무가 긴급할 경우에 해당되었다.<sup>227)</sup> 외관직 가운데 관찰사가 除朝辭赴任하는 경우는 조선 전기에는 관찰사의 辭朝를 당연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사례가 적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몇 가지 사유로 인해 관찰사가 除朝辭赴任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관찰사의 除朝辭赴任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예를 들어 1528년(중종 23) 9월에 평안도관찰사 許磁이 留任한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관찰사가 除朝辭赴任하는 것은 옛날에 전례가 없다고 중종에게 아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228)</sup> 또한 1547년(명종 2) 6월에는 이조에서 함경도감사 曹光遠의 除朝辭赴任을 청한 것에 대해 의정부에서 관찰사가 교서와 節鉞이 없이 부임하는 것은 事體가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다.<sup>229)</sup> 그러나 실제로 1473년(성종 4) 9월에 鄭文焜는 평안도절도사에서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될 때에 신임 절도사와 교대한 후에 평안도관찰사에 除朝辭赴任하였다.<sup>230)</sup>

조선 후기에 새로 임명된 관원은 흉년이 든 지역에 구휼이 시급한 경우나 농번기에 빨리 부임하기 위해 국왕에게 朝辭를 하지 않고 바로 부임하였다. 예를 들어 1660년(현종 1) 10월에 북병사 權堦가 함경감사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영의정 정태화가 현종에게 監司는 본래 除朝辭赴任하는 규정이 없으나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곧바로 부임할 것을 아뢰었고, 이에 현종은 윤허하였다.<sup>231)</sup> 1732년(영조 8) 9월에는 경상감사 金始炯에게 경상도의 흉년으로 진휼이 시급하므로 除朝辭赴任하게 하였고,<sup>232)</sup> 1722

227) 『大典會通』 「吏典」 除授: 《續》 … 外官之移擬他職者, 道里遙遠, 官事緊急, 則啓稟除朝辭赴任. [餘勿輕許.]

228) 『中宗實錄』 23년(1528) 9월 8일(丁丑): 政府啓曰, 平安道觀察使許磁, 仍爲留任事, 初以爲無妨矣, 臣等更思之, 大臣受重任, 出使外方, 義當復命. 況其觀察使, 除朝辭赴任, 古無例也. 今許磁以大臣, [右贊成] 受大事, 必有面達軍機之事, 亦有與朝廷相議之事. 使之留任, 而不許上來, 似乎未當也. 傳曰, 如啓.

229) 『明宗實錄』 2년(1547) 6월 27일(丙午): 舍人朴公亮, 以三公意啓曰, 觀察使新除, 則教書·節鉞親受而去. 而故守令有迎命等禮. 今曹光遠爲咸鏡道監司, 而吏請除朝辭赴任, 無教書·節鉞而赴任. 於事體不當, 請上來肅拜後, 催促赴任. 傳曰. 可.

230) 『成宗實錄』 4년(1473) 9월 30일(戊午): 諭平安道節度使鄭文焜曰, 今以卿移授觀察使, 防戍諸事, 依舊措置, 勿致疏虞, 待新節度使河叔溍下去, 交付後, 除朝辭赴任.

231) 『顯宗改修實錄』 1년(1660) 10월 19일(辛丑): … 太和曰, 北兵使權堦, 移拜咸鏡監司. 監司則本無除朝辭赴任之規, 而當此凶歲, 事異常規, 宜令直爲赴任, 以除往來之弊矣. 上許之. …

232) 『承政院日記』 영조 8년(1732) 9월 18일(壬寅): 又以備邊司言啓曰, 新除授慶尙監司金始炯, 方在本道慶州任所矣. 方伯事體, 雖與守令有異, 自前以道內守令陞拜者, 多有除朝辭赴任之例, 而今年本道穡事凶歉, 營賑爲急, 且此時夫馬之弊, 不可不慮, 新監司金始炯, 使之除朝辭往赴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년(경종 2) 3월에 경상감사 俞命凝에게 ‘方農’의 시기이므로 除朝辭赴任하게 하였다.<sup>233)</sup>

흉년이나 농번기 이외에 수령이나 병마절도사가 같은 道の 관찰사에 임명된 경우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가 통제사·통어사에 임명된 경우에 국왕은 除朝辭赴任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1682년(숙종 8) 2월에 李世華가 평안병사에서 평안감사에 임명된 경우,<sup>234)</sup> 1710년(숙종 36) 5월에 俞命弘이 永川郡守에서 경상감사에 임명될 경우,<sup>235)</sup> 1785년(정조 9) 12월에 金永綬가 洪忠兵使에서 통제사로 임명된 경우,<sup>236)</sup> 1886년(고종 23) 3월에 閔敬鎬가 황해병사에서 통어사에 임명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37)</sup>

관찰사·통제사·통어사가 除朝辭赴任할 때에는 먼저 국왕에게 除朝辭赴任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조와 병조에서 啓目を 올리거나 비변사에서 草記를 올린 후에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sup>238)</sup> 이어서 승정원의 승지가 사명훈유교서와 密符諭書의 下送과 密符를 인수인계하는 방법에 대해 국왕에게 아뢴 후에 국왕의 윤허를 받았다.<sup>239)</sup>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윤허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有旨를 발급해서 관찰사·통제사·통어사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승정원의 院吏가 부임지에 가서 관찰사·통제사·통어사에게 사명훈유

233) 『承政院日記』 경종 2년(1722) 3월 27일(壬子): 金致龍, 以備邊司言啓曰, 新除授慶尙監司俞命凝, 方在星州任所矣. 監司事體, 雖與守令有異, 自前以道內守令陞拜者, 有除朝辭赴任之例, 而卽今正當方農之節, 夫馬之弊, 亦不可不慮, 使之除朝辭赴任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234) 『承政院日記』 숙종 8년(1682) 2월 29일(丁未): 晝講入侍時, 參贊官李師命所啓, 平安監司李世華, 自兵使移拜監司者, 欲除迎送之弊也. 日者領議政金壽恒請對入侍時, 曾以此意, 有所陳達, 而其時有除朝辭赴任之命矣. 敎諭書·密符, 今將下送, 何以爲之. 敢此稟達. 上曰, 以兵使移監司者, 安州與平壤不遠, 故欲除迎送之弊矣. 除朝辭赴任之意, 出於舉行條件, 可也

235) 『承政院日記』 숙종 36년(1710) 5월 25일(己丑): 許玠以備邊司言啓曰, 新除授慶尙監司俞命弘, 方在本道永川郡任所矣, 監司事體, 雖與守令有異, 自前以道內守令陞拜者, 有除朝辭赴任之例, 而卽今正當劇農之節, 夫馬之弊, 亦不可不慮, 使之除朝辭往赴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236) 『承政院日記』 정조 9년(1785) 12월 1일(丙子): … 漢豐曰, 新除授統制使金永綬, 時在洪忠兵營任所, … 統制使金永綬, 則以前統制使李邦一所佩密符傳授, 而統制使敎諭書及洪忠兵使·全羅左水使諭書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上曰, 依爲之.

237) 『承政院日記』 고종 23년(1886) 3월 12일(乙巳): (行都承旨)閔泳韶啓曰, 黃海兵使閔敬鎬, 移拜統禦使,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所受仍佩, 敎諭書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238)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5월 12일(癸巳): 兵曹啓目, 新除授統制使李仁秀, 以前任慶尙右兵使, 今已下去, 依例除朝辭赴任之意, 該道監司·兵使處, 行移, 何如. 判付, 啓依允爲旆, 新除統帥密符, 以右兵使辭朝時所授密符仍佩, 諭書與敎書, 卽爲安寶, 令院吏齎傳爲良如敎.

『承政院日記』 인조 15년(1637) 12월 17일(辛亥): 金光煜以備邊司言啓曰, 黃海監司李頌達, 以本道兵使移授矣, 此時往來有弊, 除朝辭赴任之意, 下諭宜當. 敢啓. 傳曰, 依啓.

239) 『銀臺便攷』 「兵房攷」 除朝辭赴任: 道帥臣·防禦使, 自外任移拜, 除朝辭赴任事, 自該曹啓目, 啓下, 則本院以密符仍佩或傳授及敎諭書下送之意, 啓辭.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5월 14일(己未): (左承旨)金昇圭啓曰, 全羅監司李憲植, 移拜忠淸監司, 有除朝辭赴任之命矣. 密符則以前所受仍佩, 敎諭書則安寶後,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교서를 전달하였고,<sup>240)</sup>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한 관찰사·통제사 등은 국왕에게 祗受狀啓를 올려서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를 수취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除朝辭赴任 이외에 사명훈유교서를 부임지에서 수취하는 경우는 사명훈유교서를 발급할 때에 시일이 오래 걸려서 관찰사가 국왕에게 辭朝할 때까지 교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것은 지제교 등의 교서제술관이 사명훈유교서를 제술하지 못하였거나 사명훈유교서를 제술하였지만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의 啓下를 받지 못하였을 때이다. 이 경우에 관찰사는 국왕에게 辭朝할 때 密符諭書와 密符를 먼저 수취하고 부임하였으며, 이후에 발급된 사명훈유교서를 부임지에서 수취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1728년(영조 4) 3월에 경기감사에 임명된 李廷濟는 교서가 아직 製進되지 않았기 때문에 辭朝할 때에 밀부유서와 밀부를 먼저 수취하고 추후에 교서를 수취하였으며,<sup>241)</sup> 1737년(영조 13) 5월에 평안감사에 임명된 趙遠命은 宣諭와 別諭를 행하는 辭朝를 끝냈으나 敎書가 아직 啓下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교서를 수취하였다.<sup>2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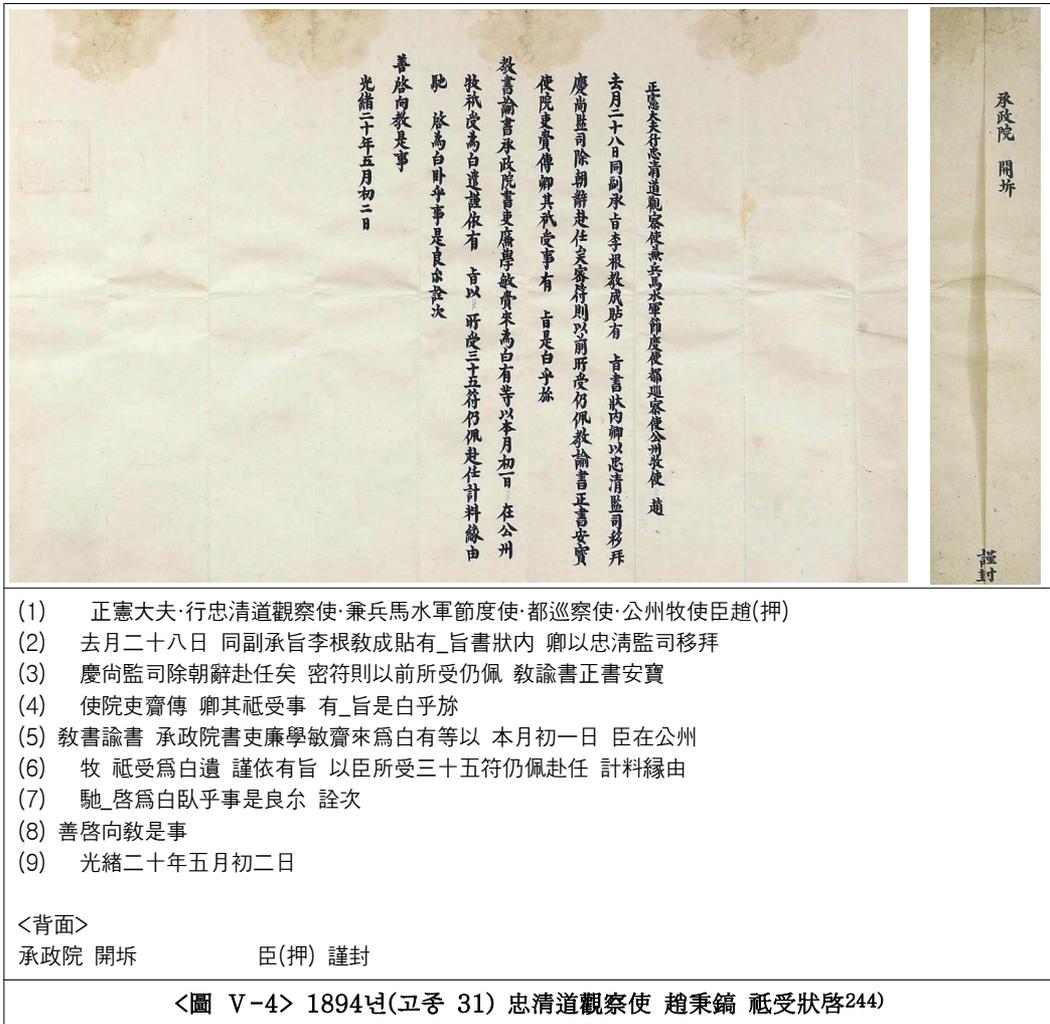
부임지에서 사명훈유교서를 수취한 관원이 교서와 유서를 잘 받았다는 내용으로 승정원에 올린 祗受狀啓는 1894년(고종 31)에 忠淸道觀察使 趙秉鎬가 올린 지수장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4년(고종 31) 4월 25일에 고종은 충청도관찰사 조병호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하였고,<sup>243)</sup> 승정원에서는 고종의 명을 받아서 조병호에게 朝辭를 하지 말고 바로 부임하고, 密符는 충청도관찰사에 임명할 때에 받은 35符의 밀부를 계속 사용하며, 승정원 書吏가 가지고 가는 교서와 유서를 잘 받으라는 내용의 有旨를 내려주었다. 이에 조병호는 5월 1일 공주목에서 승정원 서리 廉學敏이 가져온 교서와 유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지수장계로 작성하여 승정원에 올렸다. 이러한 지수장계를 통해 국왕과 지방의 관원 사이에 문서를 전달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40) 기존에 승정원의 院吏는 使命訓諭敎書와 함께 密符諭書·密符의 전달을 담당하였으나, 1781년(정조 5) 이후에 승정원의 院吏는 사명훈유교서와 밀부유서의 전달을 담당하였고, 밀부의 전달은 宣傳官이 담당하였다. (노인환, 앞의 논문, 2009, 44쪽)

241)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3월 15일(乙丑): 柳縵啓曰, 京畿監司李廷濟, 謝恩後仍爲辭朝事, 命下矣. 諭書·密符, 今方依例傳授, 而敎書時未製進, 追後傳授之意, 敢啓. 傳曰, 知道.

242) 『承政院日記』 영조 13년(1737) 5월 10일(丁酉): 上御熙政堂. 平安監司趙遠命引見時, … 上曰, 宣諭. (左承旨)趙命臣宣諭, 又請別諭, 別諭訖退出. 趙命臣曰, 趙遠命今方辭朝, 而敎書未及啓下, 追後傳授之意, 敢達. 上曰, 依爲之. 諸臣以次退出.

243) 『高宗實錄』 31년(1894) 4월 25일(辛未): 以趙秉鎬爲慶尙道觀察使.



- (1) 正憲大夫·行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公州牧使臣趙(押)
- (2) 去月二十八日 同副承旨李根教成貼有\_旨書狀內 卿以忠清監司移拜
- (3) 慶尙監司除朝辭赴任矣 密符則以前所受仍佩 教諭書正書安寶
- (4) 使院吏齋傳 卿其祗受事 有\_旨是白乎旡
- (5) 教書諭書 承政院書吏廉學敏齋來爲白有等以 本月初一日 臣在公州
- (6) 牧 祗受爲白遺 謹依有旨 以臣所受三十五符仍佩赴任 計料緣由
- (7) 馳\_啓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
- (8) 善啓向教是事
- (9) 光緒二十年五月初二日

<背面>  
承政院 開拆 臣(押) 謹封

<圖 V-4> 1894년(고종 31) 忠清道觀察使 趙秉鎬 祗受狀啓244)

#### 4) 使命訓諭教書의 문서식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사명훈유교서와 각종 사료에 원문이 수록된 사명훈유교서를 통해 始面·본문 등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면은 문서의 발급 일자에 따라 기재 방식이 일부 변화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시면에 ‘敎+官職+姓名’으로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1538년(중종 33) 權檣 사명훈유교서의 시면이 ‘敎慶尙道觀

244) 1894년(고종 31), 45.0×70.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2 -官府文書-, 1987, 395쪽.

察使權機'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45)</sup> 16세기 중반에는 시면에 '書'字를 추가하여 '敎+官職+姓名+書'로 기재하였고, 18세기 후반에는 시면에 수취자의 품계를 추가하여 '敎+品階+官職+姓名+書'로 기재하였다. 시면에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 또는 '守'를 기재하기도 하였다.<sup>246)</sup>

<表 V-3> 使命訓諭敎書의 始面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始面	기재방식
1	1497년(연산군 3)	燕山君	權柱	敎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權柱	敎+官職+姓名
2	1538년(중종 33)	中宗	權機	敎慶尙道觀察使權機	
3	1592년(선조 25)	宣祖	金誠一	敎慶尙左道觀察使金誠一書	敎+官職+姓名+書
4	1779년(정조 3)	正祖	共樂彬	敎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共樂彬書	
5	1785년(정조 9)	正祖	李在學	敎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李在學書	敎+品階+官職+姓名+書
6	1890년(고종 27)	高宗	宋世憲	敎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宋世憲書	

사명훈유교서에서 '王若曰'로 시작하는 본문에는 관찰사 등이 임명된 지역에 대한 내용과 수취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당 관직에 임명한다는 내용 등을 수록하였다. 먼저 '王若曰' 다음에는 관찰사 등이 한 지방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各道의 異稱, 지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 各道에 속한 州·府·郡·縣의 수, 과거 역사적인 國號, 중국의 故事를 인용한 용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관찰사의 사명훈유교서에는 京畿를 의미하는 王畿·畿輔·畿邦·畿甸·畿都·京輔·甸服 등과 『詩經』의 내용을 인용한 '邦畿千里'를 사용하였으며,<sup>247)</sup> 특히 漢나라의 長安과 관련된 '三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sup>248)</sup> 또한 충청도관찰사의 경우에는 충청도를 의미하

245) 1497년(연산군 3) 8월 8일에 충청도관찰사 權柱에게 발급된 교서의 경우에는 始面に 品階가 기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명훈유교서의 문서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246) 行守法은 품계가 높는데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관직 앞에 '行'이라고 칭하였고, 반대로 품계가 낮는데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관직 앞에 '守'라고 칭하였다. 行守法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經國大典』에 반영되었다.

『世宗實錄』 24년(1442) 7월 19일(丁丑): … 資高而降差卑職者稱行, 資卑而降差高職者稱守, 資品相當者及外任官吏, 仍舊差下. …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 階高職卑則稱行, 階卑職高則稱守. …

247) 『詩經』 商頌 玄鳥: 邦畿千里, 維民所止, 肇域彼四海.

248) 漢의 武帝가 長安을 京兆尹·左馮翊·右扶風으로 나누고 三輔라고 하였다.

『漢書』 卷十九上 「百官公卿表」 第七上: … 主爵中尉, 秦官, 掌列侯. 景帝中六年更名都尉, 武帝太初元年更名右扶風, 治內史右地. 屬官有掌畜令丞. 又(有) [右] 都水·鐵官·廐·廡廚四長丞皆屬焉. 與左馮翊·京兆尹是爲三輔. …

는 湖西·湖甸·湖藩·湖右·湖臬·西湖·畿湖·近畿·畿輔之界 등의 용어, 충청도의 오십여 州·府·郡·縣을 뜻하는 五十州湖堦·五十州雄藩·五十郡·五十四州·五十四區 등의 용어, 과거 충청도가 백제의 옛 땅임을 나타내는 百濟舊邦·百濟之疆域·百濟之舊·百濟邦舊基 등의 용어, 兩南要衝·三南甸要地 등과 같이 충청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 경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관찰사의 사명훈유고 서에서 부임지와 관련된 용어와 사례는 다음과 같다.

<表 V-4> 使命訓諭敎書의 부임지 관련 용어와 사례

관직	부임지 관련 용어	사례
京畿 觀察使	王畿·畿輔·畿邦·畿甸·畿都·京輔·甸服·邦畿千里·三輔	1637년(인조 15) 呂爾徵: 王若曰 <b>畿輔地重</b> 是爲國之咽喉 藩維任專 實惟古之岳牧 1796년(정조 20) 李冕膺: 王若曰 漢家設 <b>三輔</b> 之職 蓋難控制之才 周畿止千里之民 寔爲甸宣之本
忠淸道 觀察使	湖西·湖甸·湖藩·湖右·湖臬·西湖·畿湖·近畿·畿輔之界·五十州湖堦·五十州雄藩·五十郡·五十四州·五十四區·百濟舊邦·百濟之疆域·百濟之舊·百濟邦舊基·兩南要衝·三南甸要地	1760년(영조 36) 具允明: 王若曰 國內分八路屏翰 實難其人 <b>湖西</b> 爲兩南要衝 尤重斯任 1776년(정조 즉위년) 徐有臣: 王若曰 予惟國家數千里封堦 最是 <b>忠淸五十州</b> 洞弊 山川按 <b>百濟之舊</b> 作藩蔽於 <b>畿湖</b>
慶尙道 觀察使	嶺南·嶺藩·嶺南·南嶺·嶺臬·南甸·南臬·兩南·三南·鳥嶺外一方·鳥嶺外一區·大嶺以南·跨鳥嶺而按鷄林·七十州·七十州封疆·七十州雄藩·嶺南七十餘州·七十一州·新羅舊境·新羅疆域·新羅一千里舊域·羅韓舊址·鄒魯之風·鄒魯流風·鄒魯之鄉	1538년(중종 33) 權櫟: 王若曰 念惟 <b>慶尙一道</b> 實是 <b>新羅舊境</b> 風醇而俗美 物衆而地大 1737년(영조 13) 俞拓基: 王若曰 <b>嶺藩</b> 貽南顧之憂 方循僉舉 朝家用外補之典 載輟卿班 實藉輕車 非墜舊履 眷彼 <b>新羅一千里舊域</b> 卽我南服 <b>七十州雄藩</b>
全羅道 觀察使	湖南·兩南·兩湖·南藩·五十州雄藩·五十餘州府郡縣·五十郡·十濟之疆域	1771년(영조 47) 洪樂性: 王若曰 嗚呼 <b>湖南五十餘州州府郡縣</b> 式是我東百千萬年豐沛姓鄉 1791년(정조 15) 鄭民始: 王若曰 睠 <b>湖南五十郡</b> 最海東三百州 豐沛沮漆之鄉 舟車冠蓋之會
黃海道 觀察使	海西·海甸·海藩·西臬·海臬·關西之唇齒·箕壤唇齒·介松箕兩京之交·間松箕·畿右唇齒之形·近接畿甸·溟嶽廿三州·海嶽二十三州·青邱重藩·青邱名藩·青邱重鎮	1793년(정조 17) 金方行: 王若曰 有若虞四岳分治 <b>海西</b> 居一於八路 政須漢千石共理 管下凡 <b>廿有三州</b> 以地則爲 <b>畿右唇齒之形</b> 1838년(헌종 4) 趙斗淳: 王若曰 簡心用賢 國家所以必重方岳 鞠躬盡職 人臣所以不擇險夷 茲撤奎壁之班 庸畀鎖鑰之寄 眷茲黃海一路 實是 <b>青邱重藩</b> 環山河 <b>二十三州</b> <b>密邇畿甸之壤理</b>
江原道 觀察使	關東·東關·關臬·東臬·山海要衝·上游重藩·關嶺以東·溟嶽一區·扶桑出日之鄉·蓬萊之巨鎮·漢水上游·昭陽·雉岳·按金剛之界·穢貊·濊貊之舊封·貊國舊封·近接瀛洲蓬萊·廿六郡·廿六州關防·接畿湖而連關嶺	1661년(헌종 2) 李弘淵: 王若曰 滄海以西 <b>關嶺以東</b> 洞瘵已極 承宣之任 統禦之職 委畀寔隆 遜懋疇庸 丕昭錫命 睠彼一路 居國 <b>上游</b> 1849년(철종 즉위년) 李謙在: 王若曰 簪珮引銀臺之班 惟夙夙夜 旌節按 <b>金剛之界</b> 爰命來甸 顧茲 <b>東關一區</b> 實爲 <b>上游重地</b> 古稱悉直 <b>穢貊</b> 周廻八百里幅員 近接 <b>瀛洲蓬萊</b> 粵瞻 <b>廿六郡</b> 基布

『漢書』卷五「景帝紀」第五: … 五月, 詔曰, 夫吏者, 民之師也, 車駕衣服宜稱. … 三輔舉不如法令者, [應劭曰, 京兆尹·左馮翊·右扶風共治長安城中, 是爲三輔. …]

관직	부임지 관련 용어	사례
咸鏡道觀察使	關北·咸吉·咸關·關嶺·北路·咸藩·北關·北門·北道·鎖鑰·豆滿以南·鐵嶺以北·藩屏·屏藩·海東之翰屏·東國之翰屏·東國藩屏·廿四州·廿三州·二十三州	1743년(영조 19) 沈聖希: 王若曰 <b>豆滿以南 鐵嶺以北</b> 饑荒孔艱 <b>屏翰</b> 之任 風化之權 簡寄宜慎 1815년(순조 15) 李羲甲: 王若曰 中朝簡屏翰之材 誰是二千石良吏 北門掌鎖鑰之重 庸界 <b>廿三州雄藩</b> 遂擢卿月之崇班 仍作福星之流照
平安道觀察使	關西·西關·關防·關臬·西藩·北路·關藩·屏藩·西京·西門鎖鑰·鴨江以東·湍江以西·四十州·接遼薊三千餘里·境接遼薊·檀箕之舊域·箕都·箕藩·箕封舊域·箕封餘四十州·箕子之舊國	1685년(숙종 11) 李世白: 王若曰 藩臬之方 何地非要 而 <b>關西</b> 最急 旬宣之任 自古爲重 1786년(영조 44) 李景祐: 王若曰 東國 <b>屏藩</b> 最重 <b>關臬</b> <b>西門鎖鑰</b> 宜屬蓋臣 <b>檀箕之土</b> 俗猶傳 卽古今尚教之地

사명훈유교서에서 부임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후에는 수취자인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에 임명된 관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1497년(연산군 3) 權柱에게 발급된 교서에서는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權柱’와 같이 이전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이어서 수취자인 權柱에 대해 ‘稟性이 단아하고 일을 처리함이 精研하며 뛰어난 문장은 脫穎의 妙을 발휘하였고 관리의 능력은 治劇하는 재주가 있다(稟性端雅 處事精研 詞華擅脫穎之妙 吏能乃治劇之才)’고 하여 權柱의 성품·능력·문장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1538년(중종 33) 權機에게 발급된 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惟卿’ 두 글자만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수취자의 성품·행실·학문·명성·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表 V-5> 使命訓諭教書의 수취자와 임명 관련 내용

번호	발급 연도	수취	수취자 관련 내용	임명 관련 내용
1	1497년 (연산군 3)	權柱	<b>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權柱</b> 稟性端雅 處事精研 詞華擅脫穎之妙 吏能乃治劇之才 ...	<b>可特受</b>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
2	1538년 (중종 33)	權機	<b>惟卿</b> 行義有素 雅望夙著 任經幄論思之久 參憲司張紀之責 ...	<b>茲命卿爲</b> 本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3	1543년 (중종 38)	李彦迪	<b>惟卿</b> 德涵內外 學造精微 敦大而高明 方嚴而簡默 ...	<b>今授卿以</b> 本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4	1592년 (선조 25)	金誠一	<b>惟卿</b> 剛直方嚴 聞乎縉紳 忠信篤敬 動於蠻貊 ...	<b>茲授卿</b> 通政大夫守慶尚左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5	1592년 (선조 25)	柳成龍	<b>惟卿</b> 儀表玉立 器宇山凝 讀古人書 既盡爲己之學 識當世務 又抱救時之材 ...	<b>茲授卿以</b> 都體察使

사명훈유교서의 중간 이후에는 국왕이 수취자를 해당 관직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조선 전기에 발급된 사명훈유교서의 경우에는 임명한다는 내용을 수록하는

방식이 ‘可特受’·‘茲命卿爲’·‘今授卿以’ 등과 같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金誠一에게 발급된 교서부터는 대체로 ‘茲授卿’ 또는 ‘茲授卿以’를 기재하고 수취자의 관직을 기재하였다. 또한 사명훈유교서의 끝부분에는 於戲 또는 嗚呼의 감탄하는 용어를 기재하고, 이어서 국왕이 수취자에게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 사명훈유교서의 본문을 끝맺고 있다.

### 5) 使命訓諭教書의 특징

조선시대에 국왕이 관찰사·유수 등에 임명된 관원에게 내려준 사명훈유교서 가운데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명훈유교서의 수취자가 加資된 경우와 부임지의 명칭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승수와 사명훈유교서도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 사명훈유교서 본문의 내용이 동일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6> 使命訓諭教書의 본문이 동일한 사례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품계·관직	교서 본문
1	1821년(순조 21) 9월 21일	純祖	尹魯東	嘉義大夫·江華府留守· 兼鎮撫使	王若曰, 叔子之裘帶鎮邊, 儒雅所以制勝, … 行且召矣, 往克欽哉. 故茲教示, 想宜知悉.
2	1822년(순조 22) 1월 9일	純祖	尹魯東	資憲大夫·江華府留守· 兼鎮撫使	王若曰, 叔子之裘帶鎮邊, 儒雅所以制勝, … 行且召矣, 往克欽哉. 故茲教示, 想宜知悉.
3	1866년(고종 3) 3월 5일	高宗	金鍵	嘉善大夫·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教示, 想宜知悉.
4	1866년(고종 3) 4월 24일	高宗	金鍵	資憲大夫·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教示, 想宜知悉.
5	1867년(고종 4) 1월 12일	高宗	金鍵	正憲大夫·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教示, 想宜知悉.
6	1869년(고종 6) 2월 18일	高宗	李載元	正憲大夫·知宗正卿府事· 水原府留守 兼摠理使	王若曰, 職倣周東郊之保釐, 體例尤重 … 爲翰 爲屏, 佇見府完而城固, 故茲教示, 想宜知悉.
7	1870년(고종 7) 3월 18일	高宗	李載元	崇政大夫·知宗正卿府事· 行水原府留守·兼摠理使· 弘文館檢校副提學·奎章 閣檢校直提學·知製教	王若曰, 職倣周東郊之保釐, 體例尤重 … 爲翰 爲屏, 佇見府完而城固, 故茲教示, 想宜知悉.

관찰사·유수 등이 부임한 후에 품계가 올라가서 加資되면 국왕은 해당 관원에게 告身과 사명훈유교서를 추가로 내려주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사명훈유교서의 始面に 수취자의 품계를 관직과 함께 기재하였던 18세기 후반부터 시행되었다. 이 경우에 관찰사·유수 등에 처음 임명될 때의 사명훈유교서와 加資된 후에 사명훈유교서는 본문의 내용이 동일하였다. 현전하는 사명훈유교서 가운데 이와 같은 사례는 尹魯東·金鍵·李載元에게 내려진 사명훈유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三道統制使 金鍵의 사명훈유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V-5> 三道統制使 金鍵의 使命訓諭敎書 비교249)

1866년(고종 3) 3월 5일(250)	1866년(고종 3) 4월 24일(251)	1866년(고종 4) 1월 12일(252)
<p>敎嘉善大夫 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金鍵書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敎示 想宜知悉 同治五年三月初五日</p>	<p>敎資憲大夫 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金鍵書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敎示 想宜知悉 同治五年四月二十四日</p>	<p>敎正憲大夫 三道統制使 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金鍵書 王若曰 重宸之注意克勤 誰當專制一面 … 所以再授之優渥 宜圖一念之殫誠 故茲敎示 想宜知悉 同治五年正月十二日</p>

1866년(고종 3) 1월 30일에 김건은 가선대부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고, 3월 5일에 고종에게 하직하였으, <sup>253)</sup> 하직할 때에 고종은 김건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같은 해 4월 24일에 고종은 ‘통제사를 정식에 따라 자급을 높이라(統制使依定式陞資)’는 명을 내려 김건을 자헌대부로 加資하였고, 같은 날에 자헌대부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수군절도사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1867년(고종

249) 화성시·화성문화원,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2008, 216쪽, 220쪽, 224쪽.

250) 1866년(고종 3), 110.0×117.0cm,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所藏.

251) 1866년(고종 3), 111.0×148.0cm,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所藏.

252) 1867년(고종 4), 110.5×96.0cm, 해풍김씨 남양쌍부과 所藏.

253) 『承政院日記』 고종 3년(1866) 3월 5일(甲寅): 備忘記, 統制使金鍵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4) 1월 2일에 고종은 ‘시종신 전 승지 김태옥의 부친인 김건을 加資하라(侍從臣前承旨金泰郁父加資事承傳)’는 명을 내려 김건을 정헌대부로 加資하였고,<sup>254)</sup> 1월 12일에 정헌대부 삼도통제사 겸경상우도수군절도사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고종이 삼도통제사 김건에게 내린 3점의 사명훈유교서를 살펴보면, 교서서사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書體가 다르지만 지제교李世翊이 제출한 교서의 본문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임지의 명칭이 변화될 때에 사명훈유교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경우는 1835년(헌종 1)에 公忠道에서 忠淸道로 변경될 때에 관찰사를 역임한 金在三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삼은 1834년(순조 34) 10월에 공충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sup>255)</sup> 1834년(헌종 즉위년) 12월에 헌종은 김재삼에게 공충도관찰사의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내용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당시 충청도는 1826년(순조 26)에 10월에 淸州牧이 西原縣으로 降等되면서 공충도로 변경되었다가,<sup>256)</sup> 1835년(헌종 1) 1월에 서원현이 청주목으로 復號되면서 공충도에서 충청도로 변경되었다.<sup>257)</sup> 이에 헌종은 1월 3일에 김재삼을 충청도관찰사로 임명하는 고신을 내려주었고,<sup>258)</sup> 1월 5일에는 충청도관찰사의 임무를 잘 수행하라는 내용의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었다. 아울러 1월 8일에 승정원에서는 공충도가 예전의 邑號였던 충청도로 다시 명칭을 회복하였으므로, 교서와 유서를 改書하고 「施命之寶」와 「諭書之寶」를 각각 安寶한 후에 전달한다는 내용의 有旨를 김재삼에게 전달하였다.<sup>259)</sup> 이 때 改書한 사명훈유교서는 공충도관찰사로 임명될 당시의 사명훈유교서와 본문 내용이 동일하였다.<sup>260)</sup>

254) 『承政院日記』 고종 4년(1867) 1월 2일(丁巳): … 統制使金鍵, 侍從臣前承旨金泰郁父, 已上今加正憲. …

255) 『承政院日記』 순조 24년(1834) 10월 21일(壬子): 吏批, 再政. 以金在三爲公忠監司. 兵批, 三政. 公忠道兵馬水軍節度使單金在三.

256) 『純祖實錄』 26년(1826) 10월 27일(乙亥).

1826년(순조 26) 10월에 淸州鎭管의 衙舍에서 퇴임한 營吏 朴亨瑞가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대역부도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淸州牧을 降等하여 西原縣으로 삼고 忠淸道를 公忠道로 道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임승표, 앞의 논문, 2001, 126쪽)

257) 『承政院日記』 헌종 1년(1835) 1월 3일(癸亥): 又以吏曹言啓曰, 淸州牧, 既已復號矣. 公忠道, 以忠淸道, 還復舊號, 何如. 傳曰, 允.

258) 『承政院日記』 헌종 1년(1835) 1월 3일(癸亥): 忠淸監司單金在三, 都事單金詰修, 淸州牧使單中常顯, 以上陞號事承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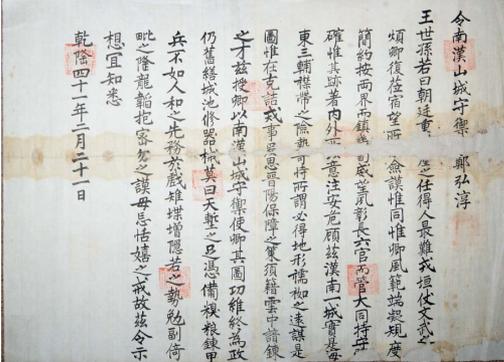
259) 1835년(헌종 1) 1월 8일에 承政院에서 忠淸道觀察使 金在三에게 발급한 有旨: 公忠道以忠淸道還復舊號, 教諭書改書安寶, 使院吏賚傳, 卿其祇受事, 有旨. 道光十五年正月初八日. (국립민속박물관 所藏, 유물번호 15253, 58.0×93.0cm)

260) 『承政院日記』 헌종 즉위년(1834) 12월 17일(丁未): 教公忠監司金在三書. 王若曰, 分虞官於岳牧, 其人最難, 命召伯於旬宣, 非卿莫可, … 行且召矣, 往惟欽哉. 故茲教示, 想宜知悉.

1835년(헌종 1) 1월 5일에 憲宗이 忠淸道觀察使 金在三에게 발급한 使命訓諭教書: [教嘉]善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金在三書. 王若曰, 分虞官於岳牧, 其人最難, 命召伯[於

수취자의 加資나 부임지의 명칭 변화뿐만 아니라 令書와 사명훈유교서의 경우에도 본문 내용이 동일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서는 왕세자·왕세제·왕세손이 대리청정을 거행할 때에 교서 대신에 발급하는 문서이며, 실물 문서로 총 8점이 현전하고 있다.<sup>261)</sup> 이 가운데 정조가 왕세손으로 대리청정을 거행할 때인 1776년(영조 52) 2월에 南漢山城守禦使 鄭弘淳에게 내린 영서는 정조가 즉위한 후인 1776년(정조 즉위년) 3월에 내린 사명훈유교서와 본문 내용이 동일하였다. 이것은 先王이 승하하고 왕세자·왕세제·왕세손이 새로운 국왕으로 등극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사명훈유교서를 추가로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圖 V-6> 南漢山城守禦使 鄭弘淳의 令書와 使命訓諭教書

1776년(영조 52) 鄭弘淳 令書 <sup>262)</sup>	1776년(정조 즉위년) 鄭弘淳 使命訓諭教書 <sup>263)</sup>
	
<p>令南漢山城守禦使鄭弘淳書  <b>王世孫若曰</b> 朝廷重保釐之任 得人最難 … 茲授卿以南漢山城守禦使 … 龍韜抱密勿之謨 毋忘恬嬉之戒 <b>故茲令示 想宜知悉</b>          乾隆四十一年二月二十一日</p>	<p>教南漢山城守禦使鄭弘淳書  <b>王若曰</b> 朝廷重保釐之任 得人最難 … 茲授卿以南漢山城守禦使 … 龍韜抱密勿之謨 毋忘恬嬉之戒 <b>故茲教示 想宜知悉</b>          乾隆四十一年三月初十日</p>

이상으로 살펴본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교서로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고문서학적인 관점에서 사명훈유교서의 시행·전존 현황·수취자·수취 과정·문서식·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고문서학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 사명훈유교서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조선시대 국왕은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명훈유교서를 받

旬宣, 非卿莫可,] … 行且召矣, 往惟欽哉, 故茲教示, 想宜知悉. 道光十五年正月初五日.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15254, 117.0×176.0cm)

261) 조미은, 앞의 논문, 2014, 160~175쪽.

262) 1776년(영조 52), 116.3×119.8cm, 安城 東萊鄭氏 瓢泉 鄭弘淳家 古文書.

263) 1776년(정조 즉위년), 110.5×163.5cm, 安城 東萊鄭氏 瓢泉 鄭弘淳家 古文書.

급하였다. 관찰사는 사명훈유교서를 통해 지방의 州·府·郡·縣의 수령을 통제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의 수령이 관찰사와 사명훈유교서를 맞이하는 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국왕은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에게 모두 密符諭書와 密符를 내려주었지만, 오직 관찰사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어서 관찰사가 부임지에 소속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통제하게 하였다. 또한 삼도통제사와 삼도통어사에게 사명훈유교서를 내려주어서 이들이 휘하의 수군절도사를 통제하게 하였다. 국왕은 사명훈유교서를 내려 주는 관원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사명훈유교서를 통하여 중앙에서 지방을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

## 2. 褒賞 관련 敎書

### 2.1 功臣敎書<sup>264)</sup>

조선시대 공신은 조선의 개국, 반정을 통한 정권교체, 역모 및 반란의 진압, 전란 등과 같이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워 錄勳된 공신과 국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보좌한 공으로 국왕의 位牌와 함께 종묘에 配享된 배향공신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에 따라 1~4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포상하여 공신교서를 발급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왕의 死後에 배향공신으로 선정하고 이어서 종묘에 배향할 때 配享功臣敎書를 발급하였다. 공신교서와 배향공신교서는 문서식이나 발급 과정에서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공신교서를 살펴보는데, 먼저 조선시대 오백여 년 동안에 시행된 공신의 錄勳·削勳과 공신교서의 전존 현황을 파악하고, 공신교서의 문서식을 수취자·본문·공신 명단·寶印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공신교서의 발급을 담당했던 功臣都監과 錄勳都監을 살펴보고, 공신도감에서 편찬한 儀軌를 중심으로 공신교서의 발급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시대 功臣의 錄勳과 削勳

조선시대에는 특정한 사건에 공이 있는 신하를 錄勳하여 공신의 칭호를 내렸으며, 녹훈된 공신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削勳되었다. 조선시대 공신의 녹훈은 1392년(태조 1) 개국공신부터 1728년(영조 4) 양무공신까지 모두 28번 이루어졌다. 28번 녹훈된 공신에 대하여 功臣號, 공신교서 발급 일자, 공신 녹훈 사유, 공신 인원, 공신교서 전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4) “2.1 功臣敎書”는 『古文書研究』 39에 수록된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敎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1~34쪽)

<表 V-7> 조선시대 功臣의 錄勳과 功臣敎書 傳存 現況<sup>265)</sup>

번호	功臣號	공신교서 발급 일자	공신 녹훈 사유	공신 인원		공신교서 傳存 現況
				최초	최종	
1	開國功臣	1392년(태조 1) 10월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움	52	39	1
2	定社功臣	未詳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29	18	·
3	佐命功臣	1401년(태종 1) 2월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46	38	2
4	靖難功臣	未詳	계유정난에 공을 세움	43	37	·
5	佐翼功臣	未詳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움	44	41	·
6	敵愾功臣	1467년(세조 13) 11월	李施愛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44	41	7
7	翊戴功臣	未詳	南怡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37	37	·
8	佐理功臣	1472년(성종 3) 6월	성종을 보좌하고 선정을 베푼 공을 세움	73	75	4
9	靖國功臣	1507년(중종 2) 2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움	104	107	2
10	定難功臣	未詳	李顥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22	1	·
11	保翼→ 衛社功臣	未詳	尹任 등 大尹 세력을 몰아내는 공을 세움, 1577년(선조 10)에 削勳	27	0	·
12	光國功臣	1590년(선조 23) 8월	宗系辨誣를 성공시키는 공을 세움	19	19	1
13	平難功臣	未詳	鄭汝立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22	22	·
14	扈聖功臣	1604년(선조 37) 10월	壬辰倭亂 당시에 宜祖를 義州까지 扈從하 는 공을 세움	86	86	19
15	宣武功臣	1604년(선조 37) 10월	壬辰倭亂에서 武功을 세움	18	18	7
16	淸難功臣	1604년(선조 37) 10월	李夢鶴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5	5	2
17	衛聖功臣	1613년(광해군 5) 3월	壬辰倭亂 때 광해군의 分朝를 扈從하 는 공을 세움, 1623년(인조 1)에 削勳	80	0	7
18	定運功臣	未詳	小北派 柳永慶의 제거에 공을 세움, 1623년(인조 1)에 削勳	11	0	·
19	翼社功臣	1613년(광해군 5) 3월	臨海君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1623년(인조 1)에 削勳	48	0	1
20	亨難功臣	1613년(광해군 5) 3월	金直哉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1623년(인조 1)에 削勳	24	0	1
21	靖社功臣	1625년(인조 3) 4월	인조반정에 공을 세움	52	46	8
22	振武功臣	1625년(인조 3) 4월	李适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27	32	7
23	昭武功臣	未詳	李仁居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6	6	·
24	寧社功臣	未詳	柳孝立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11	11	·
25	寧國功臣	未詳	沈器遠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5	5	·
26	保社功臣	1680년(숙종 6) 8월	福善君과 許堅의 역모를 평정하는 공을 세움	6	5	1
27	扶社功臣	未詳	辛壬獄事에 공을 세움, 1725년(영조 1)에 削勳	1	0	·
28	奮武→ 揚武功臣	1728년(영조 4) 7월	李麟佐의 亂을 평정하는 공을 세움	15	15	4
합 계				957	704	74

265) ‘<表 V-7> 조선시대 功臣의 錄勳과 功臣敎書 傳存 現況’은 『國朝功臣錄』과 신명호의 『조선의 공신들』(가람기획, 2003), 박봉주의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출간한 『조선의 공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表 V-7>을 통하여 조선시대 28번 錄勳된 공신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공신의 녹훈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역모 및 반란의 진압에 공을 세운 경우이다. 역모나 반란은 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를 국왕은 공신으로 녹훈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1467년(세조 13)에 일어난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敵愾功臣부터 1728년(영조 4)에 李麟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揚武功臣까지 모두 13번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경우이다. 새로운 국왕의 즉위와 관련된 공신으로는 조선 초기에 정종과 태종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佐命功臣이 있으며,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靖難功臣·佐翼功臣이 있다. 또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靖國功臣과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靖社功臣이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으로는 명종 때의 衛社功臣과 광해군 때의 定運功臣 그리고 경종 때의 扶社功臣이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을 세운 경우에도 공신으로 녹훈하였다. 이러한 공신으로는 선조의 의주 몽진을 扈從하는데 공을 세운 扈聖功臣과 왜군의 격퇴에 공을 세운 宣武功臣이 있으며, 또한 광해군의 分朝를 扈從하는데 공을 세운 衛聖功臣이 있다. 이 밖에 공신으로 녹훈된 경우는 조선왕조의 개국에 공을 세운 開國功臣과 성종을 잘 보좌하고 선정을 베푼 공을 세운 佐理功臣,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宗系를 改錄해 줄 것을 주청하는 宗系辨誣를 성공시키는데 공을 세운 光國功臣이 있다.

이렇게 28번 녹훈된 공신 중에서 일부는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되어 削勳되었는데, 모두 새로운 국왕이 즉위한 후에 이전에 녹훈된 공신을 삭훈한 경우이다. 명종 때 尹任 등 大尹 세력을 몰아내는데 공을 세운 衛社功臣에 대하여 1569년(선조 2)에 李珥는 위사공신이 士林을 斬伐하였기 때문에 僞勳이라고 주장하며 削勳을 청하였다.<sup>266)</sup> 이후 1570년(선조 3)에는 兩司에서 여러 번 위사공신의 삭훈을 청하였고,<sup>267)</sup> 1577년(선조 10)에는 三司에서 위사공신의 삭훈을 청하였다.<sup>268)</sup> 결국에는 같은 해 12월에

266) 『宣祖實錄』 2년(1569) 9월 25일(乙未): 李浚慶侍上, 語及乙巳之事曰, 衛社之時, 善士或有坐死者, 其瘡痍未合矣. 李珥曰, 大臣之言, 何可含糊不明乎. 衛社是僞勳也. 其得罪者, 皆善士也. 仁廟禮陟, 中宗嫡子, 只有明宗一人而已. 天命人心, 豈歸他人哉. 奸兇乃敢貪天之功, 斬伐士林, 以錄僞功, 神人之憤久矣. 今當聖上新政之初, 當削勳正名, 以定國是, 不可緩也.

267) 『宣祖實錄』 3년(1570) 7월 10일(丙子); 7월 14일(庚辰); 7월 18일(甲申).

268) 『宣祖實錄』 10년(1577) 6월 26일(壬午): 司憲府上筭, 請亟罷僞勳, 以雪恭懿殿見誣之痛事, 入啓, 答曰, 遑遑之時, 不須煩筭. 予之欲爲上殿, 豈偶然哉. 諫院玉堂亦上筭, 請罷僞勳, 皆不允.

『宣祖實錄』 10년(1577) 7월 18일(壬午): 兩司啓請尹任, 瑠削逆名, 罷僞勳事. 啓不允. 弘文館亦上筭.

위사공신을 삭훈하였고, 아울러 위사공신을 삭훈한다는 내용으로 교서를 반포하였다.<sup>269)</sup>

또한 광해군 재위 기간에 봉해진 衛聖功臣·定運功臣·翼社功臣·亨難功臣은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한 이후에 곧바로 삭훈되었다. 인조반정에 성공한 지 6일 후인 1623년(인조 1) 3월 18일에 이조에서 1608년(광해군 즉위년) 이후 僞勳에 參錄된 것을 조사하여 그 勳籍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啓를 올리자 인조가 이를 윤허하였다.<sup>270)</sup>

마지막으로 辛壬獄事를 일으키는데 공을 세운 扶社功臣은 영조가 즉위한 이후에 삭훈되었다. 1722년(경종 2) 3월에 목호룡은 노론을 역모로 고하고 그 공으로 다음해인 1723년(경종 3) 2월에 부사공신 3등으로 녹훈되었다.<sup>271)</sup>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후에 목호룡은 誣告한 죄로 참형을 당하였고,<sup>272)</sup> 영조는 목호룡에게 녹훈된 부사공신을 삭훈하고 공신교서와 畫像軸을 모두 불태웠으며,<sup>273)</sup> 부사공신을 삭훈한다는 내용으로 교서를 종묘에 고하였다.<sup>274)</sup>

조선시대 공신 가운데 명종대의 위사공신과 광해군대의 위성공신·정운공신·익사공신·형난공신 그리고 경종대의 부사공신이 削勳되었다. 이것은 영조 연간에 편찬된 『國朝功臣錄』에 반영되어 앞에서 언급한 삭훈된 공신을 제외하고 22번 녹훈된 공신을 기재하였다.<sup>275)</sup> 1392년(태조 1) 개국공신부터 1728년(영조 4) 양무공신까지 각각 공신으로 녹훈된 사유와 각 등급별 공신의 성명이 기재되었으며, 공신의 성명 아래에는 官職·諡號·世襲嫡長孫 등이 註記되었다. 특히 장서각에 소장된 『국조공신록』에는 먼저 22번 녹훈된 공신이 순서대로 기재되었고, 이어서 「前後削勳錄」의 항목에 삭훈된 공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국조공신록』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작된 功臣會盟軸이나 功臣會盟錄에서도 삭훈된 공신의 자손은 제외되었다.<sup>276)</sup>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시

269) 『宣祖實錄』 10년(1577) 12월 8일(庚寅): 以伸冤削勳, 頒教書于中外.

270) 『仁祖實錄』 1년(1623) 3월 18일(戊申): 吏曹啓, 請戊申以後僞勳參錄人, 無論生死, 逐一查考, 削其勳籍, 所授資級, 并行改正. 上從之.

271) 『景宗修正實錄』 3년(1723) 2월 23일(癸酉): 以陸虎龍爲輸忠奮義竭効力扶社功臣東城君.

272) 『英祖實錄』 즉위년(1724) 12월 8일(丁丑): 誣上不道罪人虎龍一鏡, 當日唐古介, 不待時處斬.

273) 『英祖實錄』 1년(1725) 5월 11일(戊申): 焚壬寅僞勳原從錄券·會盟錄及虎龍所受教書畫像軸. 其在僞勳嫡長家者, 并令京外, 雜燒之.

274) 『英祖實錄』 1년(1725) 8월 11일(丙子): 以削去僞勳, 告廟頒教. 其文曰, 王若曰, 嗚呼! 向年之事, 尙忍言哉. … 逆賊金一鏡陸虎龍等, 竝依法正刑, 李師尙姑從未減之律, 參酌處絞, 革罷扶社功臣, 收其錄券, 其餘凶賊, 或竄黜或囚鞫. … 於戲. 伸冤討罪, 適循天理之公, 開國承家, 永絕小人之禍. 故茲教示, 想宜知悉.

275) 『國朝功臣錄』은 筆寫本으로 현재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K2-622) - 線裝1冊(49張): 無郭, 無絲欄, 半葉10行字數不定 註雙行, 無版心; 32.5×23.2cm

규장각(16017) - 1冊(37張); 49×36cm / 表紙書名: 國朝功臣題名錄 / 裝幀: 絹表紙

국립중앙도서관(BC古朝57-가738) - 40張; 29.6×19.8cm

대에는 6번 삭훈된 경우를 제외하고 22번 녹훈된 경우만을 공신으로 인정하였다.

## 2) 功臣敎書의 傳存

조선시대에는 28번 공신을 錄勳하여 약 천여 명의 공신이 있었고, 이들 공신에게 국왕은 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현재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전해지는 공신교서는 총 74건이다.(〈表 V-7〉 참조) 현전하는 공신교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에 李濟를 開國功臣 1등으로 녹훈하는 공신교서이다.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조선 개국 직후의 교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이제 개국공신교서에는 「高麗國王之寶」의 寶印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이 개국한 직후에 고려의 보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이제 개국공신교서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馬天牧과 徐愈에게 내려 준 佐命功臣敎書를 통해 조선 초기의 공신교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가장 늦은 시기의 공신교서는 1728년(영조 4)에 吳命恒·李森·金重萬·朴東亨을 揚武功臣으로 녹훈하는 공신교서가 4건 있다. 양무공신은 처음에 ‘奮武功臣’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奮武’의 명칭이 명나라 17대 황제인 崇禎帝의 諡號(紹天繹道剛明恪儉揆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와 일치하기 때문에 1764년(영조 40)에 ‘揚武功臣’으로 功臣號가 변경되었다.<sup>277)</sup> 그래서 양무공신교서의 수취자 부분을 살펴보면 추후에 ‘奮’字 위에 ‘揚’字를 덧붙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74건의 공신교서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1604년(선조 37)에 발급된 호성공신교서로 모두 19건이 전해지고 있다. 호성공신은 1등에서 3등까지 녹훈된 공신이 모두 86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공신교서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28번 녹훈된 공신 중에서 12번 녹훈된 공신은 공신교서가 전해지지 않았다.

공신교서가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전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신교서가 消失되었

276) 보물 제1512호 ‘二十功臣會盟軸 - 寧國功臣錄勳後’은 開國功臣부터 寧國功臣까지 20공신과 그 자손들을 거느리고 會盟祭를 행할 때의 會盟文과 참여자 명단인데, 20공신 중에는 명종대의 衛社功臣과 광해군대의 衛聖功臣·定運功臣·翼社功臣·亨難功臣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名品選』, 2009, 64~65쪽)

277) 『英祖實錄』 40년(1764) 3월 20일(辛未): 上親行大享于皇壇. 燎烟始升, 雅樂方作, 忽有淒風襲人, 有肅然之氣. 又有氣如雲如虹, 自壇上黃幕而起, 少須而滅. 禮畢, 還御幕次, 命改戊申勳名中奮武二字爲揚武, 以毅皇徽號故也.

거나 후손들이 도난 등으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실이나 분실 이외의 경우는 공신으로 녹훈된 이후에 역모 등의 죄를 짓게 되어 공신교서를 소각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1422년(세종 4)에 공신도감에서는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影子·功券·教書를 수거한 후에 세종의 명에 따라 공신교서를 소각하였다.<sup>278)</sup> 또한 부사공신의 경우에도 목호룡이 참형을 당한 후에 공신교서를 불태웠다. 그러나 삭훈된 공신의 경우에 반드시 공신교서가 소각되는 것은 아니었다. 1613년(광해군 5)에 녹훈된 위성공신·의사공신·형난공신은 인조가 즉위한 직후에 모두 삭훈되었지만, 공신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sup>279)</sup>

### 3) 功臣教書의 문서식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공신교서를 통해 始面·본문·공신 명단 등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서의 시면은 문서의 첫 행에 ‘教’字를 擡頭하였고 그 아래에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sup>280)</sup>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발급된 교서에서는 수취자의 성명 아래에 ‘書’字가 추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 발급된 공신교서에서도 문서의 첫 행에 ‘教’字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이후에 ‘書’字가 추가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공신교서의 시면에 기재되는 ‘教’字와 ‘書’字는 다른 교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문서의 첫 행에 ‘教’字만을 擡頭하였고, 두 번째 행부터 功臣號·品階·官職·姓名을 기재하였다. 이것은 모든 공신교서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1392년(태조 1) 이제 개국공신교서에서는 문서의 첫 행에 ‘教’字를 擡頭하고 두 번째 행에 ‘純忠佐命開國功臣 興安君 兼義興親軍衛節制使 知書筵事 李濟’를 기재하였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공신교서인 1728년(영조 4) 오명항 양무공신교서에서는 문서의 첫 행에 ‘教’字를 擡頭하였고 두 번째 행부터 수취자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공신교서에서 시면의 ‘書’字는 조선 전기에 기재되지 않았고, 조선 후기부터 기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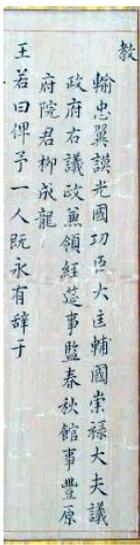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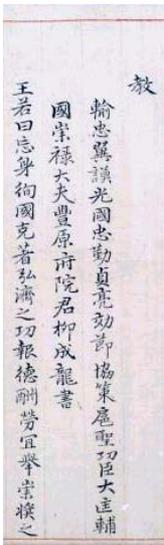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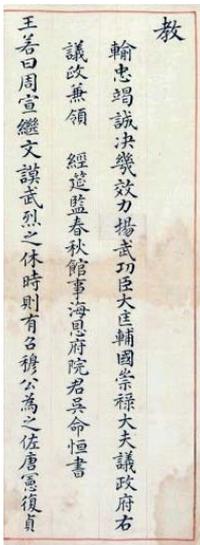
278) 『世宗實錄』 4년(1422) 윤12월 8일(辛酉): 功臣都監上被罪三功臣等影子·功券·教書, 命鄭道傳·沈孝生·吳蒙乙·李勲·張志和·孫興宗·李濟·李居易·黃居正等影子給其子孫, 張湛·趙璞·朴苞·李茂·閔無咎·無疾·柳沂·趙希閔·尹穆·趙綺·影子及孫興宗·黃居正·教書·功券, 張思靖·功券, 并皆焚之.

279) 인조대의 사료에서는 削勳 관련 기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신교서의 수거 및 소각에 관한 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280) 1433년(세종 15)에 助戰節制使 李澄石에게 발급한 教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문서의 첫 행에는 ‘教’字만을 기재하였고, 두 번째 행부터 수취자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1-4호 梁山李氏宗孫家所藏古文書)

었다. 1590년(선조 23) 柳成龍 光國功臣敎書는 ‘敎輸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豊原府院君柳成龍’으로 기재되어 수취자의 성명 아래에 ‘書’字가 없었다. 그러나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교서·선무공신교서·청난공신교서에서는 수취자의 성명 아래에 ‘書’字가 기재되었으며, 이후에도 발급된 공신교서에서도 ‘書’字가 기재되었다. 즉, 공신교서에서는 17세기부터 수취자의 성명 아래에 ‘書’字가 기재되었다.

<圖 V-7> 功臣敎書의 始面

문서명	李濟 開國功臣敎書	柳成龍 光國功臣敎書	柳成龍 扈聖功臣敎書	吳命恒 揚武功臣敎書
발급연도	1392년(태조 1)	1590년(선조 23)	1604년(선조 37)	1728년(영조 4)
도판				
釋文	敎純忠佐命開國功臣·興安君·兼義興親軍衛節制使·知書筵事李濟	敎輸忠翼謨光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豊原府院君柳成龍	敎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豊原府院君柳成龍書	敎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海恩府院君吳命恒書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를 기재하는 방식은 수취자가 생존해 있을 때 녹훈되는 경우와 수취자 사후에 녹훈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취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敎+ 功臣號+ 品階+ 官職+ 姓名+ 書’의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수취자 사후에 공신으로 녹훈되는 경우에는 ‘功臣號’의 위치가 변화하고 ‘贈’字가 기재되어 ‘敎+ 品階+ 官職+ 贈+ 功臣號+ 姓名+ 書’의 형식으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사례로 崔興源

을 1604년(선조 37)에 호성공신으로 녹훈하는 공신교서를 살펴보면, 始面에 ‘敎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贈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寧平府院君崔興源書’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始面에 기재되는 功臣號는 공신으로 녹훈될 때 공에 따라 국왕이 공신에게 내려주는 칭호이다. 공신호는 대부분 12字 이하로 구성되었는데, 개국공신의 경우에는 6字로 가장 짧았고 호성공신과 위성공신의 경우에 공신호가 12字로 가장 길었다.<sup>281)</sup> 6~12字 중에서 맨 뒤의 두 글자를 공신호로 하였는데, 예를 들면 開國·扈聖·宣武·靖社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 공신으로 녹훈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다. 공신호는 1등 공신일 경우에 가장 길었으며, 2등에서 4등으로 내려갈수록 2字 또는 4字씩 공신호를 줄였다. 예를 들어 敵愾功臣의 경우에 1등 공신호는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이며, 2등과 3등은 ‘精忠出氣敵愾功臣’과 ‘精忠敵愾功臣’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 이상 공신으로 녹훈될 경우에는 두 번째 받는 공신교서에는 첫 번째 녹훈된 공신호를 함께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유성룡의 호성공신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룡은 1590년(선조 23)에 광국공신 3등으로 녹훈되어 ‘輸忠翼謨光國功臣’의 공신호를 하사받았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에 호성공신 2등으로 녹훈되어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의 공신호를 하사받았는데, 이 때 받은 공신교서에는 광국공신과 위성공신의 공신호를 합쳐서 ‘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공신교서의 본문은 起頭語인 ‘王若曰’로 시작해서 結辭인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기두어와 결사 사이에는 공신의 업적과 포상 내역 등의 내용을 駢儷文으로 작성하였다. 공신교서의 본문에 기재된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은 1392년(태조 1) 이제 개국공신부터 1728년(영조 4) 양무공신교서까지 모든 공신교서에서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 사이에 기재되는 공신교서의 본문은 공신마다 각자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공적과 포상 내역을 수록하였지만, 모든 공신교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용어와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신교서에는 수취자가 무슨 공신의 몇 등으로 녹훈된 사실을 나타내는 ‘爲某號某等功臣’ 또는 ‘爲某功臣某等’이 기재되었다. 이것은 본문에서 ‘王若曰’로 시작해서 공신의 공적을 기재한 곳과 포상 내역 사이에 위치하였다. 예를 들어 1467년(세조 13) 이종생 적개공신교서에서는 ‘肆策卿爲敵愾二等功臣’이, 1728년(영조 4) 오명항 양무공신교서에서는 ‘肆策勲爲揚武功臣一等’이 기

281) 1등 공신의 경우에 開國功臣은 ‘純忠佐命開國功臣’ 또는 ‘奮義佐命開國功臣’으로 6字이고, 扈聖功臣은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로 12字이며, 衛聖功臣은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衛聖功臣’로 12字이다.

재되었다.<sup>282)</sup> 또한 공신에게 내려지는 포상 내역 다음에 하사품이 도착하면 잘 받으라는 내용으로 ‘至可領也’와 ‘於戲’라고 하는 감탄사가 기재되었다. 두 구절의 위치는 포상 내역 다음에 ‘至可領也’가 기재되고 이어서 바로 뒤에 ‘於戲’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sup>283)</sup> ‘至可領也’과 ‘於戲’ 사이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sup>284)</sup>

마지막으로 공신교서에서 공신 명단은 함께 녹훈된 사람들의 성명을 1等부터 3等 또는 4等까지 기재한 것으로 다른 교서에는 확인할 수 없고, 오직 공신교서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공신교서에 공신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조선 초기에 시행되지 않았다. 1392년(태조 1) 李濟 개국공신교서와 1401년(태종 1) 馬天牧·徐愈 좌명공신교서는 공신 명단이 없었으며,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다음 행에 곧바로 발급 일자가 기재되었다. 공신 명단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현전하는 공신교서 중에는 1467년(세조 13) 적개공신교서부터 공신 명단이 기재되었다.<sup>285)</sup>

공신 명단의 위치는 본문의 結辭인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다음 행이며, 기재 방법은 1等부터 4等の 순서로 각 等에 해당하는 공신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만 공신이 종친일 경우에는 姓은 제외하고 이름만 기재하였다. 공신 명단의 순서는 공신의 공훈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같은 1等 공신이라도 공이 가장 클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재되었다. 공신 명단의 순서는 같은 공으로 발급된 공신교서에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공신으로 녹훈된 후에 역모 등의 죄를 지어서 삭훈된 경우에는 공신 명단에서 해당 공신의 성명을 삭제하였으며, 삭제한 흔적이 일부 공신교서에 남아 있다. 삭훈된 공신의 성명을 공신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姓名에 먹으로 원을 그리거나 검게 칠하였고, 또한 성명을 칼로 도려내기도 하였다. 공신교서를 추후에 改造하는 경우에도 삭훈된 공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에 그 위에 먹으로 검게 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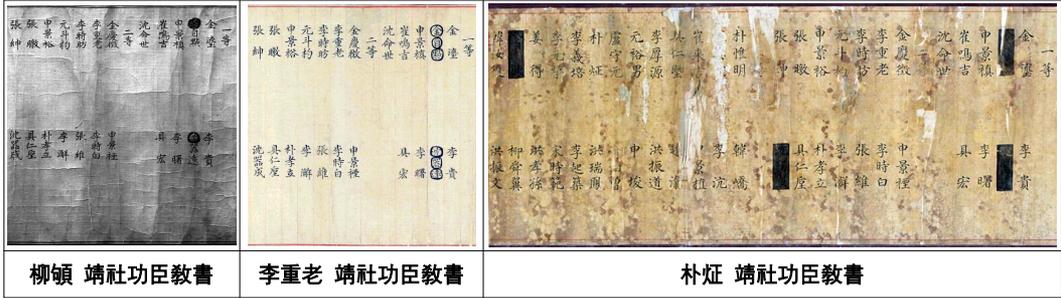
282) 다만 1392년(태조 1) 이제 개국공신교서와 1401년(태종 1) 마천목 좌명공신교서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

283) 1401년(태종 1) 마천목 좌명공신교서: … 表裏一套 廐馬一疋 **至可領也** **於戲** 膺茲異數 …  
1604년(선조 37) 최흥원 호성공신교서: … 表裡一段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於戲** 誓以帶礪 其永匹休於邦家 …

284) 1604년(선조 37) 유사원 선무공신교서: …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食焉不避 卿雖謂分內之微勞 顛而能扶予 則有言外之至意 物雖簿矣 儀則多焉 **於戲** 無愧神明 指山河而作擔 …  
1728년(영조 4) 오명항 양무공신교서: … 表裏一段 內廐馬一匹 **至可領也** 誓指山河 名加茅土 劍履冠十八之列 鄧侯獨多 雲臺圖四七之形 鄧公為首 文昭武暢 爵為一世之元龜 志確功高 爛馬四字之華袞 汝惟不伐 人莫與爭 予嘉乃勲 曰篤毋忘 **於戲** 南樓露布 式舉百年之盛儀 …

285) 靖難功臣教書와 佐翼功臣教書가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교서에 공신 명단이 기재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圖 V-8〉 1625년(인조 3) 靖社功臣敎書의 공신 명단



삭훈된 공신이 공신 명단에서 삭제된 사례는 1625년(인조 3)에 발급된 정사공신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金自點과 아들인 金鍊, 沈器遠과 아우인 沈器成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靖社功臣에 녹훈되었지만, 그 후에 각각 역모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정사공신에서 삭훈되었다. 현전하는 柳頤과 李重老의 정사공신교서를 살펴보면, 김자점과 심기원의 성명만 먹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신 명단의 삭제는 공신교서를 수취한 이후에 본인 또는 후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숙종대에 재발급된 朴炆의 정사공신교서를 살펴보면, 삭훈된 네 사람의 성명이 모두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신교서가 재발급될 당시에 먼저 공신 명단을 모두 기재하고 이어서 삭훈된 네 사람의 성명 위에 검게 먹칠한 후에 박정의 후손에게 내려주었다.

#### 4) 功臣都監의 설치와 功臣敎書의 발급

공신교서는 평상시에 발급되는 교서가 아니라 국왕이 특별한 공을 세운 관원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발급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공신교서의 발급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지 않았으며, 국왕은 임시기관인 都監을 설치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功臣都監을 설치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錄勳都監을 설치하여 공신의 녹훈과 공신교서의 발급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 공신의 녹훈을 담당한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의 설치와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의례와 등록이 전존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신도감은 공신의 녹훈과 포상, 공신의 자손 및 기타 공신과 관련된 여러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衙門이었다. 1392년(태조 1) 8월에 개국공신을 녹훈하기 위하

여 처음으로 開國功臣都監이 설치되었으며,<sup>286)</sup> 동년 윤12월에 判官 2인과 錄事 2인을 두었다.<sup>287)</sup> 이 때 설치된 개국공신도감에서는 개국공신뿐만 아니라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sup>288)</sup> 개국공신도감은 1405년(태종 5) 3월에 六曹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정할 때 이조에 소속되었으며,<sup>289)</sup> 1414년(태종 14) 1월에 官制를 개정할 때, 개국공신도감의 錄事를 丞이라 칭하였고 副錄事를 錄事라고 칭하여 丞과 錄事의 체제를 갖추었다.<sup>290)</sup>

1417년(태종 17) 1월에 태종은 개국공신도감에서 ‘開國’ 두 글자를 삭제하고 ‘功臣都監’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개국공신과 함께 정사공신과 좌명공신이 있어서 ‘開國’이라고 칭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도감이라고 칭하였다.<sup>291)</sup> 같은 해 2월에 공신도감에 처음으로 有司를 두어서 使·副使·判官을 임명하였다.<sup>292)</sup> 1434년(세종 16) 9월에 공신도감은 忠勳司로 개칭되었고,<sup>293)</sup> 1454년(단종 2) 1월에 忠勳府로 개칭되었다.<sup>294)</sup> 그런데 충훈부는 공신으로 녹훈된 이후에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는 성격의 衙門이었다. 『경국대전』에서는 충훈부를 ‘여러 공신들의 官府(諸功臣之府)’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충훈부의 소속 관원도 공신 또는 공신의 子孫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에 공신의 녹훈은 공신도감에서 담당하였다.<sup>295)</sup>

공신도감은 忠勳司로 개칭되기 이전에 상설된 아문이었지만, 충훈사를 거쳐 충훈부로 개칭된 이후에 공신도감은 공신을 녹훈할 경우에만 설치되는 임시적인 衙門이었다. 국왕은 공신을 녹훈할 때마다 공신도감을 설치하여 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업무를

286) 『太祖實錄』 1년(1392) 8월 2일(辛亥): 置功臣都監.

287) 『太祖實錄』 1년(1392) 윤12월 13일(己丑): 置開國功臣都監判官二人, 錄事二人.

288) 『太祖實錄』 1년(1392) 9월 16일(甲午); 7년(1398) 10월 1일(癸卯).

289) 『太宗實錄』 5년(1405) 3월 1일(丙申):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以聞. … 吏曹所屬, 承寧府·恭安府·宗簿寺·仁寧府·尙瑞司·司膳署·內侍府·功臣都監·內侍院·茶房·司饗房.

290) 『太宗實錄』 14년(1414) 1월 18일(癸巳): 功臣都監錄事稱丞, 京市注簿·功臣都監副錄事·惠民局注簿·架閣庫直長·濟生院注簿·養賢庫判官·大悲院副使皆稱錄事.

291) 『太宗實錄』 17년(1417) 1월 25일(壬子): 改開國功臣都監爲功臣都監. 以功臣有定社有佐命, 只稱開國, 爲未該也.

292) 『太宗實錄』 17년(1417) 2월 3일(庚申): 始置功臣都監有司, 以上護軍沈寶爲使, 護軍尹希夷副使, 宗廟令韓惠判官.

293) 『世宗實錄』 16년(1434) 9월 1일(乙未): 吏曹啓, 改功臣都監稱忠勳司, 以四品爲知事, 以五品爲都事, 竝皆口傳. 參外則仍存丞錄事之號. 從之.

294) 『端宗實錄』 2년(1454) 1월 15일(丁卯): 議政府據禮曹呈及吏曹關啓曰, 忠勳司, 乃大君及府院君衙門, 不宜從祿官爲參外衙門. 請依駙馬府例, 陞號爲忠勳府, 依中樞院例, 置經歷·都事各一. 從之.

295)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忠勳府: <原>諸功臣之府. [堂上官無定數. <增>堂上三員, 啓差有司, 無親功臣則以承襲君差出. <補>兼都事一員, 以嫡長忠義六品以上前衙人自單差.] 君[正一品, 親功臣·王妃父則加府院二字.] 君[從一品] 君[正二品] 君[從二品] 經歷[從四品 <原>一員 <續>減] 都事一員[從五品 <增>功臣子孫].

담당하게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 호성·선무·청난공신을 녹훈할 때에는 『선조실록』에서 功臣都監과 함께 錄勳都監이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신도감의 異稱으로 녹훈도감이 사용되었다. 특히 『선조실록』에서 녹훈도감이 선조에게 아뢰는 내용이 공신도감의례에 수록된 것으로 볼 때,<sup>296)</sup> 당시에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을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광해군 연간에 위성·정운·의사·형난공신을 녹훈할 때에는 『광해군일기』에서 공신도감이란 명칭은 사라지고 대신에 녹훈도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조·광해군 연간에 공신도감은 녹훈도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광해군 때부터 1728년(영조 4)에 양무공신을 녹훈할 때까지 녹훈도감에서 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신의 녹훈을 담당했던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은 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儀軌와 謄錄으로 정리하였다.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의 의례와 등록에는 공신의 녹훈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신교서의 발급, 교서의 頒賜와 포상, 공신회맹제의 거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날짜별로 편찬하였다.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에서 편찬한 의례와 등록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表 V-8> 功臣都監과 錄勳都監의 儀軌와 謄錄<sup>297)</sup>

서명	功臣號	편저자/ 편찬연도	판본 사항	형태사항	출처
[扈聖宣武清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	扈聖功臣 宣武功臣 清難功臣	功臣都監/ 1604년 (선조 37)	筆寫本	1冊(158張): 四周雙邊, 半葉 31.4×26.6cm, 有界, 12行23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40.4×33.8cm	규장각 所藏 奎14924
[扈聖宣武清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	扈聖功臣 宣武功臣 清難功臣	功臣都監/ 1605년 (선조 38)	筆寫本	1冊(127張): 四周雙邊, 半葉 31.5×26.9cm, 有界, 12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40.4×33.6cm	규장각 所藏 奎14923
靖社振武兩功臣謄錄	靖社功臣 振武功臣	[錄勳都監]/ 1626년 (인조 4)	筆寫本	1冊(192張), 40.8×32.6cm	규장각 所藏 奎14581, 奎14582

296) 『宣祖實錄』 34년(1601) 5월 16일(癸丑): 錄勳都監啓曰, 伏覩聖教, 臣等尤不勝惶戢戰悚之至. 今茲賊禍, 誠如上教, …

都監啓曰, 伏覩聖教, 臣等尤不勝惶戢戰悚之至. 今茲賊禍, 誠如上教, …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신축(1601) 5월 16일, 1999, 72쪽)

297) <表 V-8>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례 홈페이지(<http://uigwe.museum.go.kr/>),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上下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를 참고하였다.

서명	功臣號	편저자/ 편찬연도	판본 사항	형대사항	출처
[昭武寧社] 錄勳都監儀軌	昭武功臣 寧社功臣	錄勳都監/ 1628년 (인조 6)	筆寫本	1冊(178張): 四周單邊, 半葉 32.3×26.9cm, 有界, 12行17-20字, 上下內向三葉花紋魚 尾; 41.5× 32.7cm	규장각 所藏 奎14583
錄勳都監儀軌	寧國功臣	錄勳都監/ 1644년 (인조 22)	筆寫本	1冊(136張), 44.5×34.4cm	규장각 所藏 奎14584, 奎14946
保社錄勳都監 儀軌	保社功臣	錄勳都監/ 1682년 (숙종 8)	筆寫本	1冊(196張), 四周雙邊, 半葉 40.2×23.6cm, 朱絲欄, 12行25字, 註雙行; 51.1×31.9cm	국립중앙박물관 所藏 외규047
保社復勳 都監儀軌	保社功臣	復勳都監/ 1694년 (숙종 20)	筆寫本	1冊(141張), 四周雙邊, 半葉 40.8×24.0cm, 朱絲欄, 12行25字, 註雙行; 51.1×31.4cm	국립중앙박물관 所藏 외규076
奮武錄勳 都監儀軌	揚武功臣	錄勳都監/ 1729년 (영조 5)	筆寫本	1冊(242張), 45.4×32.6cm	규장각 所藏 奎14935
奮武錄勳 都監儀軌	揚武功臣	錄勳都監/ 1729년 (영조 5)	筆寫本	1冊(257張), 四周雙邊, 半葉 37×27.3cm, 朱絲欄, 12行22字, 註雙行; 48.0×36.2cm	국립중앙박물관 所藏 외규130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의 儀軌와 謄錄 가운데 『[扈聖宣武清難三功臣]功臣都監儀軌』는 1601년(선조 34) 3월부터 1605년(선조 38) 11월까지 호성공신·선무공신·청난공신을 녹훈했던 과정을 정리한 의례이다. 이 의례를 통하여 공신을 녹훈하는 과정과 공신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이후에 공신의 녹훈에 대한 논의는 1601년(선조 34) 3월 10일에 선조가 備忘記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선조는 비망기를 내려서 임진왜란 기간에 호종한 사람과 왜적을 물리치는데 힘쓴 사람, 그리고 李夢鶴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하여 녹훈할 것을 비변사에 명하였다.<sup>298)</sup> 비변사에서는 선조의 명에 따라 공신으로 녹훈할 인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601년(선조 34) 5월 6일에는 공신도감을 담당할 당상으로 沈友勝과 朴東亮을 차출하였고,<sup>299)</sup> 공신도감에서 행해야 하는 事目을 마련하였다. 또한 호성·선무·청난공신의 공신도감을

298) 萬曆二十九年辛丑三月初十日. 備忘記, 傳曰, 壬辰年西行時, 扈從人錄勳事, 有傳教, 及今賊已驅退, 天將盡撤, 卒哭已畢[懿仁王后國喪], 領相亦出, 可以舉矣. 且我國將士, 雖不能勦賊, 然於其間, 或不無力戰有功之人, 亦可詳察並錄. 且前日李夢鶴時, 有功人錄勳事, 捧承傳已久, 未知緣何至今不爲舉行. 竝回啓, 言于備過司(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辛丑(1601) 3월 10일, 1999, 3쪽).

299) 都監次知堂上二望, 漢城府左尹沈友勝, 禮曹參判朴東亮.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신축(1601) 5월 6일, 1999, 58쪽)

하나의 공신도감으로 설치하였고 공신도감의 처소를 南別宮에 설치하였다.<sup>300)</sup>

그러나 공신을 녹훈하는 과정은 빨리 진행되지 않았다. 공신으로 녹훈할 인원을 정하는 논의가 1601년(선조 34)부터 1604년(선조 37)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선조가 녹훈할 인원을 다시 勘定하라는 傳敎를 내려서 1604년(선조 37) 1월 5일에는 녹훈할 인원을 다시 勘定하게 되었다.<sup>301)</sup> 또한 공신의 칭호도 처음에 정한 칭호에서 변경되어 호성공신의 경우에는 ‘協策’ 2자가 추가되었고, 선무공신의 경우에는 원래는 ‘效忠宣力保節果毅翊運功臣’이었으나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으로 변경되었다.<sup>302)</sup> 최종적으로 1604년(선조 37) 6월 22일에 호성·선무·청난공신의 칭호와 인원이 정해졌다.

三功臣의 칭호와 인원을 정하는 과정과 함께 공신도감에서는 공신의 포상 내역을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공신도감에서는 이전의 忠勳府의 謄錄과 민간에 남아있는 功臣敎書軸을 書啓하였고 이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아문에서 포상 내역을 결정하였다.<sup>303)</sup>

공신의 칭호·인원·포상 내역이 결정된 후, 1604년(선조 37) 7월 2일에 공신도감에서 계목을 올려 이후에 시행해야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 공신교서의 製述 및 書寫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304)</sup> 먼저 공신교서의 제술은 예문관에서 담당하였고, 제술해서 올린 공신교서는 대제학이 전례에 따라 공신도감에 나아가서 선택하였다. 그런데 공신교서를 제술하는 기한은 시일이 매우 촉박하였으며, 기한 내

300) 都監單子. 都監應行事目, 依例磨鍊後錄爲去乎, 依後使內乎矣, 三都監一處竝設, 一體施行, 何如. 後, 一, 都監處所乙良, 兵曹設局. [實錄排設, 故南別宮東梗, 改付標, 設局.]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신축(1601) 5월 6일, 1999, 59쪽)

301) 備忘記曰, 功臣更爲勘定事, 命下已久, 如何至今寂然, 問于都監事, 傳敎矣.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갑진(1604) 1월 5일, 1999, 192쪽)

302) 扈從功臣號望, 忠勤貞亮竭誠效節扈聖功臣. 力戰將士功臣號望, 效忠宣力保節果毅翊運功臣. 李夢鶴時有工人功臣號望,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신축(1601) 5월 6일, 1999, 58쪽)

扈聖功臣一等,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 … 宣武功臣一等,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 … 清難功臣一等,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갑진(1604) 6월 22일, 1999, 252~256쪽)

303) 傳曰, 賞賜前例, 欲知之書啓. 都監啓曰, 賞格前例, 欲知之考事, 傳敎矣. 賞格前例, 上年七月 依承傳, 取忠勳府謄錄及民間餘存功臣敎書軸, 就其見存者, 其時卽爲書啓矣. 今見等第已畢, 褒賞諸事, 捧承傳于各該司, 則該司自以所掌, 照例稟奪施行, 乃是前例. 故如是入啓矣, 今承傳敎, 上年書啓前例及其時啓辭, 更爲書啓, 敢啓. 傳曰, 知道.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갑진(1604) 2월 22일, 1999, 200~201쪽)

304) 都監啓曰, 三功臣等第, 已爲畢磨勘, 應行諸事, 或考謄錄, 或據見聞事目, 磨鍊後爲白去乎, 依後錄施行, 何如. … 一 各功臣敎書, 令藝文館, 刻日製進, 啓下後, 依前例, 大提學都監仕進擇用. … 一 敎書書寫官, 文臣門蔭生進幼學中, 擇善寫者, 都監仕進, 已曾被抄後, 或在外, 或補外者, 竝令上來行移. … 一 敎書書寫筆墨, 令工曹尙衣院進排. 一 敎書限內未及製進人員, 這這入啓推考.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갑진(1604) 7월 2일, 1999, 270~273쪽)

에 제술하여 올리지 못한 인원은 入啓하여 推考하였다. 이어서 예문관에서 제술한 공신교서의 書寫는 교서서사관이 담당하였다. 교서서사관은 文臣·門蔭·生進·幼學 중에 善寫者를 뽑아서 공신도감에서 베풀하게 하였는데, 실제로 1602년(선조 35) 9월과 11월에 공신도감에서는 교서서사관인 韓濩·金玄成·金堯立·李海龍에게 官職 또는 軍職을 주고 교서서사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sup>305)</sup> 그 밖에 공신교서를 書寫할 때 필요한 筆墨은 공조의 尙衣院이 마련하였다.

1604년(선조 37) 8월에는 공신도감에서 공신교서의 書式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306)</sup>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에 공신교서를 작성하였고, 이후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여 공신교서를 발급하였다.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공신교서는 敎書函에 담긴 후에 공신으로 녹훈된 관원이나 공신의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발급된 공신교서는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에 수록되었는데, 「三公臣敎書文」의 항목에 호성공신 86명·선무공신 18명·청난공신 5명에게 발급된 공신교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圖 V-9> 1604년(선조 37) 李山甫 扈聖宣武清難功臣敎書와 敎書函<sup>307)</sup>

305) 都監啓曰, … 且敎書書寫官, 前謫錄內, 勿論文臣·南行·生進·幼學, 擇一時善書者. 其中韓濩, 最爲表表, 而曾以加平郡守, 因遠接使啓辭遞來, 至今無故作散, 方在外方. 請爲先除職常仕, 何如. 傳曰, 允.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임인(1602) 9월 16일, 1999, 98~99쪽)

都監啓曰, 敎書書寫官, 被抄人中, 前正金玄成·金堯立, 前主簿李海龍, 方在罷散之中, 郡守韓濩, 前已啓請除職, 而時未除職, 竝付軍職常仕.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임인(1602) 11월 30일, 1999, 104쪽)

306) 都監啓曰, 敎書當於會盟宴日頒賜, 故今將書寫矣. 但敎書初面, 當書敎某號功臣某官姓名書云云, 至於中面, 敘事之後, 又書今册卿或爾爲某等功臣, 超幾階·奴婢幾口·田幾結·銀幾兩云云.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갑진(1604) 8월 3일, 1999, 290~291쪽)

307) 1604년(선조 37), 37.5×227.0cm, 韓山李氏 所藏.

이상으로 살펴본 공신교서는 조선의 개국, 반정을 통한 정권교체, 역모 및 반란의 진압, 전란 등과 같이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워 錄勳된 공신에게 교서의 형식으로 발급해 준 문서이다. 이러한 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개국공신부터 1728년(영조 4) 양무공신까지 모두 28번 녹훈된 공신에게 발급되었으며, 현재까지 74건이 전해지고 있다. 74건의 공신교서는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발급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오백여년 동안 공신교서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공신교서의 문서식은 발급된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특히 수취자·본문·공신 명단·寶印에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면은 조선 전기에 ‘敎’字 다음에 功臣號·品階·官職·姓名이 기재되었는데, 17세기부터 姓名 아래에 ‘書’字가 기재되었다. 또한 공신으로 녹훈될 당시에 생존 여부에 따라 수취자를 기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은 ‘王若曰’과 ‘故茲敎示 想宜知悉’ 사이에 공신의 업적과 포상 내역 등을 駢儷文으로 작성하였다.

공신교서의 발급 과정은 국왕의 명에 의하여 임시 관청인 都監을 설치한 후에 도감에서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에는 공신도감을 설치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공신도감의 명칭이 녹훈도감으로 변경되면서 녹훈도감에서 공신교서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에서는 공신으로 녹훈할 인원과 공신의 명칭 그리고 포상 내역 등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결정된 후에는 공신교서를 제출하고 書寫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왕의 어보를 安寶하면서 공신교서가 발급되었다. 공신교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과정은 추후에 공신도감과 녹훈도감에서 儀軌 또는 謄錄을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공신』, 2012, 100~103쪽.

## 2.2 賞加敎書

賞加敎書에서 ‘賞加’는 ‘賞으로 加資한다’는 뜻으로 국왕이 공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품계를 올려줄 때 내려주는 교서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교서가 전 시기에 걸쳐서 발급된 것과는 달리 상가교서는 특정한 시기에만 발급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상가교서가 발급된 시기를 중심으로 상가교서의 시행과 소멸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상가교서의 수취자의 품계·관직과 加資 사유 등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전하는 상가교서를 통해서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賞加敎書의 시행과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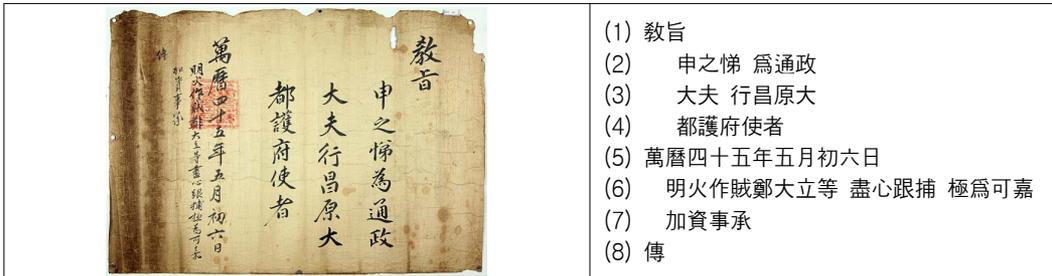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상가교서가 언제부터 발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선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1594년(선조 27)에 선조가 六鎭 오랑캐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鄭見龍을 賞으로 加資하고 상가교서를 발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sup>308)</sup> 또한 현전하는 상가교서 중에서는 1596년(선조 29)에 李夢鶴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洪州牧使 洪可臣을 통정대부로 加資할 때 내려 준 상가교서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선조실록』의 내용이나 현전하는 문서를 통해서 볼 때 조선시대에 상가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후반 상가교서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국왕은 공이 있는 관원을 加資할 때, 먼저 해당 관원에게 품계를 올려 준 告身을 내려주었고, 이어서 국왕은 해당 관원의 공을 駢儷文의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출한 상가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때 고신의 경우에는 발급 일자의 좌측에 加資한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다. 그러나 상가교서의 경우에는 교서제술관이 교서의 내용을 제출하고 승정원의 注書가 書寫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신이 발급되고 며칠 후에 상가교서가 발급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告身과 賞加敎書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申之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17년(광해군 9) 5월에 신지체는 明火賊 鄭大立를 붙잡은 공으로 通政大夫에 加資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6일에 신지체를 通政大夫·行昌原大都護府使로 임명하는 告身이 발급되었다. 申之悌에게 발급된 고신을 살펴보면, 발급 일자의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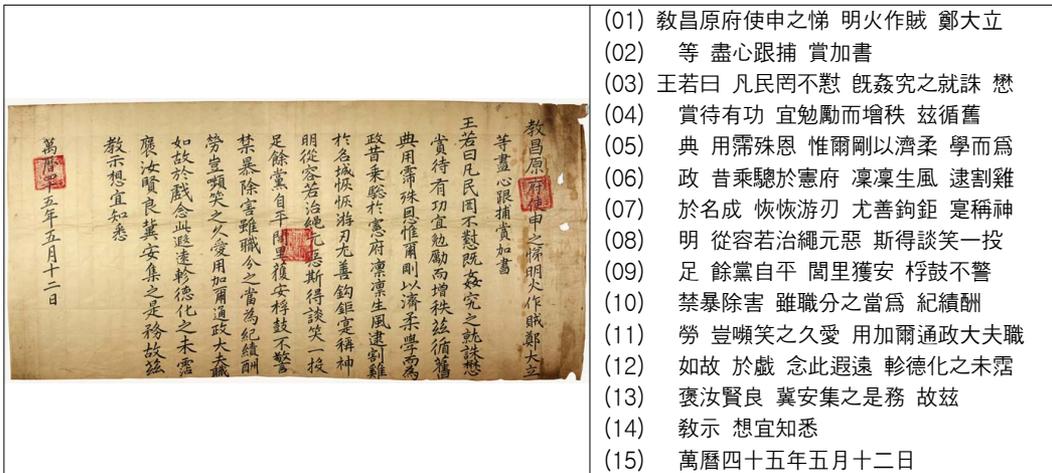
308) 『宣祖實錄』 27년(1594) 10월 12일(丙辰): 備忘記曰, 鄭見龍爲先賞加. 前例如此之事, 必作敎書頒示.

에 ‘明火作賊 鄭大立等 盡心跟捕 極爲可嘉 加資事承傳’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지제가 통정대부에 加資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5월 12일에는 광해군이 신지제에게 내리는 상가교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상가교서는 고신이 발급된 후에 6일 동안 교서의 내용을 제술하고 書寫하는 과정을 거쳐서 발급되었다.



- (1) 教旨
- (2) 申之悌 爲通政
- (3) 大夫 行昌原大
- (4) 都護府使者
- (5) 萬曆四十五年五月初六日
- (6) 明火作賊鄭大立等 盡心跟捕 極爲可嘉
- (7) 加資事承
- (8) 傳

<圖 V-10> 1617년(광해군 9) 申之悌 告身309)



- (01) 教昌原府使申之悌 明火作賊 鄭大立
- (02) 等 盡心跟捕 賞加書
- (03) 王若曰 凡民罔不懟 既姦究之就誅 懟
- (04) 賞待有功 宜勉勵而增秩 茲循舊
- (05) 典 用需殊恩 惟爾剛以濟柔 學而爲
- (06) 政 昔乘驄於憲府 凜凜生風 逮割雞
- (07) 於名成 恢恢游刃 尤善鉤鉅 寔稱神
- (08) 明 從容若治繩元惡 斯得談笑一投
- (09) 足 餘黨自平 閭里獲安 桴鼓不警
- (10) 禁暴除害 雖職分之當爲 紀績酬
- (11) 勞 豈嘖笑之久愛 用加爾通政大夫職
- (12) 如故 於戲 念此遐遠 軫德化之未霑
- (13) 褒汝賢良 冀安集之是務 故茲
- (14) 教示 想宜知悉
- (15) 萬曆四十五年五月十二日

<圖 V-11> 1617년(광해군 9) 申之悌 賞加教書310)

상가교서는 대부분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 대에 발급되었는데, 당시 임진왜란·李夢鶴의 난·인조반정·李适의 난 등에서 공을 세워 錄勳된 공신 가운데 堂下官을 加資할 때에 국왕은 상가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가운데 광해군 대에 발급된 상가교서가 실물 문서나 개인 문집에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광해군일기』에서는 사헌부나

309) 1617년(광해군 9), 54.0.0×76.0cm,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7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 2005, 349쪽.  
310) 1617년(광해군 9), 85.0×176.0cm,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의 책, 2005, 325~326쪽.

사간원에서 관원의 賞加에 대해 改正 또는 還收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과 녹훈도감에서 공신의 賞加를 줄이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sup>311)</sup> 광해군은 공이 있는 관원들을 포상하기 위해 상가교서를 발급하였지만, 사헌부·사간원·녹훈도감 등의 아문에서는 무분별한 관원의 賞加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상가교서와 관련된 사료나 실물 문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현전하는 상가교서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발급된 문서는 1684년(숙종 10)에 전라도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던 李師命에게 善治한 공으로 嘉義大夫로 加資할 때 내린 상가교서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상가교서의 제도는 17세기 후반에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국왕의 명령으로 상가교서를 통해 무분별하게 加資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차 소멸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조선 후기에 국왕이 공이 있는 관원을 加資할 때에는 告身만 내려주었으며, 상가교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 2) 賞加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상가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약 백여 년간 발급되었는데, 이 기간에 발급된 상가교서는 실물 문서 11건과 사진유리필름자료 2건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 문집에 상가교서의 원문이 수록된 사례는 17건이 있는데, 이것은 상가교서가 내려진 수취자의 문집이나 상가교서를 제출한 관원의 문집에서 수록된 것이다. 실물 문서와 사진자료, 그리고 문집에 수록된 총 27건의 상가교서에서 始面과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12)</sup>

상가교서의 시면은 수취자의 공을 기재하는 하는 경우와 기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시면에 수취자의 공을 기재하는 경우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 수취자의 공적, ‘賞加’를 기재하였다. 반면에 始面に 수취자의 공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 ‘賞加’를 기재하였다. 이 밖에 시면에 ‘賞加’ 대신에 다른 용어를 기재한 경우도 있는데, 1611년(광해군 3)에 羅大用에게 내린 상가교서의 시면은 ‘賞加’ 대신에 ‘褒獎加資’라고 하였고, 1684년(숙종 10)에 李師命에게 내린 상가교서의 始面은 ‘增秩’이라고 하였다.

311) 『光海君日記』 즉위년(1608) 8월 6일(庚申) ; 4년(1612) 10월 20일(庚辰).

312) 洪可臣, 羅大用, 李師命의 賞加敎書는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傳存하면서 아울러 문집에도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表 V-9> 賞加敎書의 始面

번호	발급 연도	始面	구분
1	1613년(광해군 5)	敎忠洪道水軍節度使 李止孝 措備軍糧軍器 賞加書	수취자 功 기재
2	1616년(광해군 8)	敎富寧府使 宋德駟 常時檢飭撥軍 再逃賊胡朴守希 登時還捉 賞加書	
3	1617년(광해군 9)	敎昌原府使 申之梯 明火作賊鄭大立等 盡心跟捕 賞加書	
4	1618년(광해군 10)	敎安興梁僉使 吳信男 海賊全船捕捉時同力勦捕 賞加書	
5	1622년(광해군 14)	敎行安州牧使兼防禦使 南以興 監軍屢請褒陞 賞加書	
6	1596년(선조 29)	敎忠淸道洪州牧使 洪可臣 賞加書	수취자 功 미기재
7	1611년(광해군 3)	敎海州牧使 李愼儀 賞加書	
8	1616년(광해군 8)	敎昌原別將 全三達 賞加書	
9	1624년(인조 2)	敎竭誠奮威振武功臣 江東縣監 崔應[一 賞加書]	
10	1624년(인조 2)	敎竭誠奮威振武功臣 行順天郡守 李休復 賞加書	
11	1611년(광해군 3)	敎南海縣令羅大用 褒獎加資書	기타
12	1684년(숙종 10)	敎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李師命 善治增秩書	

상가교서의 본문은 始面の 다음 행에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수취자의 공을 駢麗文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전반부에는 상가교서의 수취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惟卿’ 또는 ‘惟爾’의 용어 다음에 수취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卿’과 ‘爾’는 수취자의 품계에 따라 문서에서 다르게 사용하였다. 敎書·諭書·批答·有旨 등에서 수취자의 품계가 2품 이상인 경우에 卿으로 기재하였고, 수취자의 품계가 3품 이하인 경우에 爾로 기재하였다.<sup>313)</sup> 대부분의 교서는 수취자의 품계가 2품 이상이기 때문에 ‘卿’을 사용하였지만 상가교서의 수취자 가운데 당하관이 있기 때문에 수취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爾’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수취자를 加資한다는 내용과 수취자의 관직이 이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상가교서를 통해 수취자의 품계만 올라가고 관직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수취자를 加資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茲加’ 또는 ‘茲授’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수취자의 관직이 동일하다는 내용은 처음에는 洪可臣의 사례와 같이 수취자의 관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職仍洪州牧使如故) 이후 申之梯의 사례와 같이 ‘職如故’로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일부 상가교서의 경우에는 수취자의 加資된 품계만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313) 『世祖實錄』 11년(1465) 10월 8일(壬午): 承政院奉旨馳書黃海道觀察使南倫曰, 卿妻得病, 可速來見. 在前於有旨, 通政堂上稱爾, 二品以上稱卿. 時倫階通政, 故以爾書啓, 御書卿字, 又書紙尾曰, 今後勿用爾. 『銀臺便攷』 「吏房攷」 疏批: 辭職疏批, 二品以上, 卿其勿辭行公, 三品以下, 爾其勿辭察職, 外任則雖道伯留守, 并卿其勿辭察任.

<表 V-10> 賞加敎書의 본문<sup>314)</sup>

번호	발급 연도	수취	본문	
1	1596년(선조 29)	洪可臣	惟爾氣標剛方 材資典雅	茲加爾一階爲通政大夫 職仍洪州牧使如故
2	[1599년(선조 32)]	金尙騫	惟爾持身約 誠於奉公	以爾爲通政大夫 仍前職
3	[1605~1607년]	俞大禎	未詳	特加通政之資
4	[1610년(광해군 2)]	申應槩	惟爾蔚有儒風 凝然德器	茲加爾階爲通政大夫 職仍朔寧郡如故
5	1610년(광해군 2)	金立信	惟爾早事韜鈴 熟諳方略	茲加爾折衝將軍 職如故
6	1611년(광해군 3)	李愼儀	惟爾資稟愷悌 政先慈祥	茲以爾爲通政大夫 職仍海州牧使
7	1611년(광해군 3)	羅大用	惟爾少而執技 俾也練戎	茲加爾通政大夫 行南海縣令如故
8	1612년(광해군 4)	鄭文孚	惟卿嚙鐵之剛 蹈刃其勇	茲加卿嘉善大夫 職如故
9	1613년(광해군 5)	李止孝	惟爾乞乞之資 赳赳之武	肆加爾嘉善 資纔增一秩
10	1616년(광해군 8)	全三達	未詳	茲加爾折衝將軍
11	1616년(광해군 8)	宋德駟	惟爾志慮深純 風猷碩茂	茲加爾嘉善大夫
12	[1616년(광해군 8)]	閔洞	惟爾武而猶文 寬能濟猛	聿加通政之特資
13	1617년(광해군 9)	申之悌	惟爾剛以濟柔 學而爲政	用加爾通政大夫 職如故
14	1618년(광해군 10)	吳信男	未詳	茲授嘉善大夫 以舊職仍莅焉
15	1620년(광해군 12)	李時發	惟卿才敏而瞻 器周而博	茲授資憲 仍贊畫之任
16	1622년(광해군 14)	南以興	惟卿受任蕃鎮 爲國干城	茲授卿資憲大夫 職如故
17	1623년(인조 1)	鄭蘊	惟爾氣稟霜雪 美鍾瑚璉	茲加爾通政大夫 南原府使如舊
18	[1623년(인조 1)]	朴孝立	未詳	茲陞卿爲嘉善大夫 本職如故
19	[1623년(인조 1)]	柳舜翼	惟卿志慮忠純 操持堅固	茲加卿嘉善大夫資
20	1624년(인조 2)	鄭忠信	惟卿將材山西 人英湖右	茲加卿正憲大夫 職如故
21	[1624년(인조 2)]	邊滄	惟卿箕裘將種 干城武夫	茲授卿以資憲大夫 職如故
22	1624년(인조 2)	崔應一	未詳	茲授爾通政大夫
23	[1624년(인조 2)]	申景瑗	惟卿才能脫倫 智慮過衆	茲加嘉善大夫 職如故
24	[1624년(인조 2)]	林愔	惟卿奕世簪纓 傳家忠孝	今以卿爲嘉善大夫
25	1684년(숙종 10)	李師命	惟卿大科魁元 名卿胄子	茲用進階嘉義大夫 職仍全羅道觀察使如故

### 3) 수취자의 관직과 품계

조선시대에 資窮이라고 불리는 정3품 이하 당하관은 일정한 準職을 거친 후에 당상관으로 加資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시대 법전의 조항을 살펴보면, 『대전회통』에서는 당하관 정3품으로 準職을 거치지 않은 자는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sup>315)</sup> 그러나 資窮의 품계가 아니거나 準職을 거치지 않은 경

314) 申汝樑·李休復의 賞加敎書는 본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15) 『大典會通』 「吏典」 除授: 《續》 ○ 資窮而未經準職者, 勿許陞堂上. [《增》 廟薦則否 ○ 加資承傳者,

우에도 국왕의 명에 의해 당상관으로 加資되기도 하였다.

상가교서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공을 세운 관원은 資窮의 품계가 아니거나 準職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왕의 명에 의해 당상관으로 加資되었다. 이로 인해 상가교서 수취자의 품계와 관직은 대부분 정3품 통훈대부 이하의 당하관이거나 지방의 관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表 V-11>을 살펴보면 수취자의 관직은 대부분 3품 이하의 지방 수령인 牧使·府使·郡守 등과 무관인 節度使·僉節制使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교서의 수취자가 대부분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인 것에 반하여 상가교서의 수취자가 지방의 수령과 무관이라는 점은 상가교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表 V-11> 賞加敎書 수취자의 官職<sup>316)</sup>

官職	觀察使 (종2품)	節度使 (정3품)	牧使 (정3품)	府使 (종3품)	僉節制使 (종3품)	郡守 (종4품)	縣令 (종5품)	縣監 (종6품)	贊書使	別將	합계
인원	2	2	8	4	2	2	1	1	1	1	24

<表 V-12> 賞加敎書에서 加資된 品階

品階	正憲大夫 (정2품)	資憲大夫 (정2품)	嘉義大夫 (종2품)	嘉善大夫 (종2품)	通政大夫 (정3품)	折衝將軍 (정3품)	합계
인원	1	3	1	10	10	2	27

상가교서의 수취자가 加資된 품계는 당상관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정3품의 통정대부와 종2품의 가선대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정대부로 加資된 경우는 당하관인 지방의 수령이 공을 세워 당상관인 통정대부로 가자된 것이며, 가선대부로 加資된 경우는 인조 대에 靖社功臣이나 振武功臣으로 녹훈된 경우에 가선대부로 加資되었다. 또한 申汝樑·李止孝·宋德駟·吳信男 등의 무관이 가선대부로 加資되었으며, 특히 南以興과 鄭忠信은 각각 자헌대부와 정헌대부로 加資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가교서는 공이 있는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加資할 때, 또는 공이 있는 무관을 2품 이상으로 加資할 때 발급되었다.

職未準, 資未窮則啓稟取旨後, 下批.]

316) 27건의 상가교서 가운데 申汝樑·鄭忠信·柳舜翼의 賞加敎書는 수취자의 관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表 V-11>과 <表 V-12>의 합계에 차이가 있다.

#### 4) 加資 사유

상가교서를 통해 당상관으로 加資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공신으로 錄勳된 경우가 있다. 상가교서 제도가 시행되었던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에는 선조 대의 扈聖·宣武·淸難功臣, 광해군대의 衛聖·翼社·定運·亨難功臣, 인조 대의 靖社·振武·昭武·寧社·寧國功臣이 있는데, 이들 공신으로 녹훈된 관원이 당하관일 경우에 당상관으로 가자되었고, 이어서 상가교서가 발급되었다. 대표적으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靖社功臣 崔應一·鄭忠信·申景瑗과 李适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振武功臣 朴孝立·柳舜翼·李休復에게 발급된 상가교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洪可臣은 공신으로 녹훈되기 이전에 加資되어 상가교서가 발급된 경우인데, 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1596년(선조 29)에 통정대부로 가자되었고, 이후 1604년(선조 37)에 淸難功臣 1等으로 녹훈되었다.

<表 V-13> 賞加敎書의 加資 사유

번호	발급 연도	발급	수취	加資 사유
1	1596년(선조 29)	宣祖	洪可臣	李夢鶴의 亂을 진압
2	[1599년(선조 32)]	宣祖	金尙寓	善治
3	1604년(선조 37)	宣祖	申汝樑	戰功
4	[1605~1607년]	宣祖	俞大禎	錢穀과 甲兵과 軍器를 완비
5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申應槩	광해군의 세자 시절에 가르친 공
6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金立信	國事에 마음을 다하여 공적을 이룸
7	1611년(광해군 3)	光海君	李愼儀	백성들에게 善政
8	1611년(광해군 3)	光海君	羅大用	戰船과 거북선을 마련
9	1612년(광해군 4)	光海君	鄭文孚	北道の 儒生들이 上疏를 올려 공을 稱頌
10	1613년(광해군 5)	光海君	李止孝	군량과 군기를 마련
11	1616년(광해군 8)	光海君	全三達	召募의 임무를 다하고 士卒을 撫循하였으며 旗幟를 一新함
12	1616년(광해군 8)	光海君	宋德駟	평상시에 군사들을 단속하고, 오랑캐 朴守希를 체포함
13	[1616년(광해군 8)]	光海君	閔洞	善治
14	1617년(광해군 9)	光海君	申之悌	明火賊 鄭大立를 체포
15	1618년(광해군 10)	光海君	吳信男	海賊을 捕捉
16	1620년(광해군 12)	光海君	李時發	삼년 동안 변경에서 勤勞함
17	1622년(광해군 14)	光海君	南以興	明나라 監軍을 잘 대접함
18	1623년(인조 1)	仁祖	鄭蘊	永昌大君의 罪를 논할 때 直諫함
19	[1623년(인조 1)]	仁祖	朴孝立	靖社功臣 2等으로 錄勳
20	[1623년(인조 1)]	仁祖	柳舜翼	靖社功臣 3等으로 錄勳

번호	발급 연도	발급	수취	加資 사유
21	1624년(인조 2)	仁祖	鄭忠信	振武功臣 1等으로 錄勳
22	[1624년(인조 2)]	仁祖	邊滄	振武功臣 2等으로 錄勳
23	1624년(인조 2)	仁祖	崔應一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
24	[1624년(인조 2)]	仁祖	申景瑗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
25	1624년(인조 2)	仁祖	李休復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
26	[1624년(인조 2)]	仁祖	林愾	李适의 亂을 진압
27	1684년(숙종 10)	肅宗	李師命	善治

공신 이외에 加資된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의 수령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거나 군량과 군기를 마련한 경우에 加資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李愼儀·李止孝·金尙窩·俞大禎·閔澗·李師命 등에게 발급된 상가교서가 있다. 또한 변방에서 오랑캐·해적이나 명화적 등을 붙잡은 경우에도 가자되었는데, 宋德駟·申之梯·吳信男 등의 상가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南以興은 明나라 監軍을 잘 대접한 공으로 加資되었고, 申應渠은 광해군의 세자 시절에 가르친 공으로 加資되었다. 또한 鄭文孚는 北道の 儒生들이 上疏를 올려 稱頌한 공으로 加資되었고, 鄭蘊은 永昌大君의 죄를 논할 때 直諫한 공으로 加資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상가교서는 이전에 살펴본 교서와는 달리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약 백여 년 동안 시행된 교서이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상가교서를 통한 加資는 정상적인 단계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공이 있는 관원을 포상하기 위하여 국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加資된 것이다. 상가교서를 통해 관원을 포상하는 것은 당시 국왕이 관원의 충성을 유발하고 관원들을 통솔하는 수단으로 교서가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제도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상가교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가교서는 光海君 연간에 발급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光海君이 즉위한 후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관원들의 충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상가교서를 빈번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인조 이후에 상가교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어 소멸된 것은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한 西人 세력이 정상적인 단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왕의 명령에 의해 품계를 올려주는 상가교서를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3 致仕敎書와 賜几杖敎書

致仕敎書에서 ‘致仕’는 나이가 많은 관원이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난다는 뜻으로 국왕은 나이가 많은 관원이 致仕할 때 치사교서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국왕이 관원의 致仕를 윤택하지 않고, 계속 관직에 나올 것을 명할 때에 해당 관원에게 几와 杖을 하사하였는데, 이 때 几杖과 함께 賜几杖敎書を 내려주었다.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시대에 국왕이 나이가 많은 원로 신하들을 禮遇하기 위해 내려주는 교서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致仕와 賜几杖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시대 致仕와 賜几杖의 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전하는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를 통해서 각 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시대 이전의 致仕와 賜几杖

‘致仕’와 ‘賜几杖’의 용어는 『禮記』와 『杜氏通典』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禮記』의 「曲禮」 上에는 ‘大夫는 나이가 칠십이 되면 일을 그만두며, 만약 사직할 수 없으면 반드시 几杖을 하사해 준다(大夫七十而致事 若不得謝 則必賜之几杖)’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sup>317)</sup> 또한 『杜氏通典』에서 致仕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周制에는 大夫는 나이가 칠십이 되면 致仕하였고, 唐令에는 모든 職事官은 나이가 칠십이 되면 致仕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318)</sup>

이러한 致仕와 賜几杖은 중국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와 『증보문헌비고』에서 致仕와 賜几杖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라 665년(문무왕 5)에 中侍 文訓, 698년(효소왕 7)에 中侍 幢元, 713년(성덕왕 12)에 中侍 魏文, 729년(성덕왕 28)에 上大等 裴賦가 각각 致仕하였다.<sup>319)</sup> 664년(문무왕 4)에 문무왕은 金庾信이 致仕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대신에 几杖을 하사하였으며,<sup>320)</sup>

317) 『禮記』 「曲禮」 上

318) 『杜氏通典』 卷33 致仕官: 周制, 大夫七十致仕. 大唐令, 諸職事官, 七十聽致仕, 五品以上上表, 六品以下申省.

319) 『增補文獻備考』 卷228, 職官考15 致仕: 新羅高麗, 皆依禮經, 有致仕之法. 《補》中侍文訓 [文武王五年致仕], 中侍幢元 [孝昭王七年致仕], 中侍魏文 [聖德王十二年致仕], 上大等裴賦 [二十八年致仕]. 《補》高麗之制, 朝臣年七十, 例爲致仕.

320) 『增補文獻備考』 卷228 職官考15 《補》附賜几杖: 新羅文武王四年, 金庾信請老, 不許, 賜几杖. 賜几杖始此. 十六年, 宰相陳純.

朴尙煥은 삼국통일 이후 연로한 관료 계층인 귀족세력이 도태되고 대신 신흥 세력이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 상황 하에서 耆臣致仕制가 실시되면서 几杖을 내리는 우대책이 아울러 시행되었다고 보았다. (박

676년(문무왕 16)에도 宰相인 陳純이 致仕를 청하였으나 允허하지 않고 대신에 几杖을 하사하였다.<sup>321)</sup> 문무왕 대에 시행된 賜几杖은 헌덕왕 대에 정착되어 812년(헌덕왕 4)에 헌덕왕은 나이가 70세인 伊滄 忠永과 伊滄 眞元에게 几杖을 하사하였다.<sup>322)</sup>

고려시대의 致仕와 賜几杖은 현종 초부터 시행된 것을 보이는데, 현종 초에 侍中 柳允孚가 치사하였으며,<sup>323)</sup> 侍中 韋壽餘에게 几杖을 하사하였다.<sup>324)</sup> 그리고 인종 연 간에는 致仕官祿을 정해서 치사한 관직에 따라 내려주는 祿俸을 체계화하였다. 예를 들면 門下侍中이나 中書令이 致仕한 경우에는 300섬을 내려주었고, 門下平章事나 中書平章事가 致仕한 경우에는 180섬 5말을 내려주었다. 또한 이보다 하위 관직인 叅知政事·左右僕射·尙書·上將軍 등으로 致仕한 관원에게 녹봉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sup>325)</sup>

고려시대에 연로한 관원이 致仕를 청할 때에는 국왕에게 表를 올려 致仕를 요청하였고,<sup>326)</sup> 이에 국왕은 치사를 允허할 경우에 해당 관원에게 致仕敎書를 내려주었지만, 치사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不允批答이나 不允敎書를 내려주었으며, 几杖을 하사하였다.<sup>327)</sup> 고려시대 치사교서는 실물 문서가 남아있지 않지만 李奎報가 製述한 崔正華의 致仕敎書가 『동국이상국집』과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데, 최정화의 치사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崔正華 致仕敎書

云云. 大抵大夫以從心之年, 據經乞退, 是雖禮之常也. 其若才足以幹國體, 智足以贊政經, 以左右予一人者, 則其在人主貪賢之意, 固挽而留之, 於理不爲不可, 若卿者是已. 然卿以齒邁不任從事爲辭, 其志確然有不可奪者, 如是而猶強焉, 斯又理之不可也. 且臣以禮進退, 則君以禮待之義

상환, 『朝鮮時代 耆老政策 研究』, 海安, 2000, 233쪽)

321)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16년(676): 宰相陳純乞致仕, 不允, 賜几杖.

322) 『三國史記』新羅本紀 憲德王 4년(812): 春, 以均貞爲侍中, 以伊滄忠永年七十, 賜几杖. … 十一年, 春正月, 以伊滄眞元年七十, 賜几杖.

『增補文獻備考』卷82 禮考29 禮臣: 憲德王十一年, 國制大臣年七十致仕 例賜几杖 王之世 忠永眞元是也. 憲貞病不能行, 年未七十, 亦賜金飾紫檀杖.

323) 『增補文獻備考』卷228 職官考15 致仕: 《補》侍中柳允孚 [顯宗初致仕]

324) 『高麗史』列傳7 韋壽餘: 韋壽餘沁州江華縣人, 端慤守法, … 顯宗初請老, 不許, 賜几杖, 王以壽餘於朝臣最老, 欲大用. 其明年授門下侍中·上柱國·江華縣開國子, 食邑五百戶. 卒諡安恭, 贈內史令.

325) 『高麗史』志34 食貨3 祿俸 致仕官祿: 致仕官祿仁宗朝定. 三百石 [門下侍中·中書令], 一百八十石五斗 [門下平章·中書平章事], 一百六十六石十斗 [叅知政事·左右僕射], 一百五十石 [尙書·上將軍], 一百二十三石五斗 [判禮賓·衛尉·大府·大僕·司宰寺·秘書·殿中省事·大司成], 一百六十石十斗 [試尙書·判少府·將作事·左右常侍·御史大夫·尙書左右丞·攝上將軍·大將軍·五寺三監等官卿監].

326) 『高麗史』世家4 顯宗 4년(1013) 4월 乙丑: 右常侍全輔仁上表乞致仕, 不允.

『高麗史』世家4 顯宗 8년(1017) 9월 己酉: 兵部尙書金微祐上表致仕.

『高麗史』列傳10 崔弘嗣: 崔弘嗣字國老, 中原府人, … 三上表請老, 遂致仕.

327) 『東文選』卷29 批答: 「柳光植讓金紫光祿大夫知門下省事尙書右僕射判三司事不允敎書, 「蔡靖讓樞密院副使左散騎常侍翰林學士承旨不允敎書, 「李得紹讓中大夫國子祭酒知制誥不允批答, 任永齡讓同知貢舉不允批答, …

也. 其所以優其禮者, 唯是區區增秩進爵之一段事耳, 朕可刑印耶. 此之授也, 豈其意歟. 云云.<sup>328)</sup>

최정화 치사교서의 내용은 최정화의 재주가 國體를 감당하고 지혜가 政經을 도울 수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일을 맡을 수 없으므로 사직을 허락하고, 아울러 최정화를 禮遇하기 위해 품계를 높이고 관직을 올려준다는 내용이다. 최정화 치사교서는 실물 문서가 아니라 기두어와 결사가 생략되었고 교서의 본문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치사교서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치사와 사제장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승되었으며,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에 국왕은 치사한 관원과 궤장을 하사한 관원에게 모두 교서를 내려주었다.

## 2) 조선시대 致仕 제도

조선시대 致仕 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태조 연간에는 羅世와 朴形이 각각 參贊門下府事와 藝文春秋館太學士로 致仕하였다.<sup>329)</sup> 1399년(정종 1) 5월과 1400년(정종 2) 4월에는 門下府에서 대소 신료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사람에게 致仕를 허락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sup>330)</sup> 1416년(태종 16) 5월에는 河崙이 자신의 致仕를 청하면서 70세에 致仕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여 允허를 받았다.<sup>331)</sup>

세종 연간에는 致仕 제도를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440년(세종 22) 3월에 사간원에서 관원의 致仕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나 不允하였고,<sup>332)</sup> 같은 해 7월에 의정부에서는 나이가 칠십 이상인 朝臣 가운데 일부를

328) 『東國李相國集』 卷34 教書 麻制 官誥: 「崔正華爲銀青光祿大夫樞密使戶部尙書致仕教書官誥各一道」.

『東文選』 卷25 制誥: 「崔正華爲銀青光祿大夫樞密使戶部尙書致仕教書」.

329) 『太祖實錄』 6년(1397) 9월 17일(丙寅): 參贊門下府事致仕羅世卒于軍, 年七十八.

『太祖實錄』 7년(1398) 1월 14일(壬戌): 藝文春秋館太學士致仕朴形卒. 形竹州人, 典判書德龍子. 蚤知讀書, 魁成均試, 登第歷官臺諫代言. 僞朝庚申, 以密直使同知貢舉, 及國初, 拜藝文春秋館太學士, 至贊成事, 仍令致仕. 卒諡靖康. 子仲容, 登第官至提學, 以黨附林堅味死.

330) 『定宗實錄』 1년(1399) 5월 1일(庚戌): 門下府上疏, 陳時務十事, 不允. 疏曰, …自今大小臣僚年七十者, 許令致仕, 各就私第, 雖未至七旬, 而不宜職事者, 亦不許檢校之職. …

『定宗實錄』 2년(1400) 4월 6일(辛丑): 門下府上疏, 請汰冗官. 疏曰, …年老勳舊, 不可授職七十已上者, 請循前朝之制, 仍令致仕, 俾不失祿, 檢校散秩, 一皆革之. …

331) 『太宗實錄』 16년(1416) 5월 25일(丙辰).

332) 『世宗實錄』 22년(1440) 3월 16일(戊午).

免職할 것을 아뢰자 윤택하였다.<sup>333)</sup> 이후 致仕를 시행하는 과정이 구체화 되었는데, 1442년(세종 24) 12월에는 관원이 致仕할 때에는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某人的 나이가 칠십이 되었다고 써서 이조에 올리게 하고, 이조에서 국왕에게 啓聞하여 시행하였다.<sup>334)</sup> 1450년(문종 즉위년) 7월에는 문종이 예조에 傳旨하여 致仕한 관원이 지방으로 내려간 경우에 지방 수령이 달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게 하였다.<sup>335)</sup>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 관습적으로 시행되었던 致仕 제도는 『경국대전』에 관련 조항이 수록되었다. 「禮典」의 惠恤條에서는 당상관으로 致仕된 사람에게는 예조와 해당 고을에서 달마다 술과 고기를 보내라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sup>336)</sup>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1450년(문종 즉위년) 7월에 문종이 예조에 傳旨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表 V-14> 致仕 前後 祿俸의 변화<sup>337)</sup>

致仕 前 實職	致仕 後 奉朝賀 임명		
	功臣	功臣의 嫡長	일반 관원
正一品	正三品 祿俸	從四品 祿俸	從四品 祿俸
從一品	從三品 祿俸	從五品 祿俸	正七品 祿俸
正二品	正四品 祿俸	正六品 祿俸	從七品 祿俸
從二品	從四品 祿俸	從六品 祿俸	從八品 祿俸
正三品堂上官	正五品 祿俸	正七品 祿俸	正九品 祿俸

또한 「吏典」의 奉朝賀條에서는 봉조하의 녹봉과 호칭 그리고 인원 등을 규정하였다. 봉조하는 조선 초기에 奉朝請으로 불렀다가 1467년(세조 13) 이후부터 봉조하로 개칭된 것으로<sup>338)</sup> 국왕이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로 致仕한 관원을 위해 임명한 관직이다. 봉조하에 임명된 관원은 일정한 직무가 없는 散職에 해당하며, 조정의 儀式에 참석하였다. 봉조하는 종신할 때까지 祿俸을 지급받았는데, 致仕한 관원이 공신이거나 공신의 嫡長이거나 일반 관원인 경우에는 각각 차등 있게 지급되었다. 또한 봉조하의 호칭도 공신과 일반 관원이 달랐는데, 공신이 致仕한 경우에는 ‘某君奉朝賀’라고 하였고, 공신 이외의 관원이 致仕한 경우에는 ‘某官某職奉朝賀’라고 하였다. 봉조하의 인원

333) 『世宗實錄』 22년(1440) 7월 19일(己未).

334) 『世宗實錄』 24년(1442) 12월 24일(庚戌): 仁順府尹李明德以病且年七十請致仕. 傳旨吏曹, 大臣以年滿七十辭職者頗多, 有違大體. 自今令本司書某人年滿七十, 呈于本曹, 本曹啓聞施行.

335) 『文宗實錄』 즉위년(1450) 7월 28일(庚午).

336) 『經國大典』 「禮典」 惠恤: 堂上官致仕者, 及功臣父母妻, 堂上官妻, 年七十以上者, 本曹本邑月致酒肉.

337) 『經國大典』 「吏典」 奉朝賀.

338) 『世祖實錄』 13년(1467) 1월 6일(癸酉): 禮曹啓, 卒奉朝賀金修實, 行從二品職事, 請致賻. 從之.

은 『경국대전』에서 15명이었는데, 이후 『大典通編』에서는 인원의 제한이 없어졌다.<sup>339)</sup>

조선시대 致仕 제도는 『경국대전』에 관련 조항이 수록되어 법제화 되었고 이후 조선 후기까지 致仕 제도가 유지되었다. 致仕 제도는 국왕이 연로한 관원들을 예우하기 위해 퇴임한 후에 봉조하에 임명하여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왕이 당시 연로한 대신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유지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40)</sup>

### 3) 致仕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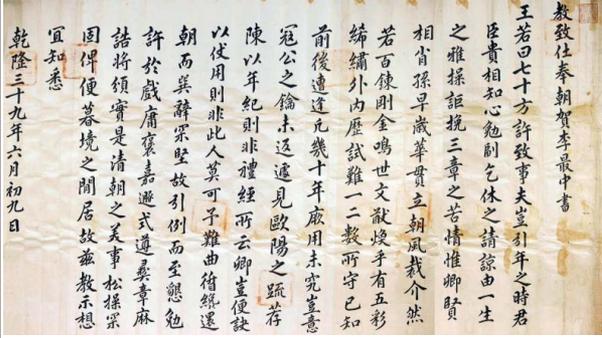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국왕이 致仕한 관원에게 내려준 치사교서는 현재까지 총 4건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실물 문서로는 1774년(영조 50)에 李最中, 1860년(철종 11)에 趙冀永, 철종 연간에 李憲文에게 발급된 치사교서가 남아있으며, 사진유리필름자료로는 1746년(영조 22)에 金有慶에게 발급된 치사교서가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승정원일기』와 개인 문집 등에 59건의 치사교서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실물 문서와 도판, 그리고 각종 사료에 수록된 치사교서를 통해서 始面과 본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15> 致仕敎書의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출처
1	1746년(영조 22) 7월 20일	英祖	金有慶	金有慶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569
2	1774년(영조 50) 6월 9일	英祖	李最中	李最中の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5쪽
3	1860년(철종 11)	哲宗	趙冀永	趙冀永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72쪽
4	철종연간 12월 17일	哲宗	李憲文	李憲文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59쪽

339) 『大典會通』 「吏典」 奉朝賀: 《原》 十五員. ○功臣則稱某君奉朝賀, 餘則某官某職奉朝賀, 本曹及兵曹分授. … 《增》 原爲通政以上作散人付祿之職, 今則致仕後, 始付奉朝賀, 無定數.

340) 박상환, 앞의 책, 2000, 247쪽.

	(01) 教致仕奉朝賀李最中書
	(02) 王若曰 七十方許致事 夫豈引年之時 君
	(03) 臣貴相知心 勉副乞休之請 諒由一生
	(04) 之雅操 詎挽三章之苦情 惟卿賢
	(05) 相肖孫 早歲華貫 立朝風裁 介然
	(06) 若百鍊剛金 鳴世文猷 煥乎有五彩
	(07) 絺繡 外內歷試 難一二數所守已知
	(08) 前後曹逢 凡幾十年厥用未究 豈意
	(09) 寇公之鑰未返 遽見歐陽之疏荐
	(10) 陳 以年紀則非禮經所云 卿豈便訣
	(11) 以仗用則非此人莫可 予難曲循 纔還
	(12) 朝而巽辭采堅 故引例而至懇勉
	(13) 許 於戲 庸褒嘉遜 式遵彝章 麻
	(14) 誥將頒 實是清朝之美事 松操采
	(15) 固 俾便暮境之間居 故茲教示 想
	(16) 宜知悉
	(17) 乾隆三十九年六月初九日

<圖 V-12> 1774년(영조 50) 李最中 致仕教書<sup>341)</sup>

먼저 始面에는 ‘教’字와 ‘書’字 사이에 ‘致仕奉朝賀’와 수취자의 성명을 공통적으로 기재하였다. 이것은 나이가 연로해서 現職에서 致仕한 후에 봉조하의 관직을 수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치사교서에는 ‘致仕奉朝賀’ 앞에 致仕하기 직전의 품계가 기재되어 있거나 품계와 관직이 기재되었다. 예를 들면 趙冀永 치사교서에는 ‘致仕奉朝賀’ 앞에 輔國崇祿大夫가 있고, 李憲文 치사교서에는 ‘致仕奉朝賀’ 앞에 輔國崇祿大夫와 宗正卿府事가 있다.

<表 V-16> 致仕教書의 始面<sup>342)</sup>

번호	발급 연도	발급	수취	始面	기재방식
1	1746년(영조 22)	英祖	金有慶	教致仕奉朝賀金有慶書	教+致仕奉朝賀+姓名+書
2	1774년(영조 50)	英祖	李最中	教致仕奉朝賀李最中書	教+致仕奉朝賀+姓名+書
3	1860년(철종 11)	哲宗	趙冀永	教輔國崇祿大夫致仕奉朝賀趙冀永書	教+品階+致仕奉朝賀+姓名+書
4	哲宗年間	哲宗	李憲文	教輔國崇祿大夫宗正卿府事致仕奉朝賀李憲文書	教+品階+官職+致仕奉朝賀+姓名+書

341) 1774년(영조 50) 102.0×179.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教書 14(76585).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65쪽.

342) 『承政院日記』와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된 致仕教書의 원문은 始面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물 문서와 사진유리필름자료를 중심으로 致仕教書의 始面을 살펴보았다.

본문에는 ‘王若曰’ 다음에 致仕와 관련된 용어와 내용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七十’·‘七旬’·‘引年’ 등과 같이 70세를 표현하는 용어와 나이가 칠십이면 致仕한다는 『禮記』 「曲禮」 上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로한 관원이 致仕를 요청하는 上疏·劄子 등을 올리면, 이에 대해 국왕이 上疏·劄子 등의 요구에 부응하여 致仕를 허락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다음에는 수취자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惟卿’으로 시작한 부분에는 致仕한 관원의 학문·성품·행실·과거 功績 등을 여러 故事나 중국의 賢人들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表 V-17> 致仕敎書의 본문 1

번호	발급 연도	수취자	본문
1	1733년(영조 9)	李世瑾	王若曰 引七袞致臣之義 連十餘告休之章 豈無惜老成之心 亦宜砥恬穆之節
2	1745년(영조 21)	李秉常	王若曰 耆算洽滿七旬 慨遐情之莫挽 遜牘殆至三四 許始願之曲循
3	1746년(영조 22)	朴弼琦	王若曰 引七袞致臣之義 爰稽古典 嘉一封告老之章 式循舊典
4	1746년(영조 22)	尹陽來	王若曰 耆算過七又四 方喜朝有老成 遜牘至再而三 肆軫禮以進退
5	1764년(영조 40)	韓師得	王若曰 七旬致政 卿援古經 一疏許休 予循近例
6	1770년(영조 46)	李燮元	王若曰 引年陳懇 素心莫回 以禮許休 成命斯降
7	1770년(영조 46)	洪鳳漢	王若曰 諒情勢之難強 何待引年 示恩禮之有終 特許致政
8	1774년(영조 50)	李最中	王若曰 七十方許致事 夫豈引年之時 君臣貴相知心 勉副乞休之請
9	1780년(정조 4)	趙重晦	王若曰 邵齡恰滿七十 莫挽遐心, 遜牘殆至再三 特副苦懇
10	1812년(순조 12)	金履翼	王若曰 年七旬而致政 卿有援經之苦誠 章一上而許休 予循優老之盛典
11	1866년(고종 3)	尹致羲	王若曰 臣有一二同心 予欲惟舊德圖任 古者七十致仕 卿乃以禮經爲言
12	1880년(고종 17)	姜洙	王若曰 予有臣一二同心 舊德政須於側席 古之人七十致仕 苦懇曲副於懸車

본문의 중간 이후에는 致仕한 관원에게 奉朝賀라는 職銜을 주고 치사교서를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봉조하는 ‘三字之名’·‘三字之銜’·‘三字銜’·‘三字之華銜’·‘三字華銜’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치사교서는 ‘十行之宸札’·‘十行之綸’·‘十行之寵批’·‘十行誥’·‘十行之誥’·‘十行恩誥’·‘十行麻誥’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三字’와 ‘十行’ 등의 용어는 조선 후기 영조대 이후에 발급된 치사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본문의 끝 부분에는 ‘於戲’라는 감탄사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正月이나 나라에 경하할 일이 있으면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끝맺고 있다.

<表 V-18> 致仕敎書의 본문 2

번호	발급 연도	수취자	본문
1	1736년(영조 12)	李台佐	燁煌十行之宸札, 鄭重三字之寵名
2	1770년(영조 46)	洪鳳漢	三字之名特賜, 實爲卿身之全安, 十行之綸誕敷, 可想予心之悵缺
3	1788년(정조 12)	鄭述祚	賁爾三字之銜, 渙我十行之誥
4	1791년(정조 15)	鄭存謙	卿可言私, 豈予惜三字銜, 肆今宣十行制, 丹綵敍立朝大節
5	1795년(정조 19)	洪秀輔	三字之華銜特畀, 允合保終始之圖, 十行之恩褒更加, 俾爲聳瞻聆之道
6	1808년(순조 8)	李敬一	庸頒十行之誥, 特修三字之銜
7	1812년(순조 12)	金履翼	十行之寵批斯隆, 行古人道, 三字之華銜特畀, 曠一世恩
8	1818년(순조 18)	李庚運	茲紆三字銜特畀, 亦欲禮以優也, 爰修十行誥誕宣
9	1826년(순조 26)	金履陽	茲許三字華銜, 更修十行恩誥
10	1833년(순조 33)	南公轍	諭深意於十行宸札, 副至願於三字華銜
11	1839년(헌종 5)	徐有槩	茲宣十行恩誥, 乃修三字華銜
12	1865년(고종 2)	金興根	迺縻三字華銜, 仍宣十行麻誥
13	1866년(고종 3)	尹致羲	肆縻三字華銜, 仍降十行麻誥
14	1880년(고종 17)	姜洌	茲許華銜三字, 用頒麻誥十行

치사교서를 발급하기 위해 먼저 연로한 관원이 致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원의 致仕 과정은 먼저 연로한 관원이 국왕에게 致仕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해당 관원의 치사를 만류하였고, 이에 해당 관원은 다시 상소를 올려 致仕를 요청하였다. 결국 국왕이 관원의 致仕를 윤허한 후에 해당 관원을 봉조하에 임명하고 치사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때 치사교서의 제출은 예문관·홍문관·규장각의 관원이나 지제교를 겸직한 관원 등이 담당하였는데,<sup>343)</sup> 1773년(영조 49) 3월에는 발급된 金致仁의 치사교서는 영조가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다.<sup>344)</sup>

치사교서를 수취하는 과정은 국왕이 親臨할 경우에 致仕한 관원이 국왕에게 숙배할 때에 치사교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친림하지 않을 경우에는 致仕한 관원이 국왕에게 숙배하고 나온 후에 경복궁의 崇陽門이나 창덕궁의 延英門 밖에서 교서를 수취하였으며, 보국승록대부 이상의 대신은 賓廳에서 수취하였다. 致仕한 관원의 병환

343) 『承政院日記』 숙종 19년(1693) 4월 24일(丁酉): 禮曹啓曰, 政院啓辭, 行判中樞府事李觀徵, 休致之請, 既已允許, 應行節目, 該曹考例稟處事, 允下矣. … 取考藝文館謄錄, 則曾有致仕敎書之文云. 敎書, 今亦依前例, 令藝文館撰出, 何如. 傳曰, 允.

344) 『承政院日記』 영조 49년(1773) 3월 27일(丙辰): 御製敎致仕奉朝賀金致仁書. 王若曰, 予聞自古君臣際遇何限, 而豈有若子與卿乎. … 可有辭於後世, 誠無愧乎前辟, 故茲親諭, 卿宜知悉.

이 위중해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왕의 特敎를 받아서 자손이 치사교서를 대신 받았으나 국왕의 특교가 없으면 치사교서를 대신 받을 수 없었다.<sup>345)</sup> 예를 들어 1769년(영조 45) 5월에 洪象漢이 병환이 심하여 致仕할 때에 영조의 명에 따라 그의 아들인 洪樂性이 치사교서를 수취하였다.<sup>346)</sup>

#### 4) 조선시대 賜几杖 제도

조선시대 賜几杖 제도는 1397년(태조 6) 12월에 시행된 『經濟六典』에 賜几杖 관련 조항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 사제장 제도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가 1420년(세종 2) 2월에 예조에서 『경제육전』에 의거하여 연로한 대신에게 几杖을 하사하는 법을 시행할 것을 아뢴 후에 사제장 제도가 시행되었다.<sup>347)</sup> 이에 따라 1421년(세종 3) 1월 16일에 成石璘에게 几杖을 하사하였으며,<sup>348)</sup> 같은 해 1월 19일에 劉敞과 柳觀에게도 杖을 하사하였다.<sup>349)</sup>

이후 賜几杖 제도는 『경국대전』에 관련 조항이 수록되었다. 『경국대전』 「禮典」 惠恤條에는 관직이 1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 이상의 관원으로 국가의 重輕事에 관계되어 致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조에서 국왕에게 아뢴 후에 几杖을 내려준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sup>350)</sup> 이에 따라 연로한 관원이 국왕에게 致仕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致仕를 윤택하지 않을 경우에 국왕은 해당 관원에게 几杖을 하사하였다. 국왕에게 杖을 하사받은 관원은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은 箋文을 작성해서 국왕에게 올렸다. 이 때 국왕이 親臨하여 几杖을 하사할 경우에 해당 관원은 당일 국왕에게 進문을 올렸으며, 국왕이 친림하지 않고 本家에서 杖을 하사할 경우에는 다음 날에 국왕에게 進문을 올렸다.<sup>351)</sup>

345)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奉朝賀宣麻, 非親臨, 則延英門外教書傳授啓辭. [肅拜下後, 該房傳授.] 大臣輔國, 則賓廳傳授, 而亦爲稟旨. [奉朝賀肅拜單子入啓時, 宣麻文同入, 仍爲賓啓請.]

『銀臺條例』 「禮攷」 宣麻: 奉朝賀宣麻文, 肅謝日 [單致仕無肅謝等節.] 該房承旨, 啓稟後, 詣崇陽門外 [東闕則延英門外] 傳授. [雖有身病, 非特教, 毋得替受.]

346) 『英祖實錄』 45년(1769) 5월 22일(癸卯): 上御德游堂南庭, 宣奉朝賀洪象漢致仕教書. 象漢病甚, 上召其子樂性問之, 從弟鳳漢, 又爲之請其休致, 上遂許之. 是日宣麻, 令樂性替受.

347) 『世宗實錄』 2년(1420) 2월 26일(甲子): 禮曹啓, 年老大臣賜几杖之法, 載在六典, 而有司尚未舉行, 有違敬老之義. 乞依六典舉行. 從之.

348) 『世宗實錄』 3년(1421) 1월 16일(己卯): 賜几杖于昌寧府院君成石璘.

349) 『世宗實錄』 3년(1421) 1월 19일(壬午): 賜几杖于玉川府院君劉敞·藝文大提學柳觀.

350) 『經國大典』 「禮典」 惠恤: 官至一品年七十以上, 係國家重輕, 不得致仕者, 本曹啓聞賜几杖.

351) 『六典條例』 「禮典」 禮曹, 典客司, 賜與: 賜几杖教書, [藝文館撰出.] 注書陪進宣讀, 几杖, [工曹造成.]

賜几杖 제도는 1668년(현종 9)에 현종이 李景奭에게 几杖을 하사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sup>352)</sup> 1668년(현종 9)에 領中樞府事로 재직 중이었던 이경석은 병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사직을 청하는 上疏와 劄子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현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30일에 홍문관교리 李奎齡은 74세의 이경석이 연로하여 조정에 나오기 어려우며, 이경석과 같이 연로한 대신을 전에도 예우하는 법이 있었다고 아뢰었고, 이에 대하여 현종은 이경석에게 几杖을 하사할 것을 명하였다.<sup>353)</sup>

현종의 명에 따라 賜几杖을 담당하는 衙門인 예조에서 이경석의 사제장을 준비하였다. 11월 4일에 예조에서는 1623년(인조 1)에 영의정 李元翼에게 杖을 하사할 때의 일을 取考해서 이경석에게 杖을 하사할 것을 아뢰고 현종의 윤허를 받았다.<sup>354)</sup> 이에 따라 이경석에게 杖을 하사할 때에 賜几杖敎書를 반포하고 같은 날에 內外宣醮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11월 19일에 예조에서는 單子를 올려서 杖을 하사하는 날짜를 11월 27일로 택일하였고, 장소는 이경석의 本家로 결정하였다.<sup>355)</sup> 이 과정에서 사제장교서는 지제교 南二星이 제출하였으며, 几杖은 工曹에서 제작하였다.<sup>356)</sup>

11월 27일에 이경석의 本家에서 賜几杖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사제장교서는 승정원주서가 龍亭에 담아서 가지고 갔으며, 几杖은 공조낭청이 架子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사제장교서와 杖이 이경석의 본가에 도착하면, 通禮院의 관원이 執事가 되어 일을 주관하였다. 먼저 執事는 사제장교서와 杖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경석과 참석한 관원들을 인도하여 이경석 本家の 中門 밖에 길 왼쪽에 나와서 차례로 서게 하였고,

承旨傳授, 翌日進箋謝恩.[親臨賜几杖, 則即日進箋謝恩.]

352) 1668년(현종 9)에 顯宗이 李景奭에게 几杖을 下賜하는 과정은 『洗草宴膳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洗草宴膳錄』은 장서각에 소장(귀 K2-3090)되어 있으며, 형태사항은 ‘線裝, 1冊(111張): 四周單邊 半郭 32.0×21.0cm, 烏絲欄, 半葉 10行字數不定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41.0×27.0cm’이며, 「禮曹之印」이 踏印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Web/> 참조)

353) 『洗草宴膳錄』 戊申十一月初五日. [領中樞府事李景奭賜几杖頒敎書事.] 一 曹啓辭. 今十月三十日召對入侍時, 校理李奎齡所啓. 領中樞府事李景奭, 仁祖朝大臣也. 以三朝元老, 年今七十有四, 而向上之誠篤, 至凡於起居之列, 未嘗不參, 而筋力不逮, 行步艱難, 出入闕庭之際, 至於再三休息, 如此大臣, 則在前亦有優老之典, 故敢此仰達矣. 上曰, 賜几杖可也事, 命下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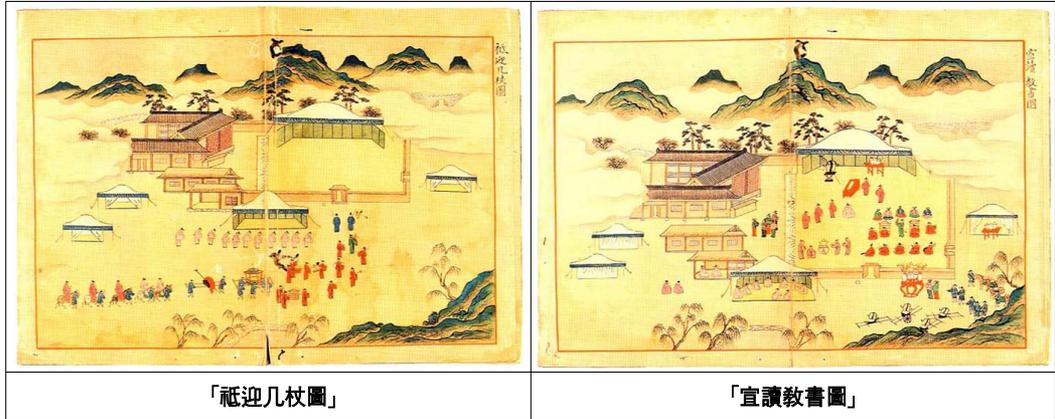
354) 『承政院日記』 현종 9년(1668) 11월 4일(己亥): 禮曹啓曰, 以校理李奎齡所啓, 命下矣. 取考前事, 則癸亥年九月, 故領議政李元翼賜几杖時, 頒敎書內外宣醮後, 又自耆老所, 啓請耆老宴, 同日兼行, 而特命一等賜樂矣. 今此領府事李景奭賜几杖時, 內外宣醮等事, 分付各該司, 敎書, 亦令藝文館撰出, 何如. 傳曰, 允.

355) 『洗草宴膳錄』 戊申十一月初五日. … [賜几杖擇日事.] 一 曹單子. 今此領中樞府事李景奭賜几杖時, 頒敎書及內外宣醮, 依前定奪舉行, 而今十一月二十七日設行於本家事, 分付何如. 康熙七年十一月十九日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敎. [擇日則自本家爲之, 以此聞見舉行事.]

356) 『洗草宴膳錄』 戊申十一月初五日. … 一 几杖, 則工曹造作.

이경석과 관원들은 사래장교서와 궤장을 향하여 鞠躬하고 공손히 맞이한 후에 각자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였다.

<圖 V-13> 『賜几杖宴會圖帖』<sup>3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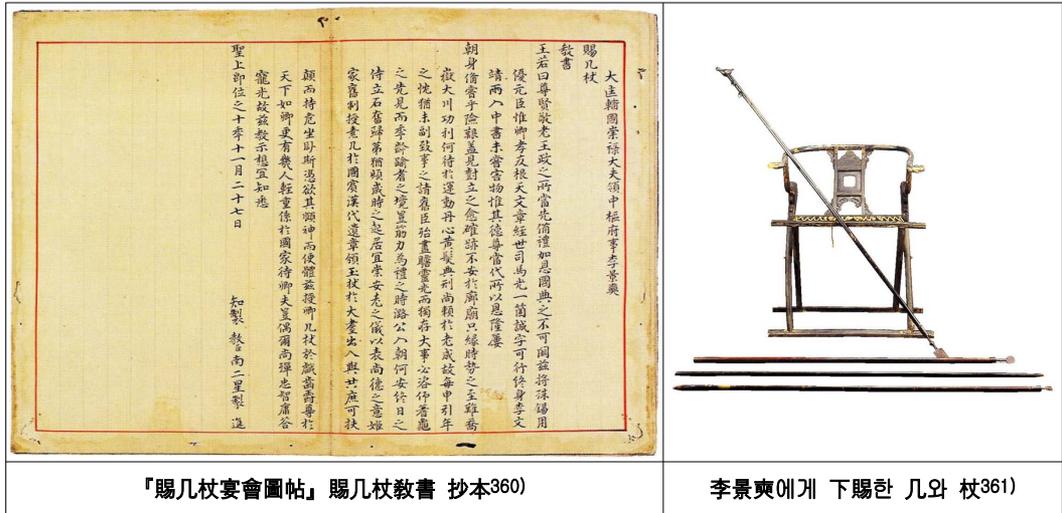
執事は 사래장교서를 本家の 북벽에 위치한 탁자 위에 받들어 두었고, 궤장은 北壁의 東邊에 두었다. 執事が 인도하여 승지와 주서와 이경석이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였고, 執事が ‘四拜’를 외친 후에 이경석이 四拜하였으며, 집사가 ‘跪’를 외친 후에 이경석이 꿇어앉았다. 讀敎官인 주서가 교서를 宣讀하고, 승지가 几杖을 전해 주었는데, 이 때 几를 먼저 받고, 杖을 다음에 받았다. 執事が ‘四拜’를 외친 후에 이경석이 四拜하고, 執事の 인도에 따라 승지와 주서와 이경석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사래장교서를 宣讀하고 几杖을 하사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sup>358)</sup> 당시 사래장교서를 선독한 주서는 宋光淵이고, 궤장을 전달한 승지는 도승지 南龍翼이었다. 이후 內資寺 관원과 도승지가 內外宣醮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인 11월 28일에 이경석은 궤장을 하

357) 『賜几杖宴會圖帖』은 「祇迎几杖圖」·「宣讀敎書圖」·「內外宣醮圖」의 그림과 賜几杖敎書의 抄本, 참석한 관원 명단, 賜几杖을 축하하는 七言律詩, 箋文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박물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본은 絹本彩色, 55.5×37.0cm이고 보물 제930호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은 絹本彩色, 55.6×36.7cm이다. (박정혜, 「朝鮮時代 賜几杖圖帖과 延諭圖帖」, 『美術史學研究』 231, 2001. 경기도박물관, 『全州李氏(白軒相公派) 寄贈古文書』, 2003.)

358) 『洗草宴謄錄』 戊申十一月二十七日. … [敎書儀注.] 一 迎敎書·受賜几杖儀. 其日設卓於主人第北壁南向, 具紅袱. 注書以敎書盛龍亭, 工曹郎廳以几杖置於架子, 俱至主人第. 執事通禮院官, 引領府事及諸宰, 出就中門外道左, 序立鞠躬, 祇迎訖. 執事捧敎書, 置於桌上, 几杖置於北壁東邊. 執事引承旨及注書, 俱以次立於卓東西向. 執事引領府事就卓前近, 南北向立. 執事唱四拜, 領府事四拜訖. 注書取敎書, 執事對展, 執事唱跪, 領府事跪, 注書宣讀敎書訖. 執事以敎書還置於桌上, 領府事進詣卓前, 北向跪. 承旨以几杖授之, 先授几, 次授杖, 領府事以次受之, 以授執事. 俯伏興, 退復位, 執事唱四拜, 領府事四拜訖. 執事引承旨及注書, 皆就次, 執事引領府事就次.

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箋文을 올렸다.<sup>359)</sup>

<圖 V-14> 李景奭 賜几杖教書 抄本과 几杖



『賜几杖宴會圖帖』 賜几杖教書 抄本<sup>360)</sup>

李景奭에게 下賜한 几와 杖<sup>361)</sup>

궐장을 하사할 때에 대부분 이경석의 사례와 같이 해당 관원의 집에 승지와 주서를 보내서 전달하였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국왕이 친림하여 궁궐에서 사궐장교서를 내려 주고 궐장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1797년(정조 21) 4월 24일에 정조는 昌慶宮 集福軒의 外軒에 친림하여 영의정 洪樂性에게 궐장을 하사하고 사궐장교서를 내려주었다.<sup>362)</sup>

359) 『洗草宴膳錄』 戊申十一月二十七日. … [謝箋] 一 賜几杖·頒教書·內外宣醞翌日, 領府事謝箋, 自耆老所至仁政殿, 細仗鼓吹, 止先後四拜禮後, 退出. 儀注則書寫次知舉行, 其日承旨中使來參事.

賜几杖後翌日進箋.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臣李景奭言. 康熙柒年拾壹月貳拾柒日, 伏蒙異數, 絲綸特降, 几杖爰錫, 仍命宣醞, 殊渥隆洽, 不勝感激. 謹奉箋稱謝者, 臣景奭誠惶誠恐, 稽首稽首. 伏以涯分已極, 恒切戰兢之心, … 臣無任瞻天仰聖激切屏營之至, 謹奉箋稱謝以聞.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3, 383~385쪽)

360)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3, 17쪽.

361)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3, 12쪽.

362) 『銀臺便攷』 『禮房攷』 宣麻: 親臨集福軒外軒, 領議政洪樂性賜几杖.[丁巳四月二十四日, 賜几杖宣教. 進箋後, 至本家, 當領宣醞, 而賜樂, 則自闕門前導事下教. 教書及几杖, 大臣領至本家時, 參宴諸賓祇迎, 載在禮文, 自闕外祇迎, 仍爲圍繞事, 預爲知悉, 俾各依此舉行事, 下教.]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4월 24일(甲午): 丁巳四月二十四日卯時, 上御集福軒外軒. 領議政洪樂性賜几杖入侍時, 行都承旨趙鍾寬, 左承旨韓晚裕, 右承旨李勉兢, 左副承旨尹致性, 右副承旨李肇源, 同副承旨李泰永, 假注書李允謙·尹命烈, 記事官吳泰曾, 記事官金履永, 檢校待教沈象奎·徐有渠, 以次侍立. 上具翼冠·衮龍袍, 自內出陞御座. 引儀引領議政洪樂性及應參諸臣入就拜位, 唱行四拜禮. 領議政只用一坐再至之禮. 宣教官金近淳, 讀宣教書. 工曹郎廳傳几杖, 樂性跪受, 仍進謝箋後, 引儀唱受几杖大臣及應參諸臣四拜禮訖.

### 5) 賜几杖教書의 傳存과 문서식

사래장교서는 1668년(현종 9)에 현종이 李景奭에게 几杖을 하사할 때에 내린 사래장교서가 유일하게 실물 문서로 전해지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賜几杖宴會圖』에 수록된 李景奭의 사래장교서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許穆의 사래장교서는 모두 실물 문서를 轉寫한 자료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개인 문집 등에 26건의 사래장교서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경석의 사래장교서와 轉寫된 자료를 통하여 사래장교서의 문서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01)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      | (15) 未副致事之請 舊臣殆盡 瞻靈光而  |
| (02) 事 李景奭              | (16) 獨存 大事必咨 仰蒼龜之先見 而年 |
| (03) 賜几杖                | (17) 齡踰耆之境 筋力爲禮之時 潞公   |
| (04) 教書                 | (18) 入朝 何安終日之侍立 石奮歸第 猶 |
| (05) 王若曰 尊賢敬老 王政之所當先 備禮 | (19) 煩歲時之起居 宜崇安老之儀 以表  |
| (06) 加恩 國典之不可闕 茲將殊錫 用優  | (20) 尚德之意 姬家舊制 授素几於國賓  |
| (07) 元臣 惟卿孝友根天 文章經世 司馬  | (21) 漢代遺章 頒玉杖於大臺 出入與共  |
| (08) 光一箇誠字 可行終身 李文靖兩入   | (22) 庶可扶顛而持危 坐臥斯憑 欲其頤  |
| (09) 中書 未嘗害物 惟其德尊當代 所以  | (23) 神而使體 茲授卿几杖 於戲 齒爵尊 |
| (10) 恩隆屢                | (24) 於天下 如卿更有幾人 輕重係於國  |
| (11) 朝 身備嘗乎險艱 蓋見樹立之愈確 跡 | (25) 家 待卿夫豈偶爾 尚彈忠智 庸答寵 |
| (12) 不安於廊廟 只緣時勢之至難 喬嶽   | (26) 光 故茲教示 想宜知悉       |
| (13) 大川功利 何待於運動 丹心黃髮典   | (27) 康熙七年十一月二十七日       |
| (14) 刑 尚賴於老成 故每申引年之忱 猶  |                        |

<圖 V-15> 1668년(현종 9) 李景奭 賜几杖教書363)

이경석 사래장교서의 始面은 이경석의 품계·관직·성명을 기재하고 이어서 ‘賜几杖教書’를 기재하였다. 이 경우에 ‘賜几杖’은 국왕이 几杖을 하사한다는 행위이고 ‘教書’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行을 바꾸어서 기재하였다.

363) 1668년(현종 9), 경기도박물관 所藏.

<表 V-19> 賜几杖敎書의 본문 1

번호	발급 연도	수취자	본문
1	1424년(세종 6)	柳廷顯	[王若曰] 股肱之臣 既有達尊之美 人君之道 宜加致敬之儀 此古今之令規 非有我之私惠
2	1424년(세종 11)	孟思誠	[王若曰] 耆英舊德 國家之所倚重 而人君之所禮貌也
3	1424년(세종 11)	閔汝翼	[王若曰] 大臣既有達尊之美 人君宜加致敬之儀 是乃令規 固非私惠
4	1424년(세종 11)	權軫	[王若曰] 臣有齒德 是乃達尊 君任老成 當加優禮
5	1439년(세종 21)	許稠	[王若曰] 碩德耆年 大臣既具達尊之美 旌賢尚齒 人主當加優禮之恩
6	1439년(세종 21)	宋居信	[王若曰] 委質效忠 既年德之俱邁 尊賢敬老 宜寵數之兼隆 是乃恒規 非予私惠
7	1439년(세종 21)	趙末生	[王若曰] 宿德耆英 既有達尊之美 殊恩異數 宜加致敬之儀 此帝王優禮大臣之恒規 而古今崇重老成之令典
8	1522년(중종 17)	高荊山	[王若曰] 一國安危 所係者重 大臣去就 未宜以輕 何引年而求休 欲保閑而自佚
9	1527년(중종 22)	張順孫	[王若曰] 致仕陳戒 是不忘本朝之純誠 告老留之 亦篤裴王家之大義 耆舊去就 係國安危 胡引年而保閑 勿憚勞而就散
10	1531년(중종 26)	鄭光弼	[王若曰] 釋重負而乞骸 雖據經致仕之雅尚 尊高年而褒德 亦貪賢求輔之至懷 念帝王之任人 唯老成焉委寄
11	1539년(중종 34)	柳溥	王若曰 文潞公懇辭告老 德則邵而年則高 宋神宗溫詔請留 賜之詩而錫之燕
12	1548년(명종 3)	洪彦弼	王若曰 人臣引年而致仕 蓋古今之舊章 帝王尊德而借留 寔國家之美意
13	1585년(선조 18)	盧守愼	王若曰 壽俊在厥服 注意方勤於仰成 老成有典刑 錫寵宜隆於善養
14	1615년(광해군 7)	鄭仁弘	[王若曰] 哲人作輔 任既委於股肱 元老告歸 禮宜敦於几杖 肆錫養衰之具 庸殫崇德之規
15	1623년(인조 1)	李元翼	王若曰 卿今老矣 豈合趨走於朝 予欲安之 斯有几杖之錫 端由至敬 實非虛文
16	1668년(현종 9)	李景奭	王若曰 尊賢敬老 王政之所當先 備禮加恩 國典之不可闕 茲將殊錫 用優元臣
17	1675년(숙종 1)	許穆	王若曰 老者安之 詎弛將護之念 禮則然矣 爰申几杖之頒 亦以優賢 聊用備物
18	1689년(숙종 15)	權大運	王若曰 神明蘊蓄 蒼龜壽而爲靈 筋力衰微 几杖輔其不逮 茲申寵貺 式據彝章
19	1741년(영조 17)	朴弼成	王若曰 禮待儀賓 卽國家親厚之意 安養耆耄 亦王者尊尚之誠 茲稽舊章 用侈殊錫
20	1784년(정조 8)	李楡	王若曰 於乎先烈之祗述 今辰何辰 巋然宗英之獨存 前甲後甲 蓋予心方切於感舊 而殊錫特侈於曠前
21	1797년(정조 21)	洪樂性	王若曰 鄒書著三達之稱 尊高年所以長長 思傳揭九經之義 敬大臣次於親親 斯乃王政之所當先 厥有國典之不可闕
22	1825년(순조 25)	金思穆	王若曰 享箕福而曰壽日 康考德叶山斗之望 回蓮榜於是年是月 彝典降几杖之頒
23	1844년(헌종 10)	金履陽	王若曰 予以萬億敬天 賴茲老成宿德 人生九十曰耄 嘉乃家國同休 斯將使體之資 庸推祝心之眷
24	1845년(헌종 11)	趙萬永	王若曰 敬國賓則周制著彤几之授 惠大耋則漢儀載玉杖之頒
25	1862년(철종 13)	鄭元容	王若曰 位至大官 年至大耋 而尤貴乎大闡之名 壽有回甲 耆有回昏 而莫尚於回榜之慶
26	1866년(고종 3)	金左根	王若曰 躋七袞而作聖世元臣 禮有本於老老 歷五朝而爲王室懿戚 情實繇乎親親

본문에는 ‘王若曰’의 다음에 주로 연로한 관원을 禮遇하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내용이나 經傳을 인용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유정현의 사귀장교서는 ‘股肱의 신하가

達尊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법규'라고 하였고, 洪彦弼의 사계장교서는 '연로한 신하가 致仕하는 것은 古今의 舊章이고, 제왕이 덕을 존중하여 만류하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였다. 또한 홍낙성의 사계장교서는 『孟子』의 '三達'과 『中庸』의 '九經'을 인용해서 연로한 관원을 존송하고 대신을 공경하는 것은 王政에서 당연히 우선해야 하는 것이며, 國典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다음에는 '惟卿'으로 시작해서 胥將을 하사 받은 관원에 대한 학문·성품·행실·과거 功績 등을 여러 故事나 중국의 賢人들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表 V-20> 賜几杖教書의 본문 2

번호	발급 연도	수취자	본문
1	1424년(세종 6)	柳廷顯	茲賜卿以鳩刻之杖 烏皮之几以慰之
2	1424년(세종 11)	孟思誠	茲賜几杖 以昭達尊
3	1424년(세종 11)	閔汝翼	茲率典常 用錫几杖
4	1424년(세종 11)	權軫	茲錫几杖 昭示禮經
5	1439년(세종 21)	許稠	頒鳩杖以扶筋力 兼烏几以怡心神
6	1439년(세종 21)	宋居信	茲率典章 用賜几杖
7	1439년(세종 21)	趙末生	茲賜卿以烏皮之几 鳩刻之杖各一事以慰之
8	1522년(중종 17)	高荊山	特賜几杖 用表尊安
9	1527년(중종 22)	張順孫	特賜几杖 用着尊安
10	1531년(중종 26)	鄭光弼	故賜几杖之儀 用示禮貌之盛
11	1539년(중종 34)	柳溥	況今几杖之分 實備尊安之具
12	1548년(명종 3)	洪彦弼	扶顛持危 杖與鳩刻之穩 居閑處獨 几錫烏皮之安
13	1585년(선조 18)	盧守愼	御几杖只畀有司 勉從崇讓之意
14	1615년(광해군 7)	鄭仁弘	烏皮淨滑 柢求支體之安 鳩刻玲瓏 詎取過眉之玩
15	1623년(인조 1)	李元翼	據烏皮而偃息 爲其怡神 携鳩像而起居 欲令禁噓
16	1668년(현종 9)	李景奭	姬家舊制 授素几於國賓 漢代遺章 頒玉杖於大耋 出入與共 庶可扶顛而持危 坐臥斯憑 欲其頤神而使體 茲授卿几杖
17	1675년(숙종 1)	許穆	賜烏皮而使身 漢事然也 飾鳩像而禁噓 周制存焉
18	1689년(숙종 15)	權大運	烏皮釋倦 聊資偃息之便 鶴膝持傾 度免蹉跎之危
19	1741년(영조 17)	朴弼成	茲授卿几杖 鳩刻隨身 宜作不噓之祝 烏皮使體 庶爲怡神之資
20	1784년(정조 8)	李楡	苟欲安鮒背銳齒之老 厥亦有烏几鳩筇之頒 扶杖朝堂 考禮經之遺制 據梧宴室 遵耆俊之古規
21	1797년(정조 21)	洪樂性	登筵簞班 已許兩子之扶掖 上尊設簋 那無一朝之貺心 尙亦有烏几鳩筇 可以安黃髮鮒背

번호	발급 연도	수취자	본문
22	1825년(순조 25)	金思穆	鳩筇持將 替孫曾之扶掖 烏几息偃 便日夕之支頤
23	1844년(헌종 10)	金履陽	若稽尚齒尚德之儀 必貴賜几賜杖之禮
24	1845년(헌종 11)	趙萬永	自古縉紳所榮 最是杖几之賜 肆筵席而旋授烏皮淨塵 祝嘏而常扶鳩飾隨影
25	1862년(철종 13)	鄭元容	載念措紳所榮 厥有几杖之禮 烏皮代隱坐之具 可資南郭之間憑 鳩飾爲祝嘏之方 亦有東京之美制
26	1866년(고종 3)	金左根	肆惟几杖進拂之儀, 合施端委賓密之地

본문의 중간 이후에는 연로한 관원에게 几杖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茲賜几杖’·‘用賜几杖’·‘特賜几杖’·‘茲錫几杖’·‘用錫几杖’·‘茲授卿几杖’ 등과 같이 제장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几와 杖을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几는 ‘烏几’·‘烏皮’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고, 杖은 ‘鳩杖’·‘鳩像’·‘鳩筇’·‘鳩刻’·‘鳩飾’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几를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杖의 끝에는 鳩의 장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끝부분에는 ‘於戲’라는 감탄사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연로한 관원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내용, 국왕을 잘 보필하라는 내용, 忠節을 다하여 명예를 보존하라는 내용, 老成한 계책을 진언하기에 힘쓰라는 내용 등으로 본문을 끝맺고 있다.

이상으로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의 역사, 제도, 문서식, 발급·수취 과정 등을 살펴 보았다.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는 국왕이 연로한 관원을 제도적으로 禮遇하기 위하여 발급한 교서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발급된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779년(정조 3) 9월에 정조는 洪國榮의 사직 상소를 윤택하면서 치사교서를 내려주었다.<sup>364)</sup> 당시 홍국영의 나이는 32세이었지만, 정조는 정치적으로 실각한 홍국영을 예우하면서 봉조하로 임명하였다. 홍국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는 국왕과 신하 사이의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시켜서 살펴볼 수 있다.

364) 『正祖實錄』 3년(1779) 9월 28일(己酉), 『承政院日記』 정조 3년(1779) 9월 28일(己酉).

### 3. 儀禮 관련 교서

#### 3.1 納采教書·納徵教書·納幣教書·告期教書

조선시대에 국왕이 왕비와 혼례를 거행하는 과정은 揀擇을 통해 왕비를 결정한 후에 納采·納徵·告期·冊妃·命使奉迎(또는 親迎)·同牢의 의식을 거행하였다.<sup>365)</sup> 또한 조선 후기에는 국왕이 간택을 통해 선발된 嬪과 혼례를 거행할 때에는 納采·納幣·冊嬪·朝見·同牢의 의식을 거행하였다.<sup>366)</sup> 국왕은 혼례를 거행할 때에 妃와 嬪의 부친에게 교서를 내려주었다. 왕비를 맞이하는 納采·納幣·고기의 의식을 거행할 때에 국왕은 왕비의 부친에게 納采교서·納幣교서·고기교서를 내려주었으며, 빈을 맞이하는 納采와 納幣의 의식을 거행할 때에 국왕은 빈의 부친에게 納采교서와 納幣교서를 내려주었다. 본절에서는 국왕의 혼례와 관련된 納采교서·納幣교서·納幣교서·고기교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재위 기간 동안에 국왕이 혼례를 거행해서 왕비를 맞이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중국의 『晉書』·『宋史』 등의 사료와 『世宗實錄』 「五禮」를 통해 納采교서·納幣교서·고기교서의 연원과 조선시대에 정착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전하는 納幣교서·고기교서와 納幣교서의 전존 현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왕 혼례의 納采·納徵·告期

조선시대에 국왕은 대부분 왕세자로 책봉된 후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혼례를 통해

365) 조선시대 국왕의 婚禮와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문식, 「조선 왕실의 親迎禮 연구」, 『조선 왕실의 嘉禮』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이 옥,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 -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藏書閣』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2008.

신병주, 「왕의 반쪽, 왕비의 탄생 -조선시대 왕실 혼례 엿보기-」, 『조선 국왕의 일생』, 글항아리, 2009.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別宮親迎禮의 성립-」,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임민혁, 「제1부 왕비의 간택과 책봉」,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이미선, 「조선시대 後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366) 국왕의 婚禮에서 納采·納徵·納幣·告期の 의미는 다음과 같다. 納采는 국왕이 왕비의 집에 혼례를 청하는 의식이고, 納徵과 納幣는 동일한 의미로 국왕이 왕비와 嬪의 집에 成婚의 징표로 폐백을 보내는 의식이며, 告期는 국왕이 왕비를 命使奉迎하거나 親迎하는 吉日을 王妃의 집에 알려주는 의식이다. (이 옥, 위의 논문, 2008, 52쪽)

세자빈을 맞이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大君이나 君의 지위에서 혼례를 통해 府夫人이나 郡夫人을 맞이하였다. 선왕이 승하한 이후에 왕세자·대군·군이 국왕으로 즉위하면 世子嬪·府夫人·郡夫人은 왕비로 책봉되었다. 이 때문에 국왕이 재위 기간에 혼례를 거행하여 왕비를 맞이한 경우는 10명의 국왕이 12명의 왕비를 맞이하였다. 조선시대 재위 기간 동안에 국왕이 혼례를 거행하여 왕비를 맞이한 현황과 국왕 혼례의 納采·納徵·告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21> 국왕 혼례의 納采·納徵·告期

번호	국왕	혼례 연도	왕비	부친	納采	納徵	告期
1	端宗	1454년(단종 2)	定順王后	宋玘壽	1월 12일	1월 18일	1월 19일
2	中宗	1517년(중종 12)	文定王后	尹之任	6월 20일	6월 22일	7월 5일
3	宣祖	1602년(선조 35)	仁穆王后	金悌男	7월 2일	7월 4일	[7월 5~12일]
4	仁祖	1638년(인조 16)	莊烈王后	趙昌遠	11월 4일	11월 16일	11월 30일
5	肅宗	1681년(숙종 7)	仁顯王后	閔維重	4월 13일	4월 20일	4월 25일
6		1702년(숙종 28)	仁元王后	金柱臣	9월 20일	9월 26일	10월 1일
7	英祖	1759년(영조 35)	貞純王后	金漢耆	6월 13일	6월 17일	6월 19일
8	純祖	1802년(순조 2)	純元王后	金祖淳	9월 18일	9월 20일	10월 3일
9	憲宗	1837년(헌종 3)	孝顯王后	金祖根	3월 6일	3월 12일	3월 13일
10		1844년(헌종 10)	明憲王后	洪在龍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5일
11	哲宗	1851년(철종 2)	哲仁王后	金汶根	9월 19일	9월 21일	9월 24일
12	高宗	1866년(고종 3)	明成皇后	閔致祿	3월 9일	3월 11일	3월 17일

10명의 국왕 가운데 단종·순조·헌종·철종·고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후에 혼례를 거행하여 왕비를 맞이하였다. 단종은 1452년(단종 즉위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후에 1454년(단종 2)에 定順王后와 혼례를 거행하였으며, 순조는 1800년(순조 즉위년)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후에 1802년(순조 2)에 純元王后와 혼례를 거행하였다. 철종과 고종도 각각 19세와 12세의 나이로 즉위한 후에 哲仁王后·明成皇后와 혼례를 거행하였다. 중종·선조·인조·숙종·영조·헌종은 재위 기간 동안 왕비가 죽은 후에 혼례를 거행하여 繼妃를 맞이하였다. 중종은 章敬王后가 죽고 3년 후인 1517년(중종 12)에 文定王后와 혼례를 거행하였고, 선조는 懿仁王后가 죽고 3년 후인 1602년(선조 35)에 仁穆王后와 혼례를 거행하였다. 헌종은 두 경우에 모두 해당되었는데, 1834년(헌종 즉위년)에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후에 1837년(헌종 3)에 孝顯王后

와 혼례를 거행하였으며, 孝顯王后가 죽고 2년 후인 1844년(헌종 10)에 明憲王后와 혼례를 거행하였다.

국왕의 혼례에서 納采·納徵·告期·命使奉迎을 거행하는 제도는 『世宗實錄』 「五禮」 納妃儀에 따라 단종과 정순왕후의 혼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454년(단종 2)에 단종은 宋玟壽의 딸인 정순왕후와 혼례를 거행하였는데, 이 때 단종은 효령대군 李補와 호조판서 趙惠를 각각 嘉禮正使와 嘉禮副使로 임명하였다. 효령대군과 조혜는 단종의 명을 받아 송현수의 집에서 가서 1월 12일에 납채를 하였고,<sup>367)</sup> 1월 18일에 납징을 하였으며,<sup>368)</sup> 1월 19일에 고기를 하였다.<sup>369)</sup> 이어서 1월 24일에 단종은 효령대군과 조혜를 보내어 효령대군의 집에서 정순왕후를 奉迎하였다.<sup>370)</sup>

단종은 혼례에서 納采·納徵·告期·命使奉迎을 거행할 때에 納妃儀에 따라 왕비의 부친인 송현수에게 納采·納徵·告期·命使奉迎教書를 내려주었고, 이에 대해 송현수도 교서에 대한 答箋를 단종에게 올렸다. 교서 가운데 命使奉迎教書는 단종의 혼례에서만 발급되었는데, 이것은 국왕의 혼례가 중종대 이후에 命使奉迎에서 국왕의 親迎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sup>371)</sup> 이후 중종부터 고종까지 국왕이 혼례를 거행할 때에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가 발급되었다.

국왕의 혼례에서 납채·납징·고기의 의식을 거행할 때에 국왕은 嘉禮正使와 嘉禮副使를 임명해서 왕비의 집에 보냈다. 단종부터 고종까지 국왕이 혼례를 거행할 때에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로 임명된 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22> 국왕 혼례의 嘉禮正使와 嘉禮副使

번호	국왕	혼례 연도	嘉禮正使	嘉禮副使
1	端宗	1454년(단종 2)	孝寧大君 李補	戶曹判書 趙惠
2	中宗	1517년(중종 12)	未詳	未詳

367) 『端宗實錄』 2년(1454) 1월 12일 (甲子): 具冕服, 御勤政門, 遣孝寧大君補·戶曹判書趙惠, 納采于豐儲倉副使宋玟壽之第. …

368) 『端宗實錄』 2년(1454) 1월 18일 (庚午): 納徵于礪良君宋玟壽之第. 教曰, 卿之女, 孝友恭儉, 宜奉宗廟, 永承天祚. 以玄纁【玄六纁四】乘馬, 以章典禮. 答書曰, 主上殿下嘉命, 使者某, 重宣中教. 降昏卑陋, 崇以上卿, 寵以豐禮, 恭承舊章, 肅奉典教. 其儀與納采同.

369) 『端宗實錄』 2년(1454) 1월 19일 (辛未): 遣使告期于礪良君宋玟壽之第. 教曰, 謀于卿相, 稽于卜筮, 罔有不臧吉日, 維某月某甲子可迎. 率遵典禮, 今使某官某, 以禮告期. 答書曰, 主上殿下嘉命, 使者某, 重宣中教, 以某月某甲子吉日告期. 臣恭承舊章, 肅奉典教. 其儀如納采.

370) 『端宗實錄』 2년(1454) 1월 24일 (丙子): 遣孝寧大君補·戶曹判書趙惠, 奉迎王妃宋氏于孝寧大君第. 淑儀金氏自密城君琛家, 淑儀權氏自大司憲權躡家, 俱詣孝寧大君第, 隨王妃詣闕, 設同牢宴于交泰殿. …

371) 1517년(중종 12) 7월 19일에 중종은 文定王后를 직접 親迎하였으며, 중종대 이후 국왕의 혼례에서는 親迎禮가 정착되었다. (김문식, 앞의 논문, 2008, 112~116쪽)

번호	국왕	혼례 연도	嘉禮正使	嘉禮副使
3	宣祖	1602년(선조 35)	左議政 金命元	戶曹判書 韓應寅
4	仁祖	1638년(인조 16)	左議政 申景禎	漢城府判尹→刑曹判書 尹暉
5	肅宗	1681년(숙종 7)	領議政 金壽恒	兵曹判書 李翹
6		1702년(숙종 28)	左議政 李世白	禮曹判書 金鎭龜
7	英祖	1759년(영조 35)	領中樞府事 兪拓基	兵曹判書 趙雲達
8	純祖	1802년(순조 2)	左議政 李時秀	漢城府判尹 李敬一
9	憲宗	1837년(헌종 3)	前領議政 南公轍	行大護軍 朴岐壽
10		1844년(헌종 10)	判中樞府事 鄭元容	右參贊 李志淵
11	哲宗	1851년(철종 2)	領中樞府事 鄭元容	行龍驤衛大護軍 徐左輔
12	高宗	1866년(고종 3)	判敦寧府事 李景在	廣州留守 閔致久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를 임명하는 과정은 이조에서 관원을 임명하는 과정인 吏批에서 單望으로 후보자를 1명만 올려 결정하였다.<sup>372)</sup> 가례정사는 時·原任大臣 중에서 單付하였기 때문에 주로 의정부의 삼정승이 담당하였고, 삼정승 이외에는 영돈녕부사·영중추부사·관중추부사가 담당하였다. 가례부사는 주로 육조의 판서가 담당하였고, 판서 이외에 한성부관윤·우참찬·광주유수 등이 담당하였다.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는 왕비의 집에 가서 왕비의 부친에게 납채·납징·고기 의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에 교서에 관직과 성명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국왕이 내린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를 왕비의 부친에게 전달하였으며, 교서에 대해 왕비의 부친이 국왕에게 올리는 答箋을 국왕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은 국왕이 자신의 혼례에 직접 나설 수 없으며, 특히 국왕의 경우에는 부친인 先王이 없기 때문에 가례정사와 가례부사가 婚主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納采教書·納徵教書·告期教書の 문서식

국왕의 혼례에서 納采·納徵·告期の 의식을 거행할 때 교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조선

372) 『承政院日記』 헌종 3년(1837) 2월 18일(丙寅): 有政. 吏批, … 又啓曰, 嘉禮時正使, 今當差出, 而時·原任大臣中, 無可擬之人, 何以爲之. 敢稟/ 傳曰, 南奉朝賀爲之. 嘉禮正使單前領議政南公轍, 副使單朴岐壽, … 『承政院日記』 헌종 10년(1844) 8월 29일(丙寅): 有政. 吏批, … 嘉禮正使單領府事鄭元容, 副使單李志淵, … 『承政院日記』 철종 2년(1851) 윤8월 13일(丙寅): 有政. 吏批, … 嘉禮正使領府事鄭元容, 副使徐左輔單付. … 『承政院日記』 고종 3년(1866) 2월 28일(戊午): 有政. 吏批, … 嘉禮正使單判敦寧李景在, 副使單閔致久, …

초기에 吉禮·嘉禮·賓禮·軍禮·凶禮의 五禮를 정비하면서 시행되었다. 조선 초기에 오례를 정비하는 과정은 『세종실록』 「五禮」 序文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태종의 명으로 許稠가 길례의 序例와 의식을 찬술하였고, 이후 세종의 명으로 鄭陟과 卞孝文이 가례·빈례·군례·흉례를 찬정하였다. 그 방법은 조선이 개국한 후에 이미 시행하던 典故와 唐·宋의 舊禮와 明의 제도를 취한 후에 세종에게 아뢰어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태종과 세종대에 정비된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오례는 『세종실록』의 끝에 附錄하였다.<sup>373)</sup>

『세종실록』 「오례」에서 嘉禮儀式에는 왕실의 嘉禮와 관련된 각종 儀註를 정리하였다. 가례의식 가운데 納妃儀에는 국왕의 혼례에서 納채·납징·고기기의 의식을 거행하는 과정, 納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를 전달하는 과정, 納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의 문서식, 왕비의 부친이 국왕에게 올리는 笞箋의 문서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종실록』 「오례」 納妃儀에 수록된 納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23> 『世宗實錄』 「五禮」의 納采教書·納徵教書·告期教書<sup>374)</sup>

	문서식	해석
納采教書	敎某官姓名。王若曰。渾元資始，肇經人倫，爰及夫婦，以奉社稷宗廟。謀于卿相，咸以爲宜，率由舊典，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采。故茲教示，想宜知悉。某年月日。	某官 姓名에게 내리는 敎書. 왕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에서 만물이 시작하여 人倫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에 夫婦에게 이르게 하여 社稷과 宗廟를 받들게 하였다. 이것을 卿相에게 의논하니 모두가 마땅하다 하므로 옛날의 법도를 따라서 지금 某官某와 某官 某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納采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에 敎示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다 알도록 하라. 某年 月 日.
納徵教書	王若曰。卿之女，孝友恭儉，實維母儀，宜奉宗廟，永承天祚。以玄纁乘馬，以章典禮，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徵。	왕은 이렇게 말한다. 卿의 딸은 孝友하고 恭儉하여 실로 母儀이니, 마땅히 宗廟를 받들어 영원히 天祚를 계승할 것이다. 이에 玄纁과 乘馬로써 典禮를 빛나게 하며, 지금 某官某와 某官 某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納徵하게 한다.
告期教書	王若曰。謀于卿相，稽于卜筮，罔有不臧。吉日惟某月某甲子可迎，率遵典禮，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告期。	왕은 이렇게 말한다. 卿相에게 의논하고 卜筮에 상고하여 좋지 않음이 없었다.吉日인 某月 某 甲子에 맞이할 수 있으니 典禮를 따라서 지금 某官某와 某官 某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告期하게 한다.

納채교서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의 ‘敎某官姓名’에 교서의 수취자인 왕비 부친의 품계·관직·성명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敎

373) 『世宗實錄』 「五禮」 序文: 國初, 草創多事, 禮文不備, 太宗命許稠, 撰吉禮序例及儀式, 其他則未及, 每遇大事, 輒取辦於禮官一時所擬, 上乃命鄭陟·卞孝文, 撰定嘉·賓·軍·凶等禮, 取本朝已行典故, 兼取唐·宋舊禮及中朝之制. 其去取損益, 皆稟宸斷, 卒未告訖, 冠禮亦講求而未就. 其已成四禮, 并許稠所撰吉禮, 附于實錄之末.

374) 『世宗實錄』 「五禮」 納妃儀.

示 想宜知悉'로 끝맺으며, 그 사이에는 '渾元資始'부터 '率由舊典'까지 납채교서의 본문 내용과 '지금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납채하게 한다(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采)'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다음에는 '某年 月 日'에 교서를 발급한 날짜를 기재하였다.

납징교서의 문서식은 '王若曰' 다음에 '卿之女'부터 '以章典禮'까지 납징교서의 본문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지금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納徵하게 한다(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徵)'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고기교서의 문서식은 '王若曰' 다음에 '卿相에게 의논하고 卜筮에 상고하여 좋지 않음이 없었다(謀于卿相, 稽于卜筮, 罔有不臧)'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어서 왕비를 맞이하는吉日과 '典禮를 따라서 지금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로 하여금 禮를 갖추어 告期하게 한다(率遵典禮, 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告期)'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납징교서와 고기교서에는 '教某官姓名'와 '故茲教示 想宜知悉'과 '某年 月 日'이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 문서에서는 기재되었다.

조선시대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의 문서식은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것 보다는 宋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092년(元祐 7) 宋 哲宗의婚禮를 거행할 때에 당시 수렴정정을 하였던 宣仁太后가 내린 각종 制書의 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納采制書·納成制書·告期制書의 본문은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된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의 본문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종대에 五禮를 정비할 때에 宋의 납채제서·납성제서·고기제서를 참고해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문서식을 制書에서 교서로 변경하고, 본문에 기재하는 용어도 일부 변경하였다.<sup>375)</sup>

또한 宋의 납채제서·납성제서·고기제서는 東晉의 제도에서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晉書』를 살펴보면, 357년(升平 1)에 東晉 穆帝가 皇后何氏와 혼례를 거행할 때에 王彪之가 經傳과 故事를 인용하여 각종 版文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納采版文·納徵版文·請期版文의 본문은 납채제서·납성제서·고기제서의 본문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sup>376)</sup>

375) 『宋史』 卷111, 志64 禮14 嘉禮2: (元祐)七年(1092)正月, 詔尙書左丞蘇頌撰冊文并書. 學士院上六禮辭語, 其納采制文略曰. … 太皇太后曰. 咨某官封姓名, 渾元資始, 肇經人倫, 爰及夫婦, 以奉天地·宗廟·社稷. 謀于公卿, 咸以爲宜. 率由舊典, 今遣使持節太尉某·宗正卿某以禮納采. … 納成制曰. 咨某官某之女, 孝友恭儉, 實維母儀, 宜奉宗廟, 永承天祚. 以黜纁·穀圭·六馬以章典禮, 今使某官以禮納成. … 告期制曰. 謀于公卿, 大筮元龜, 罔有不臧, 吉日惟某月某甲子可迎. 率遵典禮, 今遣某官以禮告期.

376) 『晉書』 卷21 志11 禮下: 穆帝升平元年(357), 將納皇后何氏. 太常王彪之大引經傳及諸故事以定其禮, … 其告廟六禮版文等儀, 皆彪之所定也. 其納采版文璽書曰. 皇帝咨前太尉參軍何琦. 渾元資始, 肇經人倫, 爰及夫婦, 以奉天地宗廟社稷. 謀于公卿, 咸以宜率由舊典. 今使使持節太常彪之·宗正綜以禮納采. … 次納徵版文曰. 皇帝曰. 咨某官某姓之女, 有母儀之德, 窈窕之姿, 如山如河, 宜奉宗廟, 永承天祚. 以玄纁皮帛, 馬羊錢璧, 以章典禮. 今使使持節·司徒某·太常某以禮納徵. … 次請期版文曰. 咨某官某姓. 謀于公卿, 泰筮元龜, 罔有不臧, 率遵典禮. 今使使持節太常某·宗正某. 以禮請期. …

<表 V-24> 『晉書』·『宋史』·『世宗實錄』·『五禮』의 納采·納徵·告期

	『晉書』 版文	『宋史』 制書	『世宗實錄』·『五禮』 敎書
納采	皇帝咨前太尉參軍何琦。渾元資始，肇經人倫，爰及夫婦，以奉天地宗廟社稷。謀于公卿，咸以宜率由舊典。今使使持節·太常彪之·宗正綜以禮納采。	咨某官封姓名，渾元資始，肇經人倫，爰及夫婦，以奉天地·宗廟·社稷。謀于公卿，咸以爲宜。率由舊典，今遣使持節太尉某·宗正卿某以禮納采。	敎某官姓名。王若曰。渾元資始，肇經人倫，爰及夫婦，以奉社稷宗廟。謀于卿相，咸以爲宜，率由舊典，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采。故茲敎示，想宜知悉。某年月日。
納徵	咨某官某姓之女，有母儀之德，窈窕之姿，如山如河，宜奉宗廟，永承天祚。以玄纁皮帛，馬羊錢璧，以章典禮。今使使持節·司徒某·太常某以禮納徵。	咨某官某之女，孝友恭儉，實維母儀，宜奉宗廟，永承天祚。以黝纁·穀圭·六馬以章典禮，今使某官以禮納成。	王若曰。卿之女，孝友恭儉，實維母儀，宜奉宗廟，永承天祚。以玄纁乘馬，以章典禮，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納徵。
告期	咨某官某姓。謀于公卿，泰筮元龜，罔有不臧，率遵典禮。今使使持節太常某·宗正某以禮請期。	謀于公卿，大筮元龜，罔有不臧，吉日惟某月某甲子可迎。率遵典禮，今遣某官以禮告期。	謀于卿相，稽于卜筮，罔有不臧。吉日惟某月某甲子可迎，率遵典禮，今使某官某·某官某以禮告期。

### 3) 納徵敎書·告期敎書の 傳存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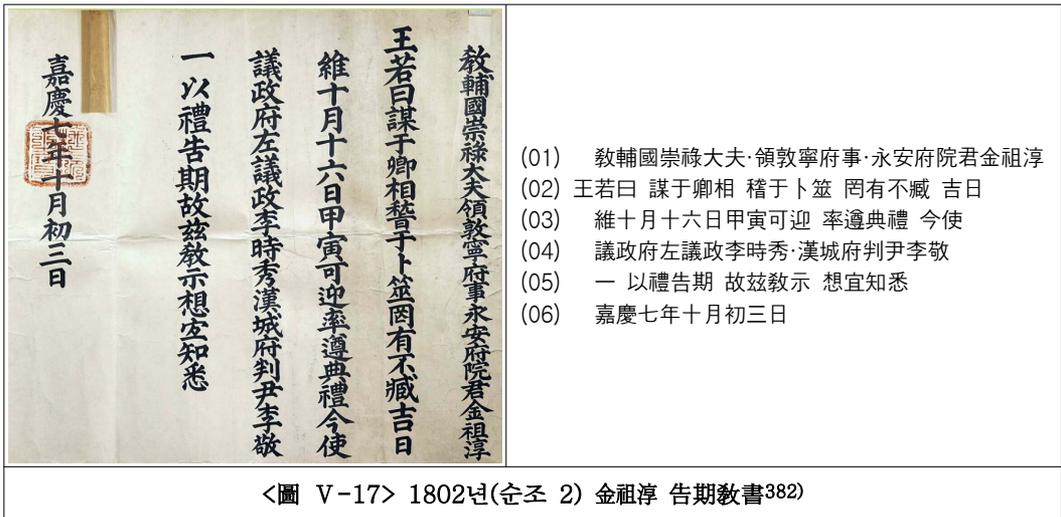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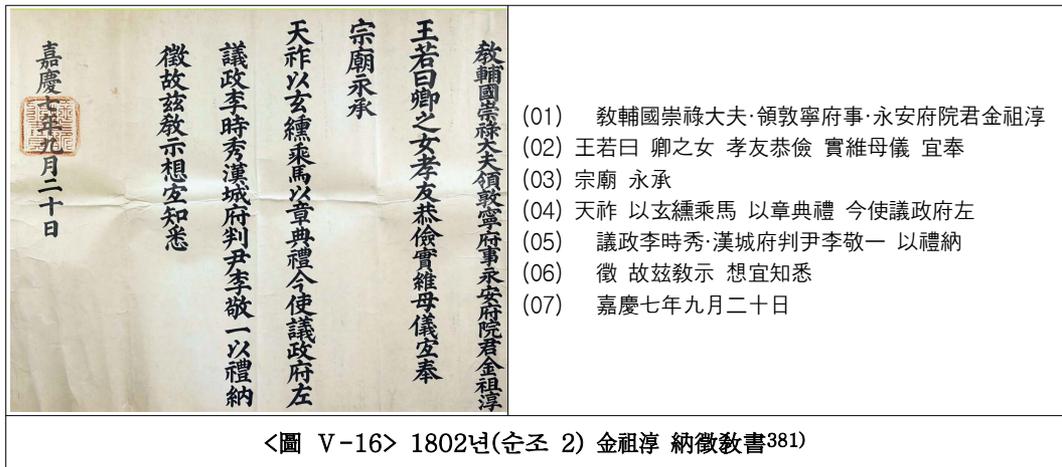
조선시대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는 1454년(단종 2) 단종의 혼례부터 1866년(고종 3) 고종의 혼례까지 총 12번 발급되었다. 이 가운데 실물 문서로 현전하는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는 1802년(순조 2)에 純祖가 金祖淳의 딸인 純元王后와 혼례를 거행할 때에 김조순에게 내린 납징교서 1건과 고기교서 1건으로 총 2건이 현전하고 있다.

<表 V-25> 현전하는 納徵敎書와 告期敎書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출처
1	1802년(순조 2) 9월 20일	純祖	金祖淳	金祖淳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에 納徵禮를 거행함(納徵敎書)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67~68쪽. 규장각(敎書18), 143762
2	1802년(순조 2) 10월 3일	純祖	金祖淳	金祖淳의 딸을 10월 16일에 왕비로 맞이한다는 告期禮를 거행함(告期敎書)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68쪽. 규장각(敎書19), 143763

1802년(순조 2)에 순조는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와 혼례를 거행하였는데, 이 때 순조는 좌의정 李時秀와 한성부판윤 李敬一을 각각 가례정사와 가례부사로 임명하였다. 이시수와 이경일은 순조의 명을 받아 김조순의 집에서 가서 9월 18일에 납채를

거행하였고,<sup>377)</sup> 9월 20일에 납징을 거행하였으며,<sup>378)</sup> 10월 3일에 고기를 거행하였다.<sup>379)</sup> 이어서 10월 16일에 순조는 순원왕후를 於義洞 別宮에서 親迎하였고, 昌德宮 大造殿에서 同牢宴을 행하였다.<sup>380)</sup> 이 때 순조가 순원왕후의 부친인 김조순에게 9월 20일에 발급한 납징교서와 10월 3일에 발급한 고기교서가 현전하고 있다.



377) 『純祖實錄』 2년(1802) 9월 18일 (丙戌): 御仁政殿, 行納采禮.  
 378) 『純祖實錄』 2년(1802) 9월 20일 (戊子): 御仁政殿, 行納徵禮.  
 379) 『純祖實錄』 2년(1802) 10월 3일 (辛丑): 御仁政殿, 行告期禮.  
 380) 『純祖實錄』 2년(1802) 10월 16일 (甲寅): 行親迎禮于於義洞別宮, 行同牢宴于大造殿.  
 381) 1802년(순조 2), 70.0×8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教書 18(143762).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67~68쪽.

1802년(순조 2)에 순조가 김조순에게 발급한 납징교서와 고기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징교서와 고기교서의 始面은 ‘敎’字로 시작하여 김조순의 品階·官職·封君號·姓名을 기재하였다. 시면에서 ‘書’字가 생략되었는데, 문서식에서 시면에 ‘書’字가 생략된 것을 반영하였다. 이어서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그 사이의 내용은 『世宗實錄』 「五禮」 納妃儀에 수록된 문서식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또한 본문에는 가례정사와 가례부사인 좌의정 이시수와 한성부관윤 이경일이 수록되었으며, 고기교서에는 순조가 親迎하는 날짜인 ‘十月十六日甲寅’이 기재되었다. 발급 일자는 납징과 고기를 시행하는 일자를 수록하였고, 발급 일자 위에는 「施命之寶」가 안보되었다.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 중에서 납채교서는 현전하지 않지만 납징교서와 고기교서에 기재된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 가례정사와 가례부사의 관직과 성명,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납채일자를 통해 1802년(순조 2)에 발급된 납채교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1802년(순조 2) 金祖淳 納采敎書

敎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永安府院君金祖淳

王若曰 渾元資始 肇經人倫 爰及夫婦 以奉社稷宗廟 謀于卿相 咸以爲宜 率由舊典 今使議政府

左議政李時秀·漢城府判尹李敬一 以禮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嘉慶七年九月十八日

#### 4) 納幣敎書의 傳存과 특징

조선시대에 후궁의 혼례는 숙종·영조·정조 연간에 점차 제도화되었고,<sup>383)</sup> 이 과정에서 빈의 혼례에서 국왕이 빈의 부친에게 교서를 내려주는 제도는 1780년(정조 4)에 처음 시행되었다.<sup>384)</sup> 1780년(정조 4) 3월 10일에 정조는 三揀擇을 통해 선발된 濟用監判官 尹昌胤의 딸을 和嬪으로 책봉하였고,<sup>385)</sup> 같은 달 12일에 慈慶殿에서 화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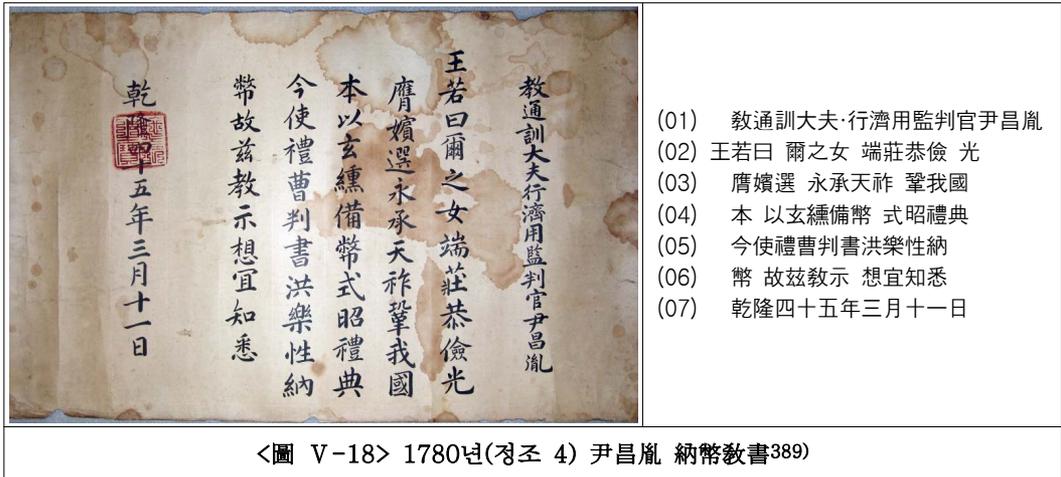
382) 1802년(순조 2), 68.0×7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19(143763).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68쪽.

383) 후궁의 혼례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1686년(숙종 12)에 숙종이 淑儀 金氏와 혼례를 거행하는 과정과 1778년(정조 2)에 정조가 元嬪 洪氏와 혼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체계화되었다. (이 옥, 앞의 논문, 2008, 44~51쪽)

384) 국왕과 嬪의 혼례에서 納采와 納幣를 거행한 것은 1778년(정조 2)에 흥남춘의 딸인 元嬪과 혼례를 거행할 때 처음 거행하였지만, 元嬪의 혼례에서는 納采·納幣敎書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1780년(정조 4)에 和嬪과 혼례를 거행할 때에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를 발급한 기록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혼례를 거행하였다.<sup>386)</sup> 혼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3월 10일에 홍문관제학 金鍾秀가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를 제출하였고,<sup>387)</sup> 정조는 3월 10일에 납채를 거행할 때에 화빈의 부친인 윤창윤에게 납채교서를 내려주었으며, 3월 11일에 납폐를 거행할 때에 납폐교서를 내려주었다.<sup>388)</sup> 정조가 윤창윤에게 내려준 납채교서는 현전하지 않지만, 납폐교서는 현전하고 있다.



<圖 V-18> 1780년(정조 4) 尹昌胤 納幣教書<sup>389)</sup>

정조가 윤창윤에게 내린 납폐교서는 始面에 ‘教’字로 시작하였고, 그 아래에 윤창윤의 품계·관직·성명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기두어와 결사 사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의 딸이 단정하고 장엄하며 공손하고 검소하여 영광스럽게 빈으로 간택되어 영원토록 天祚를 계승하고 우리의 國本을 공고히 하였다. 이에 玄纁으로 예물을 마련하고 禮典을 밝히니 지금 예조판서 홍낙성을 보내어 納幣한다.

발급 일자는 예조판서 홍낙성이 윤창윤의 집에서 납폐한 3월 11일을 기재하였으며, 발급 일자 위에는 「施命之寶」을 安寶하였다.

385) 『正祖實錄』 4년(1780) 3월 10일(己丑): 冊尹氏爲和嬪, 判官昌胤女也. 宮號曰慶壽.

386) 『正祖實錄』 4년(1780) 3월 12일(辛卯): 行和嬪嘉禮于慈慶殿.

387) 『承政院日記』 정조 4년(1780) 3월 10일(己丑): 徐有防啓曰, 今此納采·納幣之時教書, 當爲製進, 藝文提學金鍾秀, 卽爲牌招, 以爲製進之地, 何如. 傳曰, 允.

388) 『日省錄』 정조 4년(1780) 3월 8일(丁亥): 教曰, 三揀擇再明日爲之, 納采同日爲之, 納幣以受教命日爲之.

389) 1780년(정조 4), 68.5×106.7cm, 수원화성박물관 所藏.

이후 국왕이 빈의 부친에게 교서를 내리는 제도는 1787년(정조 11)과 1847년(헌종 13)에도 시행되었다. 1787년(정조 11) 2월 12일에 정조는 삼간택을 통해 선발된 사복시 주부 朴準源의 딸을 綏嬪으로 책봉하고 혼례를 거행하였다.<sup>390)</sup> 혼례에 앞서 2월 8일과 11일에 정조는 예조판서 李命植을 박준원의 집에 보내어 납채와 납폐를 각각 거행하였고, 대제학 金鍾秀가 제출한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를 박준원에게 내려주었다.<sup>391)</sup> 1847년(헌종 13) 10월 20일에 헌종은 장악원 주부 金在淸의 딸을 慶嬪으로 책봉하였고,<sup>392)</sup> 다음 날인 21일에 通明殿에서 경빈과 혼례를 거행하였다.<sup>393)</sup> 혼례에 앞서 10월 19일과 20일에 헌종은 예조판서 徐左輔를 김재청의 집에 보내어 납채와 납폐를 각각 거행하였고, 예문관제학 朴永元이 제출한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를 김재청에게 내려주었다.<sup>394)</sup>

<表 V-26> 1787년(정조 11)·1847년(헌종 13) 納采敎書와 納幣敎書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敎書 원문	출처	구분
1	1787년(정조 11) 2월 8일	正祖	朴準源	敎承議郎司僕寺主簿朴準源 王若曰 禮廣儲嗣 選重嬪婦 慈教惟簡 法家是取 今遣禮曹判書李命植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乾隆五十二年二月八日]	『正祖實錄』, 『日省錄』 <sup>395)</sup>	納采 敎書
2	1787년(정조 11) 2월 11일	正祖	朴準源	敎承議郎司僕寺主簿朴準源 王若曰 爾之女 貞順端一 光膺嬪選 受天之祿 與國同休 以玄纁備幣 式昭儀物 今遣禮曹判書 李命植納幣 故茲敎示 想宜知悉 [乾隆五十二年二月十一日]	『日省錄』 <sup>396)</sup>	納幣 敎書
3	1847년(헌종 13) 10월 19일	憲宗	金在淸	敎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事重廣嗣 禮謹立嬪 恭承慈旨 名闕是選 今遣禮曹判書徐左輔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道光二十七年十月十九日	『日省錄』, 『箋文謄錄』 <sup>397)</sup>	納采 敎書
4	1847년(헌종 13) 10월 20일	憲宗	金在淸	敎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爾之女 孝敬婉順 光膺嬪選 用贊陰化 永享天祚 以束帛爲贄 式昭儀物 今遣禮曹判書 徐左輔納幣 故茲敎示 想宜知悉 道光二十七年十月二十日	『日省錄』, 『箋文謄錄』 <sup>398)</sup>	納幣 敎書

390) 『正祖實錄』 11년(1787) 2월 8일(丙午): 行三揀擇, 命主簿朴準源處子定嬪.

『正祖實錄』 11년(1787) 2월 12일(庚戌): 行綏嬪嘉禮. 嬪詣闕, 陳儀衛如式, 時至, 具命服·加首开, 乘  
輜以出 … 尙儀跪啓禮畢, 典賓引嬪, 尙宮導上, 入于幃幄.

391) 『日省錄』 정조 11년(1787) 2월 8일(丙午): 行三揀擇及納采

『日省錄』 정조 11년(1787) 2월 11일(己酉): 行納幣宣敎命.

392) 『憲宗實錄』 13년(1847) 10월 20일(丙寅): 冊金氏爲慶嬪, 主簿在淸女也.

393) 『日省錄』 헌종 13년(1847) 10월 21일(丁卯): 行嘉禮于通明殿.

394) 『日省錄』 헌종 13년(1847) 10월 19일(乙丑): 行納采.

『日省錄』 헌종 13년(1847) 10월 20일(丙寅): 行納幣宣敎命.

조선 후기에 妃와 嬪의 혼례에서 국왕이 부친에게 내려주는 교서가 달랐는데, 이것은 내명부 안에서 비와 빈의 지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혼례 절차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왕비의 혼례는 납채·납징·고기를 거행하였지만, 빈의 혼례는 납징 대신에 납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sup>399)</sup> 국왕이 親迎하는 의식이 없어 告期를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은 빈의 부친에게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만 내려주었다. 또한 빈의 혼례는 가례정사와 가례부사가 없었으며, 대신에 예조판서가 국왕에게서 교서를 받아가는 관원인 受敎書官을 담당하여 납채와 납폐를 거행하였다.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는 문서식이 『국조오례의』 등에 규정되지 않았고 각 시기별로 대제학이나 홍문관·예문관의 제학 등이 각각 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교서 본문에 수록된 용어와 구절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상으로 살펴본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는 중국 東晉의 제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宋에 전해 내려왔으며, 조선 초기에는 宋의 제도를 수용하여 『世宗實錄』 「五禮」에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가 정비되었다. 이후 1454년(단종 2)에 단종이 정순왕후와 혼례를 거행할 때부터 1866년(고종 3)에 고종이 명성황후와 혼례를 거행할 때까지 국왕은 왕비와 혼례를 거행할 때에 왕비의 부친에게 납채교서·납징교서·고기교서를 내려주었다. 또한 1780년(정조 4)부터 국왕은 빈과 혼례를 거행할 때에는 빈의

395) 『正祖實錄』 11년(1787) 2월 8일(丙午): 納采敎文曰, 敎承議郎司僕寺主簿朴準源. 王若曰, 禮廣儲嗣, 選重嬪婦. 慈教惟簡, 法家是取. 今遣禮曹判書李命植納采. [大提學金鍾秀製.]

『日省錄』 정조 11년(1787) 2월 8일(丙午): 納采敎文曰, 敎承議郎司僕寺主簿朴準源. 王若曰, 禮廣儲嗣, 選重嬪婦. 慈教惟簡, 法家是取. 今遣禮曹判書李命植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大提學金鍾秀製進.

396) 『日省錄』 정조 11년(1787) 2월 11일(己酉): 納幣敎文曰, 敎承議郎司僕寺主簿朴準源. 王若曰, 爾之女, 貞順端一, 光膺嬪選, 受天之祿, 與國同休. 以玄纁備幣, 式昭儀物, 今遣禮曹判書李命植納幣. 故茲敎示, 想宜知悉. 大提學金鍾秀製進.

397) 『日省錄』 헌종 13년(1847) 10월 19일(乙丑): 納采敎文曰, 敎通訓大夫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事重廣嗣, 禮謹立嬪, 恭承慈旨, 名閥是選. 今遣禮曹判書徐左輔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朴永元製進.

『箋文謄錄』(규장각 所藏, 奎 12990): 嬪嘉禮納采敎文, 敎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事重廣嗣, 禮謹立嬪, 恭承慈旨, 名閥是選. 今遣禮曹判書徐左輔納采. 故茲敎示, 想宜知悉. 道光二十七年十月十九日.

398) 『日省錄』 헌종 13년(1847) 10월 20일(丙寅): 納幣敎文曰, 敎通訓大夫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爾之女, 孝敬婉順, 光膺嬪選, 用贊陰化, 永享天祚. 以束帛爲贊, 式昭儀物, 今遣禮曹判書徐左輔納幣. 故茲敎示, 想宜知悉. 藝文提學朴永元製進.

『箋文謄錄』(규장각 所藏, 奎 12990): 納幣敎文, 敎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金在淸. 王若曰, 爾之女, 孝敬婉順, 光膺嬪選, 用贊陰化, 永享天祚. 以束帛爲贊, 式昭儀物, 今遣禮曹判書徐左輔納幣. 故茲敎示, 想宜知悉. 光二十七年十月二十日.

399) 왕비의 혼례에서는 『의례』에 따라 納徵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嬪의 혼례에서 納徵 대신에 『朱子嘉禮』에서 사용하는 納幣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격을 낮추어서 비와 빈의 혼례를 차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옥, 앞의 논문, 2008, 55쪽)

부친에게 납채교서와 납폐교서를 내려주었다.

국왕이 혼례를 통해 왕비를 맞이할 때에 교서를 발급한 것은 양반의 혼례에서 신랑  
덕과 신부덕 사이에 왕래하였던 婚書의 용도로 교서를 발급하였다. 교서의 발급과 함  
께 국왕을 대신해서 납채·납징·고기 의식을 거행하였던 가례정사와 가례부사에 조정의  
관원을 임명한 것은 국왕이 혼례를 통해 왕비를 맞이하는 것이 개인적인 혼례가 아니  
라 국가적인 儀禮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국왕이 왕비와 왕비의 부친  
을 최고로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冠禮敎書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관례를 거행하였는데, 이 때 국왕이 왕세자·왕세손에게 내려주는 교서가 관례교서이다. 관례교서는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와 같이 국가적인 儀禮를 거행할 때에 국왕이 교서를 발급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례교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교서에 비하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권오영과 조미은의 선행 연구가 있다. 권오영은 조선전기에 왕실 관례가 정비되는 과정과 중종부터 순조까지 왕실 관례의 역사적 추이와 의미를 규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관례교서를 살펴보았다.<sup>400)</sup> 또한 조미은은 고문서학적인 측면에서 실물 문서로 현전하는 관례교서를 살펴보고, 관례교서의 문서 양식·전달 과정 등을 규명하였다.<sup>401)</sup>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관례교서의 연원, 왕세자·왕세손 관례의 현황, 관례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冠禮敎書의 淵源

조선시대 관례교서는 唐의 皇太子가 관례를 거행할 때에 황제가 내린 문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新唐書』의 皇太子加元服에는 唐의 황태자가 관례를 거행할 때에 儀註를 수록하였는데, 이 儀註에서는 황태자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황제가 내린 制書를 宣讀하고 황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제서의 문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의 왕태자 관례 제도는 『신당서』의 皇太子加元服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은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에 반영되었다. 『신당서』의 皇太子加元服와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에서 관례를 거행할 때 문서를 선독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新唐書』 皇太子加元服

(전략) … 賓이 ‘制書가 있습니다.’고 말하면, 황태자는 再拜한다. (賓이) 制書를 宣讀하기를, ‘황태자 某에게 制書를 내리니 吉日에 冠禮를 행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太尉 某에게 命하여 宮에 나아가 禮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한다. 황태자가 再拜한다. 少傅가 賓 앞에 나아가서 制書를 받아서 황태자에게 주고, 庶子에게 건네준다. … 402)

400) 권오영, 「조선 왕실 冠禮의 역사적 추이와 그 의미」, 『조선 왕실의 嘉禮』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3~56쪽.

401)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8~43쪽.

『高麗史』王太子加元服儀

(전략) … 賓이 ‘詔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左庶子가 ‘拜’라고 贊하면, 王태자는 再拜한다. 賓이 詔書를 宣讀하기를, ‘王태자 某에게 詔書를 내리니 吉日에 冠禮를 행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太尉 某에게 命하여 나아가 冠禮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한다. 詔書를 선독하는 것이 끝나면, 王태자는 또 再拜하고 賓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詔書를 받아서 少傅에게 詔書를 준다. 少傅는 王태자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詔書를 받고서 詔書函을 지닌 자에게 전해주고, 詔書函을 지닌 자는 詔書를 받아서 王태자의 오른쪽에서 조금 남쪽으로 선다. 王태자가 자리로 돌아가 再拜하고 끝낸다. … 403)

『신당서』의 皇太子加元服을 살펴보면, 唐의 皇태자 관례에서 賓이 제서를 宣讀하기 전에 皇태자는 再拜하여 皇제가 내린 제서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였다. 제서의 선독은 太尉인 賓이 담당하였으며, 제서의 전달은 賓이 皇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少傅를 통해 皇태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를 살펴보면, 唐의 제도와는 다르게 고려의 국왕은 王태자 관례에 詔書를 내렸는데, 이것은 고려에서 唐의 관례 제도를 수용하면서 국왕이 내린 문서를 제서에서 조서로 변통하였다. 王太子加元服儀에서 賓이 조서를 선독하기 전에 王태자는 再拜하였고,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王태자가 꿇어앉아서 조서를 받음으로써 국왕이 내린 조서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였다. 조서를 선독하는 과정은 당의 제도와 비슷하였으며, 조서를 선독하는 관원도 太尉인 賓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唐의 제도와 달랐는데, 王태자가 賓에게 조서를 직접 받은 후에 다시 少傅에게 전달하였고, 少傅는 詔書函을 지닌 자에게 조서를 전달하였다.

조선의 王세자 관례 제도는 대부분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에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는 조선의 官制에 맞게 관례에 참석하는 관원을 변통하였고, 관례를 거행할 때에 국왕이 내린 문서도 조서 대신에 관례교서를 발급하였다. 이것은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國朝五禮儀』의 王世子冠儀와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春官通考』의 王世子冠儀에 반영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皇제에 즉위한 후에는 官制의 변화에 따라 王세자 관례 제도에서 皇태자 관례 제도로 변화하였으며, 이것은 『大韓禮典』의 皇太子冠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 『춘관통고』의 王世子冠儀와 『대한예전』의 皇太子冠儀에서 관례를 거행할 때에 문서를 선독하고 전달하는 과정은 다

402) 『新唐書』卷17 志7 禮樂7 皇太子加元服: … 賓稱有制, 皇太子再拜. 宣詔<制>曰, 有制, 皇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太尉某就宮展禮. 皇太子再拜. 少傅進詣賓前, 受制書, 以授皇太子, 付于庶子. …

403) 『高麗史』志20 禮8 嘉禮2 王太子加元服儀: … 賓稱有教, 左庶子贊拜, 王太子再拜. 賓稱教, 王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太尉某就加元服. 宣詔, 王太子又再拜, 詣賓前, 跪受詔書, 授少傅. 少傅進王太子之右, 跪受詔, 以傳持函者, 持函者承受, 立於王太子之右少南. 王太子復位再拜, 訖. …

음과 같다.

『國朝五禮儀』·『春官通考』의 王世子冠儀

(전략) … 賓이 ‘敎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弼善이 ‘跪’라고 贊하면, 왕세자는 꿇어앉는다. 賓이 敎書를 宣讀하기를, ‘왕세자 某에게 敎書를 내리니 吉日에 冠禮를 행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議政 某에게 命하여 宮에 나아가 禮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한다. 宣讀이 끝나고, 弼善이 ‘俯伏·興·四拜·興·平身’이라고 贊하면, 왕세자가 俯伏·興·四拜·興·平身을 한다. 賓客이 賓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敎書를 받아서 물러나 왕세자에게 준다. 왕세자는 꿇어앉아서 敎書를 받아서 弼善에게 주고, 敎書를 敎書函을 지닌 자에게 준다. … 404)

『大韓禮典』 皇太子冠儀

(전략) … 賓이 ‘制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侍講院 관이 ‘跪’라고 贊하면, 황태자는 꿇어앉는다. 賓이 制書를 宣讀하기를, ‘황태자 某에게 制書를 내리니 吉日에 冠禮를 행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議政 某에게 命하여 宮에 나아가 禮를 행하도록 하라.’라고 한다. 宣讀이 끝나고, 侍講院 관이 ‘俯伏·興·四拜·興·平身’이라고 贊하면, 황태자가 俯伏·興·四拜·興·平身을 한다. 賓客이 賓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制書를 받아서 물러나 황태자에게 준다. 황태자는 꿇어앉아서 制書를 받아서 侍講院 관에게 주고, 制書를 制書函을 지닌 자에게 준다. … 405)

『국조오례의』와 『춘관통고』의 王世子冠儀를 살펴보면, 唐과 고려의 관례 제도와 마찬가지로 관례교서를 宣讀하고 전달 받는 과정에서 왕세자는 꿇어앉아서 국왕이 내린 교서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였다. 또한 王世子冠儀에서는 관례교서의 선독을 끝낸 후에도 ‘俯伏·興·四拜·興·平身’의 의식을 추가로 거행하여 교서에 대한 공경을 보였다. 관례교서를 선독하는 관원은 賓이 담당하였는데, 賓은 唐과 고려와는 다르게 조선의 官制에 따라 의정부의 삼정승 중에서 1인이 담당하였다. 관례교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唐의 관례 제도와 비슷하게 왕세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賓客을 통해 왕세자에게 관례교서를 전달하였으며, 왕세자는 다시 弼善을 통해 敎書函을 지닌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대한예전』의 皇太子冠儀를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황제가 되었

404) 『國朝五禮儀』卷3 嘉禮 王世子冠儀: … 賓稱有敎, 弼善贊跪, 王世子跪. 賓宣敎曰,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宣訖, 弼善贊俯伏·興·四拜·興·平身, 王世子俯伏·興·四拜·興·平身. 賓客進詣賓前, 跪受敎書, 退授王世子. 王世子跪受敎書, 付弼善, 以授持函者. …

『春官通考』卷55 嘉禮 王世子冠儀.

405) 『大韓禮典』(장서각 K2-2123) 卷9 嘉禮 皇太子冠儀: … 賓稱有制 侍講院官贊跪 皇太子跪 賓宣制曰 制皇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宣訖, 侍講院官贊俯伏·興·四拜·興·平身, 皇太子俯伏·興·四拜·興·平身. 賓客進詣賓前, 跪受制書, 退授皇太子. 皇太子跪受敎書, 付侍講院官, 以授持函者. …

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례를 거행하는 대상은 왕세자 대신에 皇太子로 바뀌었다. 또한 황태자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황제가 내리는 문서도 교서에서 制書로 변경되었다. 皇太子冠儀에서는 황태자와 제서로 변경된 것 이외에 다른 儀註는 모두 『국조오례의』·『춘관통고』의 王世子冠儀와 동일하였다.

지금까지 『신당서』·『고려사』·『국조오례의』·『춘관통고』·『대한예전』에 수록된 황태자·왕태자·왕세자의 관례 儀註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관례 儀註에는 모두 황제 또는 국왕이 관례를 거행할 때 내린 제서·조서·교서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27> 冠禮 관련 制書·詔書·敎書의 문서식

번호	문서명	문서식	출처
1	制書	皇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太尉某就宮展禮.	『新唐書』406)
2	詔書	王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太尉某就加元服.	『高麗史』407)
3	敎書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國朝五禮儀』408)
4	敎書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春官通考』409)
5	制書	制皇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大韓禮典』410)

『신당서』의 皇太子加元服에 수록된 制書의 문서식을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皇太子某’로 기재하여 제서의 수취자인 황태자의諱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중간에는 ‘吉日元服 率由舊章(吉日에 冠禮를 행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을 기재하였고, 끝부분에는 ‘命太尉某就宮展禮(太尉 某에게 命하여 宮에 나아가 禮를 행하도록 하라.)’를 기재하였다. 여기에서 太尉는 황태자의 관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賓의 임무를 맡은 관원으로 제서에는 賓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제서의 문서식은 『고려사』의 王太子加元服儀의 수록된 詔書의 문서식에 반영되었다. 조서의 문서식에는 수취자가 ‘皇太子’ 대신에 ‘王太子’로 바뀌었고, 끝부분의 ‘就宮展禮’ 대신에 ‘就加元服’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서의 문서식과 동일하였다.

『국조오례의』·『춘관통고』의 王世子冠儀에 수록된 관례교서의 문서식은 『신당서』의 제서와 『고려사』의 조서에 영향을 받았다. 앞부분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字

406) 『新唐書』卷17 志7 禮樂7 皇太子加元服.  
 407) 『高麗史』志20 禮8 嘉禮2 王太子加元服儀.  
 408) 『國朝五禮儀』卷3 嘉禮 王世子冠儀.  
 409) 『春官通考』卷55 嘉禮 王世子冠儀.  
 410) 『大韓禮典』卷9 嘉禮 皇太子冠儀.

를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는 수취자인 왕세자의 諱를 기재하였다. 이어서 중간에 ‘吉日元服 率由舊章’은 『신당서』 제서와 『고려사』 조서의 문서식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였다. 끝부분에 ‘命議政某就宮展禮’는 조선의 官制에 따라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하는 賓으로 의정부의 삼정승 중에서 1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賓의 삼정승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就宮展禮’는 『신당서』 제서의 문서식을 수용하였다. 『국조오례의』·『춘관통고』의 관례교서 문서식에는 교서에 수록된 ‘王若曰’의 기두어와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결사가 없었는데, 이것은 『신당서』의 제서와 『고려사』의 조서에서 기두어와 결사가 생략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전』의 皇太子冠儀에 수록된 제서의 문서식은 교서에서 제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부분에 황제의 명령을 의미하는 ‘制’字를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는 수취자인 황태자의 諱를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관례교서의 문서식과 동일하였다.

## 2) 조선시대 王世子の 冠禮

조선시대 왕세자의 관례와 왕세자에게 관례교서를 발급하는 제도는 고려시대에 왕태자에게 元服을 加하고 冠禮詔書를 내려주는 제도를 계승하였다.<sup>411)</sup> 965년(광종 16) 2월에 光宗은 11세인 아들 王佑(景宗)에게 元服을 가하고 왕태자로 세웠고,<sup>412)</sup> 1121년(예종 16) 1월에 睿宗은 13세인 왕태자(王楷, 仁宗)에게 元服을 가하였으며,<sup>413)</sup> 1162년(의종 16) 11월에 毅宗은 11세인 왕태자(王楶, 康宗)에게 元服을 가하였다.<sup>414)</sup> 또한 『고려사』 「禮志」 王太子加元服儀에는 왕태자에게 元服을 가하는 의식과 왕태자에게 내려주는 조서의 문서식을 수록하였다.<sup>415)</sup> 『고려사』에는 ‘元服을 加하다(加元服)’라고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元服’ 대신에 ‘冠禮’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왕태자의 관례는 조선 초기에는 바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문종은 8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어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단종은 8세에 왕세손

411) ‘元服’은 ‘머리에 쓰는 冠’이란 뜻으로 ‘元服’이나 ‘加元服’의 용어가 冠禮를 의미한다.

『漢書』 卷7 昭帝紀7: 四年春正月丁亥, 帝加元服. … [如淳曰, 元服, 謂初冠加上服也. 師古曰, 如氏以爲衣服之服, 此說非也. 元, 首也. 冠者, 首之所著, 故曰元服. 其下汲黯傳序云上正元服, 是知謂冠爲元服.]

412) 『高麗史』 世家2 光宗 16년(965) 2월: 十六年春二月, 加子佑元服, 立爲王太子.

413) 『高麗史』 世家14 睿宗 16년(965) 1월 辛亥: 王太子加元服于壽春宮, 百官表賀.

414) 『高麗史』 世家18 毅宗 16년(1121) 11월 壬寅: 王太子加元服.

415) 『高麗史』 志20 禮8 嘉禮2 王太子加元服儀: … 王太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太尉某就加元服. …

으로 책봉되었지만, 문종과 단종의 관례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sup>416)</sup> 또한 『세종실록』 「오례」 序文에는 五禮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는데, 序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례는 당시 講求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종실록』 「오례」에 관례가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417)</sup> 이후 1451년(문종 1) 11월 11일에 집현전 부제학 辛碩祖는 문종에게 아뢴 내용에서 당시 禮制가 정비되었지만 관례는 闕典이기 때문에 관례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sup>418)</sup>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 초기에는 왕세자 관례가 시행되지 않았다.<sup>419)</sup>

조선시대 왕세자 관례는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 嘉禮에 王世子冠儀를 수록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sup>420)</sup> 그러나 『국조오례의』에 왕세자 관례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왕세자 관례는 중종대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sup>421)</sup> 1522년(중종 17) 10월 19일에 중종은 왕세자(李皓, 仁宗)의 관례를 景福宮 勤政殿에서 거행하였다. 중종은 왕세자에게 관례교서를 내려 주었는데, 이 관례교서의 내용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문서식에 따라 발급되었다. 또한 중종은 왕세자 관례를 거행할 때 賓과 贊을 差出하였는데, 賓은 우의정 李惟淸이 담당하였고 贊은 예조판서 洪淑이 담당하였다.<sup>422)</sup> 왕세자 관례를 거행한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중종은 왕세자 관례를 거행한 慶事를 기념하기 위하여 죄인을 赦宥하는 내용으로 전국에 中外頒敎書를 반포하였다.<sup>423)</sup>

416) 『春官通考』 卷55 嘉禮 王世子冠儀: 文宗大王冊封入學, 在於世宗三年辛丑, 時春秋八歲. [冠禮年月無可考.] 端宗大王冊封世孫, 在於世宗十三年戊辰, 時春秋八歲. [冠禮年月無可考.]

417) 『世宗實錄』 「五禮」 序文: 國初, 草創多事, 禮文不備, 太宗命許稠, 撰吉禮序例及儀式, 其他則未及, 每遇大事, 輒取辦於禮官一時所擬, 上乃命鄭陟·卞孝文, 撰定嘉·賓·軍·凶等禮, 取本朝已行典故, 兼取唐·宋舊禮及中朝之制. 其去取損益, 皆稟宸斷, 卒未告訖, 冠禮亦講求而未就. 其已成四禮, 并許稠所撰吉禮, 附于實錄之末.

418) 『文宗實錄』 1년(1451) 11월 11일(乙巳): 輪對. 集賢殿副提學辛碩祖啓, 方今禮制極備, 但冠禮未行, 實爲闕典, 乞命禮官詳定. … 上曰, 冠禮, 先王有志而未就, 終當行之. …

419) 조선 초기에 왕세자가 아닌 大君의 경우에 관례를 거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睿宗이 海陽大君 시절인 1457년(세조 3) 11월 7일에 관례를 거행하였고, 같은 해 12월 15일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世祖實錄』 3년(1457) 11월 7일(丁卯): 傳旨刑曹曰, 海陽大君 [睿宗諱.] 行冠禮, 自十一月初七日以前奸盜外流以下罪, 竝皆原免.

『世祖實錄』 3년(1457) 12월 15일(乙巳): 御勤政殿, 冊封世子.

420) 『國朝五禮儀』 卷3 嘉禮 王世子冠儀.

421) 『中宗實錄』 17년(1522) 9월 18일(辛酉): 傳于政院曰, 世子冠禮, 祖宗朝所不爲事. 自今始行, 須令再再習儀, 毋使有闕失.

422) 『中宗實錄』 17년(1522) 10월 19일(辛卯): 世子行冠禮. 辰初, 上御勤政殿, 受百官拜禮. 百官回班, 東西相向. [惟賓執事四拜.] 左承旨崔世節, 進跪御榻前, 啓傳敎書, 遂出于南階上, 持函者隨之. [盛敎書函.] 賓 [李惟淸.] 受敎書, 詣東宮, 鼓吹從之.

423) 『中宗實錄』 17년(1522) 10월 20일(壬辰): 辰時, 百官以權停禮陳賀, 頒赦. 王若曰, 德積福厚, 惟寡躬是賴. 重以皇天保佑, 儲位早正. 世子皓, 年今八歲, 賢德夙著, 學問日就, 旣備成人之道, 宜責成人之禮. 禮

중종 연간부터 조선 후기까지 왕세자 관례는 총 12번 거행되었다. 왕세자 이외에 왕세손의 관례는 1761년(영조 37)에 왕세손(李祘, 正祖)이 관례를 거행하였으며,<sup>424)</sup> 또한 대한제국 시기에 영친왕(李垕)이 1907년(광무 11)에 관례를 거행하였다.<sup>425)</sup> 조선시대에 관례를 거행한 왕세자·왕세손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28> 王世子·王世孫의 冠禮 現況

번호	冠禮 시기	국왕	왕세자·왕세손	관례 연령	賓	贊
1	1522년(중종 17) 10월 19일	中宗	王世子(李峱, 仁宗)	8	右議政 李惟清	禮曹判書 洪淑
2	1560년(명종 15) 8월 29일	明宗	順懷世子(李暉)	10	右議政 沈通源	禮曹判書 元繼儉
3	1610년(광해군 2) 5월 6일	光海君	王世子(李祘)	13	左議政 李恒福	禮曹判書 李廷龜
4	1625년(인조 3) 1월 21일	仁祖	昭顯世子(李烜)	14	右議政 申欽	禮曹判書 李廷龜
5	1651년(효종 2) 8월 9일	孝宗	王世子(李櫛, 顯宗)	11	領議政 金堉	禮曹判書 朴遼
6	1670년(현종 11) 3월 9일	顯宗	王世子(李焯, 肅宗)	10	左議政 許積	禮曹判書 朴長遠
7	1695년(숙종 21) 4월 18일	肅宗	王世子(李昫, 景宗)	8	領議政 南九萬	禮曹判書 朴泰尙
8	1727년(영조 3) 9월 9일	英祖	孝章世子(李緯, 眞宗)	9	左議政 趙泰億	禮曹判書 李堉
9	1743년(영조 19) 3월 17일	英祖	思悼世子(李愔, 莊祖)	9	領議政 金在魯	禮曹判書 鄭錫五
10	1761년(영조 37) 3월 18일	英祖	王世孫(李祘, 正祖)	10	左參贊 徐命彬	禮曹參判 朴相德
11	1800년(정조 24) 2월 2일	正祖	王世子(李弘, 純祖)	11	領議政 李秉模	禮曹判書 李晚秀
12	1819년(순조 19) 3월 20일	純祖	孝明世子(李昊, 翼宗)	11	領議政 徐龍輔	禮曹判書 李晚秀
13	1882년(고종 19) 1월 20일	高宗	王世子(李垕, 純宗)	9	領議政 徐堂輔	禮曹判書 閔謙鎬
14	1907년(광무 11) 3월 11일	高宗	英親王(李垕)	11	表勳院總裁 閔泳徽	中樞院贊議 金晚秀

<表 V-28>를 통해 왕세자의 관례 연령을 살펴보면, 왕세자의 나이가 8세부터 14세 사이에 관례를 거행하였다. 이 가운데 중종대의 왕세자(李峱, 仁宗)와 숙종대의 왕세자(李昫, 景宗)가 8세로 가장 어렸고, 소현세자(李烜)가 14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不云乎. 冠者, 禮之始. 敬冠事, 所以重禮. 重禮, 所以爲國本也. 肆諫令日, 親命賓贊, 加世子元服, 一依禮文, 實是無疆惟休, 嘉與一國共之. 自今月二十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謀叛·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蠱毒魘魅, 關係國家綱常, 贓盜, 犯死罪外, 已配徒流, 付處·安置, 充軍人及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有除之. 敢以有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嫡子冠於阼, 禮彌尊於三加. 兆民賴其慶, 恩亦宜其大霑.

424) 『英祖實錄』 37년(1761) 3월 18일(丁巳): 上御景賢堂, 受王世孫朝謁禮. 王世孫行三加禮, 初加袞龍袍, 再加絳紗袍, 三加冕服. 賓行議政府左參贊徐命彬宣教, 教文曰, 王世孫吉日元服, 率由舊章. 予惟禮始于冠, 冠而責成人. … 承天之慶, 永永無疆. 故茲教示, 想宜知悉.

425) 『高宗實錄』 44년(1907) 3월 11일(陽曆): 詣中和殿. 行英親王冠禮.

관례 연령은 중종대에 왕세자 관례를 처음 거행할 때에 논의하였다. 당시 의정부에서는 중종에게 『禮記』注疏에서 天子와 諸侯의 관례 연령이 12세라고 하였지만, 祖宗朝에서 왕세자로 책봉하는 날에 網巾을 씌우고 별도로 관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왕세자가 8세에 入學하였기 때문에 관례를 8세에 거행하는 것은 祖宗朝의 전례에 따라 時宜에 알맞다고 아뢰었다. 의정부에서 아뢴 내용에 따라 중종은 왕세자(李焄, 仁宗)의 나이가 8세일 때에 관례를 거행하였다.<sup>426)</sup> 이후 왕세자의 관례는 왕세자의 나이가 10세 전후의 시기에 관례를 거행하였다.

왕세자가 관례를 거행할 때에 국왕은 賓과 贊을 差出하였는데, 관례에 차출된 賓과 贊의 품계와 관직은 관례의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V-28>를 살펴보면 왕세자의 관례에서 賓은 의정부의 영의정·좌의정·우의정 가운데 1명이 담당하였고, 贊은 예조판서가 담당하였다. 이와는 달리 1761년(영조 37) 3월 18일에 왕세손(李祘, 正祖)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는 賓은 의정부 좌참찬 徐命彬이 담당하였고, 贊은 예조참판 朴相德이 담당하였다.<sup>427)</sup> 또한 연잉군(李祘, 英祖)의 관례에서도 왕세자보다 한 등급을 낮추어서 賓은 정이품 관원이 담당하였고, 贊은 종이품 관원이 담당하였다.<sup>428)</sup> 영친왕(李垕)의 관례에서는 大韓帝國 시기에 바뀐 官制에 따라 賓은 表勳院總裁 閔泳徽가 담당하였고, 贊은 中樞院贊議 金晚秀가 담당하였다.

賓과 贊은 왕세자가 관례를 거행할 때 실질적으로 의식을 주도하는 관원으로 국왕이 내린 관례교서를 왕세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賓은 왕세자에게 관례교서를 宣讀하였다.<sup>429)</sup>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관례교서에는 ‘議政 某에게 명하여 宮에 나아가 禮를 행하도록 하라(命議政某就宮展禮)’는 내용을 수록하고 아울러 賓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426) 『中宗實錄』 17년(1522) 7월 22일(丙寅): 政府啓曰, 禮記注疏曰, 天子·諸侯其冠之年, 皆十二歲. 今行冠禮, 似非古禮. 但冊封已久, 章服不可無別. 未冠之前, 冠服之制, 禮無所據, 難以臆定. 祖宗朝則冊封之日, 便加網巾, 不別行冠禮, 故冠禮之年, 未曾講論. 然八歲入學, 則此禮, 乃冠禮以後之事. 今亦不可必拘於年皆十二之文, 依祖宗朝舊例, 早行冠禮, 允合時宜. 傳曰, 世子冠禮, 當以九月擇日.

427)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3월 14일 (癸丑): 仁孫以自敍錄校正事, 仰達後, 仍曰, 臣待罪禮官, 以國朝典章, 敢有所陳矣. 王世孫冠禮時, 則皆禮判爲之, 先朝朴長遠·朴泰尙, 皆以禮判舉行. 今此世孫贊官, 則禮參似當爲之, 小臣遞職, 恐宜矣. 上命書傳教曰, 古例皆然, 故禮曹參判既已許遞, 其代賓贊冠朴相德除授, 牌招察任.

428) 『肅宗實錄』 29년(1703) 12월 15일(丙戌): 上命行延祊君冠禮于瑤華堂. 賓以正二品, 贊以從二品差出, 視世子冠禮, 減一等.

429) 『英祖實錄』 3년(1727) 9월 9일(壬戌): 冠禮儀註. 典設司設王世子冠次於時敏堂. 引儀引賓, [左議政趙泰億.] 進詣階間南向立, 贊冠立於賓西南東向. 主人 [密豐君坦.] 就位立. 賓就案取教書, 復位. 弼善引王世子, 詣受教位北向立, 四拜. 賓稱有教, 王世子跪. 賓宣教, 宣訖, 王世子四拜. 賓客詣賓前跪, 受教書, 退授王世子, 王世子跪受, 付弼善.

### 3) 冠禮敎書의 傳存과 특징

조선시대 관례교서는 1522년(중종 17) 10월 19일에 왕세자(李焄, 仁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처음으로 발급되었으며, 중종대부터 고종대까지 총 13건의 관례교서가 발급되었다. 이 가운데 실물 문서로 현전하는 관례교서는 1727년(영조 3) 9월 9일 孝章世子(李緯, 眞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발급한 관례교서와 1882년(고종 19) 1월 20일에 왕세자(李坻, 純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발급한 관례교서 2건이 현전하고 있다. 또한 실물 문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의례·등록·개인 문집 등에는 8명의 왕세자와 1명의 왕세손에게 내려진 관례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관례문서와 사료에 수록된 관례교서, 그리고 『국조오례의』·『춘관통고』의 관례교서 문서식을 통해 조선시대 관례교서의 특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表 V-29> 冠禮敎書의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製述	출처
1	1727년(영조 3) 9월 9일	英祖	孝章世子(李緯, 眞宗)	領中樞府事 李光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8~10쪽
2	1882년(고종 19) 1월 20일	高宗	王世子(李坻, 純宗)	未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8쪽

첫 번째 시기는 관례교서가 처음 발급되었던 1522년(중종 17)에 왕세자(李焄, 仁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부터 1625년(인조 3)에 소현세자(李烜)의 관례를 거행할 때까지 발급된 관례교서이다. 이 시기 발급된 4건의 관례교서는 실물 문서가 현전하지 않지만, 아마도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에 따라 발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1610년(광해군 2) 5월 6일에 왕세자(李祘)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광해군이 왕세자(李祘)에게 내려준 관례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sup>430)</sup> 관례교서의 원문을 살펴보면 ‘吉日元服’·‘率由舊章’·‘就宮展禮’의 용어가 기재된 것이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과 일치하였다. 특히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과 마찬가지로 관례교서에 ‘王若曰’의 起頭語와 ‘故茲敎示 想宜知悉’의 結辭가 없다는 점도 동일하였다.

430) 『光海君日記』 2년(1610) 5월 6일(庚戌): 行世子冠禮. 王御視事廳, 命賓左議政李恒福. [贊, 禮曹判書李廷龜.] 左承旨金尙寯(進跪榻前啓), 傳敎如禮. ([敎書曰, 王世子祘,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府左議政李恒福就宮展禮.] 賓受詣西廳, 鼓吹從之.)

『冊禮都監儀軌』(奎章閣 所藏 奎13196): 敎書.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府左議政李恒福就宮展禮. 萬曆三十八年五月初六日.

<表 V-30> 『國朝五禮儀』와 『冊禮都監儀軌』의 冠禮敎書 비교

출처	『國朝五禮儀』	『冊禮都監儀軌』
冠禮敎書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某就宮展禮.	敎書.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府左議政李恒福就宮展禮. 萬曆三十八年五月初六日.

두 번째 시기는 1651년(효종 2)에 왕세자(李柵, 顯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부터 1761년(영조 37)에 왕세손(李祘, 正祖)의 관례를 거행할 때까지 발급된 관례교서이다. 이 시기 발급된 6건의 관례교서는 원문이 각종 사료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727년(영조 3)에 영조가 효장세자(李緯, 眞宗)에게 내려준 관례교서는 실물 문서로 현전하고 있다. 먼저 1651년(효종 2) 왕세자(李柵, 顯宗) 관례교서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광해군대의 왕세자(李祘) 관례교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王若曰. 長子主器者, 所以係民心, 聖王重冠者, 所以爲國本. 茲當嘉事, 宜有命辭. 咨爾世子柵, 性稟聰明, 生知忠孝. 維列聖啓祐之慶, 繫寧考訓迪斯勤. 粵自勝衣, 已定元孫之號, 肆予嗣服, 爰正副君之名. 有待殷禮之期, 殆及周文之歲. 人道乃成, 實深父母之喜, 王敎攸始, 勉棄童幼之思. 皇矣, 芘躬之章. 美哉, 芘首之制. 其慎爾容貌·辭令以弗怠, 則錫之壽考·福祿而無疆. 於戲. 惟親賢敬身, 可以進德, 惟法祖典學, 庶免作狂. 匪亶出予慈愛之至情, 抑亦舉國臣庶之顛望. 故茲敎示, 想宜知悉. [大司成黃胤所撰也.]<sup>4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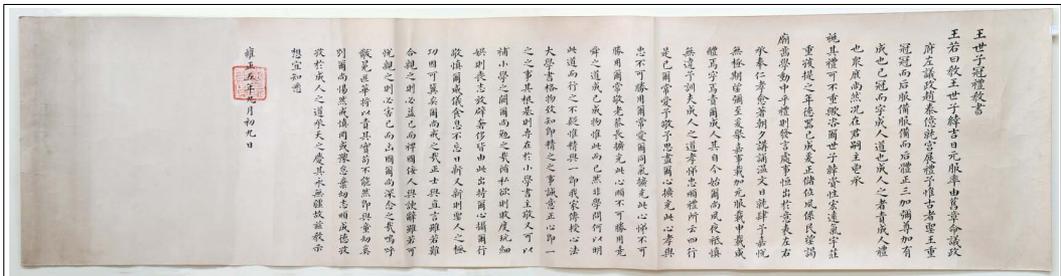
대사성 黃胤가 제출한 왕세자(李柵, 顯宗) 관례교서는 ‘王若曰’로 시작해서 駢儷文으로 구성된 교서 본문을 수록하고 마지막에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다. 관례교서에는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에 기재되었던 ‘敎王世子某’부터 ‘就宮展禮’까지의 내용은 누락되었는데, 이와 같이 관례교서가 변화된 이유는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冠禮謄錄 등이 散失되어 왕세자 관례에 참고할 문헌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교서의 문서식과 동일하게 발급되었다.<sup>432)</sup>

1670년(현종 11) 왕세자(李焞, 肅宗) 관례교서는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과 효종대의 왕세자(李柵, 顯宗) 관례교서를 혼합한 형태로 발급되었다. 본문에서 ‘王

431) 『孝宗實錄』 2년(1651) 8월 9일(甲寅). 『漫浪集』 卷6 敎書. 『列聖誌狀通紀』 卷19 冠禮敎命文.

432) 『承政院日記』 효종 2년(1651) 7월 12일(丁亥): 金應祖, 以禮曹言啓曰, 前頭王世子冠禮·嘉禮日期不遠, 而經亂以後, 都監謄錄, 比爲散失, 都監差備各樣儀物, 無憑可考. 江華史庫, 發遣史官, 謄錄取來,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효종 2년(1651) 7월 20일(乙未): 李端相書啓, 臣以世子冠禮嘉禮謄錄取來事, 承命往考于江華府史庫, 則庫中所藏謄錄, 亦多散失於兵火, 冠禮謄錄則專無可考者, 只爲昏朝辛亥年嘉禮(缺二行)十二疋立之.

若曰'로 시작한 후에 '教王世子某'부터 '就宮展禮'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이어서 駢儷文으로 구성된 교서 본문을 수록한 후에 마지막에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다.433) 이것은 당시 왕세자(李焯, 肅宗)의 관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종이 『國朝五禮儀』에 수록된 교서에 말을 더 만들어 넣어 撰出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이었다.434) 이후 1695년(숙종 21) 왕세자(李昞, 景宗) 관례교서부터 1761년(영조 37) 왕세손(李祘, 正祖) 관례교서는 모두 1670년(현종 11) 왕세자(李焯, 肅宗) 관례교서와 같이 발급되었으며, 실물 문서로 현전하는 1727년(영조 3) 효장세자(李緯, 眞宗) 관례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                              |
|------------------------------|------------------------------|
| (01) 王世子冠禮教書                 | (17) 舜之道 成己成物 惟此而已 然非學問 何以明  |
| (02) 王若曰 教王世子緯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 | (18) 此道而行之不疑 惟精與一 卽我家傳授心法    |
| (03) 府左議政趙泰億就宮展禮 予惟古者聖王重     | (19) 大學書格物致知 卽精之之事 誠意正心 卽一   |
| (04) 冠 冠而后服備 服備而后體正 三加彌尊 加有  | (20) 之之事 其根基則專在於小學書 主敬又可以    |
| (05) 成也 已冠而字 成人道也 成人之者 責成人禮  | (21) 補小學之闕 爾尙勉之哉 循私慾則敗度 玩細   |
| (06) 也 衆庶尙然 況在君嗣 主鬯承         | (22) 娛則喪志 放肆奢侈 皆由此出 持爾心攝爾行   |
| (07) 祧 其禮可不重歟 咨爾世子緯 資性宏遠 氣宇莊 | (23) 敬慎爾威儀 食息不忘 日新又新 則聖人之極   |
| (08) 重 孩提之年 德器已成 爰正儲位 夙係民望 謁 | (24) 功 因可冀矣 爾尙戒之哉 正士與直言 雖若難  |
| (09) 廟齒學 動中乎禮 則發言處事 恒出於意表 左右 | (25) 合 親之則必益己而裨國 佞人與諛辭 雖若可   |
| (10) 承奉 仁孝愈著 朝夕講誦 溫文日就 肆予嘉悅  | (26) 悅 親之則必害己而凶國 爾尙深念之哉 嗚呼   |
| (11) 無極 期望彌至 爰舉嘉事 載加元服 載申載咸  | (27) 黻冕匪華 將以責其實 苟不能然 卽與童幼奚   |
| (12) 體焉字焉 責爾成人 其自今始 爾尙夙夜祗慎   | (28) 別 爾尙惕然戒慎 罔或豫怠 棄幼志 順成德 孜 |
| (13) 無違予訓 夫成人之道 孝悌忠順 禮所云四行   | (29) 孜成人之道 承天之慶 其永無疆 故茲教示    |
| (14) 是已 爾常愛予敬予 思盡爾心 擴充此心 孝與  | (30) 想宜知悉                    |
| (15) 忠不可勝用 爾常愛爾同氣 擴充此心 悌不可   | (31) 雍正五年九月初九日               |
| (16) 勝用 爾常敬老恭長 擴充此心 順不可勝用 堯  |                              |

<圖 V-19> 1727년(영조 3) 孝章世子(李緯, 眞宗) 冠禮教書435)

433) 『顯宗實錄』 11년(1670) 3월 9일(丙寅): 王若曰, 教世子諱 [焯],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左議政許積, 就宮展禮. 予惟禮, 爲國之本, 冠爲禮之始. … 承天之慶, 永永無疆. 故茲教示, 想宜知悉.

434) 『顯宗實錄』 11년(1670) 2월 12일(庚午): 積曰, 王世子冠禮時教書, 載於五禮儀, 而今聞五禮儀所載之教書, 則賓口傳於世子. 而又令詞臣, 別撰教書, 不爲宣讀, 直授世子, 是則有二教書也, 大違禮文. 似當以五禮儀教書, 宣傳之後, 仍授於王世子. 五禮儀節目, 本自分明, 不宜別撰教書, 而疊用也. 太和及右相洪重善, 皆請依五禮儀, 上從之. 後命於五禮儀所載教書中, 添入措語撰出.

1727년(영조 3) 효장세자(李緯, 眞宗)의 관례교서는 문서의 첫 행에 ‘王世子冠禮敎書’를 기재하였고, ‘王世子’·‘王若曰’·‘祧’·‘廟’의 용어는 擡頭하였다. 본문에서 ‘就宮展禮’ 다음에 駢儷文으로 구성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予惟(내가 생각하건대)’으로 시작하는 앞부분은 옛날에 聖王이 관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故事를 인용해서 관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咨爾世子緯(아! 세자 행은)’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효장세자의 좋은 성품과 어렸을 때의 행실을 칭찬하는 내용과 앞으로 『大學』과 『小學』 등의 학문에 정진하고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행동을 단정하게 하라는 등의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嗚呼’로 시작하는 끝부분은 성인의 도리를 잘 닦으라는 내용과 하늘이 내리는 慶事를 받들어 영원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축원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구성은 두 번째 시기의 관례교서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본문에 기재된 ‘予惟’·‘咨爾世子諱’·‘嗚呼(또는 於戲)’의 용어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800년(정조 24)에 왕세자(李瑛, 純祖)의 관례와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李旻, 翼宗)의 관례, 그리고 1882년(고종 19)에 왕세자(李坻, 純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발급된 3건의 관례교서이다. 이 가운데 1882년(고종 19) 왕세자(李坻, 純宗) 관례교서는 실물 문서와 草本 2건이 현전하고 있다. 이 시기의 관례교서는 駢儷文으로 구성된 본문 내용이 없어지고, 첫 번째 시기와 마찬가지로 『국조오례의』의 관례교서 문서식과 동일하게 발급되었다. 관례교서의 변화는 당시 1800년(정조 24) 왕세자(李瑛, 純祖)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당시 예조판서 李晩秀가 정조에게 『국조오례의』의 本文을 書寫해서 관례교서를 발급할 것을 아뢰었고, 이에 대해 정조가 윤허함에 따라 변화하였다.<sup>436)</sup> 이후 1819년(순조 19)에 효명세자(李旻, 翼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도 관례교서는 1800년(정조 24) 왕세자 관례의 전례를 따라 교서를 별도로 撰述하지 않았다.<sup>437)</sup>

435) 1727년(영조 3), 70.7×287.2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所藏, 敎書 1-2~敎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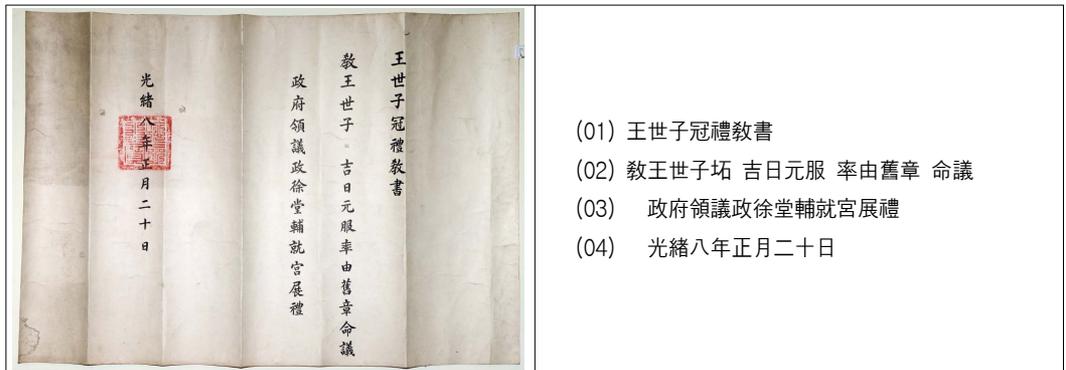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8~9쪽.

436)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1월 13일(丙寅): (禮曹判書 李)晩秀曰, 冠禮時敎書, 自有五禮儀所載之文, 勿爲別撰疊用之意, 庚戌因大臣筵稟, 定式施行矣. 今番亦以五禮儀本文書寫, 前一日內入, 當日請出入用, 何如. 上曰, 冊印敎命內入內出之節, 與正副本內入之節, 亦欲安徐, 此亦當如是.

437) 『承政院日記』 순조 19년(1819) 3월 6일(戊戌): 尹鼎烈, 以禮曹言啓曰, 今此王世子冠禮時, 敎書, 依五禮儀本文入用事, 曾已稟定矣. 敎書既不別撰, 則書寫官亦依庚申年例, 勿爲差出事, 分付吏曹, 何如. 傳曰, 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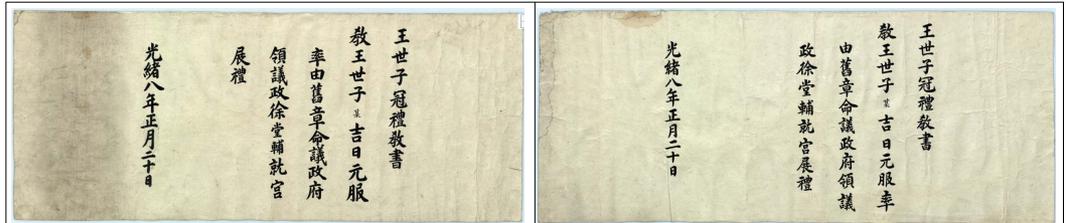
<表 V-31> 1800년(정조 24)~1882년(고종 19) 王世子 冠禮敎書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冠禮敎書 원문	출처
1	1800년(정조 24) 2월 2일	正祖	王世子 (李珣, 純祖)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政李秉模就宮展禮.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규장각 所藏 奎13119)
2	1819년(순조 19) 3월 20일	純祖	孝明世子 (李昊, 翼宗)	敎王世子某, 吉日元服率由舊章. 命領議政徐龍輔就宮展禮.	『純祖實錄』
3	1882년(고종 19) 1월 20일	高宗	王世子 (李坻, 純宗)	敎王世子某,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領議政徐堂輔就宮展禮.	『高宗實錄』, 『東宮日錄』 卷9(장서각 所藏 K2-50), 『春坊日記』 卷8(장서각 所藏 K2-304)



- (01) 王世子冠禮敎書
- (02) 敎王世子坻 吉日元服 率由舊章 命議
- (03) 政府領議政徐堂輔就宮展禮
- (04) 光緒八年正月二十日

<圖 V-20> 1882년(고종 19) 王世子(李坻, 純宗) 冠禮敎書438)



<圖 V-21> 1882년(고종 19) 王世子(李坻, 純宗) 冠禮敎書 草本439)

실물 문서와草本이 현전하고 있는 1882년(고종 19) 왕세자(李坻, 純宗) 관례교서도 1800년(정조 24)과 1819년(순조 19)의 왕세자 관례교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발급되었다. 1882년(고종 19) 왕세자(李坻, 純宗) 관례교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王世子

438) 1882년(고종 19), 66.2×97.6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所藏, 추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2, 8쪽.

439) 1882년(고종 19), 32.0×77.9cm(左), 32.0×77.8cm(右),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所藏, 122.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1 -王命, 上奏-, 2010, 44~45쪽.

冠禮教書'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는 '教王世子'를 기재하고, 이어서 왕세자의 諱인 '圻'을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이어서 '吉日元服 率由舊章'과 賓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就宮展禮'로 끝맺고 있으며, 다음 행에는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고 「施命之寶」을 안보하였다. 2건의 草本은 왕세자 諱인 '圻' 대신에 '某'를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가 안보되어 있지 않으며, 종이의 규격이 관례교서보다 작다는 점에서 실제 관례교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관례교서는 중국 唐의 제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고, 고려에서 唐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수용하여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관례교서의 문서식이 수록되었다. 이후 1522년(중종 17)에 왕세자(李峱, 仁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부터 1882년(고종 19)에 왕세자(李圻, 純宗)의 관례를 거행할 때까지 국왕은 왕세자나 왕세손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관례교서를 발급하였다.

조선시대에 왕세자가 成人이 되는 의식인 관례는 국왕의 혼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儀禮 중에 하나로 인식하였다.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할 때에 국왕이 관례교서를 내려주는 것은 왕위 계승자라는 왕세자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실의 다른 大君이나 君의 관례에서 국왕이 관례교서를 내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례교서가 왕세자의 지위와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3.3 配享功臣敎書와 宗廟配享敎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先王의 재위 기간 동안에 잘 보좌하거나 특별한 공이 있는 신하를 선왕의 사후에 배향공신으로 선정하고, 선왕의 위패와 함께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配享하였다. 국왕은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기 전에 배향공신의 사당에 致祭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 국왕이 치제를 지내기 위해 내려주는 교서가 배향공신교서이며,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할 때에 국왕이 내려주는 교서가 종묘배향교서이다.<sup>440)</sup> 본 절에서는 먼저 고려시대의 배향공신과 『東文選』 등에 수록된 고려시대의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교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현황과 선정 과정, 그리고 조선시대 배향공신교서의 시행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배향공신교서의 전존 현황과 특징, 종묘배향교서의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려시대 配享功臣과 敎書

고려시대 宗廟(太廟)<sup>441)</sup>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는 제도는 성종대에 종묘가 정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sup>442)</sup> 983년(성종 2) 5월에 博士 任老成이 宋에서 太

440) 사료에서 ‘配享功臣敎書’는 ‘配享臣敎書’로, ‘宗廟配享敎書’는 ‘都敎書’로 사용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장서각 K2-2218) 卷1 同日(二月二十五日): 當職長官啓曰, 高宗太皇帝廟庭, 配享功臣敎書製述官, 開錄書入之意, 敢啓. 四臣都敎書製述官鄭萬朝. 文翼公朴珪壽敎書製述官『承政院日記』경종 2년(1722) 5월 7일(辛卯): 配享臣敎書製述及位版造作祭官祭物等, … 『銀臺便攷』, 『禮房攷』 宗廟配享: 配享臣敎書, 自藝文館來呈, 入啓. 啓下後, 奉敎可判付, 自堂后, 依道臣敎書例正書. 祔廟前期入啓, 寶啓請安寶. 獻官受香時傳授, 使忠贊衛奉持出去. 本家無祝, 直以敎書讀之. 廟庭配享時, 又有都敎書, 依此舉行. 『國恤曆錄』(장서각 K2-2935) 卷1 辛卯六月十五日: … 兩臣處敎書宗廟配享敎書中, 兩臣添入措語製述等事, 并以令各該司, 一依前例磨鍊節目, 付標施行事, 知委舉行何如. … 심영환·노인환의 「조선시대 敎書의 淵源과 分類」에서는 配享功臣敎書를 宗廟配享敎書라고 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配享功臣敎書와 宗廟配享敎書를 구분하여 각 교서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심영환·노인환, 앞의 논문, 2012, 35~38쪽)

441)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는 宗廟와 太廟의 용어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본 절에서는 종묘와 태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모두 宗廟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442) 고려시대 宗廟(太廟)와 배향공신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박천식, 「고려 配享功臣의 制度的 性格과 그 特性」, 『전라문화논총』 3, 전라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9, 335~397쪽.  
김철용,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國史編纂委員會, 2005, 133~159쪽.  
최순권, 「高麗初期 五廟制의 運營」, 『歷史敎育』 66, 역사교육연구회, 1998, 31~66쪽.  
이강한, 「14세기 高麗 太廟의 혁신과 변천」,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2010, 85~113쪽.

廟堂圖·社稷堂圖 등을 가져왔는데,<sup>443)</sup> 이것은 宋의 제도를 바탕으로 고려의 종묘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988년(성종 7) 12월에 성종은 五廟를 정하였고, 다음 해인 989년(성종 8) 4월에 종묘를 건설하여 3년 후인 992년(성종 11) 12월에 종묘를 완성하였다.<sup>444)</sup> 종묘가 완성된 후인 994년(성종 13) 4월에 성종은 종묘에 禘祭를 지내고, 아버지인 戴宗의 위패를 종묘의 제5실에 모셨으며, 태조부터 경종까지 선대왕의 각 室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였다. 예를 들어 太祖廟에는 裴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庾黔弼의 위패를 배향하였고, 惠宗廟에는 朴術熙·金堅術, 定宗廟에는 王式廉, 光宗廟에는 劉新城·徐弼, 景宗廟에는 崔知夢을 각각 배향하였다.<sup>445)</sup>

성종대에 종묘가 완성된 이후에는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祔廟한 후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였다. 998년(목종 1) 4월에 성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한 후에 崔承老와 崔亮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였다.<sup>446)</sup> 또한 1027년(현종 18) 4월에는 종묘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였는데, 이 때 太祖廟에 崔凝, 景宗廟에 朴良柔, 成宗廟에 李知白·徐熙·李夢游를 추가로 배향하였으며, 같은 날에 穆宗廟에 韓彦恭·金承祚·崔肅을 새롭게 배향하였다.<sup>447)</sup> 이후 현종부터 공민왕까지 종묘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였는데, 이 가운데 獻宗·忠肅王·忠穆王·禔王·昌王·恭讓王의 경우에는 배향공신이 선정되지 않았다.<sup>448)</sup>

고려시대의 배향공신은 태조부터 공민왕까지 총 74명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443) 『高麗史』世家3 成宗 2년(983) 5월 甲子: 博士任老成, 至自宋, 獻太廟堂圖一鋪·并記一卷, 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

444) 『高麗史』志15 禮3 諸陵: 成宗七年十二月始定五廟, 八年四月始營太廟, 十一年十一月太廟成. 命儒臣, 議定昭穆位次及禘祫儀, 遂行祫禮. 十二年三月, 教曰, 殷以十二君爲六代, 唐以一十帝爲九室. 晉書所云, 兄弟旁及禮之變也. 則宜爲主立室, 不可以室限神. 兄弟一行, 禮文斯在, 況我惠宗若論同世, 豈可異班. 宜奉惠·定·光·景四主通爲一廟, 祔於太廟. 十三年四月親禘, 祔太祖·惠·定·光·戴·景宗於廟, 各以功臣配享.

445) 『高麗史』世家 成宗 13년(994) 4월 甲辰: 夏四月甲辰, 禘于太廟, 躋戴宗于第五室, 以功臣裴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庾黔弼配太祖, 朴術熙·金堅術配惠宗, 王式廉配定宗, 劉新城·徐弼配光宗, 崔知夢配景宗, 大赦, 賜文武爵一級, 執事者二級, 百姓大酺三日.

446) 『高麗史』世家3 穆宗 1년(998) 4월 壬子: 謁太廟, 祔成宗, 以侍中崔承老·大師崔亮配享, 赦.

447) 『高麗史』世家5 顯宗 18년(1027) 4월 壬午: 謁太廟, 加上先王先后尊號. 以裴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庾黔弼·崔凝配享太祖, 朴述希·金堅術配惠宗, 王式廉配定宗, 劉新成·徐弼配光宗, 崔知夢·朴良柔配景宗, 崔承老·崔亮·李知白·徐熙·李夢游配成宗, 韓彦恭·金承祚·崔肅配穆宗, 赦流以下.

448) 獻宗은 재위기간(1094~1095)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배향공신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禔王·昌王·恭讓王은 종묘에 부모되지 않았다. 忠肅王·忠穆王은 사료의 미비로 정확한 이율을 알 수 없다.

<表 V-32> 고려시대 配享功臣 現況<sup>449)</sup>

王代	配享功臣 名單	王代	配享功臣 名單
太祖	裴玄慶·洪儒·卜智謙·申崇謙·庾黔弼·崔凝	睿宗	柳仁著·尹瓘·金仁存·魏繼廷
惠宗	朴述熙·金堅術	仁宗	金富軾·崔思全
定宗	王式廉	毅宗	崔允儀·庾弼·文公元
光宗	劉新城·徐弼	明宗	尹麟瞻·文克謙
景宗	朴良柔·崔知夢	神宗	趙永仁
成宗	崔亮·崔承老·李夢游·徐熙·李知白	熙宗	崔訖·任濡
穆宗	韓彥恭·崔肅·金承祚	康宗	鄭克溫
顯宗	姜邯贊·崔沆·崔士威·王可道	高宗	趙沖·李杭·金就礪
德宗	柳韶	元宗	李世材·蔡楨
靖宗	徐訥·黃周亮·崔沖·金元沖	忠烈王	許珙·薛公儉
文宗	崔齊顏·李子淵·王寵之·崔惟善	忠宣王	洪子藩·鄭可臣
順宗	李靖恭	忠惠王	韓滉·李揆
宣宗	文正·柳洪·金上琦	忠定王	李品·李仁復
肅宗	邵台輔·王國髦·崔思諤	恭愍王	王煦·李齊賢·曹益清·李公遂·柳淑

고려시대의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는 실물 문서가 현전하지 않지만, 그 대신 『高麗史』·『東文選』·『東國李相國集』·『陽村集』에 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魏繼廷을 睿宗의 묘정에 배향할 때에 내린 배향공신교서와 鄭克溫을 康宗의 묘정에 배향할 때에 내린 배향공신교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50)</sup>

故門下侍中魏繼廷配享睿宗教書

王者之孝，爲能饗其親，人臣之榮，在不掩爾善，效奉先之罔極，乃錫寵之惟新。三重大匡檢校太師·守太保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判使部事，上柱國某，清儉鎮於一時，儀刑重於百辟，實斯民先覺，惟顧命大臣。屬英陵晏駕之時，方睿考飛龍之旦，親傳玉璽，方贊鴻基，至今搢紳之間，想昔風節者衆。配享于廟，有闕禮官之文，追錄其功，在予寡人之命，適修大禘，用資明恩。舉茲從祀之儀，加以易名之典。俾先王迪高后，賢業益彰，雖死日猶生年，忠魂已格。加贈忠烈公。<sup>451)</sup>

故參知政事鄭克溫配享神<康>宗大王教書

君畢喪而祔神主，是國家不易之規，臣有功則配廟廷，實今古相沿之制。卿昂躋毓粹，嵩嶽降精，氣雄韓信之登壇，早紆將印，略邁張良之借筋，密轉軍籌。當寧考之承圖，掌中樞而佐命，暨參大政，逮事寡人。故及見爾之平生，眞可謂古之遺直。朕曩遭憂變，深軫衣傷，地隔九天，雖未還於仙馭，禮終三載，將奉入於宗祔。顧侑位之難虛，與群寮而迺議，當代之佐，未必乏其人焉，衆論所歸，顧無易於卿者，爰舉追崇之典，俾躋與享之聯。嗚戲，不以生死而有異者，君之寵恩，無以幽明

449) 『高麗史』 志14 禮2 吉禮大祀: 禘祫功臣配享於庭.

450) 『東文選』과 『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教書의 제목은 모두 鄭克溫이 神宗의 묘정에 배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高麗史』와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는 鄭克溫이 康宗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므로 교서의 제목을 수정하였다.

451) 『東文選』 卷23 教書 「故門下侍中魏繼廷配享睿宗教書」.

而有間者，臣之忠義，朕將嘉乃丕續，誓萬世之不忘，卿亦相我先君，佑三韓之永固。<sup>452)</sup>

위계정과 정극운의 배향공신교서는 종묘에 위패를 배향하기 전에 국왕이 위계정과 정극운의 사당에 致祭를 지낼 때 발급해 준 교서로 볼 수 있다. 위계정의 배향공신교서는 앞부분에 선왕을 받드는 마음으로 총애하는 신하를 종묘에 배향한다고 하였고, 이어서 위계정의 검소한 성품과 백관의 모범이 되는 행실을 언급하고, 예종이 즉위할 때 친히 옥새를 전했던 공적을 표창하였다. 끝부분에는 종묘에 배향하면서 아울러 忠烈公의 시호를 내려준다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위계정의 배향공신교서는 郭東珣이 제출하였다.

李奎報가 제출한 정극운의 배향공신교서는 먼저 국왕의 위패를 부모하는 것은 국가의 규정이고, 공이 있는 신하를 묘정에 배향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정극운의 성품을 언급하고 韓信과 張良에 비유하여 뛰어난 능력을 표현하였으며, 추밀원을 맡았던 공적과 평소 행실을 표창하였다. 후반부에는 선왕을 추송하는 典禮를 행하면서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시대 종묘배향교서는 1376년(우왕 2)에 공민왕의 배향공신인 王煦·李齊賢·曹益淸·李公遂·柳淑을 종묘에 배향할 때에 權近이 제출한 종묘배향교서가 『東文選』과 『陽村集』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王若曰**。喪既畢於三年，神主升祔於宗祐，功可傳於萬世，人臣與享於廟庭，禮遵古今之相沿，恩豈幽明之有間。**鷄林府院大君王煦**，風猷凝峻，器度宏深。初寵遇於德陵，視猶子而賜姓，後登庸於穆廟，命作相而不名。秩同親戚而並豐，榮匪他人之可擬，矧觀平日之行事，無愧前賢之所爲。事君能致其身，心專翊戴，理國如指諸掌，業茂經綸。乃聖兼并之徒，將申整理之法，方致奸兇之膽落，遽爲黎庶之涕零。興言及茲，深用爲感。**鷄林府院君李齊賢**，德兼爵齒，學貫天人。負親於宣祖之西巡，備嘗艱險，秉鈞於敬考之南面，克著庸勞。忠勤歷事於六朝，終始不渝於一節，四登相府而躬恭讓之美，再掌禮闈而號選掄之公。理思亂安思危，恒存憂國之念，高不驕滿不溢，慎守保身之機，英華發爲文章，經術措諸事業。利涉允資於舟楫，稽疑有賴於蓍龜，惠澤洽於東民，休聲振於中國。遺風未殄，永世難忘。**夏城府院君曹益淸**，立志純誠，持身謹慎。力扶十年之潛德，式至今休，位副萬民之具瞻，恪遵前憲，赫赫邦家之碩輔，堂堂社稷之重臣。永著誓於丹書，豐烈褒於青史。**益山府院君李公遂**，方嚴信厚，博大寬明。貴極皇儲之展親，心愈下而能儉，變遭擊堅之伺釁，志彌堅而莫回。忠言切於格非，義色形於率下。有爲有守之學問，可畏可象之威儀。**瑞興君柳淑**，志節淸高，學問瞻富。早守中閭之付託，久勞外邸之艱難，委質無貳於一心，盡忠殆踰於三紀。

452) 『東文選』卷23 教書 「故參知政事鄭克溫配享神<康>宗教書」.

『東國李相國集』卷33 教書 批答 詔書 「故參知政事鄭克溫配享神<康>宗大王教書」.

『高麗史』列傳14 鄭克溫.

昵侍帷幄，從容借節之謀，說稱詩書，密勿陳謨之戒，特荷腹心之寄，崇居喉舌之司。故能言聽而計行，以至功成而名遂，既歷本兵之府，而升出政之堂。子房願從於神仙，予嘉智之足尚，治長雖在於縷緘，皆曰罪之爲非，蓋旌厥庸，以雪其憤。念以孱質，托于丕基，方懷在疚之媿媿，惟識小心之翼翼。恐難任列祖之付畀，思得如諸卿而共圖。爰躋從祀之班，式示有功之報。於戲。記功宗而秩祀，庶幾周誥之共貞，迪高后而降祥，罔俾殷盤之專美。卿等受命篤弼，予其垂拱仰成。故茲教示，尙<想>宜知悉。<sup>453)</sup>

1376년(우왕 2) 종묘배향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선왕의 삼년상을 마친 후에 위패를 종묘에 升祔하는 것과 공이 있는 신하를 묘정에 배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공민왕의 배향공신인 王煦·李齊賢·李公遂·曹益淸·柳淑의 성품·행실·공적을 각각 표창하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배향공신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서는 『東文選』과 『陽村集』에 ‘敬孝大王 祔廟配享功臣教書’로 제목이 기재되었으나, 교서의 내용에 공민왕 배향공신인 王煦·李齊賢·曹益淸·李公遂·柳淑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배향공신교서가 아닌 종묘배향교서로 볼 수 있다.

위계정·정극운의 배향공신교서와 1376년(우왕 2) 종묘배향교서는 실물 문서가 아니라 교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료이기 때문에 고려시대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는 고려시대의 교서 제도를 계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서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고려시대 종묘배향교서에 기재된 ‘王若曰’·‘於戲’·‘故茲教示尙<想>宜知悉’의 용어는 조선시대 교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조선시대 配享功臣의 現況과 선정 과정

조선시대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는 제도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시행하였다.<sup>454)</sup> 고려시대에는 禘祫祭를 지낼 때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

453) 『東文選』 卷24 教書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權近」.

『陽村集』 卷30 教書類 「敬孝大王祔廟配享功臣教書」.

454) 조선시대 宗廟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지두환, 「朝鮮前期 宗廟制度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8, 修德文化社, 2000, 231~259쪽.

지두환, 「朝鮮後期 宗廟制度 變遷」, 『韓國學論叢』 26, 國民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4, 87~114쪽.

지두환, 『세계문화유산 종묘이야기』, 집문당, 2006.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 題式의 변화 -明·淸의 교체를 기점으로」, 『진단학보』 101, 진단

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선왕의 삼년상과 禫祭를 거행하고 위패를 종묘에 祔廟한 당일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의 功臣堂에 배향하였다.<sup>455)</sup>

조선시대에는 선왕의 위패를 祔廟하기 위해 종묘를 건설하였고, 아울러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기 위한 공신당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조선 초기에 종묘와 공신당을 정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392년(태조 1) 10월 9일에 태조는 종묘를 조성할 都監을 설치하였고,<sup>456)</sup> 또한 10월 13일에 前朝의 종묘를 헐고 그 땅에 새로 종묘를 지을 것을 명하였다.<sup>457)</sup>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1395년(태조 4) 9월 29일에 종묘와 궁궐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이 때 종묘에 太室 7칸과 功臣堂 5칸 등을 건립하였다.<sup>458)</sup> 이후 태종은 1410년(태종 10) 5월 26일에 종묘의 東廂과 西廂을 짓고, 공신당을 종묘의 담 안에 東階 아래로 옮겼다.<sup>459)</sup>

조선시대에 선왕의 위패를 祔廟하고 배향공신의 위패를 공신당에 배향하는 것은 태조의 삼년상과 禫祭를 끝낸 후인 1410년(태종 10) 7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410년(태종 10) 5월 3일에 태종은 太祖祔廟都監을 설치하였고,<sup>460)</sup> 6월 19일에 河崙·成石璘과 함께 태조 부모의 예를 의논하였으며,<sup>461)</sup> 7월 12일에 趙浚·義安大君 李和·李之蘭·趙仁沃을 태조의 배향공신으로 정하였다.<sup>462)</sup> 이후 7월 15일에 태종은 魂殿인 文昭殿에 친림하여 禫祭를 거행하였으며,<sup>463)</sup> 7월 26일에 태조와 神懿王后의 위패를 종묘에 부묘한 후에 배향공신인 조준·의안대군 이화·이지란·조인옥의 위패를 공신당에 배향하였다.<sup>464)</sup>

이어서 정종의 경우에는 1421년(세종 3) 11월 9일에 益安大君 李芳毅를 정종의 배향공신으로 선정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에 南在·李濟·南閔을 태조의 배향공신으로 추가로 선정하였다.<sup>465)</sup> 정종의 禫祭를 거행한 후인 12월 18일에 정종과 定安王后의 위

---

학회, 2006, 225~256쪽.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모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55~102쪽.

455) 이현진, 위의 논문, 2011, 86쪽.

456) 『太祖實錄』 1년(1392) 10월 9일(丁巳): 置大廟造成都監 [太廟造成都監].

457) 『太祖實錄』 1년(1392) 10월 13일(辛酉): 命毀前朝宗廟, 作新廟於其地.

458) 『太祖實錄』 4년(1395) 9월 29일(庚申): 是月太廟及新宮告成. 太廟太室七間, 同堂異室. 內作石室五間, 左右翼室各二間, 功臣堂五間, 神門三間, 東門三間, 西門一間, 繚以周垣. …

459) 『太宗實錄』 10년(1410) 5월 26일(壬辰): 始構宗廟東西廂, 移功臣堂於廟垣之內東階下.

460) 『太宗實錄』 10년(1410) 5월 3일(己巳): 置太祖祔廟都監, 以星山君李稷·禮曹判書徐愈爲提調.

461) 『太宗實錄』 10년(1410) 6월 19일(甲寅).

462) 『太宗實錄』 10년(1410) 7월 12일(丁丑).

463) 『太宗實錄』 10년(1410) 7월 15일(庚辰).

464) 『太宗實錄』 10년(1410) 7월 26일(辛卯).

패를 종묘에 부묘하고, 같은 날에 배향공신인 益安大君 李芳毅의 위패를 공신당에 배향하였다.<sup>466)</sup> 1422년(세종 4) 1월 9일에는 추후에 태종의 배향공신으로 선정된 남재·이제·남은의 위패를 태조의 묘정에 배향하였다.<sup>467)</sup>

이후 태종부터 순종까지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부묘한 당일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였는데, 이 가운데 세조에 의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과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었다. 그러나 국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였던 思悼世子(莊祖)와 순조의 세자인 孝明世子(翼宗)의 경우에는 추후에 배향공신을 선정하여 종묘에 배향하였다.

배향공신 가운데 일부는 종묘에서 黜享되거나 復享되기도 하였다. 趙綱은 숙종의 배향공신으로 1676년(숙종 2) 10월 15일에 종묘에 배향되었다가 1681년(숙종 7) 6월 17일에 黜享되었다. 또한 金鍾秀는 정조의 배향공신으로 1802년(순조 2) 8월 9일에 종묘에 배향되었는데, 1807년(순조 7) 8월 8일에 黜享되었고, 다시 1866년(고종 3) 1월 9일에 復享되기도 하였다. 고종 연간에는 배향공신을 추가로 선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讓寧大君과 孝寧大君은 세종의 배향공신으로 追配되었고, 李珣는 선조의 배향공신으로 추배되었으며, 麟平大君·閔鼎重·閔維重은 효종의 배향공신으로 추배되었다.

일부 배향공신의 경우에는 재위 기간에 신하가 되지 못하였어도 배향공신으로 선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인종의 배향공신인 김안국은 원래 중종대에 죽어서 인종이 즉위한 뒤에 신하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조의 왕세자 시절에 오랫동안 輔導하였기 때문에 唐의 馬周를 高宗에 배향한 고사를 들어서 인조의 배향공신으로 선정하였다.<sup>468)</sup> 태조부터 순종까지 조선시대 배향공신은 총 94명이며, 배향공신을 선정한 시기와 종묘에 배향한 시기, 그리고 배향공신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表 V-33> 조선시대 配享功臣의 現況

王代	配享功臣 選定	宗廟 配享	配享功臣 名單
太祖	1410년(태종 10) 7월 12일	1410년(태종 10) 7월 26일	趙浚, 義安大君 李和, 李之蘭, 趙仁沃
	1421년(세종 3) 11월 9일	1422년(세종 4) 1월 9일	南在, 李濟, 南閔
定宗	1421년(세종 3) 11월 9일	1421년(세종 3) 12월 18일	益安大君 李芳毅
太宗	1424년(세종 6) 2월 6일	1424년(세종 6) 7월 12일	河崙, 趙英茂, 鄭擢, 李天祐, 李來

465) 『世宗實錄』 3년(1421) 11월 9일(戊辰).

466) 『世宗實錄』 3년(1421) 12월 18일(丁未).

467) 『世宗實錄』 4년(1422) 1월 9일(丁卯).

468) 『明宗實錄』 9년(1554) 9월 15일(癸丑): 史臣曰, 安國卒於中廟朝, 未及臣事於仁廟即位之後, 然久侍東宮, 多所輔導, 故用唐朝馬周配享高宗故事, 特入廟廷. 蓋存沒之異數, 古今之罕見者也.

王代	配享功臣 選定	宗廟 配享	配享功臣 名單
世宗	1451년(문종 1) 11월 12일	1452년(문종 2) 4월 10일	許稠, 崔潤德, 申概, 李隨
	1452년(문종 2) 2월 8일		黃喜
	1865년(고종 2) 1월 20일	1865년(고종 2) 4월 3일	讓寧大君 李禔, 孝寧大君 李補
文宗	1454년(단종 2) 5월 9일	1454년(단종 2) 7월 16일	河演
世祖	1470년(성종 1) 4월 5일	1470년(성종 1) 12월 16일	權寧, 韓確
	1489년(성종 20) 1월 13일	[1489년(성종 20)]	韓明澮
睿宗	1471년(성종 2) 윤9월 8일	1472년(성종 3) 1월 12일	朴元亨
成宗	1496년(연산군 2) 2월 5일	1497년(연산군 3) 2월 11일	申叔舟, 鄭昌孫, 洪應
中宗	1546년(명종 1) 4월 23일	1547년(명종 2) 1월 12일	朴元宗, 成希顔, 柳順汀, 鄭光弼
仁宗	1554년(명종 9) 9월 15일	[1554년(명종 9)]	洪彦弼, 金安國
明宗	1569년(선조 2) 윤6월 16일	1569년(선조 2) 8월 16일	沈連源, 李彦迪
宣祖	1610년(광해군 2) 3월 7일	1610년(광해군 2) 4월 11일	李浚慶, 李滉
	1886년(고종 23) 11월 17일	1886년(고종 23) 12월 25일	李珥
仁祖	1651년(효종 2) 4월 13일	1651년(효종 2) 7월 7일	李元翼, 申欽, 金塗, 李貴
	1651년(효종 2) 6월 14일		申景禎, 李曙
	1865년(고종 2) 1월 13일	1865년(고종 2) 4월 3일	綾原大君 李備
孝宗	1661년(현종 2) 4월 24일	1661년(현종 2) 7월 8일	金尙憲, 金集
		1778년(정조 2) 5월 2일	宋時烈
	1865년(고종 2) 1월 13일	1865년(고종 2) 4월 3일	麟平大君 李濬
	1886년(고종 23) 11월 17일	1886년(고종 23) 12월 25일	閔鼎重
	1890년(고종 27) 1월 29일	1890년(고종 27) 3월 11일	閔維重
顯宗	1676년(숙종 2) 7월 17일	1676년(숙종 2) 10월 15일	金佐明, 趙綱(1681년 6월 17일 黜享)
	1680년(숙종 6) 2월 16일	1680년(숙종 6) 4월 8일	鄭太和
	1886년(고종 23) 11월 17일	1886년(고종 23) 12월 25일	金壽恒
	1890년(고종 27) 1월 29일	1890년(고종 27) 3월 11일	金萬基
肅宗	1722년(경종 2) 5월 6일	1722년(경종 2) 8월 11일	南九萬, 朴世采, 尹趾完, 崔錫鼎
	1886년(고종 23) 11월 17일	1886년(고종 23) 12월 25일	金錫胄, 金萬重
景宗	1726년(영조 2) 7월 2일	1726년(영조 2) 10월 13일	李滯, 閔鎮厚
英祖	1778년(정조 2) 2월 25일	1778년(정조 2) 5월 2일	金昌集, 崔奎瑞, 閔鎮遠, 趙文命, 金在魯
莊祖	1899년(광무 3) 11월 5일	[1899년(광무 3) 12월]	李鍾城, 閔百祥
正祖	1802년(순조 2) 6월 21일	1802년(순조 2) 8월 9일	俞彦鎬, 金鍾秀(1807년 8월 8일 黜享, 1866년 1월 9일 復享)
	1833년(순조 33) 4월 11일	1833년(순조 33) 7월 1일	金祖淳
純祖	1836년(헌종 2) 10월 11일	1837년(헌종 3) 1월 7일	李時秀, 金載瓚, 金履喬, 趙得永
	1865년(고종 2) 1월 13일	1865년(고종 2) 4월 3일	南延君 李球, 趙萬永
翼宗	1875년(고종 12) 11월 26일	1875년(고종 12) 12월 19일	南公敏, 金鎰, 趙秉龜
憲宗	1851년(철종 2) 6월 1일	1851년(철종 2) 8월 6일	李相璜, 趙寅永
哲宗	1865년(고종 2) 11월 1일	1866년(고종 3) 2월 6일	李憲球, 益平君 李羲, 金洙根
高宗	1921년 3월 3일	1921년 3월 31일	朴珪壽, 申應朝, 李敦宇, 閔泳煥
純宗	1928년 5월 3일	1928년 7월 6일	宋近洙, 徐正淳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시기는 선왕의 삼년상이 끝나고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附廟하기 전에 미리 선정하였다. 만약 종묘에 배향해야 할 신하가 선왕의 위패를 부묘할 때보다 오래 살 경우에는 사후에 논의하여 결정한 후에 추가로 종묘에 배향하였다. 예를 들어 宋時烈的 경우에는 1778년(정조 2) 5월 2일에 효종의 배향공신으로 追配되었다.<sup>469)</sup>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은 조선 전기와 후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육조에서 배향공신의 후보자를 국왕에게 아뢰면, 국왕은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과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배향공신을 선정하였다.<sup>470)</sup> 예를 들어 태조의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410년(태종 10) 7월 12일에 의정부에서 의논을 모아 趙浚·南閔·趙仁沃을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태종은 당시 의정부의 領議政府事 河崙·左政丞 成石璘·右政丞 趙英茂과 의논하여 최종적으로 趙浚·義安大君 李和·李之蘭·趙仁沃을 배향공신으로 선정하였다.<sup>471)</sup> 또한 세종은 태종의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에 의정부와 육조의 판서·참판 등과 의논하여 배향공신을 선정하였고,<sup>472)</sup> 문종은 세종의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에 의정부와 육조에서 올린 후보자를 당시 도승지 李季甸과 의논하여 배향공신을 선정하기도 하였다.<sup>473)</sup>

배향공신의 선정 방식은 17세기 중반 인조의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부터 변화하였다. 1651년(효종 2) 4월 13일 인조의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에 효종은 大臣·六卿·三司의 관원에게 인조의 배향공신을 의논하여 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 때 모인 관원들은 인조의 배향공신으로 李元翼·申欽·金塗·李貴를 圈點해서 효종에게 아뢰었다.<sup>474)</sup> 조선시대에 圈點은 홍문관·예문관·규장각 등의 관원을 선발할 때 후보자의 성명 위에 등근 점을 찍는 것으로 이러한 圈點은 효종의 배향공신부터 철종의 배향공신을 선정할 때 사용되었다.<sup>475)</sup>

469) 『正祖實錄』 2년(1778) 5월 2일(辛酉).

470) 『文宗實錄』 1년(1451) 11월 12일(丙午): 前日, 議政府·六曹, 議世宗大王配享之臣以啓.

『成宗實錄』 1년(1470) 4월 5일(癸丑): 命曾經政丞及議政府·六曹, 議世祖配享功臣, 乃以西原君韓確·吉昌君權孳擬定.

『光海君日記』 2년(1610) 3월 7일(癸未): 大臣·六曹會賓廳, 議定宣宗廟配享名臣, 以李浚慶·李滉爲第一, 以盧守愼·柳成龍爲第二議上.

471) 『太宗實錄』 10년(1410) 7월 12일(丁丑).

472) 『世宗實錄』 6년(1424) 2월 6일(壬子).

473) 『文宗實錄』 1년(1451) 11월 12일(丙午).

474) 『孝宗實錄』 2년(1651) 4월 13일(己未): 命大臣·六卿·三司會賓廳, 議定配享諸臣, 領議政完平府院君李元翼·領議政申欽·領議政昇平府院君金塗·延平府院君李貴, 圈點以啓.

475) 『顯宗改修實錄』 2년(1661) 4월 24일(癸卯): 大臣及政府東西壁·六卿·三司長官, 會賓廳, 圈點孝宗廟庭配享臣, 以左議政文正公金尙憲·判府事文敬公金集抄啓.

『承政院日記』 고종 2년(1865) 11월 1일(壬戌): 賓廳啓曰, 哲宗大王, 廟庭配享諸臣, 圈點, 領議政權

圈點을 통해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은 이후 『육전조례』와 『은대편고』에 규정되었다. 『육전조례』와 『은대편고』의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승정원에서 선왕의 위패를 부묘하기 전에 국왕에게 배향공신의 圈點에 참여하는 관원인 時原任大臣·東西壁·館閣堂上·六卿·三司長官 등을 牌招할 것을 아뢰었다.<sup>476)</sup> 이어서 대제학이 후보자가 적힌 圈點記를 써서 나오면, 참석한 관원이 圈點하여 배향공신을 선정하였다. 圈點 후에 大臣이 配享功臣望單子를 직접 쓰고 피봉에 着名을 한 후에 직접 전하여 국왕에게 入啓하였고, 국왕은 啓字印을 踏印해서 결재하였다. 국왕의 결재를 받은 配享功臣望單子是 승정원에서 예조의 郎官에게 전해 주었다. 이후 奉常寺에서 배향공신의 位版을 造成하였고, 국왕은 예조의 관원을 보내어 致祭를 지냈다.<sup>477)</sup>

이와 같이 『육전조례』와 『은대편고』에 규정된 것은 조선 후기에 圈點을 통해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이 법제화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圈點을 통해 배향공신을 선정한 것은 다수의 조정 관원이 참석함으로써 배향공신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3) 配享功臣教書의 시행

조선시대에 종묘에 위패를 배향하는 배향공신에게 致祭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는 제도는 이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1421년(세종 3) 12월 18일에 정종의 배향공신인 李芳毅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할 때에 세종은 하루 전인 12월 17일에 공조정랑 李粟을 李芳毅의 사당에 보내어 致祭를 지내

敦仁四點, 左議政金道喜四點, 左議政朴晦壽四點, 左議政朴永元六點, 左議政李憲球十一點, 益平君曦十一點, 益豐府院君洪在龍六點, 贈領議政金洙根十一點.

476) 배향공신을 圈點하는 관원에 대해 『六典條例』는 原任大臣과 三司의 長官이 포함되어 있지만, 『銀臺便放』는 原任大臣과 三司의 長官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仁祖·孝宗·顯宗의 배향공신을 圈點할 때에 三司의 長官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六典條例』의 규정을 따라 서술하였다.

477) 『六典條例』「吏典」承政院 請牌: ○廟庭配享臣抄啓時, 時原任大臣·東西壁·館閣堂上 [春秋館堂上·內閣直提學, 例不出牌.] ·六卿·三司長官并請牌招.

『六典條例』「禮典」禮曹 喪葬: ○廟庭配享, 大王祔廟前期稟旨, 會圈應參人員命招. [時·原任大臣及政府·六曹·三司長官] ○配享功臣望單子, 啓下後, 自政院傳授本曹郎官, 奉安本曹. ○位版造成後, 遣官致祭. [位版令奉常寺造成, 致祭時教書及配祔時廟庭都教書, 令藝文館撰進.]

『銀臺便放』「禮房攷」宗廟配享: 圈點記, 大提學書出, 而時任大臣·政府西壁·六卿圈點. [大提學以下文任及三司長官, 不爲參圈, 原任大臣, 亦不參圈.] 圈點後, 抄啓單子, 大臣親書, 請承傳色入啓. [皮封大臣着唧, 裹袞盛函, 入啓, 而大臣親傳.] 配享功臣望單子, 啓下後, 招致禮郎, 出給. [賓廳請承傳色, 大臣親傳入啓, 踏啓字還下, 大臣坼見後, 承旨依例書大年號. 只啓字判付, 仍爲奉來于啓板上, 招致禮郎出給. 禮郎陪出時, 安于籠亭, 鼓吹前導.]

고 아울러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478)</sup> 1422년(세종 4) 1월 9일에 南在·李濟·南閔을 태조의 배향공신으로 追配할 때에도 세종은 4일 전인 1월 5일에 使者를 보내어 남재·이제·남은의 사당에 각각 致祭를 지내고, 장차 태조의 묘정에 배향할 것을 아뢰었으며, 아울러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479)</sup>

이후 태종의 배향공신은 종묘에 배향하는 전날에 배향공신의 祠堂에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고,<sup>480)</sup> 세종의 배향공신은 종묘에 배향하는 날보다 2개월 전에 배향공신의 사당에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481)</sup> 이와 같이 배향공신의 사당에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는 것은 항상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하기 전에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 시행되었다. 또한 일제시대에 고종의 배향공신에게 이전 조선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종묘에 배향하기 전에 배향공신의 사당에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다.<sup>482)</sup>

배향공신에게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宣讀하는 과정은 祔廟都監에서 담당하였다.<sup>483)</sup> 부모도감은 1410년(태종 10) 5월 3일에 태조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었고,<sup>484)</sup> 이후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할 때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454년(단종 2) 1월 25일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祔廟에 관한 업무를 예조에서 담당하면서 부모도감이 잠시 혁파되었고,<sup>485)</sup> 이후 연산군대에 이르러 부

478) 『世宗實錄』 3년(1421) 12월 17일(丙午): 上遣工曹正郎李粟, 賜祭于益安大君芳毅曰. 開國定社, 實稀世之元勳, 崇德報功, 乃有邦之令典. … 今恭靖大王之將祔宗廟也, 廣詢配享之臣, 僉曰卿哉, 允協予意. 是用俾卿從祀廟庭. 於戲. 念茲恩義, 雖沒世而難忘, 享我精禋, 庶終天而勿替.

479) 1410년(태종 10) 7월 26일에 太祖의 廟庭에 배향된 趙浚·李和·李之蘭·趙仁沃의 경우에는 배향공신교서를 발급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世宗實錄』 4년(1422) 1월 5일(癸亥): 上朝新宮. 遣使賜祭于宜寧府院君南在·興安君李濟·宜城君南閔等祠堂, 告以將配食太祖廟庭. … 賜在教曰. 創大業之主, 必賴問世之賢, 樹豐功之臣, 當享無窮之報. …

480) 『世宗實錄』 6년(1424) 7월 11일(甲申): 賜祭太宗配享功臣于其家祠堂. 祭晉山府院君文忠公河崙教書. 王若曰. 元首股肱, 既共成其大勳, 始終存沒, 宜配享於萬世. …

481) 『文宗實錄』 2년(1452) 2월 12일(丙子): 前此以黃喜·許稠·崔閔德·申概·李隨, 爲世宗配享, 至是皆賜祭祠堂, 諭以配享之意. 其賜喜教曰. 喪盡三年之哀, 方升祔於大廟, 臣能一心而輔, 盍追配於寧王. …

482) 고종의 배향공신 중에서 閔泳煥은 1921년 3월 26일, 朴珪壽·申應朝·李敦宇는 3월 28일에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내려주었으며, 3월 31일에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하였다.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장서각 K2-2218) 卷1 同日(三月十六日): 當職長官啓曰, 高宗太皇帝廟庭配享四臣, 書位版, 致祭吉日, 祔廟臨時推擇事, 啓下矣. 右議政朴珪壽右議政申應朝行左贊成李敦宇家, 書位版, 致祭吉日 令日官推擇, 則今三月二十八日爲吉云. 以此日定行事, 知委舉行何如. 敢啓. 答曰, 允. 當職長官啓曰, 高宗太皇帝廟庭配享四臣, 書位版, 致祭吉日, 祔廟臨時推擇事, 啓下矣. 參政大臣閔泳煥家, 書位版, 致祭吉日, 令日官推擇, 則今三月二十六日爲吉云. 以此日定行事, 知委舉行何如. 敢啓. 答曰, 允.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장서각 K2-2218) 卷2 配享臣教書: 教右議政文翼公朴珪壽書. … 教右議政文敬公申應朝書. … 教行左贊成文貞公李敦宇書. … 教參政忠正公閔泳煥書. …

483) 일제시대에 高宗의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하는 것은 祔廟主監에서 담당하였다.

484) 『太宗實錄』 10년(1410) 5월 3일(己巳): 置太祖祔廟都監, 以星山君李稷·禮曹判書徐愈爲提調.

485) 『端宗實錄』 2년(1454) 1월 25일(丁丑): 議政府啓曰, 前朝之季, 紀綱凌夷, 百司廢職. 凡有大事, 必置

묘도감이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sup>486)</sup> 조선 후기까지 선왕의 祔廟와 배향공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묘도감에서 배향공신에게 致祭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宣讀하는 과정은 조선 후기에 기록된 『祔廟都監儀軌』·『祔廟謄錄』·『國恤謄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87)</sup> 이 가운데 『(顯宗)祔廟都監都廳儀軌』와 『顯宗大王國恤謄錄』를 통해 현종의 배향공신에게 치제를 지내고 배향공신교서를 宣讀할 때 差出된 관원과 致祭하는 儀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丙辰(1676, 숙종 2) 8월 12일

세 신하의 집 사당에 관원을 보내어 位版을 쓰고 敎書를 宣讀하고 致祭를 지낼 때에 祭官 각 1원·讀敎官 각 1원·題主官 각 1원·展敎官 각 1원은 吏曹와 兵曹로 하여금 差出하게 하고, 관원을 나누어 보내어 設行하는데, 祭禮는 한결같이 賜祭할 때의 儀註에 따라 거행하며, 敎書는 祭官이 闕에 나가 香을 받을 때에 승정원이 교서를 전해주게 하고, 祭官이 가져가서 禮를 행하게 한다.<sup>488)</sup>

配享 位版에 致祭하는 儀註

典設司에서 使者의 次를 주인집의 대문 밖 서남향에 설치하고, 香 및 敎書를 임시로 두는 案은 使者의 次 안에 설치하며, 几筵을 正堂에 설치하고, 敎書案을 几筵의 왼쪽에, 題位版案을 几筵 앞에서 둔다. 그 날에 香 및 敎書가 도착하면, 司儀가 주인을 인도해 나와서 대문 밖에 길의 왼쪽에 서서 鞠躬하고 (香 및 敎書가) 지나가면 平身한다. 執事者가 香 및 敎書를 받들어 임시로 두는 案에 두고, 掌次者가 使者를 인도하여 次에 나아가며, 司儀가 주인을 인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다. 奉常寺 관원이 位版을 받들어 腰擧에 두고, (腰擧가) 주인집에 이르

都監·枝色, 乃能應辦. … 今祔廟諸事, 請令禮曹散告各掌官吏措辦, 罷祔廟都監. 從之.

486) 『燕山君日記』 2년(1496) 2월 6일(甲寅).

487) 배향공신에게 致祭를 지내고 配享功臣敎書를 선독하는 과정을 수록한 儀軌와 謄錄은 다음과 같다.

『(顯宗)祔廟都監都廳儀軌』 「配享位版致祭儀」 (장서각 K2-2227, 규장각奎13541)

『顯宗大王國恤謄錄』 卷3 「題配享位版致祭儀」 (장서각 K2-3035)

『(英祖)祔廟都監都廳儀軌』 「題配享位版致祭儀」 (장서각 K2-2239, 규장각奎13587)

『純宗大王國恤儀註謄錄』 卷1 「題配享功臣位版宣敎書致祭儀」 (장서각 K2-2974)

『憲宗大王國恤謄錄』 「題配享功臣位版宣敎書致祭儀」 (장서각 K2-3031)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 卷1 「題配享功臣位版宣敎書致祭儀」 (장서각 K2-2218)

『儀註謄錄續』 卷16 「配享功臣家題位版宣敎書致祭儀」 (장서각 K2-2136)

『儀註謄錄』 續12 「讓寧大君剛靖公孝寧大君靖孝公綾原大君貞孝公家題位版宣敎書致祭儀」·「麟坪大君忠敬公南延君忠正公忠敬公趙家題位版讀告書致祭儀」 (장서각 K2-2135)

488) 『(顯宗)祔廟都監都廳儀軌』 (장서각 K2-2227) 丙辰八月十二日: 一 三臣家祠堂遣官書位版宣敎書行祭時, 祭官各一員·讀敎官各一員·題主官各一員·展敎官各一員, 令吏·兵曹差出, 分遣設行爲白乎矣, 祭禮乙良, 一依賜祭時儀註舉行爲白乎旡, 敎書乙良置, 祭官詣闕受香時, 令政院傳敎書, 使之齋去行禮爲白齊.

顯宗의 配享功臣은 1676년(숙종 2) 7월 17일에 鄭太和·金佐明·趙綱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에 鄭太和는 1676년 9월에 배향공신에서 제외되었다가 1680년(숙종 6) 4월 9일에 다시 종묘에 배향되었다.

면, 位版을 받들어 서쪽 계단으로 올라 案에 둔다. 位版을 쓰는 관원이 堂에 올라 案 앞에 나아가면, 司儀가 주인을 인도하여 서쪽 계단을 거쳐 堂에 올라 북쪽을 향해 俯伏하고, 位版을 쓰는 관원이 (位版에) 쓰는 것을 마치면 내려가 나간다. 執事が 位版을 받들어 几筵에 두고, [神主는 오른쪽에 있고, 位版은 왼쪽에 있다.] 執事が 饌을 들고 几筵 앞에 설치한다. 主人이 나가서 使者를 맞이하여 (香 및 教書를) 들고, [香 및 教書를 받든 자가 먼저 간다.] (使者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几筵의 동남쪽에 서고, 香 및 教書를 받든 자가 (香 및 教書를) 案에 둔다. 司儀가 主人을 인도하여 계단 사이에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使者가 '임금의 명이 있다.'라고 말하면, 주인은 꿇어앉는다. 祝이 教書를 가지고 宣讀을 마치면, 教書를 案에 되돌려 둔다. 司儀가 俯伏·興·四拜를 창하면, 주인이 俯伏·興·四拜를 한다. 使者가 香案 앞에 나아가 서서 香을 올리고, 서서 祭酒를 올리고, [연달아 세 잔을 올린다.] 마친 후에 司儀가 使者를 인도하여 나와서 문 밖의 次에 돌아온다. 주인이 나와서 절하며 보내는 것은 평상시와 같다.<sup>489)</sup>

『(顯宗)耐廟都監都廳儀軌』를 살펴보면, 배향공신에게 致祭를 지낼 때에 이조와 병조에서 差出된 祭官·讀教官·題主官·展教官 각 1員이 참석하였다. 이 가운데 祭官은 闕에서 국왕이 내린 香을 받을 때 아울러 승정원을 통해 배향공신교서를 전달받았다. 배향공신의 致祭에 차출된 관원은 『육전조례』에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讀教官은 홍문관 관원, 展教官은 參上의 文官, 題主官은 參下의 승문원 관원이 각각 차출되었다.<sup>490)</sup>

배향공신의 位版에 致祭하는 儀註는 배향공신의 자손이 香과 배향공신교서를 맞이하는 과정, 題位版官이 배향공신의 位版을 쓰는 과정, 祝이 배향공신교서를 宣讀하는 과정, 使者가 香과 祭酒를 올리는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儀註에서 국왕이 내린 배향공신교서를 맞이하는 할 때에는 배향공신의 자손이 鞠躬해서 맞이하였고, 배향공신교서를 받든 관원이 앞장서서 나아갔으며, 배향공신의 자손은 꿇어앉고서 祝이 배향공신교서를 宣讀하였다. 이와 같이 배향공신교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수취자가 故人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대신 전달받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사명훈유교

489) 『(顯宗)耐廟都監都廳儀軌』(장서각 K2-2227) 「配享位版致祭儀」: 典設司設使者次於主人第大門外之西南向, 設香及教書權置案於使者次之內, 設几筵於正堂, 置教書案於几筵之左, 題位版案於几筵前. 其日香及教書將至, 司儀引主人出, 立於大門外道左, 鞠躬, 過則平身. 執事者捧香及教書, 置於權置案, 掌次者引使者就次, 司儀引主人以入. 奉常寺官捧位版, 置於腰舉, 至主人第, 捧位版, 陞自西階, 置於案. 題位版官陞堂詣案前, 司儀引主人由西階陞堂, 北向俯伏, 題位版官題訖, 降出. 執事捧位版, 置於几筵, [神主在右, 位版在左.] 執事以饌入, 設於几筵前. 主人出迎使者以入, [捧香及教書者先行.] 陞自東階, 立於几筵東南向, 捧香及教書者置於案. 司儀引主人立於階間北向, 使者稱有旨, 主人跪, 祝取教書, 宣讀訖, 以教書還置於案. 司儀唱俯伏·興·四拜, 主人俯伏·興·四拜. 使者詣香案前, 立上香, 立祭酒, [連奠三爵] 訖, 司儀引使者出, 復門外次. 主人出拜送如常.

490) 『六典條例』 「吏典」 吏曹 差定: ○配享臣家題位版宣教書時, 讀教官 [玉堂]·展教官 [參上文官]·題主官 [承文參下]·差備官 [二]·擧案者 [一 ○已上蔭官], 耐位時讀教文官 [玉堂]·教文書寫官 [兩司].

서의 전달 과정과 다른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배향공신교서를 전달할 때에는 의궤와 등록에 수록된 「題配享位版致祭儀」·「題配享功臣位版宣敎書致祭儀」 등의 儀註에 따라 致祭하는 과정에서 배향공신교서를 전달하였다.

#### 4) 配享功臣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조선시대에는 태조의 배향공신부터 고종의 배향공신까지 총 92명의 배향공신에게 배향공신교서가 발급되었다.<sup>491)</sup> 이 가운데 인조의 배향공신인 李元翼·申景禎과 효종의 배향공신인 金尙憲·宋時烈에게 발급된 배향공신교서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실물 문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의궤·등록·개인 문집 등에는 53명에게 내려진 배향공신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表 V-34> 配享功臣敎書의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출처
1	1651년(효종 2) 6월 30일	孝宗	李元翼	仁祖의 廟庭에 配享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의 종가의 이야기』, 2005, 64쪽
2	1651년(효종 2) 6월 30일	孝宗	申景禎	仁祖의 廟庭에 配享	개인 소장
3	1661년(현종 2) 6월 30일	顯宗	金尙憲	孝宗의 廟庭에 配享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57~58쪽
4	1778년(정조 2) 4월	正祖	宋時烈	孝宗의 廟庭에 配享	국립중앙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270~271쪽

실물 문서를 통해 종묘배향교서의 始面·본문·발급 일자 등의 문서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향공신교서의 시면에는 공통적으로 ‘配享臣’이라는 용어를 기재하여 교서의 성격과 수취 대상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원의 배향공신교서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配享臣’이란 용어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공신호·품계·최종 관직·시호·성명을 기재하였다. 송시열 배향공신교서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孝宗大王廟庭配享臣’이란 용어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송시열의 추증된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특히 송시열은 1778년(정조 2) 영조의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할 때에 효종의 배향공

491) 純宗의 배향공신과 관련하여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장서각 K2-2250)에는 배향공신교서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또한 純宗의 사후에 교서를 발급할 국왕이 없었기 때문에 純宗의 배향공신인 宋近洙과 徐正淳에게는 배향공신교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으로 追配되었기 때문에 배향공신교서의 시면에 ‘孝宗大王’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의 배향공신교서는 이원익·송시열 배향공신교서의 시면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교서의 시면과 같이 教’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그 대신에 ‘配享臣’으로 시작해서 김상헌의 관직·諡號·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다음 행에 ‘教書’로 시면을 끝맺고 있다.<sup>492)</sup>

이어서 배향공신교서의 본문에는 수취자를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원익 배향공신교서는 ‘이에 卿을 仁祖大王的 廟庭에 從享한다(茲以卿從享于仁祖大王廟庭)’라고 하였고, 김상헌과 송시열 배향공신교서는 ‘이에 卿을 孝宗大王的 廟庭에 配享한다(茲以卿配享孝宗大王廟庭)’라고 하였다. 신경진 배향공신교서는 ‘내가 지금 卿을 廟庭에 配享한다(予今配卿廟庭)’라고 하여 이원익·김상헌·송시열 배향공신교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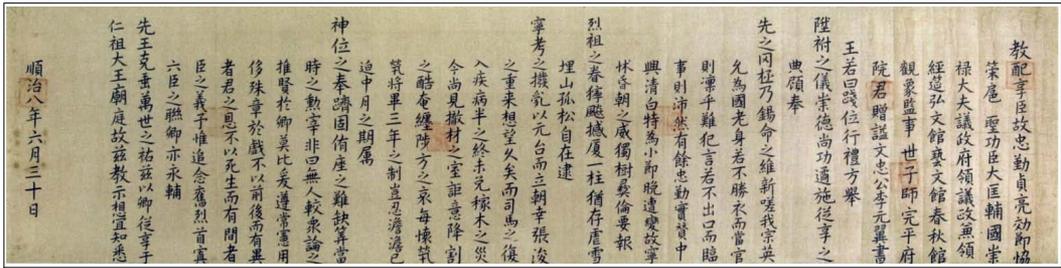
<表 V-35> 配享功臣教書의 始面과 본문

번호	발급 일자	수취	始面	본문
1	1651년(효종 2) 6월 30일	李元翼	敎配享臣故忠勤貞亮劬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完平府院君·贈諡文忠公李元翼書	茲以卿從享于仁祖大王廟庭
2	1651년(효종 2) 6월 30일	申景禎	결락	予今配卿廟庭
3	1661년(현종 2) 6월 30일	金尙憲	配享[臣□□□文正]公金尙憲敎書	茲以卿配享孝宗大王廟庭
4	1778년(정조 2) 4월	宋時烈	敎孝宗大王廟庭配享臣 贈領議政宋時烈書	茲以卿配享孝宗大王廟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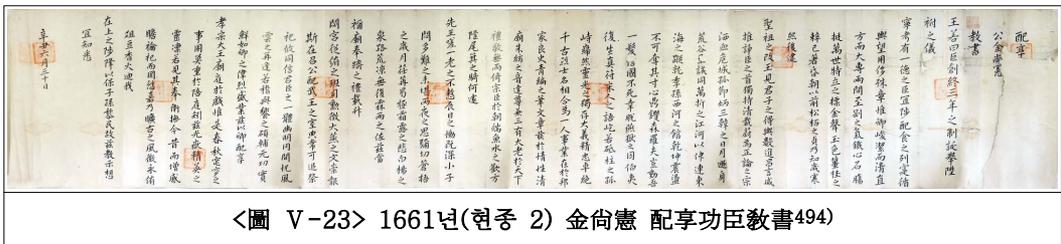
이원익·신경진 배향공신교서와 김상헌·송시열 배향공신교서는 전체적으로 擡頭 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원익 배향공신교서에서는 ‘陞祔’·‘先之罔極’·‘寧考’·‘神位’·‘先王’·‘仁祖大王廟庭’과 같이 先王인 仁祖와 관련된 용어와 ‘烈祖’와 같이 조상에 대한 용어는 모두 두 글자를 擡頭하였으나, 효종의 명령을 뜻하는 ‘敎’와 ‘王若曰’의 용어는 한 글자를 擡頭하였다. 이것은 배향공신교서에서 관련 용어의 擡頭를 통해 현재 국왕보다 선왕을 더욱 尊崇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김상헌 배향공신교서는 ‘寧考’·‘聖祖’·‘先王’·‘禰廟’ 등과 같이 선왕인 효종과 관련된 용어와 현종의 명령을 뜻하는 ‘王若曰’의 용어를 모두 한 글자만 擡頭하여 선왕이나 현재 국왕과 관련된 용어를 동일하게 擡頭하였다. 배향공신교서가 실물 문서로 4건만 남아 있어서 단정하기 어렵지

492) 배향공신교서의 始面은 실물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 현종 연간에 들어와서 배향공신교서의 擡頭 방식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圖 V-22> 1651년(효종 2) 李元翼 配享功臣敎書493



<圖 V-23> 1661년(현종 2) 金尙憲 配享功臣敎書494

### 5) 宗廟配享敎書의 시행과 특징

종묘배향교서는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附廟할 때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하였는데, 이 때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으로 국왕이 반포하는 교서이다. 이러한 종묘배향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다. 1410년(태종 10) 7월 26일에 태조의 위패를 종묘에 부묘하고 배향공신인 趙浚·義安大君 李和·李之蘭·趙仁沃을 종묘에 배향할 때에 七祀儀로 제사를 지내고 교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서 교서는 종묘배향교서로 추정된다.<sup>495)</sup>

종묘배향교서가 발급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선왕의 위패

493) 1651년(효종 2), 88.5×364.0cm, 충현박물관 所藏.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 중가의 이야기』, 2005, 64쪽.

494) 1661년(현종 2), 83.0×483.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7(92963).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57~58쪽.

495) 『太宗實錄』 10년(1410) 7월 26일(辛卯): 功臣, 義安大君襄昭公李和·平壤府院君文忠公趙浚·青海伯襄烈公李之蘭·漢山君忠靖公趙仁沃. 初上分遣內侍別監, 賜祭和等之祠堂, 使其子孫·宗族·門生, 各奉神主, 詣文昭殿近地以候, 至是入于配享堂. 祭儀依七祀儀, 有敎書.

를 종묘에 부모하는 기사에 종묘배향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1421년(세종 3) 12월 18일에 정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하고 배향공신인 益安大君 李芳毅를 종묘에 배향할 때에 세종은 益安大君 李芳毅가 宗社를 편안하게 한 功이 있어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으로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었다.<sup>496)</sup> 또한 1422년(세종 4) 1월 9일에 태조의 배향공신인 南在·李濟·南閔을 추가로 종묘에 배향할 때에도 세종은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었고,<sup>497)</sup> 1424년(세종 6) 7월 12일에 태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하고 배향공신인 河崙·趙英茂·鄭擢·李天祐·李來를 종묘에 배향할 때에도 세종은 배향공신 다섯 명의 성품과 공적을 수록한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었다.<sup>498)</sup> 이후 조선 후기까지 선왕의 위패를 종묘에 배향한 후에 국왕은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한다는 내용으로 종묘배향교서를 내려주었다. 특히 1680년(숙종 6) 4월 8일에 정태화를 현종의 묘정에 추배할 때와 1778년(정조 2) 5월 2일에 송시열을 효종의 묘정에 추배할 때에 종묘배향교서를 내렸으며, 1866년(고종 3) 2월 5일에 김종수를 정조의 묘정에 復享할 때에도 종묘배향교서를 내렸다. 또한 일제시대인 1921년 3월 31일에 고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하고 고종의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할 때에 순종은 종묘배향교서를 내렸다.<sup>499)</sup>

이러한 종묘배향교서를 宣讀하는 과정은 선왕을 종묘에 부모할 때의 儀註에 따라 시행되었다. 1424년(세종 6) 6월 14일에 태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할 때의 儀註를 예조에서 아뢰었는데, 祔廟儀註에는 종묘배향교서를 宣讀하고 이후 교서를 처리하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禮曹에서 太宗의 神主를 祔廟하는 儀註를 啓하기를, ... 처음에 七祀 獻官이 盥洗位에 나아가면, 贊引이 配享功臣의 獻官을 인도하여 盥洗位에 나아가 笏을 꿇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서 笏을 잡고 尊所로 나아가고 執尊者가 冕을 들고 술을 따르면, 執事者는 爵으로 술을 받는

496) 『世宗實錄』 3년(1421) 12월 18일(丁未): 以安襄公芳毅配享. 教曰, 蓋聖王之制, 祭法也五, 而一則曰以勞定國, 二則曰能捍大患. ... 肆我恭靖大王之將祔宗廟也, 訪誰可與配享者, 庭臣〔廷臣〕果僉以卿應命. 是用俾卿從享于肇祀, 尙其有知, 畀予時命. 於戲, 竭孝盡忠, 旣開國而定社, 敦宗將禮, 期篤弼而咸休.

497) 『世宗實錄』 4년(1422) 1월 9일(丁卯): 以南在·李濟·南閔配享太祖廟庭. 教曰, 應運開邦, 必賴興王之佐, 惇宗稱禮, 當躋配食之臣. 若稽舊章, 率循是道. 忝爾宜寧府院君南在·興安君李濟·宣城君南閔, 或王室之懿親, 或世家之昆季, 問世而生, 俱爲人傑. ... 嗚呼. 念茲膚功, 實爲無疆之永賴, 相我皇祖, 共享百歲以不遷.

498) 『世宗實錄』 6년(1424) 7월 12일(乙酉): 其配享五功臣教書. 王若曰, 英偉之才, 萃爲一代之碩輔, 勳勞之績, 當享萬世之明禋. 茲當躋祔之辰, 盍舉記功之典. 惟文忠公河崙氣鍾山岳, 學際天人. ... 惟忠武公英茂稟性忠直, 器宇宏深. ... 於戲. 有猷有爲, 奏膚功於一世, 以妥以侑, 當血食於千秋.

499)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장서각 K2-2218) 卷2 「教右議政文翼公朴珪壽·右議政文敬公申應朝·行左贊成文貞公李敦宇·參政忠正公閔泳煥書: 王若曰, 先王制不敢過也, 奄終祥於嚴廬, 世臣勞從與享之, 宜配侑於太室. ... 廸先后崇隆吉祥, 佑後人克享永世. 故茲教示, 想宜知悉. 製述官鄭萬朝製進.

『純宗實錄附錄』 1921년 3월 31일.

다. 獻官이 神位 앞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서서 笏을 쫓고 執事者가 爵을 주면, 獻官이 執爵·獻爵·奠爵하고, 차례로 奠爵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笏을 잡는다. 祝史가 敎書를 받들고 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읽고, 읽는 것을 마치면, 贊引이 獻官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 七祀 獻官이 서문 밖의 七祀 瘞坎 남쪽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면, 執事者가 祝版을 瘞坎에 넣는다. (祝版을) 묻는 것이 끝나면, 功臣 祝史가 敎書를 받들고 서문 밖에 나가서 불태우고 물러난다.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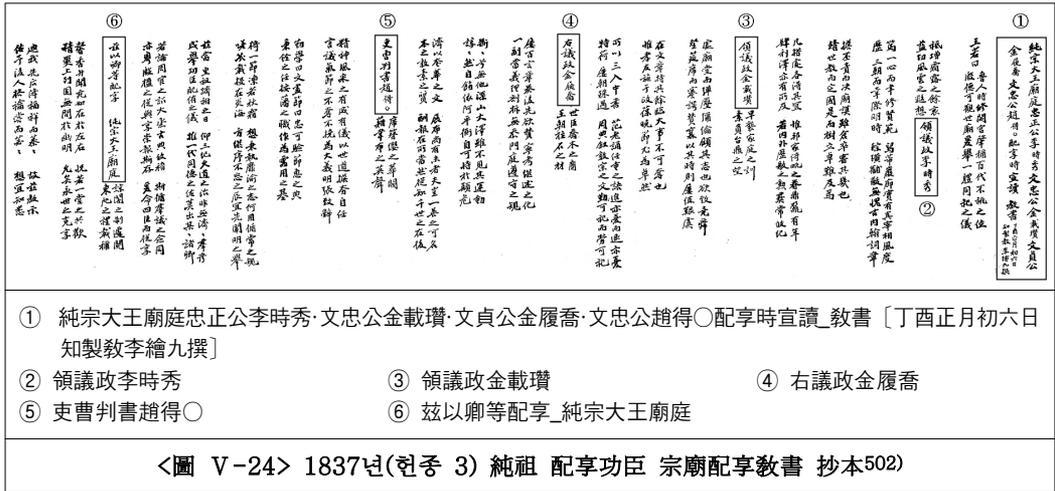
附廟儀註에서 종묘배향교서를 宣讀하는 과정은 配享功臣의 獻官이 盥洗位에서 손을 씻은 후에 執爵·獻爵·奠爵의 禮를 행하면, 祝史가 종묘배향교서를 받들고 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교서를 宣讀하였다. 종묘에서 부모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 배향공신의 祝史는 종묘배향교서를 받들고 서문 밖에 나가서 불태웠다. 또한 1454년(단종 2)에 문종의 위패를 종묘에 부모할 때의 儀註에서도 부모하는 의식이 끝난 후에 祝史가 종묘배향교서를 서문 밖에 정결한 곳에서 불태웠다.<sup>501)</sup> 이 때문에 종묘배향교서는 현재 실물 문서는 전하지 않으며, 대신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廟庭文廟配享敎書錄』에 교서의 원문 17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837년(헌종 3) 1월 6일에 순조의 배향공신인 李時秀·金載瓚·金履喬·趙得永을 종묘에 배향할 때 발급된 종묘배향교서의 抄本이 현전하고 있다. 종묘배향교서의 抄本을 살펴보면, 첫 행에는 선왕인 ‘純宗大王廟庭’과 배향공신의 諡號와 성명을 기재하고, ‘종묘에 배향할 때에 宣讀하는 교서’라는 의미로 ‘配享時宣讀\_敎書’를 기재하였다. ‘敎書’ 아래에는 종묘배향교서를 宣讀하는 날짜와 종묘배향교서의 제술관을 기재하였다. 본문은 먼저 ‘王若曰’로 시작하여 駢儷文의 對句가 되는 문장을 두 줄로 나란히 기재하였는데, 예를 들면 ‘王若曰’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 ‘魯人時修闕宮 肇稱百代不祧之位’와 ‘殷德可觀世廟 爰舉一體同祀之儀’를 王若曰 아래에 나란히 기재하였다. 이어서 배향공신인 영의정 李時秀부터 이조판서 趙得永까지 배향공신의 최종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배향공신의 성품과 공적을 차례대로 기재하였다.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에 경들을 純祖의 廟庭에 배향한다’는 의미로 ‘茲以卿等配享\_純宗大王廟庭’을 기재하였다. 이 종묘배향교서는 실물 문서가 아니라 종묘배향교서를 베껴놓은 抄本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종묘배향교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불

500) 『世宗實錄』 6년(1424) 6월 14일(丁巳): 禮曹啓太宗附廟儀註. … 初, 七祀獻官將詣盥洗位, 贊引引配享功臣獻官, 詣盥洗位, 搯笏盥手脫手訖, 執笏詣尊所,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 執事者授爵, 獻官執爵·獻爵·奠爵, 以次奠訖, 執笏. 祝史奉敎書, 進神位之右立讀訖, 贊引引獻官復位. … 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 執事者置祝版於瘞坎. 瘞訖, 功臣祝史奉敎書, 出西門外焚之退. …

501) 『端宗實錄』 2년(1454) 7월 16일(乙丑): … 其配享敎書, 祝史焚於西門外淨處. …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는 배향공신의 致祭와 종묘 배향이라는 의례적인 측면에서 국왕이 신하에게 발급한 교서이다. 배향공신교서는 국왕이 종묘에 배향된 배향공신에게 致祭를 지내기 위해 발급하였고, 종묘배향교서는 종묘에서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는 의식을 지내기 위해 발급하였다. 이러한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는 고려시대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특히 일제시대에 고종의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할 때에 순종은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를 발급하였다.

배향공신교서와 종묘배향교서를 宣讀하는 과정은 각종 儀軌와 謄錄에 수록된 儀註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宣讀하였다. 또한 배향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은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왕이 결정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圈點을 통한 배향공신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육전조례』를 통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배향공신 중에서 黜享되거나 復享되는 과정이나 고종 연간에 다수의 배향공신을 追配하는 과정은 당시의 집권 세력과 연관해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502) 1837년(헌종 3), 31.9×145.4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所藏, 教書 2(22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2, 10~11쪽.

### 3.4 文廟從祀敎書

문묘종사교서는 孔子와 四聖·孔門十哲·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에 儒賢의 위패를 從祀할 때 국왕이 해당 유현에게 내려주는 교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18명의 유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조선 후기에 문묘에 종사할 때 국왕은 문묘종사교서를 내려주었다. 본 절에서는 먼저 문묘종사의 역사를 살펴보고,<sup>503)</sup> 이어서 문묘종사의 과정이 변화하고 정착되는 양상을 문묘종사절목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묘종사교서의 전존 현황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서를 통해서 문묘종사교서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文廟從祀의 역사

문묘가 도입된 것은 717년(성덕왕 16)에 金守忠이 唐에서 文宣王(孔子)과 十哲 그리고 七十二弟子의 圖를 가지고 와서 太學에 안치한 것에서 기원하였다.<sup>504)</sup> 이후 고려시대에는 개국 초기에 文宣王의 사당을 國子監에 건립하였고,<sup>505)</sup> 983년(성종 2) 5월에는 博士 任老成이 宋에서 文宣王廟圖·祭器圖·七十二賢贊記 등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종묘와 마찬가지로 송의 제도를 바탕으로 문묘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sup>506)</sup> 고려시대에 문묘가 정비된 이후에는 유현을 문묘에 從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1020년(현종 11) 8월에 文昌侯 崔致遠을 문묘에 종사하였고,<sup>507)</sup> 2년 후인 1022년(현종 13) 1월에 弘儒侯 薛聰을 문묘에 종사하였다.<sup>508)</sup> 또한 1319년(충숙왕 6)에는 文成公安珣을 문묘에 종사하였다.<sup>509)</sup>

503) 문묘와 문묘종사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박찬수,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東洋學論叢編纂委員會, 1984.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조선사연구』 3, 조선사연구회, 1994.

Toyoshima Yuka, 「고려시대의 문묘」,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504) 『三國史記』新羅本紀 聖德王 16년(717): 秋九月, 入唐大監守忠廻, 獻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 卽置於太學. 10哲과 72賢이 나누어진 것은 唐 開元 8년(720)이고, 孔子가 文宣王에 追封된 것은 開元 27年(739) 이므로 『三國史記』에 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로 표현한 것은 고려시대 史家가 당시 관념에 의해 윤색한 기록일 가능성이 많다. (박찬수, 위의 논문, 1984, 135쪽)

505) 『高麗史』志28 選舉2 學校: (睿宗)十四年七月, 國學始立養賢庫以養士, 自國初肇立文宣王廟于國子監, 建官置師, 至宣宗將欲教育而未遑.

506) 『高麗史』世家3 成宗 2년(983) 5월 甲子: 博士任老成, 至自宋, 獻太廟堂圖一鋪·并記一卷, 社稷堂圖一鋪·并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

507) 『高麗史』世家4 顯宗 11년(1020) 8월 丁亥: 追贈新羅執事省侍郎崔致遠內史令, 從祀先聖廟庭.

508) 『高麗史』世家4 顯宗 13년(1022) 1월 甲午: 贈新羅翰林薛聰弘儒侯從祀先聖廟庭.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8월 8일에 태조가 藝文春秋館 大學士 閔霽에게 명하여 釋奠祭를 지내게 하였고,<sup>510)</sup> 한양으로 천도한 다음 해인 1395년(태조 4) 10월 25일에 문묘를 경영할 것을 명하였다.<sup>511)</sup> 또한 태조는 민제에게 명하여 문묘의 공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문묘는 1397년(태조 6) 3월에 공사하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 7월에 완공되었다.<sup>512)</sup> 그러나 문묘는 1400년(정종 2) 2월에 불에 탔고, 이후 태종의 명에 따라 1407년(태종 7) 1월에 새롭게 문묘를 건설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1일에 성균관에 완성되었다.<sup>513)</sup> 1407년(태종 7) 5월 6일에는 孔子와 四聖의 位牌를 문묘에 봉안하였고, 孔門十哲은 東西翼室에, 역대로 從祀한 여러 현인들은 東廡와 西廡에 봉안하였다.<sup>514)</sup>

조선시대에 유현의 문묘종사는 총 여덟 차례 시행되었고, 15명의 유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중종 연간에 문묘종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중종 연간에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된 趙光祖 등의 사림 세력이 至治運動을 전개하면서 사림 세력에 의한 문묘종사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sup>515)</sup> 이에 따라 1517년(중종 12) 9월 17일에 가장 먼저 文忠公 鄭夢周를 문묘에 종사하였다.<sup>516)</sup> 선조 연간에는 사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후 사림 세력과 유생을 중심으로 문묘종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1610년(광해군 2)에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의 五賢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어서 1681년(숙종 8)에 李珣·成渾, 1717년(숙종 43)에 金長生, 1756년(영조 32)에 宋時烈·宋浚吉, 1764년(영조 40)에 朴世采, 1796년(정조 20)에 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83년(고종 20)에 趙憲·金集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509) 『高麗史』 列傳18 安珣: 忠肅六年, 議以從祀文廟, 有謂珣雖建議置瞻學錢, 豈可以此從祀, 其門生辛戴力請, 竟從祀.

510) 『太祖實錄』 1년(1392) 8월 8일(丁巳): 命藝文春秋館大學士閔霽, 釋奠于文廟.

511) 『太祖實錄』 4년(1395) 10월 25일(乙卯): 命營文廟.

512) 『太祖實錄』 10년(1410) 9월 29일(癸巳): 樹碑于文廟. 碑文曰, 永樂七年歲在己丑秋九月, 我國王殿下, 命臣季良. 若曰, 惟我先考太祖, 受天明命, 肇造家邦, 定都漢陽, … 命驪興府院君臣閔霽治之, 鳩工飭材, 經始于丁丑之三月, 葺事於戊寅之七月. … 而火于庚辰二月. 其年十一月, 殿下卽位于松京, 詣學謁先聖, 命胄子就學. 歲乙酉還都, 親奠于先聖先師. 越三年丁亥正月, 命卽廟之舊基而新之.

513) 『太宗實錄』 7년(1407) 3월 21일(乙亥): 成均館文廟成.

514) 『太宗實錄』 7년(1407) 5월 6일(己未): 奉安文宣王及四配神位於文廟, 十哲則東西翼室, 歷代從祀諸賢, 列於東西廡.

515) 설석규, 앞의 논문, 1994, 145쪽.

516) 『中宗實錄』 12년(1517) 9월 17일(丁丑): 以文忠公鄭夢周, 從祀文昌侯崔致遠之下, 遣使祭之.

<表 V-36> 고려·조선시대 18賢의 文廟從祀 現況

번호	성명	諡號	文廟從祀 최초 논의	문묘종사 시기
1	崔致遠	文昌侯	未詳	1020년(현종 11) 8월 丁亥
2	薛聰	弘儒侯	未詳	1022년(현종 13) 1월 甲午
3	安珣	文成公	未詳	1319년(충숙왕 6)
4	鄭夢周	文忠公	1456년(세조 2) 3월 28일 梁誠之 上疏	1517년(중종 12) 9월 17일
5	金宏弼	文敬公	1517년(중종 12) 8월 7일 成均生員 權碩等 上疏	1610년(광해군 2) 9월 4일
6	鄭汝昌	文獻公	1570년(선조 3) 4월 23일 館學儒生等 上疏	1610년(광해군 2) 9월 4일
7	趙光祖	文正公	1570년(선조 3) 4월 23일 館學儒生等 上疏	1610년(광해군 2) 9월 4일
8	李彦迪	文元公	1570년(선조 3) 4월 23일 館學儒生等 上疏	1610년(광해군 2) 9월 4일
9	李滉	文純公	1573년(선조 6) 8월 28일 儒生等 上疏	1610년(광해군 2) 9월 4일
10	李珣	文成公	1623년(인조 1) 3월 27일 朝講	1682년(숙종 8) 5월 20일
11	成渾	文簡公	1625년(인조 3) 2월 22일 黃海道海州進士吳濊等四十人 上疏	1682년(숙종 8) 5월 20일
12	金長生	文元公	1681년(숙종 7) 12월 14일 宋時烈 上疏	1717년(숙종 43) 5월 18일
13	宋時烈	文正公	1717년(숙종 43) 11월 19일 全羅道儒生鄭敏河等 上書	1756년(영조 32) 2월 14일
14	宋浚吉	文正公	1682년(숙종 8) 5월 6일 公洪道生員李景華等 上疏	1756년(영조 32) 2월 14일
15	朴世采	文純公	1718년(숙종 44) 2월 26일 京畿黃海忠淸三道儒生尹壽俊等 上書	1764년(영조 40) 5월 28일
16	金麟厚	文正公	1786년(정조 10) 8월 29일 八道儒生朴盈源等 上疏	1796년(정조 20) 11월 8일
17	趙憲	文烈公	1758년(영조 34) 8월 8일 四學儒生宋煥翼等 上書	1883년(고종 20) 11월 20일
18	金集	文敬公	1758년(영조 34) 8월 8일 四學儒生宋煥翼等 上書	1883년(고종 20) 11월 20일

## 2) 文廟從祀 과정과 文廟從祀敎書 시행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18명의 유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에는 문묘종사와 관련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묘종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유현의 문묘종사 과정을 1682년(숙종 8) 李珣와 成渾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禮曹에서 만든 文廟從祀節目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문묘종사교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현을 문묘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문묘에 종사할 유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문묘종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왕에게 上疏를 올려 유현의 문묘종사를 요청하였는데, 成均館·四學·지방의 유생이나 조정의 관원이 상소를 올렸다. 유생이나 관원이 올린 상소의 요청에 따라 조정에서는 해당 유현의 문묘종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명령에 의해 문묘종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문묘종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조정에서 논의를 거쳤다. 예를 들어 金宏弼의 경우에는 문묘종사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약 90여년 후에 문묘에 종사되었고, 趙憲과 金集의 경우에는 약 120여 년 후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 밖에 다른 유현의 경우에도 문묘종사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약 10~70여년 후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문묘종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 시일이 오래 걸린 것은 문묘종사가 당시 집권 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사림 세력이 여러 朋黨으로 분화된 이후에는 집권 세력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봉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문묘종사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sup>517)</sup>

문묘종사가 결정된 이후에 유현의 位牌를 문묘에 종사하는 과정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차 체계화되었으며, 결국 文廟從祀節目을 통해서 일정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먼저 조선 전기에 문묘에 종사된 정몽주의 경우에는 崔致遠의 다음 자리에 位牌를 從祀한 것과 弘文館 副修撰 兼檢討官 奇遵이 製述한 致祭文과 使臣을 家廟에 보내어 致祭를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18)</sup>

이후 1610년(광해군 2) 9월 4일에 金瑍·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는 文廟의 大聖殿과 東廡·西廡에 告由祭를 지냈으며, 새롭게 제작된 五賢의 位牌에 奉安祭를 거행하고 兩廡에 나누어 從祀하였다. 광해군은 五賢의 家廟에 각각 별도의 致祭文과 禮官을 파견하여 致祭하였다.<sup>519)</sup> 또한 五賢을 문묘에 종사

517) 조선시대 문묘종사는 유교적 학통의 체계화와 계보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림세력이 분열한 뒤에는 봉당의 학문·정치적 명분 강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설석규, 앞의 논문, 1994, 195쪽)

518) 『中宗實錄』 12년(1517) 9월 17일(丁丑): 以文忠公鄭夢周, 從祀文昌侯崔致遠之下, 遣使祭之.

『圃隱集』 附錄 正德丁丑文廟西廡從祀祭文: 嗟惟東國, 聖學久絕, 倫紀不明, 治教攸劣. … 茲據古例, 參考典儀, 從祀文廟, 公宜安之. 神明孔昭, 有誠斯存, 自今欽享, 世世彌敦.

519) 『光海君日記』 2년(1610) 8월 24일(庚戌): 禮曹啓曰, … 雖有盡爲移安時, 別無並告之規, 蓋以所尊者, 在, 而不必並告於各位故也. 以此觀之, 則雖依例只爲告由於殿上, 似不至違禮. 但既無經據, 以意起義, 則雖或並告, 亦是並告于殿上及東西廡, 而初入從仕之位, 則奉安祭設行何如. 傳曰. 允.

『肅宗實錄』 7년(1681) 10월 4일(癸未): 禮曹啓曰, … 取考庚戌五賢從祀時政院日記, 則因其時大臣獻議, 並告于聖殿及東西廡, 新入從祀之位, 則造成位版, 分配兩廡. 既設奉安祭, 而別爲祭文, 遣禮官各致祭其家廟云.

한 다음 날인 9월 5일에 中外의 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 등에게 五賢을 문묘의 東廡·西廡에 종사했다는 내용으로 中外頒敎書를 반포하였다.<sup>520)</sup> 기존에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할 때에 증중은 致祭文만을 내려주었지만,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광해군은 각 家廟에 致祭文을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전국에 五賢의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의반교서도 반포하였다.

1682년(숙종 8) 5월에 李珥와 成渾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는 예조에서 文廟從祀節目을 숙종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은 후에 節目의 내용에 따라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宋朝의 四賢도 함께 문묘에 종사하고 10인의 位版을 黜廟하며 문묘의 位次를 바로 잡았는데,<sup>521)</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문묘종사절목에 수록되어 있다. 예조의 문묘종사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禮曹從祀節目

六賢의 位版은 奉常寺로 하여금 明倫堂에 造成하게 하고, 禮曹堂上과 成均館堂上이 함께 奉審한 후에 文廟에 從祀하기 전에 吉日을 택해서 位版에 題하고 그대로 임시로 安置한 후에 장차 文廟에 從祀한다는 뜻으로 宋朝 四賢에게 告由祭를 지낸다. **李珥의 神主는 海州에 있고, 成渾의 神主는 坡州에 있어서 각각 그 집의 祠堂에서 문묘에 陞配한다는 사유로 禮官을 파견 하여 敎書를 宣讀하게 하고 祭祀를 지내게 하는데,** 祭官 및 禮貌官 각 1員과 香陪忠贊衛에게 配享功臣의 집에서 致祭할 때의 예에 따라 말을 주어서 내려 보낸다. 讀敎官·展敎官·齋郎·祝史·學案執事 각 1員은 본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差定하게 하고, 祭物도 또한 本道로 하여금 한결같이 賜祭할 때의 예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敎書는 香을 받을 때에 承政院으로 하여금 本家에 전해주게 한다.** 禮를 거행할 때에 그 집의 자손은 대문 밖 길의 왼쪽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공손히 전송한다. 六賢을 陞配하는 내용은 10인을 黜廟하는 사유와 東廡·西廡의 位次를 바로잡는 사유를 모두 한 祝文에 撰入해서 5월 19일 새벽에 大成殿에 먼저 고하고, 20일 새벽에 성균관으로 하여금 黜廟될 位版을 받들고 나가서 大成殿 뒤의 정결한 곳에 묻게 한다. 陞配할 때에 執事官이 각각 六賢의 位版을 받들고 먼저 廟庭에 나아가서 幕次에 임시로 安置하고, 10인의 位版을 文廟에서 내어가고 位次를 바로잡은 후에 즉시 兩廡에 奉安하며, 올려서 陞配하는 禮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祝文에 갖추어 大成殿에서 제사를 지내고, 東廡와 西廡의 각 位版에도 아울러 設行한다. 무릇 祝文은 모두 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한다.<sup>522)</sup>

520) 『光海君日記』 2년(1610) 9월 5일(丁未):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以從祀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等于文廟, 下敎書曰. … 茲於本年九月初四日, 以贈議政府右議政文敬公金宏弼·贈議政府右議政文獻公鄭汝昌·贈議政府領議政文正公趙光祖·贈議政府領議政文元公李彥迪·贈議政府領議政文純公李滉等五賢臣, 從祀于文廟東西廡. 於戲, 聳動觀瞻, 作新氣象, … 故茲敎示, 想宜知悉. [大提學李廷龜製進.]

521) 李珥·成渾과 함께 文廟에 從祀된 宋朝의 四賢은 將樂伯楊時·文質公羅從彥·文靖公李侗·文肅公黃榦이다. 黜廟된 10인은 壽長侯公伯察·蘭陵伯荀況·岐陽伯雲達·扶風伯馬融·司空王肅·司徒杜豫·任城伯何休·偃師伯王弼·臨川伯吳澄이고, 文登侯申根과 溜川侯申黨은 중첩되어 申黨이 黜廟되었다.

522) 『肅宗實錄』 8년(1682) 5월 20일(丁卯): ○禮曹從祀節目. 六賢位版, 令奉常寺造成于明倫堂, 本曹堂上與成均館堂上, 眼同奉審後, 前期擇吉, 題位版, 仍爲權安後, 以將陞文廟之意, 設祭預告於宋朝四賢. **李珥神主在於海州地, 成渾神主在於坡州地, 各其家祠堂, 以文廟陞配之由, 遣禮官宣敎書·設祭,** 而祭官及禮貌官

예조의 文廟從祀節目은 이이·성혼과 宋朝 四賢의 位版을 만드는 과정, 이이와 성혼의 本家 祠堂에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 문묘의 東廡와 西廡에서 위판을 종사하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은 이이와 성혼의 祠堂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국왕이 내려 보낸 교서를 宣讀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광해군은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각각의 사당에 致祭文을 내려 보냈지만, 숙종은 이이와 성혼의 사당에 문묘종사교서를 내려주었다. 아울러 문묘에 종사한 다음날인 5월 21일에 숙종은 전국에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외반교서도 반포하였다.

1717년(숙종 43) 5월 20일에 문묘에 종사된 金長生의 경우에도 이틀 전인 5월 18일에 숙종은 김장생의 본가에 문묘종사교서를 내리고 禮官을 파견하여 致祭를 지내게 하였고, 문묘에 종사한 다음 날인 5월 21일에 숙종은 전국에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sup>523)</sup> 이후 문묘에 종사된 宋時烈·宋浚吉·朴世采의 경우에도 국왕은 해당 유현의 본가에 문묘종사교서를 내렸으며, 문묘에 종사한 다음 날에는 전국에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1796년(정조 20) 11월 8일에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할 때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문묘종사교서가 2번 발급되었다. 1796년(정조 20) 9월 17일에 정조는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라는 윤허를 내렸고, 같은 해 10월 26일에 문묘종사교서와 함께 좌부승지를 김인후의 집에 보내서 致祭하였다.<sup>524)</sup> 당시 정조는 문묘에 종사된 유현에게 致祭할 때에 문묘종사교서를 本家에 전달하고 실제로 문묘에 종사할 때에는 문묘종사교서를 宣讀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문묘에 위패를 종사할 때에 문묘종사교서를 선독한 후에 교서를 그 자손이 본가에 가지고 갈 것을 명하였다.<sup>525)</sup> 이

---

各一員, 香陪忠贊衛, 依配享功臣家致祭時例, 給馬下送. 讀教官·展教官·齋郎·祝史·舉案執事各一員, 令本道守令差定, 祭物亦令本道, 一依賜祭時例舉行. **敎書則受香時, 令政院傳給本家.** 行禮時, 其家子孫, 大門外道左, 祇迎祇送. 六賢陞配, 十人黜廟及東西廡位次釐正事由, 並撰入一祝文中, 五月十九日曉, 先告大成殿, 二十日曉, 令成均館奉出當黜位版, 埋安於殿後淨潔處. 陞配臨時, 執事官各捧六賢位版, 先詣廟庭, 權安幕次, 十位出廟位次釐正後, 卽爲奉安於兩廡, 以陞配禮成之意, 具祝設祭於大成殿, 而東西廡各位, 並爲設行. 凡祝文, 並令藝文館撰出.

523) 『承政院日記』 숙종 43년(1727) 3월 1일(丙辰): 禮曹啓曰, 命下矣. 文元公金長生從祀文廟之請, 實出士林公共之論, 數十年來, 京外章甫相繼陳章, 愈往愈切, 今幸斷自宸衷, 快降俞音, 斯文盛舉, 莫大於此, 凡在瞻聆, 孰不欽仰? 取考前例, 則壬戌年宋朝四賢我朝兩賢陞配時, 以東西廡恐有狹窄之患, 本曹堂上, 與成均館堂上, 有同詣奉審之舉, 而今則以壬戌年十位黜享, 甲午年宋朝六賢陞配殿內之故, 兩廡皆有餘地. 別無更審之事, 從祀吉日, 問於日官, 則五月二十日爲吉云. 前一日告由於大成殿, 自前陞配之時, 例有遣禮官賜祭及敎書於本家祠堂之規, 又於從祀翌日, 頒敎八方, 今亦依此施行, 他餘節目, 回鑿後磨鍊舉行, 何如? 傳曰, 允.

524) 『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10월 26일(戊戌): 李鼎揆啓曰, 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家, 遣承旨致祭事, 命下矣. 何承旨進去乎? 敢稟. 傳曰, 左副承旨進去.

525) 『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11월 6일(丁未): 傳曰, 位序似然, 而六版之換妥, 事係重慎, 只請知委本館舉行, 未知爲當. … 而今聞卿曹考奏之說, 敎書徑傳於本家, 從享時無宣敎之節云. 此必以罕有之禮, 文獻莫徵而然. 今若略倣太廟配享例, 其日先告事由於聖殿, 而仍於廟庭宣讀後, 陞附當廡, 禮畢, 以其敎書,

에 따라 致祭할 때에 내려 준 문묘종사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11월 7일에 문묘종사교서를 발급하였고, 11월 8일에 김인후의 위패를 문묘에 종사할 때에는 문묘종사교서를 선독한 후에 김인후의 자손들이 문묘종사교서를 가지고 갔다. 또한 문묘에 종사한 다음날인 11월 9일에 정조는 전국에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외반교서도 반포하였다.<sup>526)</sup>

지금까지 유현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국왕이 내려주는 문서를 중심으로 문묘종사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왕이 내려주는 문서는 치제문에서 문묘종사교서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1682년(숙종 8)에 文廟從祀節目이 시행된 이후에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610년(광해군 2)에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부터는 문묘에 종사한 다음 날에 전국에 유현의 문묘종사를 선포하는 중외반교서를 반포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 3) 文廟從祀 致祭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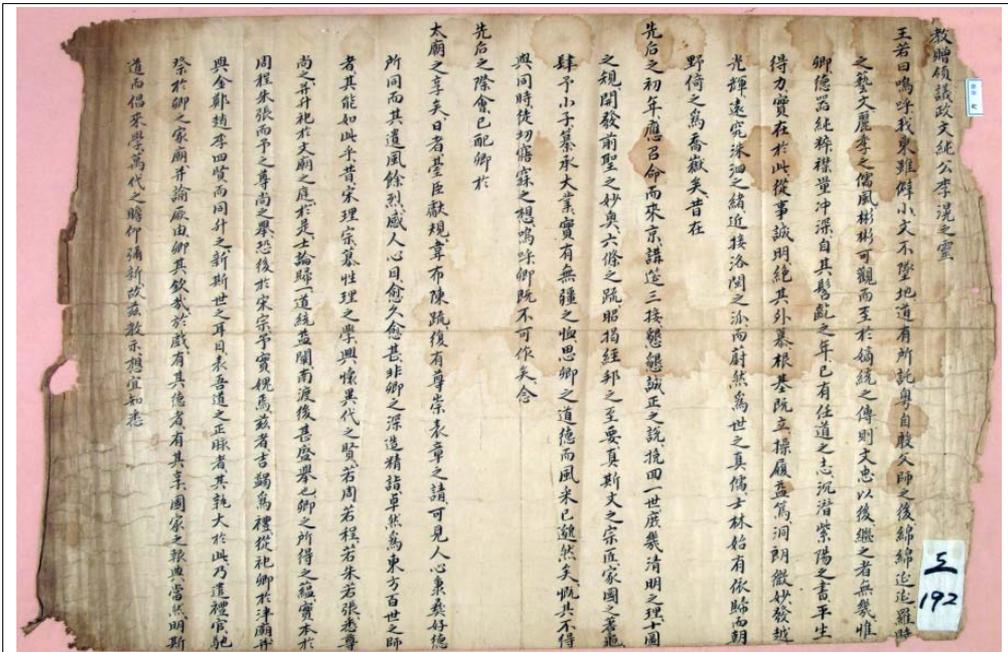
조선시대에 국왕은 문묘에 종사된 유현의 家廟에 처음에는 致祭文을 내려주었다가 1682년(숙종 8)에 文廟從祀節目이 시행된 이후에는 문묘종사교서를 내려주었다. 이러한 치제문과 문묘종사교서는 문서식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문묘종사 치제문을 살펴보고 이어서 문묘종사교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表 V-37> 文廟從祀 致祭文

번호	발급 연도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517년(중종 12)	中宗	鄭夢周	奇遵	『圃隱集』附錄 文廟西廡從祀祭文 『德陽遺稿』補遺 文廟西廡圃隱鄭先生夢周從祀祭文
2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金宏弼	未詳	未詳
3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鄭汝昌	柳夢寅	『一蠹先生遺集』卷3 教書, 『於于集』後集 卷4 應製文
4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趙光祖	李志完	『靜菴先生文集』附錄 卷4 從享賜祭文
5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李彦迪	權泰一	『晦齋先生集』晦齋先生年譜 『藏谷先生文集』晦齋先生從祀文廟時家廟致祭教書
6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李滉	未詳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現 한국국학진흥원 所藏) 『退溪先生文集』年譜附錄 卷4 文廟從祀時家廟致祭教文

齋傳于本家, 庶合儀文. 此一款, 一體問議, 更具禮官意見草記, 可也.

526)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 2건과 중외에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선포한 교서 1건이 소장되어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8~183쪽)



- (01) **教贈領議政文純公李滉之靈**  
 (02) **王若曰** 嗚呼我東雖僻小 文不墜地 道有所托 粵自殷父師之後 綿綿延延 羅時  
 (03) 之藝文 麗季之儒風 彬彬可觀 而至於嫡統之傳 則文忠以後 繼之者無幾 **惟**  
 (04) **卿** 德器純粹 襟量沖深 自其髫髻之年 已有任道之志 沈潛紫陽之書 平生  
 (05) 得力 實在於此 從事誠明 絕其外慕 根基既立 操履益篤 洞朗微妙 發越  
 (06) 光輝 遠究洙泗之緒 近接洛閩之派 而蔚然為世之真儒 士林始有依歸 而朝  
 (07) 野倚之為喬嶽矣 昔在  
 (08) 先后之初年 應召命而來京 講筵三接 懇懇誠正之說 挽回一世 庶幾清明之理 十圖  
 (09) 之規 開發前聖之妙奧 六條之疏 昭揭經邦之至要 真斯文之宗匠 家國之蕃龜  
 (10) 肆予小子 纂承大業 實有無疆之恤 思卿之道德 而風采已邈然矣 慨其不得  
 (11) 與同時 徒切寤寐之想 嗚呼 卿既不可作矣 念  
 (12) 先后之際會 已配卿於  
 (13) 太廟之享矣 日者 臺臣獻規 韋布陳疏 復有尊崇表章之請 可見人心秉彝好德  
 (14) 所同 而其遺風餘烈 感人心目 愈久愈甚 非卿之深造精詣 卓然為東方百世之師  
 (15) 者 其能如此乎 昔 宋理宗慕性理之學 興懷異代之賢 若周若程 若朱若張 悉尊  
 (16) 尚之 **并升祀於文廟之庭** 於是 士論歸一 道統益闡 南渡後甚盛舉也 卿之所得之蘊 實本於  
 (17) 周程朱張 而予之尊尚之舉 恐後於宋宗 予實愧焉 茲者 吉錫為禮 從祀卿於泮廟 并  
 (15) 與金鄭趙李四賢而同升之 新斯世之耳目 表吾道之正脈者 其孰大於此 乃遣禮官 馳  
 (16) 祭於卿之家廟 并諭厥由 卿其欽哉 **於戲** 有其德者有其享 國家之報典當然 明斯  
 (17) 道而倡來學 萬代之瞻仰彌新 **故茲教示 想宜知悉**

<圖 V-25> 1610년(광해군 2) 李滉 文廟從祀 致祭文<sup>527)</sup>

문묘중사 치제문은 정몽주·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에게 내린 치제문이 유현의 문

527) 1610년(광해군 2), 56.8×83.8cm,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

집이나 치제문을 제출한 관원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610년(광해군 2)에 이황에게 내린 치제문은 실물 문서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먼저 1517년(중종 12)에 증중이 정몽주에게 내린 치제문을 살펴보면, 첫 행을 ‘嗟惟東國 聖學久絶’로 시작해서 ‘自今欽享 世世彌敦’으로 끝맺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 句가 네 글자로 이루어진 四言詩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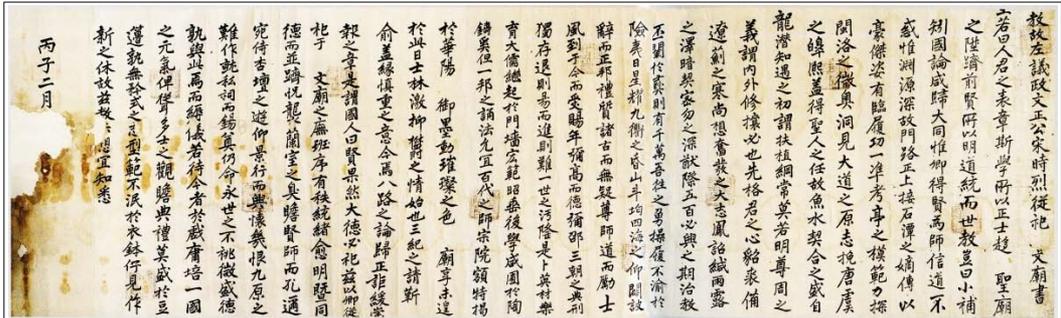
이후 1610년(광해군 2)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에 광해군이 내린 치제문은 정몽주의 치제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 문서가 현전하는 이황의 치제문을 살펴보면 첫 행을 ‘敎贈領議政文純公李滉之靈’으로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교서의 始面이 ‘敎’자로 시작하고 이어서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한 것과 동일하였다. 또한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하고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본문의 중간에 ‘惟卿’과 ‘於戲’의 용어가 있고 문장의 형식이 駢儷文으로 구성된 것도 교서의 문서식과 유사하였다. 아울러 이황의 치제문뿐만 아니라 정여창·조광조·이언적에게 내린 치제문도 ‘王若曰’·‘惟卿’·‘於戲’·‘故茲敎示 想宜知悉’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장도 駢儷文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황의 치제문에는 문서를 발급한 연호·날짜와 「施命之寶」과 같은 어보가 없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당시에 별도의 祭文을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문묘종사교서가 아닌 치제문으로 볼 수 있다.<sup>528)</sup> 결국 문묘종사 치제문은 문묘종사교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 문서로 볼 수 있다.

#### 4) 文廟從祀敎書의 傳存과 문서식

문묘종사교서는 1682년(숙종 8) 文廟從祀節目이 시행된 이후에 이이와 성혼에게 처음으로 발급되었고, 이후 1883년(고종 20) 조헌과 김집까지 총 9명에게 문묘종사교서가 발급되었다. 이 가운데 김장생·송시열·김인후·조헌에게 발급된 총 5건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김인후의 문묘종사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1796년(정조 20) 10월 26일과 11월 7일에 발급된 2건의 교서가 현전하고 있다. 또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경우에는 문묘종사교서를 발급하기 전에 승정원의 승지가 국왕의 결재를 받은 製進單子가 현전하고 있다. 실물 문서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개인 문집에는 9명에게 내려진 문묘종사교서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528) 致祭敎書 또는 致祭敎文 등으로 문집에 기재된 것은 『藏谷集』과 『退溪集』이 19세기 이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致祭文을 文廟從祀敎書로 잘못 알고 문집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 |                             |                             |
|-----------------------------|-----------------------------|
| (01) 教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 文廟書      | (17) 獨存 退則易而進則難 一世之污隆是卜 英才樂 |
| (02) 王若曰 人君之表章斯學 所以正士趨 聖廟   | (18) 育 大儒繼起於門墻 宏範昭垂 後學咸囿於陶  |
| (03) 之陞躋前賢 所以明道統 而世教豈曰小補    | (19) 鑄 奚但一邦之誦法 允宜百代之師宗 院額特揭 |
| (04) 矧國論咸歸大同 惟卿得賢為師 信道不     | (20) 於華陽 御墨動璀璨之色 廟享未違       |
| (05) 惑 惟淵源深 故門路正 上接石潭之嫡傳 以  | (21) 於此日 士林激抑鬱之情 始也三紀之請斬    |
| (06) 豪傑姿有臨履功 一準考亭之模範 力探     | (22) 俞 蓋緣慎重之意 今焉八路之論歸正 詎緩崇  |
| (07) 閩洛之微奧 洞見大道之原 志挽唐虞      | (23) 報之章 是謂國人曰賢 果然大德必祀 茲以卿從 |
| (08) 之皞皞 蓋得聖人之任 故魚水契合之盛 自   | (24) 祀于 文廟之廡 班序有秩 統緒愈明 暨同   |
| (09) 龍潛知遇之初 謂扶植綱常 莫若明尊周之    | (25) 德而並躋 悅襲蘭室之臭 瞻賢師而孔邁     |
| (10) 義 謂內外修攘 必也先格君之心 貂裘備    | (26) 宛侍杏壇之遊 仰景行而興懷 幾恨九原之    |
| (11) 遼薊之寒 尚想奮發之大志 鳳詔緘雨露     | (27) 難作 就私祠而錫奠 仍命永世之不祧 微盛德  |
| (12) 之澤 暗契密勿之深猷 際五百必興之期 治教  | (28) 孰與此焉 而緝儀若待今者 於戲 庸培一國   |
| (13) 丕關於彝則 有千萬吾往之勇 操履不渝於    | (29) 之元氣 俾登多士之觀瞻 典範莫盛於豆     |
| (14) 險夷 日星耀九衢之昏 山斗均四海之仰 闢誠  | (30) 邊 孰無矜式之志 型範不混於衣鉢 佇見作   |
| (15) 辭而正邦禮 質諸古而無疑 尊師道而勵士    | (31) 新之休 故茲教示 想宜知悉          |
| (16) 風 到于今而受賜 年彌高而德彌邵 三朝之典刑 | (32) 丙子二月 圖... 圖            |

<圖 V-26>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敎書(529)

<表 V-38> 文廟從祀敎書의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717년(숙종 43) 5월 18일	肅宗	金長生	大提學 宋相琦	국가기록유산, 충남 유형문화재 제128호
2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時烈	藝文館提學 南有容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266~267쪽
3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正祖	金麟厚	藝文館提學 具庠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8~179쪽
4	1796년(정조 20) 11월 7일	正祖	金麟厚	藝文館提學 具庠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0~181쪽
5	1883년(고종 20) 11월 20일	高宗	趙憲	藝文館提學 韓章錫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7-4호

529) 1756년(영조 32), 117.0×374.0cm, 恩津宋氏 宋時烈 宗家 所藏, 국립청주박물관 寄託.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266~267쪽

<表 V-39> 文廟從祀敎書 製進單子の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756년(영조 32) 2월 6일	英祖	宋時烈	藝文館提學 南有容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60~61쪽
2	1756년(영조 32) 2월 6일	英祖	宋浚吉	藝文館提學 南有容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 王室文書-, 1986, 62~63쪽

실물 문서와 사료를 통해 문묘종사교서의 始面·본문·발급 일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묘종사교서의 시면을 살펴보면, 김장생 문묘종사교서는 ‘敎贈領議政文元公金長生從祀\_文廟書’로 기재하였고, 송시열 문묘종사교서는 ‘敎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로 기재하였다. 문묘종사교서의 시면에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추증된 관직 또는 최종 관직과 諡號·성명을 기재하고, 성명의 아래에 문묘에 종사한다는 의미인 ‘從祀\_文廟’를 공통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실물 문서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始面을 추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이 문묘종사교서는 ‘敎贈領議政文成公李珥從祀\_文廟書’로, 박세채 문묘종사교서는 ‘敎故左議政文純公從祀\_文廟書’로 추정할 수 있다.

문묘종사교서의 본문은 ‘王若曰’ 다음에 眞儒에 대한 내용이나 임금이 正學 또는 斯學을 表章하는 이유를 밝히고, 文廟에 先賢을 從祀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惟卿’ 다음에는 문묘종사교서 수취자의 학문·성품·행실 등을 여러 故事나 중국의 賢人들을 인용하여 표현하였다. 본문의 중간 이후에는 수취자를 문묘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문묘종사교서에는 ‘이에 경을 문묘의 廡에 종사한다(茲以卿從祀于文廟之廡)’라고 하였으며, 성혼과 조헌의 문묘종사교서에는 ‘이에 경을 문선왕의 廟廡에 종사한다(茲以卿從祀于文宣王廟廡)’라고 하였다.

<表 V-40> 文廟從祀敎書の 始面과 본문

번호	발급 연도	수취	始面	본문		
				‘王若曰’ 이후	수취자	文廟從祀
1	1682년 (숙종 8)	李珥	[敎贈領議政文成公李珥從祀_文廟書]	王若曰 眞儒爲一世所宗 固宜表章於國故 公論待百年乃定 詎緩從享於廟廡	惟卿生稟星嶽道貫天人	茲以卿從祀于文廟之廡
2	1682년 (숙종 8)	成渾	[敎贈左議政文簡公成渾從祀_文廟書]	[王若曰] 眞儒繼五賢而興 寔贊休明之化 公議待百年而定 聿舉崇報之儀	惟卿天分既高門路最正	茲以卿從祀于文宣王廟廡
3	1717년 (숙종 43)	金長生	敎贈領議政文元公金長生從祀_文廟書	王若曰 人君之表章正學 所以定土趨聖廟之陞躋先賢 所以明道統	惟卿早歲志學大賢爲師	茲以卿從祀于文廟之廡
4	1756년 (영조 32)	宋時烈	敎故左議政文正公宋時烈從祀_文廟書	王若曰 人君之表章斯學 所以正土趨聖廟之陞躋前賢 所以明道統	惟卿得賢爲師信道不惑	茲以卿從祀於文廟之廡

번호	발급 연도	수취	始面	본문		
				‘王若曰’ 이후	수취자	文廟從祀
5	1756년 (영조 32)	宋浚吉	敎贈領議政文正公 宋浚吉從祀_文廟書	王若曰 惟天篤生眞儒 式贊休明之敎 大德必得常祀 聿舉崇報之章 茲循僉同 之論 庸示尊尙之意	惟卿早歲志道 大賢爲師	茲以卿從祀于 文廟之廡
6	1764년 (영조 40)	朴世采	[敎故左議政文純公 從祀_文廟書]	王若曰 儒林負一代之名 載垂宏範 聖 廡膺萬世之享 爰舉盛儀	惟卿姿稟甚醇 工夫最篤	茲以卿從祀于 文廟之廡
7	1796년 (정조 20)	金麟厚	敎贈領議政文正公 金麟厚從祀_文廟書	王若曰 眞儒後千載生 政合崇報之典 公議待百年定 爰舉躋享之儀	惟卿海東濂溪 湖南洙泗	茲以卿從祀于 文廟之廡
8	1883년 (고종 20)	趙憲	敎_贈領議政文烈公 趙憲從祀_文廟書	王若曰 國家之表章正學 所以明人倫 聖廟之躋享先賢 所以扶世教	惟卿上天降任 大賢爲師	茲以卿從祀于 文宣王廟廡
9	1883년 (고종 20)	金集	[敎贈領議政文敬公 金集從祀_文廟書]	[王若曰] 眞儒爲一代之宗 振文教於菁 泚 公論待百年而定 貴祀典於芹宮	惟卿熙朝醇儒 大賢肖子	茲以卿從祀于 文廟之廡

이상으로 살펴본 문묘종사교서는 국왕이 문묘에 從祀된 유현에게 致祭를 지내기 위해 발급한 교서이다. 문묘종사교서는 조선 후기에 문묘종사 제도가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문묘종사절목이 완성되었고, 이 문묘종사절목을 바탕으로 유현의 문묘종사 제도가 체계화 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에 국왕이 내렸던 文廟從祀 致祭文 대신에 문묘종사교서가 시행되었다. 문묘종사교서의 시행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시대에 문묘종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中外 頒布 관련 교서

### 4.1. 中外頒敎書

중외반교서는 국왕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거행할 경우에 그 내용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발급하는 교서이다. 국왕은 중외반교서를 전국에 반포할 때에 교서의 수취자를 中外의 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으로 설정하고 교서를 발급하였다. 조선시대에 중외반교서를 발급한 횟수는 매우 많지만 현전하는 중외반교서는 2건 뿐이며, 중외반교서를 베껴 놓은 초본이 일부 현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외반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중외반교서에 대하여 본절에서는 중외반교서를 발급하는 사유를 살펴보고, 현전하는 중외반교서에 대해 특징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외반교서의 발급 사유

조선시대 국왕은 새롭게 卽位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儀禮와 祭享을 거행하거나 왕실에 慶事가 있을 때 중외반교서를 전국에 반포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태조는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여 조선의 개국과 태조의 즉위 사실을 전국에 알렸으며,<sup>530)</sup> 이후 새로운 국왕이 즉위할 때에는 전국에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즉위뿐만 아니라 先王이 왕세자 등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禪位하는 내용의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1400년(정종 2) 11월에 정종이 태종에게 선위할 때와 1455년(세조 1) 윤6월에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할 때에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sup>531)</sup> 또한 1623년(인조 1) 3월에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의 즉위에 대한 내용으로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sup>532)</sup> 왕조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매우 중요

530) 『太祖實錄』 1년(1392) 7월 28일(丁未):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有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531) 『定宗實錄』 2년(1400) 11월 11일(辛未): 上禪位于王世子. … 其敎書曰, 恭惟祖宗, 仁厚積德, 以集景命. … 咨爾宗親耆老大小臣僚, 咸體予懷, 永保惟新之治.

『世祖實錄』 1년(1455) 윤6월 11일(乙卯): 其禪位敎曰, 予小子遭家不造, 幼沖嗣服, 深居宮掖之中, 內外庶務, 蒙未有知, 致兇徒煽亂, 國家多故. 叔父首陽大君, [世祖諱] … 嗚呼, 宗親·文武百官·大小臣僚, 其匡輔我叔父, 以對揚祖宗之休命.

532) 『仁祖實錄』 1년(1623) 3월 14일(甲辰): 王大妃下敎書, 宣諭中外. 若曰, 天生蒸民, 樹之后辟, 蓋欲敘彝倫·立經紀, 上奉宗廟, 下安黎庶也. 宣祖大王不幸無嫡嗣, 因一時之權, 越長幼之序, 以光海爲儲貳. … 功

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외반교서를 통해 새로운 국왕이 즉위한 사실을 전국에 알렸다.

즉위나 선위 이외에 국가의 중요한 의례와 제향을 거행할 때에 국왕은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중외반교서를 반포하는 의례로는 국왕의 혼례와 왕세자의 관례·혼례를 거행하거나 국왕이 왕비·왕세자·왕세손 등을 책봉하는 경우이다.<sup>533)</sup> 국가의 제향과 관련해서는 선왕과 왕대비의 위패를 종묘에 祔廟하거나 復位된 국왕이나 왕비를 종묘에 부묘할 때에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국왕이 중외반교서를 반포하는 국가의 慶事로는 국왕이 즉위한지 30주년이나 40주년 등을 맞이할 때와 대왕대비·왕대비의 회갑·칠순 등을 거행할 때이며, 선왕·왕대비·대왕대비 등의 왕실 구성원의 존호를 올릴 때와 국왕·왕세자·왕비·왕대비 등의 병환이 치료된 경우에도 교서를 반포하였다. 이 밖에 공이 있는 관원을 공신으로 錄勳하는 경우, 削勳된 공신을 復勳하는 경우,<sup>534)</sup> 僞勳을 削勳하는 경우,<sup>535)</sup> 儒賢을 문묘에 종사하는 경우, 역적을 처벌하거나 토벌하는 경우에도 국왕은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국왕이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여 국가의 卽位·儀禮·祭享·慶事 등의 내용을 전달할 때에 일부 교서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내용과 관원들을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중외반교서는 사안마다 수록된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기재되는 용어도 일부 차이가 있다. 여러 건의 중외반교서에서 赦宥와 褒賞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自某月某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殺殺人, 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贓污·強竊盜外,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有除之. 敢以有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 故茲教示, 想宜知悉.

某年某月日

德甚懋, 神人所歸, 可卽大位, 以繼宣祖之後. 冊夫人韓氏爲王妃, 故茲教示, 想宜知悉.

533) 『仁祖實錄』 5년(1627) 12월 27일(庚申):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胄子繫一國之心, 教已有具, 大昏爲萬世之嗣, 敬以成親. … 遂以去月初四日丁酉, 冊兵曹參知姜碩期第二女, 爲世子嬪, 以二十七日庚申, 醮戒世子, 親迎訖. 六禮既備, 萬福攸原. 斯爲宗社洪休, 願與臣民同慶. 於戲. 刑家御國, 何敢怠我治躬. 斂福敷民, 庶幾錫予保極. 故茲教示, 想宜知悉.

『承政院日記』 현종 11년(1670) 3월 7일(甲子): 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永圖允屬於元良, 蚤正儲嗣, 嘉事莫重於冠禮, 將責成人, 奚但玄弁之共權. … 故茲教示, 想宜知悉.

534) 『肅宗實錄』 20년(1694) 10월 12일(丙午): 上御仁政殿, 頒追復保社功臣教書軸, 仍頒教于中外. 其文曰, 王若曰, 巧言能眩是非, 終有一定之天理. … 故茲教示, 想宜知悉.

535) 『英祖實錄』 1년(1725) 8월 11일(丙子): 以削去僞勳, 告廟頒教. 其文曰, 王若曰, 嗚呼. 向年之事, 尙忍言哉. 奸凶堵立, 謀計僭罔. … 故茲教示, 想宜知悉.

중외의 대소신료·기로·군민·한량인 등에게 내리는 교서.

왕은 이렇게 말한다. … 모월 모일 새벽 이전에 謀叛·大逆과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謀殺毆罵 하였거나, 妻妾이 남편을 謀殺하였거나 노비가 주인을 謀殺하였거나,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거나, 廉慙·蠱毒을 하였거나, 국가의 綱常에 관계되거나, 贓汚와 強竊盜를 제외한 雜犯의 死罪 이하로 徒·流·付處·安置·充軍된 자는 이미 配所에 이르렀거나 아직 配所에 이르지 않았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赦宥하여 그 죄를 덜어준다. 감히 赦宥하는 뜻이 있기 전의 일로써 서로 告言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資級을 올려주고, 資窮인 자는 代加한다. 아! … 그러므로 이에 敎示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다 알도록 하라.

모년 모월 모일

중외반교서에서 먼저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내용은 중외반교서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저지른 죄 가운데 대역죄·강상죄·살인죄 등을 제외한 죄에 대하여 모두 사면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관원들을 포상하는 내용은 관원들의 품계를 한 資級을 올려주고, 당하관으로 제일 높은 품계에 해당하는 자는 代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외반교서를 통해 국왕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국왕의 의견과 백성들을 교화하는 내용을 수록하면서 아울러 사면과 포상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 2) 中外頒敎書의 傳存과 특징

조선시대에 국왕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외반교서를 발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중외반교서는 2건에 불과하다. 2건의 중외반교서는 1796년(정조 20)에 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한 후에 발급한 중외반교서와 1890년(고종 27)에 翼宗과 神貞王后의 尊號를 追上한 후에 발급한 중외반교서가 전해지고 있다. 각각의 중외반교서에 대하여 발급 과정·문서식·특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V-41> 中外頒敎書의 傳存 現況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製述	출처
1	1796년(정조 20) 11월 9일	正祖	中外大小臣僚耆 老軍民閑良人等	11월 8일에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함	具庠	국립광주박물관, 『하 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 2007, 182~183쪽
2	1890년(고종 27) 12월 7일	高宗	中外大小臣僚耆 老軍民閑良人等	翼宗과 神貞王후의 尊號를 追 上한 것을 알리고, 12월 7일 이전의 죄를 사면하며, 관원 들에게 한 資級을 높여줌	金聲根	서울대학교 도서관, 『 古文書』 1 -國王文 書·王室文書-, 1986, 76~78쪽



- |                             |                            |
|-----------------------------|----------------------------|
| (01)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 (21) 那意上天之不弔 遂自下邑而永歸 七月窮   |
| (02) 王若曰 天降真儒 丕闡文明之運 德合崇報 聿 | (22) 山 幾灑蒼梧之冤淚 一片短旒 不改玉果之  |
| (03) 舉躋享之儀 庸副群情 先蔽予志 言念     | (23) 舊銜 嗟事業未展於當時 而功化尚賴於末   |
| (04) 聖無配儒賢之典 實爲斯文明道統之[要     | (24) 學 備道德節義之盛 宛然三代上典型 明君  |
| (05) 夫子之宮墻斯尊 非盛德而孰與 後學之     | (25) 臣父子之倫 允矣千載下標準 撐天之綱    |
| (06) 模範攸在 庶正路之不迷 肆予自承       | (26) 永樹 隔晨之曠感采深 祥麟瑞鳳之儀 幾   |
| (07) 祖宗洪基 恐負君師丕責 末俗之習尚已瘠    | (27) 切時不司之恨 良金溫玉之質 實有知者希之  |
| (08) 奈趨向之或歧 先哲之闡域難窺 恐議論     | (28) 嘆 終始進退之間 惟義是視 雍容出處之   |
| (09) 之易繆 佇期皇道同歸之化 益軫金秤稱     | (29) 際 無跡可尋 於是孟氏之統有傳 始知子思  |
| (10) 來之方 緬昔河西大儒 蔚爲海東正學 詩    | (30) 之功爲大 瞻鰲山杖履之所 非無妥靈之    |
| (11) 出天性 咏風樹而寓丹心 資近生知 劈蔥根而  | (31) 祠 顧芹宮籩豆之班 宜備賸食之禮 事    |
| (12) 探玄理 平生心契 獨推天地間二人 本原工夫  | (32) 不偶爾 幸群議之僉同 表而出之 若天意   |
| (13) 專在大小學兩部 理氣互發之辨 折衷大賢    | (33) 之有相 茲於本月初八日 以贈領議政文正公  |
| (14) 道器一物之非 剖析諸說 綱常自任 秉執則   | (34) 金麟厚 從祀于 文廟之廡 國人賴以矜式 多 |
| (15) 至正大中 規矩是循 踐履則下學上達 是以百  | (35) 士學有依歸 接洙泗洛閩之流 淵源遠矣    |
| (16) 世師表之評 已爲一時公共之論 其道也繼濂   | (36) 躋靜退牛栗之列 春秋饗之 於戲 文在茲足  |
| (17) 溪開後人之功 于時則際            | (37) 徵 道自此不墜 菁莪樂育 佇見作興之休   |
| (18) 孝陵賁太平之治 魚水之契已合 自 青邱而受  | (38) 衿紳聳聽 孰無觀感之效 故茲敎示 想    |
| (19) 知 風雲之期暗親 錫墨畫而寓意 黼黻協    | (39) 宜知悉                   |
| (20) 贊之化 幸有其人 笙鏞賁飾之休 佇見當世   | (40) 嘉慶元年十一月初九日            |

<圖 V-27> 1796년(정조 20)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敎書<sup>536)</sup>

536) 1796년(정조 20), 103.0×380.0cm, 국립광주박물관 所藏(광3892).  
국립광주박물관, 앞의 책, 2007, 182~183쪽.

1796년(정조 20)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教書는 조선 후기에 국왕이 유현을 문묘에 從祀한 후에 그 사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발급한 중외반교서이다. 이러한 중외반교서는 1610년(광해군 2) 9월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의 五賢을 문묘에 종사할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광해군은 五賢을 문묘에 종사한 다음 날인 9월 5일에 五賢을 문묘의 東廡·西廡에 종사했다는 내용으로 대제학 李廷龜가 제출한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이후 1610년(광해군 2)부터 1883년(고종 20)까지 국왕은 유현을 문묘에 종사한 후에 총 7번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7건의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는 모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개인 문집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796년(정조 20)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한 후에 발급한 중외반교서가 실물로 남아있다.

김인후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는 1796년(정조 20) 11월 8일에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하고 다음 날인 11월 9일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반포한 교서이다. 이 때 중외반교서의 제출은 김인후 문묘종사교서를 제출하였던 예문관제학 具庠이 담당하였다. 김인후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를 살펴보면, 始面은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로 기재되어 있어 수취자가 中外의 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 등인 것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그 사이에 ‘於戲’의 감탄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교서의 수취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惟卿’은 기재되지 않았다. 본문에는 11월 8일에 증 영의정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의 廡에 종사한다는 내용(茲於本月初八日 以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 從祀于\_文廟之廡)이 기재되었다.

김인후 문묘종사 중외반교서 이외에 다른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를 살펴보면, 국왕은 유현을 문묘에 종사한 당일이나 다음 날에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이 때 제출관은 대제학이나 예문관제학이 담당하였으며, 대부분 문묘종사교서를 제출한 관원이 중외반교서의 제출도 담당하였다. 또한 중외반교서의 본문에는 문묘에 종사하는 날짜와 문묘에 종사하는 인물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김장생의 경우에는 ‘茲於本月二十日 以贈領議政文元公金長生 從祀于文廟西廡’이고, 송시열과 송준길의 경우에는 ‘茲於本月十四日 以文正公宋時烈·文正公宋浚吉 從祀于文廟東西廡’로 기재하였다.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는 다른 중외반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이 국가의 특별한 행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발급한 교서이다. 국왕은 문묘종사 중외반교서를 통해서 문묘종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中外의 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 등에게 전달하였다. 국왕은 유현을 문묘에 從祀함으로써 성리학적 道統을 확립시키고, 후학들에게 학문에 힘쓰도록 고무시키며, 나아가 성리학적으로 백성들의 교화에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表 V-42> 文廟從祀 中外頒教書와 文廟從祀敎書의 製述官과 발급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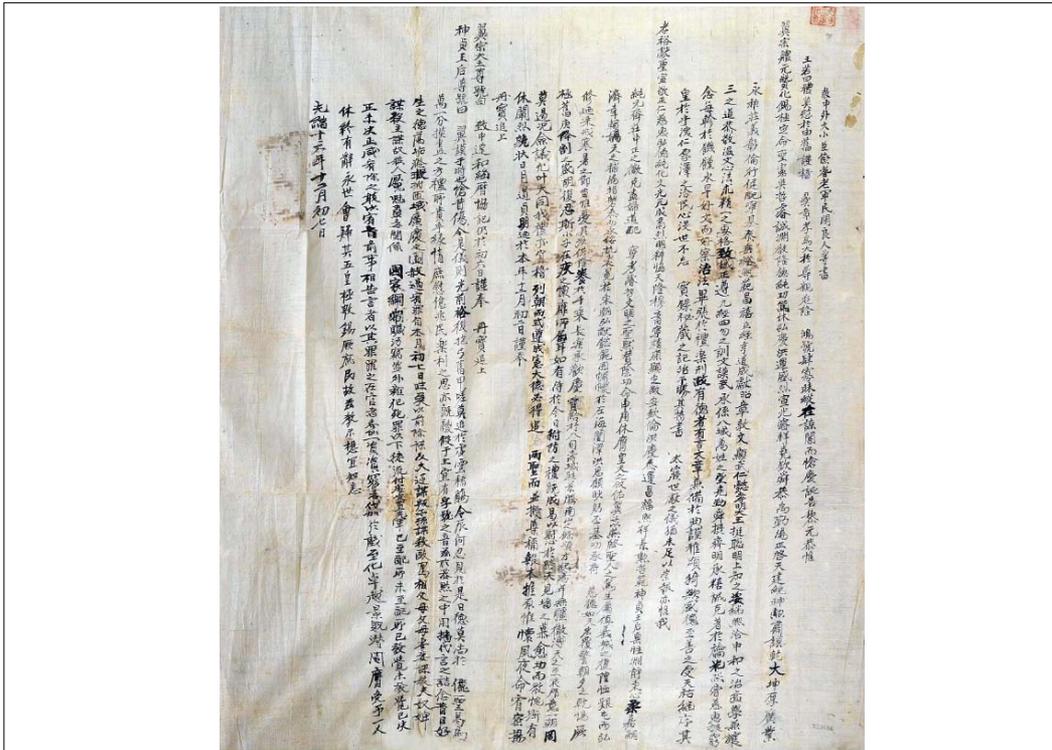
번호	文廟從祀 대상	文廟從祀 시기	文廟從祀敎書 製述官	文廟從祀 中外頒敎書	
				발급 일자	製述官
1	金宏弼·鄭汝昌· 趙光祖·李彥迪·李滉	1610년 (광해군 2) 9월 4일	未詳	9월 5일	大提學 李廷龜
2	李珥	1682년(숙종 8) 5월 20일	大提學 李敏敘	5월 21일	李敏敘
	成渾		金萬重		
3	金長生	1717년(숙종 43) 5월 20일	大提學 宋相琦	5월 21일	宋相琦
4	宋時烈·宋浚吉	1756년(영조 32) 2월 14일	藝文館提學 南有容	2월 15일	南有容
5	朴世采	1764년(영조 40) 5월 28일	藝文館提學 尹汲	5월 28일	尹汲
6	金麟厚	1796년(정조 20) 11월 8일	藝文館提學 具庠	11월 9일	具庠
7	趙憲·金集	1883년(고종 20) 11월 20일	藝文館提學 韓章錫	11월 21일	韓章錫

이어서 1890년(고종 27) 翼宗·神貞王后 尊號追上 中外頒敎書는 12월 7일에 고종이 익종과 신정왕후의 尊號를 追上한 후에 그 사실을 전국에 알리고 아울러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고 관원들을 포상하는 내용의 중외반교서이다. 익종은 순조의 아들로 1812년(순조 12)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조만영의 딸인 신정왕후와 혼례를 올렸으며 헌종을 낳았다. 순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거행하던 1830년(순조 30)에 죽었으며, 아들인 헌종이 즉위한 후에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익종의 사후에 철종과 고종은 몇 차례 尊號를 追上하였고, 이 때 국왕은 玉冊과 金寶를 내려주었으며, 아울러 중외반교서를 전국에 반포하였다.

중외반교서를 살펴보면, 始面은 앞에서 언급한 김인후 문묘종사 중외반교서와 마찬가지로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로 기재되었다.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하여 익종의 품성·학문·업적·덕행과 신정왕후의 품성·덕행을 언급하고, 익종에게 ‘致中達和繼曆協紀’의 존호를 추상하고 신정왕후에게 ‘翼謨’의 존호를 추상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익종과 신정왕후의 존호를 추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7일 새벽 이전에 대역·강상·살인 등을 제외한 죄를 모두 사면하고, 관직에 있는 자들은 資級을 올려주고 資窮인 자는 代加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문의 끝부분에는 백성들에게 교화를 베푼다는 내용과 함께 ‘故茲敎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다. 본문 중간에서 ‘王若曰’은 세 글자를 擡頭하였지만, ‘翼宗體元贊’·‘孝裕獻聖宣’·‘翼宗大王尊’·‘神貞王后尊’와 같이 익종과 신정왕후를 표현한 용어는 다섯 글자를 擡頭하여 극진한 존경을 문서에서 표현하였다. 이 중외반교서는 홍문관제학 金聲根이 제술하였으며, 경복궁

근정전에서 반포하였다.

국왕이 선왕이나 왕대비·대왕대비의 존호를 추상하는 것은 왕실의 故人을 공경하고 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호의 추상과 함께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고 관원에게 포상하는 내용으로 중외반교서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백성들을 훈계하거나 교화시키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고자 하는 국왕의 의도를 전달하였다.



- (01)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 (02) 王若曰 禮莫愆於由舊 謹藉 彝章 孝爲大於尊親 追隆 鴻號 肆寡昧縱在諒闇 而愴誕告黎元 恭惟
- (03) 翼宗 體元贊化 錫極定命 聖憲英哲 睿誠淵敬 隆德純功 篤休弘慶 洪運盛烈 宣光潛祥 堯欽舜恭 禹勤湯正 啓天建統 神勳肅謨 乾大坤厚 廣業
- (04) 永祚 莊義彰倫 行健配寧 基泰垂裕 熙範昌禧 立經亨道 成獻昭章 敦文顯武 仁懿孝明 大王 挺聰明上知之姿 繼熙洽中和之治 齒學兼讓
- (05) 三之道 恭敬溫文 心法求精一之要 格致誠正 遵九經四勿之訓 文謨武承 係八域萬姓之望 堯勤舜攝 齊明承禧 誠克著於禴祀烝嘗 慈惠振窮
- (06) 念每軫於饑饉水旱 好文而好察 治法畢張於禮樂刑政 有德者有言 文章兼備於典謨雅頌 猗歎 盛德至善之受天祐 繼序其
- (07) 皇 於乎 深仁厚澤之治民心 沒世不忘 寶錄祕藏之記 殆不勝其特書 太寢世獻之儀 猶未足以崇報 亦惟我
- (08) 孝裕獻聖 宣敬正仁 茲惠弘德 純化文光 元成肅烈 明粹協天 隆穆壽寧 禧康顯定 徽安欽倫 洪慶泰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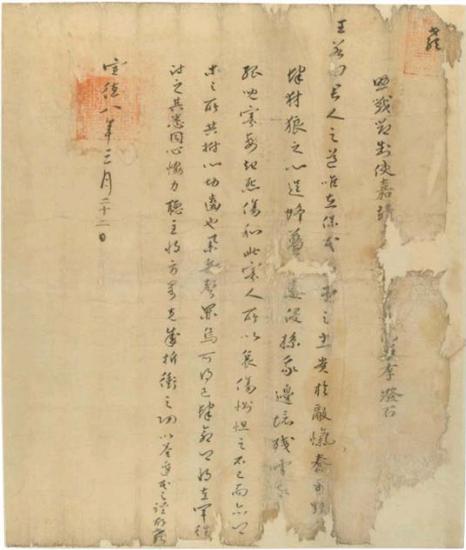
	昌福熙祥 景勳哲範 神貞王后 稟性淵靜 秉心柔嘉 嗣
(09)	純元齊莊中正之徽 克盡婦道 配寧考濟哲文明之聖 默贊陰功 命申用休 膺皇天之攸佑 翼子以燕 啓聖人之篤生 屬值義城之復隍 恤艱屯而弘
(10)	濟 幸賴鳩天之補漏 措磐泰而永綏 抗裘冕於東朝 弘猷懿範 圍帡幪於左海 闡澤洪恩 顧眇躬丕基叨承 荷慈德如天宏覆 警朝夕之乾惕 厥
(11)	修迺來 戒寒暑之節宣 惟憂其疾 供隆養於千乘 長樂承歡 慶寶齡於八旬 壽域駐景 騰南山之餘頌 方祝萬年無疆 徹溥天之至哀 那意一朝罔
(12)	極 舊庚降割之歲 胡復忍斯 小子在疚之懷 靡所屆耳 如有待於今日 祔防之禮既成 曷以慰於終天 見牆之慕愈切 而微忱斯有
(13)	莫遏 况僉議允叶大同 我禮亦宜 稽列朝而式遵成憲 大德必得 追兩聖而並擬尊稱 報本推原 惟懷夙夜命宥密 揚
(14)	休闡烈 孰狀日月道貞明 迺於本年十二月初二日 謹奉
(15)	冊寶 追上
(16)	翼宗大王尊號曰 致中達和 繼曆協紀 仍於初六日 謹奉冊寶 追上
(17)	神貞王后尊號曰 翼謨於時也 愴昔傷今 是儀則光前裕後 抱弓舊甲 嗟莫迫於虛雲 稱觴令辰 何忍見於是日 德莫尙於儷聖 曷爲
(18)	萬一分摸畫之方 禮所貴乎緣情 庶慰億兆民樂利之思 亦既謾假于上 宜有孚號之音 茲於恭默之中 用播代言之誥 念昔日好
(19)	生之德 蕩垢滌瑕 拊匝域廣慶之圖 赦過宥罪 自本月七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叛 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
(20)	謀殺主 謀故殺人 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臟污竊盜外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 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 未發覺 已決
(21)	正 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至化卓越 景貺潛周 膺受予一人
(22)	休 終有辭永世 會歸其五皇極 敷錫厥庶民 故茲教示 想官知悉
(23)	光緒十六年十二月初七日
〈圖 V-28〉 1890년(고종 27) 翼宗·神貞王后 尊號追上 中外頒敎書 <sup>537)</sup>	

537) 1890년(고종 27), 88.0×75.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31(523686).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76~78쪽.

## 5. 其他 敎書

본 절에서는 실물로 현전하는 교서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임명·포상·의례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 교서 이외의 목적으로 발급된 교서를 소개하고, 이러한 교서를 발급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문서 양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5.1 李澄石 敎書<sup>538)</sup>

	
<p>(01) 敎          (02) 助戰節制使嘉靖[大夫 同知中樞院事]李澄石          (03) 王若曰 君人之道 唯在保民 [將]臣之忠 貴於敵愾 蠢爾[野人]          (04) 肆豺狼之心 逞蜂蠆之毒 侵掠我邊境 殘噓我[生靈]          (05) 孤兒寡妻 起怨傷和 此寡人所以哀傷惻怛 之不已 而亦卿          (06) 等之所共拊心切齒也 舉兵聲罪 烏可得已 肆命卿將在軍往          (07) 討之 其悉同心協力 聽主將方畧 克成折衝之功 以答邊民之望 故敎          (08) 宣德八年三月二十二日<sup>539)</sup></p>	
<p>&lt;圖 V-29&gt; 1433년(세종 15) 李澄石 敎書<sup>540)</sup></p>	

538) 1433년(세종 15) 李澄石 敎書에 대해서는 박성호의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 -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0~42쪽.

539) 문서에서 결락된 부분은 『世宗實錄』과 박성호의 연구성과를 참조해서 보완하였다. (박성호, 위의 논문, 2012, 41쪽)

540) 1433년(세종 15), 71.5×86.0cm, 보물 제1001-4호, 慶南 陽山 陽山李氏 所藏.

이징석 교서는 1433년(세종 15) 3월 22일에 세종이 助戰節制使 李澄石에게 국경을 침략하는 婆猪江 일대의 野人을 토벌하는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교서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433년(세종 15) 초에 세종은 의정부·육조·三軍都鎮撫의 관원들과 여러 차례 파저강 야인을 토벌할 것을 논의하고,<sup>541)</sup> 崔潤德을 中軍都節制使로 임명하고, 李順蒙을 中軍節制使, 崔海山을 左軍節制使, 李恪을 右軍節制使, 李澄石과 金孝誠을 助戰節制使로 임명하였다. 최윤덕과 여러 장수들은 4월 10일에 江界府에 모인 후에 군사를 나누어서 4월 19일까지 파저강 일대의 야인을 토벌하였다.<sup>542)</sup>

세종은 1433년(세종 15) 3월 22일에 集賢殿副提學 李宣을 보내서 北征하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이 때 조전절제사 이징석에게 내린 교서가 이 문서이다. 이징석 교서에는 국경을 침략하고 백성을 살해하는 야인에게 군사를 일으켜 토벌할 것을 명하고, 아울러 主將의 方略을 듣고 적을 공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세종은 이징석뿐만 아니라 최윤덕·이순몽·최해산·이각·김효성 등에게 각각 교서를 내려주었다. 또한 야인의 토벌에 참여하는 ‘三品以下軍官軍民’에게도 교서를 내려주었다.<sup>543)</sup>

이징석 교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の 첫 행에 ‘教’字만을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조선 초기 공신교서의 시면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教’字의 다음 행에 이징석이 야인을 토벌할 때에 임명된 관직인 ‘助戰節制使’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이징석의 품계와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본문에서 기두어는 다른 교서와 마찬가지로 ‘王若曰’로 시작하였지만, 결사는 ‘故教’로 끝맺고 있다. 교서의 결사인 ‘故茲教示 想宜知悉’이 아니라 ‘故教’인 것은 조선 초기 교서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寶印은 1433년(세종 15) 3월부터 교서에 사용된 「國王信寶」가 안보되었다. 「국왕신보」는 시면의 ‘教’字와 발급 일자에 안보되었는데, 교서의 寶印이 홀수가 아닌 두 곳에 안보된 것은 이징석 교서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공신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33년(세종 15) 이징석 교서는 앞에서 언급한 임명·포상·의례 등의 목적으로 발급된 교서가 아니라 야인의 토벌이라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교서이다. 이징석 교서를 통해 조선 초기에 교서로 전달되는 국왕의 명령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조선 초기에 교서의 양식이 확립되기 전에 발급된 교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41) 『世宗實錄』 15년(1433) 2월 15일(己亥) ; 2월 21일(乙巳) ; 2월 26일(庚戌) ; 2월 27일(辛亥).

542) 『世宗實錄』 15년(1433) 5월 7일(己未).

543) 『世宗實錄』 15년(1433) 3월 22일(乙亥).

## 5.2 李滉 批答教書

이항 비답교서는 1567년(선조 즉위년) 11월 16일과 1568년(선조 1) 4월 1일에 선조가 이항에게 내린 비답교서이다. 1567년(선조 즉위년) 선조는 10월 5일에 이항을 특별히 불러서 지중추부사에 임명하였다.<sup>544)</sup> 그러나 이항은 선조에게 사직 상소를 올리고 나오지 않았고, 이에 선조는 상소에 대한 批答으로 11월 16일에 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때 교서의 내용은 弘文館典翰 奇大升이 제출하였다. 다음 해인 1568년(선조 1)에 선조는 이항을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항은 사직 상소를 올렸고, 이에 선조는 상소에 대한 비답으로 4월 1일에 교서를 내려주었다. 이 교서의 내용은 홍문관직제학 盧守愼이 제출하였다.

이항 비답교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은 ‘教’字와 ‘書’字 사이에 李滉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으며, 발급 일자에는 ‘隆慶元年十一月十六日’과 ‘隆慶二年四月初一日’로 明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다. 寶印은 1568년(선조 1) 비답교서 17곳, 1568년(선조 1) 비답교서 15곳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비답교서의 내용은 주로 卿과 같은 賢者는 반드시 필요하니 병으로 사직하지 말고 관직에 나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항 비답교서는 선조가 이항을 특별히 禮遇하고, 관직에 나오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특별히 교서의 양식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圖 V-30> 1567년(선조 즉위년) 李滉 教書545)

544) 『宣祖修正實錄』 즉위년(1567) 10월 5일(丙戌): 特召李滉, 拜知中樞府事, 繼以教書諭旨, 辭不至.

545) 1567년(선조 즉위년), 105.3×353.8cm,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



- |                             |                               |
|-----------------------------|-------------------------------|
| (01) 教議政府右贊成李滉書             | (29) 才將興 豈恤蒲宗孟之不取 卽今春夏之       |
| (02) 王若曰 嗚呼 莫難於知賢可好 莫甚難於好賢有 | (30) 交 風日妍暖 正病者蘇 老者安之時也 卿年    |
| (03) 誠 有誠則士皆願立 而不仁者遠 不誠則近者  | (31) 齡雖高 精力不衰 誠欲一出而相就 或輿或輶 或駟 |
| (04) 不稽 而遠者不來 夫誠之不可揜如是 彼賢人  | (32) 或舸 其勢無不可者 而道路觀聽 必有加額之望矣  |
| (05) 者 顧亦何負於國哉 予以冲子 入纂大統 惟  | (33) 况爵者 非求之可得也 學者 非己之可私也 予   |
| (06) 不克負荷是懼 諒閣之中 須有命令 經席    | (34) 實語焉 卿何疑爲 卿者在             |
| (07) 之上 不廢講讀 惟知急親賢之爲務 疇可    | (35) 先朝 屢被徵旨而辭 最後一命而至 豈不以獎進   |
| (08) 與共天位治天職 以光我            | (36) 職重而製述官輕乎 然亦              |
| (09) 祖宗 以濟我生民 惟卿經術德義 爲士人所宗仰 | (37) 先王好賢之誠有以致之也 及            |
| (10) 久矣 予聞之爛熟 亦可謂知其眞可好者矣 雖其 | (38) 先王實天 卿遽以疾歸 而予莫之知 殆孟子所謂昔  |
| (11) 爵祿不入心 恬靜以養性 有若不可得而奪    | (39) 者所進 今日不知其亡者 予甚愧焉 予小子不    |
| (12) 者 誠得致敬而盡禮焉 則庸有不動者 而幡   | (40) 誠於賢久矣 其不克致卿宜也 卿獨不能推未報    |
| (13) 然改圖 以共予天位天職 爲          | (41) 先王之盛心 以及予眇躬乎 卿意一受人籠絡 便不  |
| (14) 祖宗生民之寄 豈不賢於夢卜哉 於是 諭以予意 | (42) 得自由 殆不然矣 殆不然矣 魚水際會 千載一   |
| (15) 不一再而止 卿執前志不欲變 嗚呼 予之好卿  | (43) 時 義苟不安矣 病苟不已矣 蓋亦浩然有歸志    |
| (16) 其亦未矣 何其宜起而莫之起 使予長抱如渴   | (44) 夫孰能禦之 嗚呼 予自問安奉奠之外 惟務     |
| (17) 之懷而不可已也 嗚呼 君臣相遇 自古以爲難  | (45) 經筵 冀有以專精問學 比因災變 遽見       |
| (18) 豈予好之之誠 有所未孚而爾歟 往者貳公之   | (46) 撤簾 而萬幾之政 萃于一身 將焉有攸賴 彌不知  |
| (19) 除 非因於左右 實出於予表也 非以悅於卿   | (47) 所出 卿庶幾一顧 予日益望焉 予不敢勞卿     |
| (20) 實協於輿情也 卿每以退爲義 以病爲勢     | (48) 以職事 以重卿病 雖卿疏出於惻怛 然皆非     |
| (21) 以媒爵爲嫌 以不學爲辭 卿意固然 予實    | (49) 予所期於卿者 是可慨息也已 昔晉人謂安石     |
| (22) 疑之 仕止久速 聖人所以 不任無義 厥有明  | (50) 不出 當如蒼生何 而況不爲安石者 其如蒼生    |
| (23) 訓 士之處世也 安得潔身而已乎 長往而已   | (51) 何 士林何 國家何 不宜過自菲薄 引喻失義 以  |
| (24) 乎 揆之於今 非有將大有爲之君矣 未必無   | (52) 孤蒼生士林國家之厚望 只得慎飲食 少思      |
| (25) 宣仁之臨乎上 范呂之處乎下 而賢人君子    | (53) 慮 補助醫藥以自持 從容上道 用副予如不及    |
| (26) 亦安敢誣其不在列乎 卿不可見義則翩然而    | (54) 之誠 嗚呼 有感必有應 卿固有以繹之矣 故茲   |
| (27) 來 不合則脫然而去乎 不可樂則行之 憂則違  | (55) 教示 想宜知悉                  |
| (28) 之乎 嗚呼 臣鄰攸屬 常恐孔文仲之見欺 人  | (56) 隆慶二年四月初一日                |

<圖 V-31> 1568년(선조 1) 李滉 教書<sup>546)</sup>

### 5.3 趙憲 教書

조헌 교서는 1592년(선조 25) 8월 15일에 선조가 충청도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헌에게 내린 교서이다. 1592년(선조 25) 4월에 왜군이 침입하여 임진왜란이

546) 1568년(선조 1), 87.5×508.5cm,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

발발하자 선조는 의주로 몽진하였고, 이후 의주 행재소에서 선조는 전국 각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병장에게 교서를 내려서 전쟁의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하고 아울러 왜군의 격퇴를 면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조가 조헌에게 내린 교서가 이 문서이다.<sup>547)</sup>

조헌 교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은 ‘教’字와 ‘書’字 사이에 조헌의 관직인 ‘忠淸道 義兵將·奉常寺僉正’과 성명을 기재하였고,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다. 본문에서 선조의 명령을 의미하는 ‘王若曰’은 한 글자를 擡頭하였고, ‘廟社’·‘祖宗之靈’·‘宗祏’·‘園陵’·‘宗社’와 같이 종묘사직을 뜻하는 용어와 ‘天朝’·‘欽差’·‘天兵’과 같이 명나라와 관계된 용어는 두 글자를 대두하여 당시 명나라를 尊崇하는 것을 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일자 는 ‘萬曆二十年八月十五日’로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고, 寶印은 3곳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교서의 제술은 李好閔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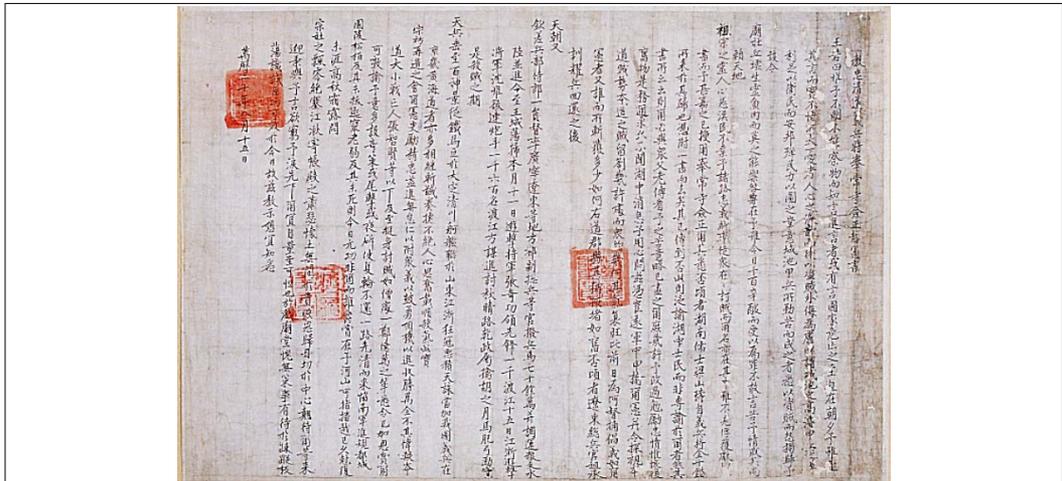
교서의 내용은 먼저 선조가 왜군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한 자신의 과오를 질책하였고, 왜군의 형세를 살피고 의병의 상황과 忠淸右道 郡縣의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어서 祖承訓·張奇功·沈惟敬 등의 명나라 장수와 원군이 왜군을 격퇴할 계획을 알려주었으며, 張智賢·處一·鄭億萬 등의 의병장에게 恩賞을 내린 것을 말하면서 더욱 힘써 왜군을 섬멸할 것을 敦諭하고 褒獎하는 내용이었다. 선조는 8월 15일에 이 교서를 崔遠을 통해 전달하게 하였지만, 8월 18일에 조헌은 충청도 錦山에서 僧兵將 靈圭가 이끄는 僧軍과 함께 왜군을 격퇴하다가 전사하여 교서를 받지 못하였다.<sup>548)</sup>

547) 趙憲 教書는 보물 제1007-3호 ‘趙憲 關聯 遺品 - 趙憲義兵將除授教書’로 지정되었으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헌을 의병장으로 제수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8) 『宣祖實錄』 25년(1592) 9월 12일(己巳): 本州牧使許頊, 招來手下爲牙兵, 頗有討賊意. 言于本道巡察使, 抄發道內僧軍, 以圭爲將, 討淸州之賊. 義兵將趙憲協同進兵, 淸州之賊遁去. 圭及憲, 移兵討錦山之賊, 皆陣亡, 至今人甚惜之, 且壯其義.

『再造藩邦志』 二: 淸州未復之前, 朝廷聞憲起兵, 下教宣諭曰, 惟予不明, 不能察物而知言, … 板蕩識忠臣, 功可效於今日. 故茲教示, 想宜知悉. 教書未及到, 而憲已死. 朝廷聞之, 莫不嗟惋, 追贈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而褒之.

『重峰集』 附錄 卷1 年譜: … 是月十五日, 行朝聞先生起義討賊, 遙授奉常寺僉正, 下教褒美. 其略曰, 惟予不明, 不能察物而知言, … 板蕩識誠臣, 功可效於今日云. 而先生亦未及見矣. 嗚呼痛哉. 十八日, 效節於錦山.



- (01) 教忠清道義兵將奉常寺僉正趙憲書
- (02) 王若曰 惟予不明 不能察物而知言 進言者 或有言國家危亡之至 迫在朝夕 予雖是
- (03) 其言 而實不悟所大憂者人心之渙散 而徒以盜賊外侮為慮 以謂城池之高濬 甲兵[之]犀
- (04) 利 足以衛民而安邦 殫民力以圖之 豈意城池甲兵所勤苦而成之者 悉以資賊而怨獨歸予
- (05) 致令
- (06) 廟社丘墟 生靈魚肉 而莫之能禦 咎專在予 雖今日千百辛酸 而受以為罪 不敢言苦 予情戚矣 尚
- (07) 賴天地
- (08) 祖宗之靈 人心思漢 民不棄予 諸路忠義 糾率徒眾 在在討賊 而爾名亦在其中 雖不見俘獲獻[功之]
- (09) 書 而予甚嘉之 已授爾奉常寺僉正 爾其悉否 頃者湖南儒士梁山璫 自義兵將金千鎰
- (10) 所來 於其歸也 憑附一書而去矣 其已傳到否 此則泛諭湖中士民 而非專諭於爾者 然其
- (11) 書所云云 則爾必與眾父老傳看 予之苦意 略已盡之 爾庶幾許予改過 勉勵忠憤 惟恢復
- (12) 舊物是務 邇來久不聞湖中消息 予用心悶 茲憑崔遠軍中 申諭爾憲 并令探視本
- (13) 道賊勢 本道之賊留筭幾許處 而眾約幾何 其氣衰旺 比前日為何 督捕倡義如爾
- (14) 憲者又誰 而所斬獲多少如何 右道郡縣 其猶按堵如舊否 頃者遼東總兵官祖承
- (15) 訓耀兵回還之後
- (16) 天朝又
- (17) 欽差兵部侍郎一員 督率廣寧 遼東等地方都副總兵等官 撥兵馬七十餘萬 并調運糧支 水
- (18) 陸並進 令至王城蕩掃 本月十一日 遊擊將軍張奇功領先鋒一千渡江 十五日 江浙遊擊
- (19) 將軍沈惟敬連炮手一千六百名渡江 方謀進討 秋晴路乾 政屬擒胡之月 馬肥弓勁 實
- (20) 是殺賊之期
- (21) 天兵垂至 百神景從 鐵馬亘於大定清川 舸艦聯於山東江浙 狂寇惡積 天誅當加 我國義兵 在
- (22) 京畿黃海道者亦多 相繼斬馘 奏捷不絕 人心思奮 載順殺氣 此實
- (23) 宗祔再造之會 爾憲更勵精忠 益進無怠 仁以附眾 義以鼓勇 相機以進 收勝萬全 不其偉歟 爾
- (24) 道大小戰亡人張智賢等以下 及至挺身討賊如僧處一 鄭億萬之輩 悉令已加恩賞 爾
- (25) 可敦諭予意 多設奇策 或尾擊或夜斫 使隻輪不還 一路先清 而來協南軍 進規都城
- (26) 園陵松柏 及其未拔 逃竄老弱 及其未死 則今日元功 非爾而誰 爵賞在予 河山可指 播越已久 剋復
- (27) 未涯 高秋霜露 閃
- (28) 宗社之飄零 絕塞江秋 寄帳殿之蕭瑟 懷土無間於貴賤 思歸日切於中心 翹待爾等來
- (29) 迎乘輿 予言欲窮 予淚先下 爾宜自重 至可懼也 於戲 廟堂愧無策 事有待於踈蹤 板
- (30) 蕩識誠臣 功可效於今日 故茲教示 想宜知悉
- (31) 萬曆二十年八月十五日

<圖 V-32> 1592년(선조 25) 趙憲 教書(549)

당시 선조는 조헌뿐만 아니라 金沔·鄭仁弘 등의 의병장에게도 왜군의 형세와 주변의 상황을 探問하여 보고하고 아울러 의병장들을 포상하고 면려하는 내용의 교서를 내렸다.<sup>550)</sup> 조헌 교서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당시 전쟁의 상황, 명나라 장수와 원군의 규모, 의병의 활약뿐만 아니라 의병들을 면려하고 포상하고자 하는 선조와 조정의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 5.4 宣諭犒賞教書

선유호상교서는 1596년(선조 29) 9월 15일에 선조가 왜적과 싸우고 있는 군사들에게 兵曹佐郎 崔東立을 보내어 음식을 내리고 慰諭하면서 내린 교서이다. 당시 선조가 선유호상교서를 여러 곳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三道統制使 李舜臣의 휘하에 있는 陣과 慶尙右道兵馬節度使 金應瑞의 휘하에 있는 陣에 내린 교서 2건만이 남아있다.<sup>551)</sup>

선유호상교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은 ‘教’字와 ‘書’字 사이에 교서를 수취하는 장수의 官職·姓名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以下諸陣宣諭犒賞’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경우에는 ‘教慶尙道閑山島兼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舜臣以下諸陣宣諭犒賞書’로 기재하였고, 김응서의 경우에는 ‘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應瑞以下諸陣宣諭犒賞書’로 기재하였다.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고, 발급 일자도 두 문서가 같은 날에 발급되었으므로 ‘萬曆二十四年九月十五日’로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寶印은 두 문서 모두 7곳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선유호상교서의 내용은 각 陣에서 군사들이 지키는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병조좌랑 최동립을 보내어 犒賞과 慰諭의 恩典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유호상교서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시상황에 ‘宣諭’와 ‘犒賞’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왕이 내린 교서이다.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을 위로하고 犒饋하는 내용을 교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국왕에 대한 충성심과 군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데에 큰 효과

549) 1592년(선조 25), 82.0×111.0cm, 보물 제1007-3호, 충남 금산군 칠백의총 관리소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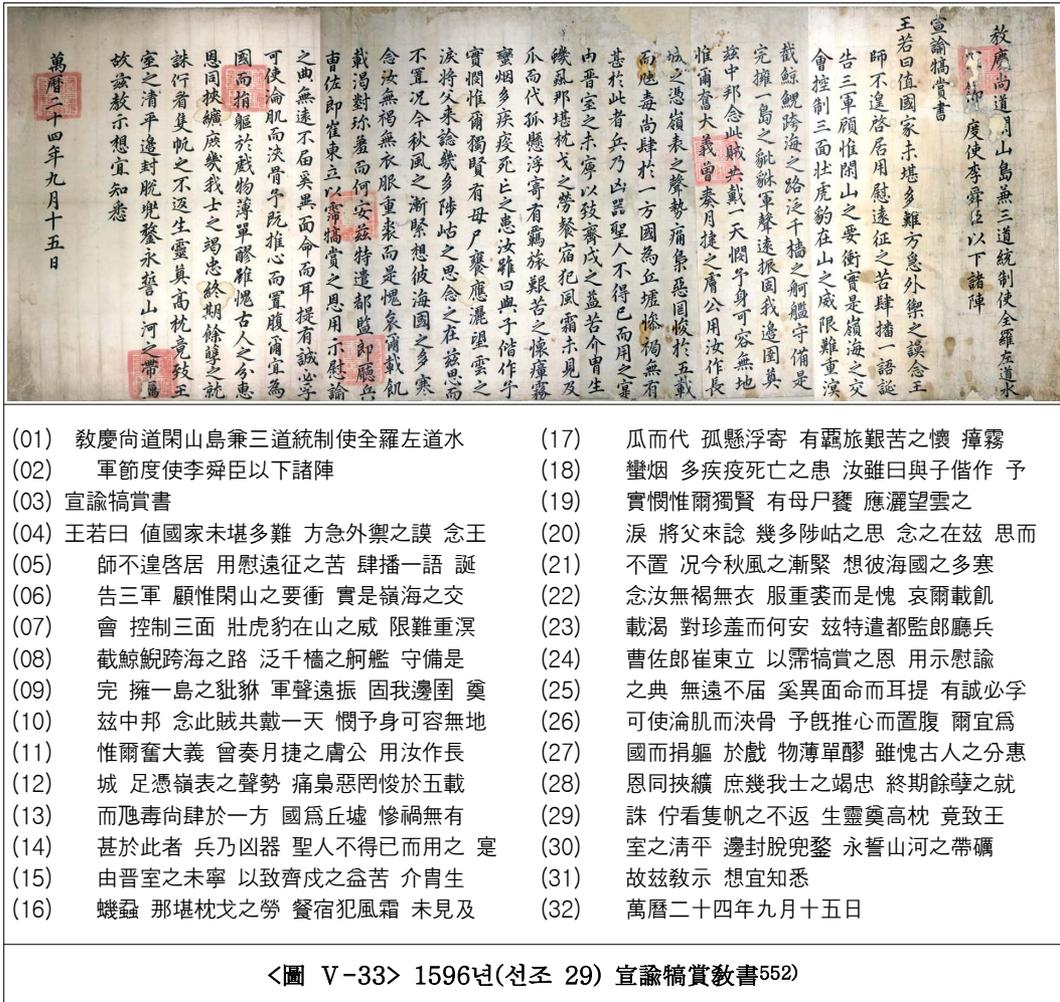
550) 『宣祖實錄』 25년(1592) 8월 13일(庚子): 南方消息久未得知, 上下諭于趙憲·金沔·鄭仁弘等處, 使之探問以啓, 仍爲褒獎. 問于備邊司曰, 差某人, 由某路得達. 回啓曰, 崔遠處送人, 使之傳通.

『五峯集』 卷10 教書: 教慶尙道義兵將濟用監正鄭仁弘, 陝川郡守金沔等書. [壬辰八月十四日] 王若曰, 君臣天地之常經, 忠義人道之大節, 所固有者, 不待勉焉. … 予言欲窮, 予淚先下, 予何忘也, 爾宜勉之. 於戲, 禮樂提封, 倘掃腥膻之氣, 山河帶礪, 可共茅土之榮. 故茲教示, 想宜知悉.

551) 1596년(선조 29), 80.5×336.0cm, 부산박물관 所藏.

부산박물관, 『소장품도록』, 2005, 307쪽.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 (01) 教慶尚道閑山島兼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    | (17) 瓜而代 孤懸浮寄 有羈旅艱苦之懷 瘴霧   |
| (02) 軍節度使李舜臣以下諸陣           | (18) 蠻烟 多疾疫死亡之患 汝雖曰與予偕作 予  |
| (03) 宣諭稿賞書                 | (19) 實憫惟爾獨賢 有母尸褻 應灑望雲之     |
| (04) 王若曰 值國家未堪多難 方急外禦之謀 念王 | (20) 淚 將父來諭 幾多陟岵之思 念之在茲 思而 |
| (05) 師不遑啓居 用慰遠征之苦 肆播一語 誕   | (21) 不置 況今秋風之漸緊 想彼海國之多寒    |
| (06) 告三軍 顧惟閑山之要衝 實是嶺海之交    | (22) 念汝無褐無衣 服重裘而是愧 哀爾載飢    |
| (07) 會 控制三面 壯虎豹在山之威 限難重溟   | (23) 載渴 對珍羞而何安 茲特遣都監郎廳兵    |
| (08) 截鯨鯢跨海之路 泛千櫓之舸艦 守備是    | (24) 曹佐郎崔東立 以霽犒賞之恩 用示慰諭    |
| (09) 完 擁一島之狴貅 軍聲遠振 固我邊圉 奠  | (25) 之典 無遠不屆 奚異面命而耳提 有誠必孚  |
| (10) 茲中邦 念此賊共載一天 憫予身可容無地   | (26) 可使淪肌而浹骨 予既推心而置腹 爾宜爲   |
| (11) 惟爾奮大義 曾奏月捷之膚公 用汝作長    | (27) 國而捐軀 於戲 物薄單醪 雖愧古人之分惠  |
| (12) 城 足憑嶺表之聲勢 痛泉惡罔悛於五載    | (28) 恩同挾纊 庶幾我士之竭忠 終期餘孽之就   |
| (13) 而虺毒尚肆於一方 國爲丘墟 慘禍無有    | (29) 誅 佇看隻帆之不返 生靈奠高枕 竟致王   |
| (14) 甚於此者 兵乃凶器 聖人不得已而用之 寔  | (30) 室之清平 邊封脫兜鍪 永誓山河之帶礪    |
| (15) 由晉室之未寧 以致齊戍之益苦 介胄生    | (31) 故茲教示 想宜知悉             |
| (16) 蟻蝨 那堪枕戈之勞 餐宿犯風霜 未見及   | (32) 萬曆二十四年九月十五日           |

<圖 V-33> 1596년(선조 29) 宣諭稿賞教書552)

### 5.5 無學大師 贈號教書

무학대사 증호교서는 1792년(정조 16)에 정조가 무학대사에게 ‘開宗立教 普照法眼 廣濟功德 翊命興運 指世讓國 東方第一大法師’의 法號를 내릴 때에 발급한 교서이다. 무학대사 증호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당시 예조판서 徐浩修가 咸興과 永興에 다녀온

552) 1596년(선조 29), 82.0×226.4cm, 보물 제1564호, 현충사관리소 所藏.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48~149쪽.

것과 관련이 있다. 1792년(정조 16) 4월 25일에 정조는 다음 달 16일과 26일에 거행하는 威興本宮의 酌獻禮와 永興本宮·濬源殿의 酌獻禮를 위하여 예조판서 서호수를 파견하였다.<sup>553)</sup> 이후 서호수는 함흥·영흥에서 돌아와서 윤4월 24일에 정조에게 복명할 때에 釋王寺의 賜額을 요청하는 석왕사 스님들의 말을 전하였다. 그 내용은 休靜과 惟政은 임진왜란 때의 功으로 모두 사당을 세우고 사액되었는데, 개국공신인 무학대사는 奉享할 곳이 없으니 봄·가을로 제사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정조는 밀양의 表忠寺와 해남의 大菴寺의 전례에 따라 석왕사를 사액하고 무학대사에게 ‘開宗立教 普照法眼 廣濟功德 翊命興運 持世護國 東方第一大法師’의 법호를 내려주었으며, 致祭하게 하였다.<sup>554)</sup> 또한 정조는 무학대사에게 법호를 내려줄 때에 贈號하는 내용의 교지와 교서를 석왕사에 내려주었다. 교서의 제출관은 지제교 李秉模가 담당하였고, 교서와 교지의 서사관은 예문관 관원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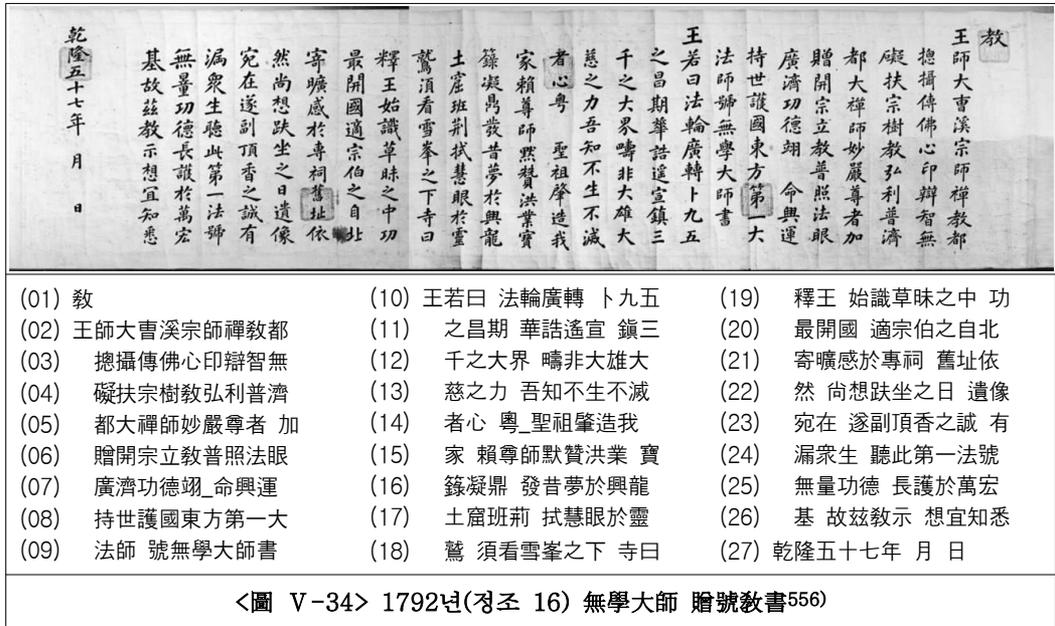
무학대사 증호교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은 ‘教’字와 ‘書’字 사이에 무학대사가 1392년(태조 1) 10월에 王師로 봉해질 때에 태조에게 받은 號인 ‘王師 大曹溪宗師 禪教都總攝 傳佛心印 辯智無礙 扶宗樹教 弘利普濟 都大禪師妙嚴尊者’를 먼저 기재하였고,<sup>555)</sup> 이어서 1792년(정조 16)에 정조에게 받은 법호인 ‘開宗立教 普照法眼 廣濟功德 翊命興運 持世護國 東方第一大法師’를 加贈한다는 내용과 ‘號無學大師’를 기재하였다. 본문은 ‘王若曰’로 시작해서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끝맺고 있고, 발급 일자인 ‘乾隆五十七年’을 기재하고 月과 日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寶印은 5곳에 「施命之寶」를 안보하였다.

553) 『正祖實錄』 16년(1792) 4월 25일(癸亥): 御仁政殿月臺, 親押威興·永興兩本宮及濬源殿酌獻禮祝. 時釐正兩本宮祭式, 遣禮曹判書徐浩修, 以本月甲戌, 行酌禮于威興本宮, 以甲申, 行于永興本宮·濬源殿.

554) 『承政院日記』 정조 16년(1792) 윤4월 24일(壬辰): 浩修曰, 臣於歸路, 爲奉審御製御筆碑閣, 歷入釋王寺, 則土窟舊址, 有無學大師小像, 僧徒等齊請曰, 休靜·惟政則以壬辰戰功, 皆立祠賜額, 無學卽開國元勳, 而尙未有專享, 實爲闕典, 願歸達天聽, 移摸小像, 仍奉於土窟, 春秋以祀云. 既有休靜·惟政已例, 無學大師之宜得專享, 誠如僧徒等所言. 嘉善帖二十張, 折衝帖二十張, 成給地方官, 措備祭器·祭田, 畫員及工匠, 亦自內閣起送, 擇日移摸粧軸後, 仍安於土窟, 許令春秋專享, 恐合事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所奏甚好, 依爲之. 若此則宜有賜額之舉, 一依密陽表忠祠·海南大菴寺例爲之, 大師之號, 亦用兩寺例爲之. 祠額曰釋王祠, 師號曰開宗立教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持世護國東方第一大法師, 書寫官, 令藝文館依例啓下, 教旨·教書成送, 而宣額及致祭, 例以禮郎進去, 而廚傳有弊, 該倅秩高, 自畿內定差員, 次次傳詣, 令地方官爲之, 可也.

555) 『太祖實錄』 1년(1392) 10월 9일(丁巳): 封僧自超爲王師.

『春亭續集』 卷1 「銘」 朝鮮國王師妙嚴尊者塔銘 [并序○庚寅]: 我太祖之元年冬十月, 師以召至松京. 太祖以是月十一日誕辰, 具法服若器, 封爲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傳佛心印·辯智無礙·扶宗樹教·弘利普濟·都大禪師·妙嚴尊者, 兩宗五教諸山衲子皆在焉. …



<圖 V-34> 1792년(정조 16) 無學大師 贈號教書<sup>556)</sup>

무학대사에게 법호를 加贈할 때에 아울러 懶翁禪師과 指空禪師에게도 법호를 加贈하고 이에 대한 교지를 석왕사에 내려주었다. 나옹선사에게는 ‘修宗崇教 證道悟契 應眞延貺 讚運資福 大法師’의 법호를 加贈하였고, 지공선사에게는 ‘闡宗演教 萬行圓融 六度嚴淨 西天三昧 東土一祖 大法師’를 加贈하였다. 그런데 무학대사와는 다르게 나옹선사와 지공선사에게는 교지만 내려주었고 교서는 내려주지 않았다.<sup>557)</sup> 이것은 나옹선사와 지공선사가 당대에 뛰어난 高僧이었지만 고려의 승려이기 때문이며, 무학대사는 조선을 개국할 때에 공이 크기 때문에 교지와 함께 교서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

556) 1792년(정조 16), 1928년 6월 7일 조선사편수회 촬영, 咸鏡南道 安邊郡 釋王寺 所藏, 國史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자료 사자 0316.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下)』 第五輯, 1935, 122쪽.

557) 『冠巖全書』 22冊 記 豐沛聖蹟記 [上]: 釋王寺在安邊府西三十里雪峰山下. … 迦葉百八傳提納薄隨尊者禪賢號指空. 加贈闡宗演教萬行圓融六度嚴淨西天三昧東土一祖大法師. 高麗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勤修本旨重興祖風福國祐世普濟尊者諡禪覺號懶翁. 加贈修宗崇教證道悟契應眞延貺讚運資福大法師. 王師大曹溪宗師禪教都摠攝傳佛心印辯智無礙扶宗樹教弘利普濟都大禪師妙嚴尊者號無學. 加贈開宗立教普照法眼廣濟功德翊命興運持世護國東方第一大法師. 教書若曰, 法輪廣轉, 卜九五之昌期, … 無量功德, 長護於萬宏基. 故茲教示, 想宜知悉. 乾隆五十七年月日.

	<p>(01) 教旨  (02) 王師大曹溪宗師  (03) 禪教都摠攝傳  (04) 佛心印辯智無礙  (05) 利普濟都大禪師  (06) 妙嚴尊者 號  (07) 無學 加贈開宗  (08) 立教普照法眼  (09) 廣濟功德翊  (10) 命興運持世護  (11) 國東方第一大  (12) 法師者  (13) 乾隆五十七年 月 日  (14) 加贈事承  (15) 傳</p>
<p>&lt;圖 V-35&gt; 1792년(정조 16) 無學大師 贈號教旨558)</p>	

	<p>(01) 教旨  (02) 高麗王師大曹溪宗師  (03) 禪教都摠攝  (04) 勤修本旨重興祖  (05) 風福國祐世普濟  (06) 尊者 諡禪覺 號懶  (07) 翁 加贈修宗崇教  (08) 證道悟契應真延  (09) 祝讚運資福大法  (10) 師者  (11) 乾隆五十七年 月 日  (12) 加贈事承  (13) 傳</p>
<p>&lt;圖 V-36&gt; 1792년(정조 16) 懶翁禪師 贈號教旨</p>	

	<p>(01) 教旨  (02) 迦葉百八傳提  (03) 納薄陀尊者 禪  (04) 賢 號指空 加贈  (05) 闡宗演教萬行  (06) 圓融六度嚴淨  (07) 西天三昧東土  (08) 一祖大法師者  (09) 乾隆五十七年 月 日  (10) 加贈事承  (11) 傳</p>
<p>&lt;圖 V-37&gt; 1792년(정조 16) 指空禪師 贈號教旨</p>	

558) 1792년(정조 16), 1928년 6월 7일 조선사편수회 촬영, 咸鏡南道 安邊郡 釋王寺 所藏, 國사편찬위원회 사진유리필름자료 사자 0315, 懶翁禪師 贈號教旨와 指空禪師 贈號教旨도 동일함.

## VI. 敎書의 위상과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교서는 임명·포상·의례·중외반포 등의 사안에 대하여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해당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교서의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조선시대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를 비교하여 교서가 갖는 특수성과 교서와 국왕문서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에 교서와 비교 대상인 국왕문서는 문서의 양식과 내용에 따라 敎命과 竹冊, 不允批答, 綸音과 訓諭諭書, 閣臣敎旨와 春坊敎旨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문서에 대해 정의와 문서 제도 등을 살펴보고 현전하는 문서를 사례로 제시하여 교서와 비교하였다. 이어서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조선시대 법전을 통해 살펴보고,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통해 교서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가 갖는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敎書와 다른 國王文書의 비교

#### 1.1 敎書와 敎命·竹冊<sup>559)</sup>

조선시대 교명과 죽책은 문서 양식의 측면에서는 교서와 가장 비슷한 문서이지만, 문서 재질의 측면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sup>560)</sup> 교명은 국왕이 왕실의

559) 조선시대 敎命과 竹冊·玉冊의 정의, 수취 대상, 형태적인 특징 등은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손계영, 「敎命의 형태 연구 -藏書閣 所藏 『懿昭世孫世孫冊封敎命』과 『慶嬪金氏揀嬪冊封敎命』을 중심으로-」, 『藏書閣』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장울연,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장울연, 「冊文의 筆寫本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書誌學報』 33, 韓國書誌學會, 2009.

장울연, 「藏書閣 소장 冊文拓印本の 현황과 특징」, 『藏書閣』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장울연, 「清代 조선왕실 冊封詔命과 조선 敎命의 형태 비교연구」, 『藏書閣』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60) 조선시대에 冊文은 그 재질에 따라 金冊·玉冊·竹冊으로 나눌 수 있다. 金冊은 대한제국기에 황태자·황후 등을 책봉할 때에 발급하는 문서이며, 玉冊은 조선시대에 왕비를 책봉하거나 선대왕이나 왕실 구성원의 尊號를 加上할 때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가운데 왕비를 책봉하는 옥책이 왕세자를 책봉하는 죽책과 마찬가지로 敎書와 문서 양식이 유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冊文 가운데 왕세자를 책봉하는 죽책을 중심으로 敎書와 비교하고자 한다.

구성원인 妃·嬪,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嬪 등을 冊封할 때 죽책 또는 옥책과 함께 내리는 문서로 紅·黃·靑·白·黑의 오색비단에 좌우에 軸이 있는 두루마리 형태로 이루어졌다.<sup>561)</sup> 죽책은 국왕이 왕실의 구성원을 책봉할 때에 교명과 함께 내리거나 국왕이 왕실의 구성원에게 諡號·尊號·徽號를 올릴 때에 발급하는 문서이다.<sup>562)</sup> 죽책 가운데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嬪을 책봉할 때에 내리는 죽책이 교서의 문서 양식과 유사하였다.

교서와 교명·죽책의 비교는 현전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1538년(중종 33) 權機 사명훈유교서와 1736년(영조 12)에 영조가 思悼世子를 왕세자로 책봉할 때에 내린 교명과 죽책을 통해 문서 양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圖 VI-1> 1736년(영조 12) 思悼世子(李愔) 敕命<sup>563)</sup>



<圖 VI-2> 1736년(영조 12) 思悼世子(李愔) 竹冊<sup>564)</sup>

문서 양식에서 교서와 교명·죽책은 始面·본문·발급 일자가 서로 다르지만 교서와 교명은 起頭語·結辭·寶印이 동일하였고, 교서와 죽책은 기두어·결사가 동일하였다. 교명의 시면은 문서 좌측의 陸降龍 사이에 ‘敎命’ 두 글자를 篆文로 크게 기재하였다. ‘敎

561) 손계영, 앞의 논문, 2004, 111~122쪽.

562) 장을연, 앞의 논문, 2008, 2쪽.

563) 1736년(영조 12), 35.0×313.0cm, 국립고궁박물관 所藏.

국립고궁박물관,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2008, 24~25쪽.

564) 1736년(영조 12), 24.8×92.7cm, 국립고궁박물관 所藏.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학술총서[3] 영조어필』, 2012, 159쪽.

命'의 전문은 正本과 副本을 써서 내은 후에 국왕의 재가를 갖춘다는 뜻으로 嘉禮都監이나 冊禮都監에서 草記를 올리고 封入한 후에 국왕의 뜻을 취하여 교명에 사용하였다.<sup>565)</sup> 죽책의 시면은 '維歲次丙辰三月乙未朔十五日己酉'로 기재하여 일반적인 祭文의 시면과 같이 기재하였다. 기두어와 결사에서 교명과 죽책은 모두 '王若曰'과 '故茲教示 想宜知悉'로 기재하여 교서의 기두어·결사와 동일하게 기재하였다. 발급 일자에서 교명은 '丙辰三月十五日'로 기재하여 干支와 월일을 기재하였는데, 일부 교명의 경우에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죽책의 발급 일자는 결사의 다음 행에 기재하지 않고 시면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명의 寶印은 교서와 마찬가지로 「施命之寶」를 안보하였으며,<sup>566)</sup> 그 위치는 발급 일자의 위 또는 陞降龍 사이에 안보하였으나, 죽책의 경우에는 문서의 재질이 대나무이기 때문에 보인을 안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表 VI-1> 使命訓諭教書와 敕命·竹冊의 비교

	1538년(중종 33) 權檢 使命訓諭教書	1736년(영조 12) 王世子(思悼世子, 李愐) 敕命	1736년(영조 12) 王世子(思悼世子, 李愐) 竹冊
始面	敎慶尙道觀察使權檢書	敎命(大字篆文)	維歲次丙辰三月乙未朔十五日己酉
起頭語	王若曰	王若曰	王若曰
結辭	故茲教示 想宜知悉	故茲教示 想宜知悉	故茲教示 想宜知悉
본문	①惟卿行義有素 雅望夙著 ②茲命卿爲本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①惟我元子 生而岐嶷 儼然德容 ②命爾元子愐爲王世子	①咨爾元子愐 予何幸而晚舉 天又鍾以異姿 ②茲命爾爲王世子
발급 일자	嘉靖十七年三月初三日	丙辰三月十五日	維歲次丙辰三月乙未朔十五日己酉
寶印			없음
	施命之寶	施命之寶	
재질	供上紙	비단	대나무

565) 『銀臺便攷』 「禮房攷」 嘉禮: 敎命篆文, 書出正·副本, 以備睿裁之意, 自都監草記, 封入, 取旨用之. [金寶篆文同.]

566) 『銀臺便攷』 「吏房攷」 大寶: 施命之寶, 安於敎命·敎旨·敎書.

본문에서 사명훈유교서는 전반부에 수취자의 품성이나 능력 등을 언급하고, 후반부에 관찰사 등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명과 죽책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명과 죽책은 전반부에 思悼世子の 품성이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후반부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교명과 죽책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명에서 본문의 전반부에는 사도세자에 대해 ‘惟我元子 生而岐嶷 儼然德容(오직 우리 원자는 태어나서 모습이 뛰어나고 덕용이 근엄하여)’이라고 하였고, 후반부에는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내용을 ‘命爾元子愷爲王世子(너 원자 선을 왕세자로 삼도록 명하니)’라고 하였다. 죽책에서 본문의 전반부에는 사도세자에 대해 ‘咨爾元子愷 予何幸而晚舉 天又鍾以異姿(아! 너 원자 선은 내가 어찌 다행스럽게 늦게 얻었는데 하늘이 또 특이한 자질을 주었구나)’라고 하였고, 후반부에는 왕세자로 책봉한다는 내용을 ‘茲命爾爲王世子(이에 너를 왕세자로 삼도록 명하니)’라고 하였다.

교서와 교명·죽책의 문서 양식이 유사한 것은 교명·죽책이 교서의 문서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명은 조선 초기에 종이에 발급되었다가 1437년(세종 19)에 良媛 權氏를 세자빈으로 책봉할 때에 중국의 제도에 따라 五色絲로 織用하고 黃金軸으로 장식하였으며, ‘敎命’ 두 글자를 篆文으로 始面に 기재하고 본문에는 ‘敎旨 權氏爲王世子嬪者’로 하였다.<sup>567)</sup> ‘敎旨…爲…者’와 같이 조선 초기에 告身의 문서 양식으로 발급되었던 교명은 이후 1448년(세종 30)에 元孫 弘曄를 王世孫으로 책봉하는 교명에서 처음으로 ‘王若曰’이 기재되어 문서 양식이 교서와 동일하게 되었다.<sup>568)</sup> 죽책의 경우에는 정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죽책은 알 수 없으나, 1400년(정종 2)에 태종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죽책은 ‘王若曰’·‘於戲’·‘故茲敎示 想宜知悉’이 기재되어 문서 양식이 교서와 동일하게 되었다.<sup>569)</sup> 이를 통해 볼 때, 조선 초기에 교명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죽책의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때에 조선의 개국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교

567) 손계영, 앞의 논문, 2004, 105쪽.

『世宗實錄』 19년(1437) 2월 28일(戊子): 上以遠遊冠絳紗袍, 御勤政殿, 冊封良媛權氏爲王世子嬪如儀. 以知中樞院事成達生爲使, 禮曹判書河演爲副使. 前此冊封敎命, 皆書以紙, 至是始依中國之制, 織用五色絲, 飾以黃金軸, 篆織敎命二字於始面, 次書曰, 敎旨權氏爲王世子嬪者.

568) 장을연, 앞의 논문, 2010, 151쪽.

『世宗實錄』 30년(1448) 4월 3일(戊午): 封元孫弘曄爲王世孫. 其敎命曰, 王若曰, 於戲. 予承丕緒, 思祖宗附托之重, 夙夜寅畏. 粵稽古昔帝王, 國本既端, 又世其胤, 所以重宗統繫人心也. 惟爾元孫弘曄天資岐嶷, 稟性英明, 乃今年可就師. 爰命爾爲王世孫, 爾其親近正人, 緝熙于學, 惟新厥德, 以孚永世之休. 敬哉.

569) 『定宗實錄』 2년(1400) 2월 4일(己亥): 冊立弟靖安公 [諱] 爲王世子, 旬當軍國重事. 王若曰, 建儲貳, 所以正國本, 崇位號, 所以定人心. 茲遵典章, 庸舉冊禮. 惟爾靖安公 [諱], 資全文武, 德備英明. 當太上開國之初, 克倡大義, 及寡兄定社之日, 特立膚功. 矧謳謠之有歸, 宜監撫之是任. 用命爾爲王世子. 於戲. 知人不易, 爲子亦難. 以親以賢, 旣處承祧之位, 惟忠惟孝, 用禪爲政之方. 故茲敎示, 想宜知悉.

서의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嬪 등의 왕실 구성원을 책봉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의례이며, 이러한 왕실 구성원을 책봉할 때에 국왕은 교명과 축책을 내려주었다. 왕실 구성원의 책봉이라는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었던 교서의 문서 양식으로 교명과 축책을 작성하였고, 아울러 국왕의 후계자라는 특별한 지위와 왕실의 존엄성 등을 보이기 위하여 종이가 아닌 비단과 대나무로써 문서의 재질에 차이를 주고 교명과 축책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敎書와 批答

조선시대에 비답은 국왕이 사직을 청하는 관원의 上疏 또는 筭子에 대하여 답을 내리는 문서로 비답이 발급된 시기나 상소·차자를 올리는 관원에 따라 批答敎書·不允批答·批答諭書·批答有旨 등의 다양한 문서로 발급되었다. 비답으로 발급된 각종 문서를 살펴보면, 비답교서는 앞에서 살펴본 李滉 批答敎書가 대표적인 경우로 국왕이 이황과 같은 명망 있는 학자를 禮遇하기 위하여 이황의 사직 상소에 대해 비답교서를 내려주었다. 불윤비답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의 대신이 사직 상소를 올리거나 初度에서 三度까지 올린 呈辭에 대하여 국왕이 允許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리는 비답이다.<sup>570)</sup> 그런데 관원이 四度 이상으로 사직 상소를 올릴 경우에도 불윤비답을 내리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좌의정 李性源이 十八度로 올린 사직 상소에 대하여 정조가 불윤비답을 내린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sup>571)</sup> 비답유서는 관원의 사직 상소에 대해 국왕이 유서의 양식으로 내리는 비답으로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광해군이 鄭述와 鄭仁弘이 올린 사직 상소에 대해 敦諭하는 비답을 내릴 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sup>572)</sup> 광해군대 이후에는 始面에 ‘諭’字로 시작하지만, 諭書之寶가 안보되어

570) 『銀臺便攷』 「吏房攷」 呈辭: 大臣呈辭, 初度至三度不允批答, 四度以下敦諭, 或別諭, 或安心調理. [庚子五月初一日, 甲辰六月二十六日, 大臣呈辭時, 因下詢, 承旨考例, 入稟如此, 而其後例各不同.]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藏書閣』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153쪽.

심재권, 「국왕문서 ‘批答’의 연구」, 『古文書研究』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67~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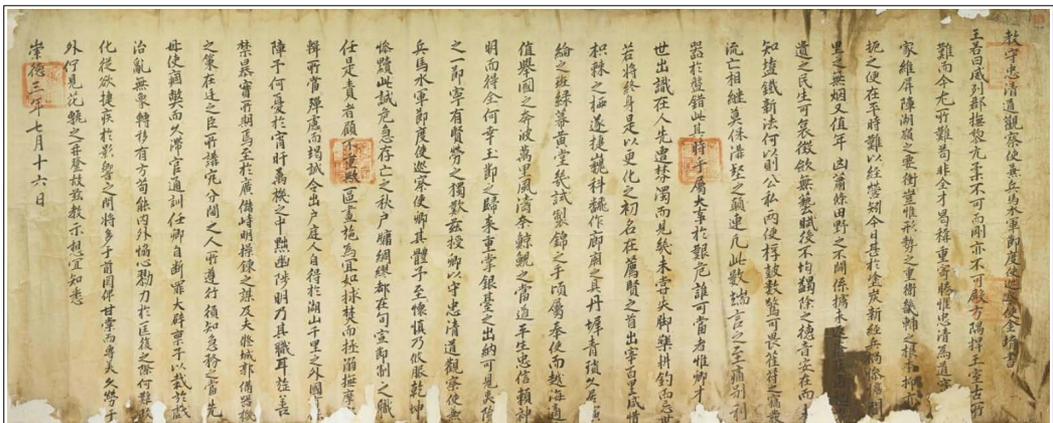
571) 『承政院日記』 정조 13년(1789) 6월 16일 (庚午): 左議政李性源十八度呈辭不允批答, 王若曰, 上下之情志相孚, 卿宜見諒, 前後之辭遜太過, 予欲無言, … 亟回已決之退心. 所辭宜不允. 故茲教示, 想宜知悉.

572) 『光海君日記[正草本]』 卽位年(1608) 4월 24일(庚辰): 左承旨申滉啓曰, 鄭仁弘·鄭述等處敦諭, 若依有旨例爲之, 則不過承旨傳諭王言而已. 且用政院印信成貼, 事體似輕, 恐乖古者璽書徵賢之意. 臣等反覆思量, 亦未得恰當之規, 此朝來所以取稟者也. 諭書體意, 初面書曰, 諭某官. 其次入實事, 至末端, 有故諭二字, 大年號亦安御寶, 此則以王言, 直諭之也. 旣曰敦諭, 則以諭書之式諭之, 恐似無妨, 而事係新規, 臣等亦不敢

있지 않은 비답유서가 발급되었다. 비답유지는 관원의 사직 상소에 대해 국왕이 승정원에 답을 내려 유지의 양식으로 내리는 비답이다.<sup>573)</sup> 이 밖에 ‘答曰 省疏具悉’ 또는 ‘答曰 省筭具悉’로 문서의 본문이 시작되지만 御寶나 官印이 없는 비답도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비답 가운데 불운비답은 교서와 문서 양식이나 발급 과정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서와 불운비답의 문서 양식을 비교하면, 始面과 본문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起頭語·結辭·寶印과 발급 일자의 기재 방식이 동일하였다. 불운비답의 문서 양식은 시면에 수취자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이어서 身病 등의 呈辭 사유와 呈辭 횃수인 ‘初度呈辭·再度呈辭·三度呈辭’ 등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不允批答’을 기재하였다. 시면에서 ‘不允批答’은 행을 바꾸고 시면의 첫 행보다는 높고 ‘王若曰’보다는 낮은 높이에 기재하였다. 본문은 기두어인 ‘王若曰’과 결사인 ‘故茲教示 想宜知悉’이 교서의 기두어·결사와 동일하였다. 본문 내용은 주로 사직을 만류하는 국왕의 명령을 駢麗文의 형식으로 수록하였으며,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바로 앞에는 ‘所辭宜不允(사직한 바는 마땅히 윤택하지 않는다)’을 기재하였다. 발급 일자는 교서와 동일하게 중국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고, 寶印도 교서와 동일하게 「施命之寶」를 안보하였다.

교서와 불운비답의 문서 양식을 1638년(인조 16) 金堉 使命訓諭教書와 1653년(효종 4) 金堉 不允批答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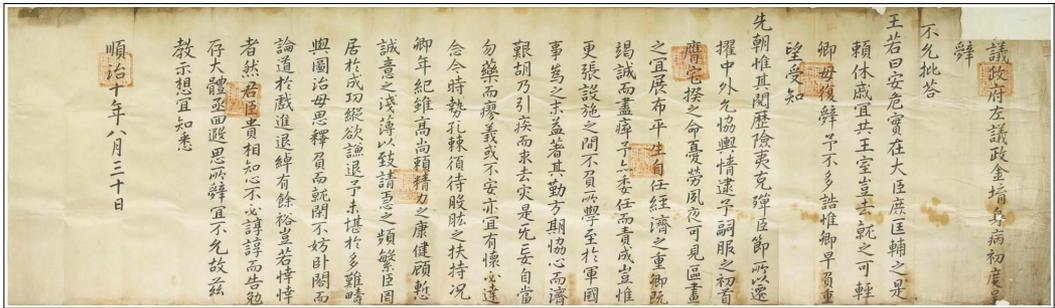


〈圖 VI-3〉 1638년(인조 16) 金堉 使命訓諭教書<sup>574)</sup>

擅便斷定, 恭惟睿裁. 傳曰, 自院察爲.

「조선시대 諭書 연구」에서는 鄭述에게 내린 유서를 ‘관원을 부르는 諭書’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는데, 본문에서는 批答諭書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노인환, 앞의 논문, 2009, 95~97쪽)

573) 노인환, 「조선시대 임명 관련 上來有旨 연구」, 『古文書研究』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30쪽.



<圖 VI-4> 1653년(효종 4) 金墉 不允批答<sup>575)</sup>

<表 VI-2> 敎書와 不允批答의 비교

	1638년(인조 16) 金墉 使命訓諭敎書	1653년(효종 4) 金墉 不允批答
始面	敎守忠淸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金墉書	議政府左議政金墉 身病初度呈辭 不允批答
起頭語	王若曰	王若曰
結辭	故茲敎示 想宜知悉	故茲敎示 想宜知悉
본문	茲授卿以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所辭宜不允
발급 일자	崇德三年七月十六日	順治十年八月三十日
寶印		
	施命之寶	施命之寶

발급 과정에서 불운비답과 교서는 製述·入啓·裁可·書寫·安寶의 과정이 동일하였다. 불운비답의 발급 과정은 먼저 대신이 올린 呈辭에 대하여 국왕이 불운비답을 내릴 것을 결정하면 국왕은 傳敎에 내려서 예문관에 불운비답의 제술을 분부하였다. 예문관에서는 불운비답의 제술관으로 예문관 관원이나 지제교를 겸직한 관원을 결정하였고, 해당 제술관이 불운비답의 본문을 제술하여 올리면 승정원의 승지가 入啓하여 국왕의

574) 1638년(인조 16), 92.0×23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敎書 5(190882).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54~55쪽.

575) 1653년(효종 4), 88.0×130.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批答 3(190879).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84~85쪽.

재가를 받았다.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에 승정원의 注書가 書寫하고 다시 승정원의 승지가 入啓하여 寶를 啓請한 후에 「施命之寶」를 安寶하였다. 이렇게 발급된 불운비답은 史官이 대신에게 직접 가서 전하였다.<sup>576)</sup> 이와 같이 교서와 불운비답의 발급 과정이 동일한 것은 문서 양식이 서로 비슷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본문 내용이 駢麗文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문관의 관원이나 지제교가 제출한 후에 국왕의 재가를 받는 등의 발급 과정이 동일하였다.

조선시대 교서와 불운비답은 국왕이 대신을 禮遇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왕이 대신의 呈辭를 允허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전달할 때에 대신에게 格式을 갖추고 禮意를 지켜 待遇하기 위해 교서의 양식을 차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李滉이 올린 사직 상소에 대하여 선조가 비답을 내릴 때에도 이항을 禮遇하기 위하여 비답교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 1.3 敎書와 綸音·訓諭諭書

조선시대 율음과 훈유유서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명령을 관원 및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문서이다. 이들 문서는 대부분 문서의 수취자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점에서 교서 가운데 중외반교서와 비슷한 유형의 문서로 볼 수 있다. 중외반교서와 율음·훈유유서의 비교는 1796년(정조 20)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敎書, 1757년(영조 33) 畿民 綸音, 1761년(영조 37) 江原道方伯守宰軍民 訓諭諭書를 통해 각 문서의 양식과 내용, 그리고 발급 사유 등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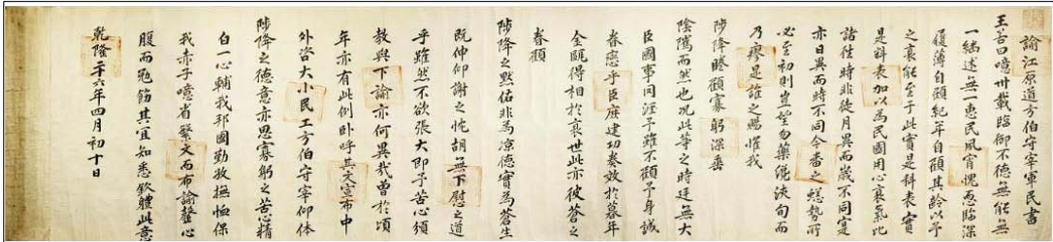
576) 『銀臺便攷』 「吏房攷」 呈辭: 大臣呈辭, 不允批答批下, 則書出傳敎, 分付藝文館, 知製敎撰進, 入啓. 啓下後, 堂后正書. [如敎書] 入啓時, 寶啓請, 安寶後, 史官往傳.

『銀臺便攷』 「禮房攷」 弘文館: 凡時急詞命, 行公玉堂代撰, 如各樣祭文·各樣敎書, 及大臣不允批答, 皆自藝文館, 排定製進.

『六典條例』 「吏典」 呈辭: ○大臣呈辭, 不允批答, 則使藝文館或知製敎撰進. 啓下後, 堂后正書, [如敎書式] 入啓時, 寶啓請安寶, 史官往傳. [四度以下, 敦諭或別諭. ○安心調理批下, 則書出傳敎後, 正書, 招致, 司錄傳給.]



<圖 VI-5> 1757년(영조 33) 畿民 綸音577)



<圖 VI-6> 1761년(영조 37) 江原道方伯守宰軍民 訓諭諭書578)

<表 VI-3> 中外頒教書와 綸音·訓諭諭書의 비교

	1796년(정조 20)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教書	1757년(영조 33) 畿民 綸音	1761년(영조 37) 江原道方伯守宰軍民 訓諭諭書
始面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諭畿民綸音	諭江原道方伯守宰軍民書
起頭語	王若曰	王若曰	王若曰
본문	茲於本月初八日 以贈領議政文正公金麟厚 從祀于文廟之無	況畿甸之民 再次山陵 其困甚矣 今年畿甸三十六官結錢 特爲蕩減 揄揚德意爲奏	咨大小臣工方伯守宰 仰體陟降之德意 亦思寡躬之苦心 精白一心 輔我邦國 勤孜撫恤 保我赤子
結辭	故茲敎示 想宜知悉	故茲諭示 咸須知悉	其宜知悉 欽體此意
발급 일자	嘉慶元年十一月初九日	乾隆二十二年七月初四日	乾隆二十六年四月初十日
寶印			
	施命之寶	諭書之寶	諭書之寶

먼저 중의반교서와 윤음·훈유유서의 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始面에는 국왕이 명령을 전달하는 대상을 기재하였다. 중의반교서는 ‘敎’字와 ‘書’字 사이에 ‘中外大小臣僚耆老

577) 1757년(영조 33), 52.6×383.2cm, 安城 東萊鄭氏 瓢泉 鄭弘淳 後孫家 所藏.

578) 1761년(영조 37), 60.0×240.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諭書 12(奎25184).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114쪽.

軍民閑良人等’을 기재하였고, 윤음은 ‘諭’字와 ‘綸音’ 사이에 ‘畿民’을 기재하였으며, 훈유유서는 ‘諭’字와 ‘書’字 사이에 ‘江原道方伯守宰軍民’을 기재하였다. 중외반교서는 전국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수취 대상을 ‘中外’로 광범위하게 기재하였으나, 윤음은 경기도 백성에게 발급되었고 훈유유서는 강원도의 관원과 군민에게 발급되었기 때문에 수취 대상에 해당 지역만 기재하였다.

본문에서 起頭語는 세 문서가 동일하게 ‘王若曰’로 시작하였으나, 結辭는 국왕이 내린 명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다. 중외반교서의 결사는 여타 교서와 동일하게 ‘故茲教示 想宜知悉’이었으나 윤음의 결사는 ‘故茲諭示 咸須知悉(그러므로 이에 유지하니 모두 모름지기 자세히 알아야 한다)’이었고 훈유유서의 결사는 ‘其宜知悉 欽體此意(그 마땅히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이 뜻을 공경히 본받아라)’이었다. 결사 다음 행에 기재되는 발급 일자도 세 문서가 동일하게 淸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다. 세 문서의 寶印은 서로 달랐는데, 중외반교서는 「施命之寶」를 안보하였으나, 윤음과 훈유유서는 「諭書之寶」를 안보하였다.<sup>579)</sup>

이어서 중외반교서와 윤음·훈유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문서는 발급 사유에 따라 문서의 내용이 따라 서로 달랐다. 金麟厚 文廟從祀 中外頒教書는 문정공 김인후를 문묘에 從祀하는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전국에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인후의 문묘 종사가 유학을 위해 도통을 밝히고 후학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이며 이를 통해 中外의 大小臣僚와 耆老·軍民·閑良人 등이 본보기로 삼고 교화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畿民 綸音은 1757년(영조 33)에 가뭄이 매우 심하였는데, 당시 심한 가뭄에 비가 내린 것을 선대 慈聖의 은혜임을 밝히고, 아울러 京畿 지역의 백성들이 두 번 山陵의 부역에 고생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結錢을 감해 주라는 내용이었다. 江原道方伯守宰軍民 訓諭諭書는 1761년(영조 37)에 영조가 자신의 병환을 치료한 후에 영조 자신이 쾌유한 것과 나라가 잘 다스려진 것에 대해 선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강원도의 方伯·守宰·軍民이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보존하며 지방의 관원들은 해당 고을의 백성들을 잘 구휼할 것을 훈유하였다. 훈유유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전국의 八道·兩都(開城과 江華)에도 동일한 내용을 내려 보냈는데, 서울에 내려진 훈유유서의 시면에는 ‘諭大小臣工軍民等書’라고 하였고, 八道와 兩都에 내려진 훈유유서의 시면에는 ‘諭某道方伯守宰軍民書’와 ‘諭某府留守軍民書’라고 기

579) 綸音은 정조 연간에 奎章閣이 설치되고 奎章閣의 閣臣이 윤음을 製述한 경우에는 윤음에 「奎章之寶」를 안보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794년(정조 14) 9월 22일에 正祖가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내린 「諭諸道道臣綸音」에는 「奎章之寶」를 안보하였다.

재하였다.<sup>580)</sup>

중외반교서와 윤음·훈유유서는 문서를 발급하는 사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중외훈유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儒賢을 문묘에 종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배향공신을 종묘에 배향하거나 국가에 功이 있는 관원을 공신으로 녹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왕의 즉위, 선왕이나 왕실 구성원의 尊號 加上, 국왕의 혼례, 왕세자의 冠禮 등과 같이 국가의 각종 儀禮와 慶事를 전국에 알릴 때에도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

이와 같이 중외반교서로 내려지는 국왕의 공식적인 명령 이외에 국왕이 관원 및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명령을 내릴 때에 윤음과 훈유유서를 내려주었다. 예를 들어 윤음의 경우에는 영조 대에 蕩平·均役과 같은 주요한 정책이나 禁酒·節用·刑政·科擧와 같은 세부 정책에 국왕의 의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윤음을 내리기도 하였다.<sup>581)</sup> 또한 현전하는 훈유유서를 통해 국왕이 내린 명령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기간에 왜군에 붙잡힌 백성들에게 적진에서 나오라는 내용, 평안도관찰사에게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내용, 삼남 지방의 가뭄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饑民의 구휼을 당부하는 내용, 火災를 당한 강원도 지역의 新舊還穀·雜役·身布·山稅·海稅를 1년간 감면하라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sup>582)</sup>

#### 1.4 敎書와 閣臣敎旨·春坊敎旨

조선시대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정조 연간과 고종 연간에 새롭게 생긴 문서 제도로 기존에 『경국대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따라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관원에게 발급되었던 告身에 敎書의 문서 양식을 새롭게 결합시킨 문서이다.<sup>583)</sup> 정조와 그 이후에 즉위하였던 국왕은 閣臣이라고 불리는 규장각 관원을 임명할 때에 각신교지를 발급하였으며, 고종은 세자시강원의 별칭인 春坊의 관원을 임명할 때에 춘방

580) 노인환, 앞의 논문, 2009, 80~83쪽.

『英祖實錄』 37년(1761) 4월 8일(丁丑): 特命建明門, 以權停禮頒敎, 令政院下諭于八道·兩都, 因大臣禮曹堂上所請也.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4월 8일(丁丑): 八道·兩都, 同日自政院下諭, 而京宣諭頭辭, 卽稱曰, 諭大小臣工軍民等書. 外宣諭頭辭, 卽稱曰, 諭某道方伯守宰軍民·某府留守軍民書, 而按諭書實.

581) 김백철, 「英祖의 繪音과 王政傳統 만들기」, 『藏書閣』 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47쪽.

582) 노인환, 앞의 논문, 2009, 77~90쪽.

583) 『六典條例』 「禮典」 奎章閣: 閣臣除拜, 撰麻宣敎. [奉謨堂肅拜前, 毋得書題名錄.]

교지를 발급하였다. 각신교지와 춘방교지의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과 각 문서의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84)</sup>

각신교지는 1781년(정조 5) 2월 11일에 정조가 좌승지 徐有防에게 규장각의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와 관련해서 내린 備忘記를 통해 시행되었다. 비망기의 내용에는 제학으로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규장각에서 교서를 撰述하고 「奎章之寶」를 安寶해서 전해주는 것과 직제학 이하에게 교서를 宣讀하는 것에 대해 규장각에서 상고한 후에 아뢰라는 내용이였다.<sup>585)</sup> 이틀 후인 13일에 정조는 규장각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에 대한 傳敎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규장각의 提學·直提學·直閣·待敎에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규장각에서 교서를 撰述하고 「규장지보」를 안보해서 내려주라는 것이였다. 또한 宣敎하는 글을 ‘敎旨’라고 칭하고, 교서의 句數는 간결하고 번잡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으며, 外廷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규장각에서 찬술하게 하라는 내용이였다.<sup>586)</sup> 이러한 각신교지는 정조가 규장각 閣臣을 특별히 待遇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문서 제도로 볼 수 있다.<sup>587)</sup>

현전하는 각신교지를 통해 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각신교지는 告身의 구성 요소와 교서의 구성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始面은 ‘敎旨’ 두 글자가 기재되어 있어 文武官四品以上告身の 始面과 동일하였다. 본문에서 起頭語인 ‘王若曰’로 시작한 것과 규장각 관원의 중요성과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을 駢麗文으로 구성한 것은 교서의 본문과 동일하였다. 본문의 끝부분에서 ‘以+ 품계·관직·성명+ 爲+ 품계·관직+ 者(以某階某職某爲某階某職者)’로 규장각 관원에 임명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은 文武官四品以上告身과 동일하였다. 발급 일자는 중국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여 고신과 교서와 동일하였다. 寶印은 정조의 비망기와 전교에서 「奎章之寶」를 안보하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각신교지에는 「濬哲之寶」를 안보하였다.<sup>588)</sup>

584) 閣臣敎旨에 대해서는 김건우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김건우, 「규장각의 문서제도와 그 위상」,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12, 183~185쪽.

585) 『承政院日記』 정조 5년(1781) 2월 11일(甲寅): 又以備忘記, 傳于徐有防曰, 內閣之任, 不輕而重, 沈每事就做龍圖故事, 所有於閣學士者, 可不爲於閣提學乎. 從今提學新拜之人, 自本閣撰敎書, 安本閣所在奎章之寶以傳, 直提學以下宣敎書當否, 令本閣博考以聞.

586) 『正祖實錄』 5년(1781) 2월 13일(丙辰): 敎曰, 內閣每事取做龍圖閣, 所有於閣學士者, 可不爲於閣提學乎. 從今提學, 至待敎新拜之人, 自本閣撰敎書, 安奎章之寶以傳. 敎書與敎旨差間, 敎書卽宋詔體也, 敎旨卽宋告身也. 今以宣敎之文, 稱以敎旨, 則可謂做古酌今, 有據無礙. 至於篇作句數, 宜簡不宜煩. 此不必煩於外廷, 只是自內閣撰出, 宣於內閣之臣. 卿等照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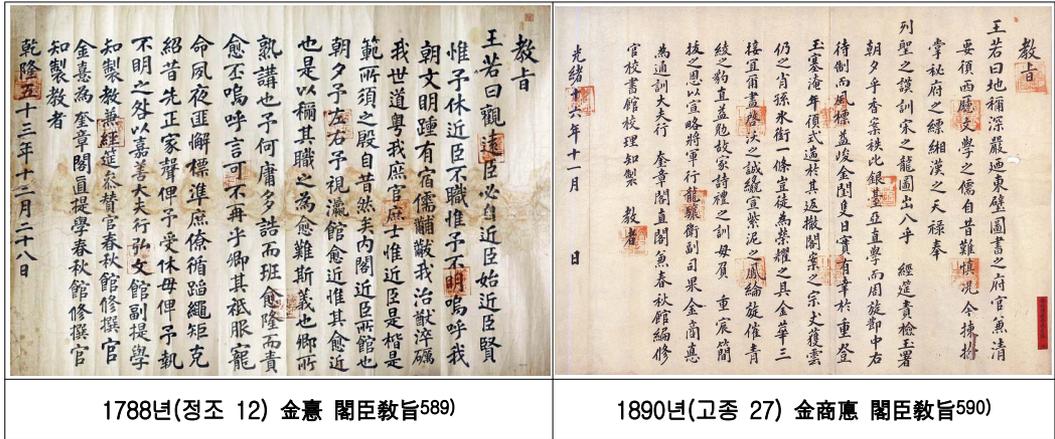
587) 김건우, 위의 논문, 2012, 185쪽.

588) 『內閣日曆』 정조 5년(1781) 6월 11일(壬午): 沈念祖, 以領籤啓曰, 直提學鄭志儉敎旨安寶次, 濬哲之寶請出. 『大典會通』 「禮典」 璽寶: 《增》… 濬哲之寶. [用於閣臣敎旨.]

『銀臺便攷』 「吏房攷」 大寶: 濬哲之寶, 安於閣臣官敎.

濬哲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紐長四寸二分, 廣二寸八分, 高二寸, 刻深半分, 郭廣一分

<圖 VI-7> 金憲와 金商憲의 閣臣教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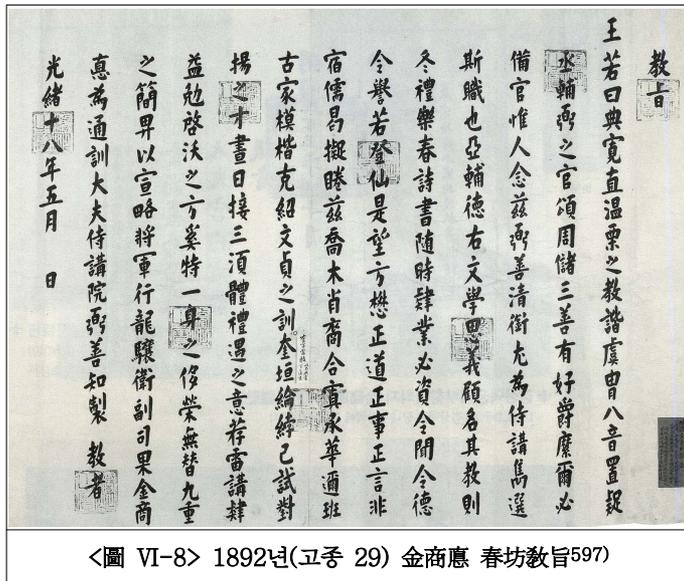


춘방교지는 1889년(고종 26) 7월 18일에 고종이 右承旨 閔致憲에게 춘방교지에 대한 傳教를 내리면서 시행되었다. 전교에서 고종은 春坊의 관직이 본래 清雋하여 優待하는 뜻을 보여야 하므로 輔德 이하의 時任 관원과 새로 임명된 관원에게 교서를 撰出해서 특별히 반포하는 일을 定式으로 삼으라고 하였다.<sup>591)</sup> 같은 해 8월 5일에 고종은 「濬明之寶」의 제작을 명하였고,<sup>592)</sup> 10월 7일에 고종은 춘방교서에 「준명지보」를 안보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sup>593)</sup>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서 춘방교지를 교서 또는 춘방교서라고 하였으나, 세자시강원의 교사·규정·의례 등을 편찬한 『离院條例』에는 ‘春坊教旨’라고 하였고,<sup>594)</sup> 아울러 『이원조례』에서 시강원의 관원에게 내리는 教旨式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원조례』에 수록된 教旨式과 현전하는 춘방교지를 통해 문서 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원조례』의 教旨式은 ‘王若曰 云云 以某爲侍講院某官知製教者’라고 하였으며, 細註에서는 初行에는 教旨 두 자를 쓰고, 後行에는 연호와 월일을 쓴다고 하였

半, 安於閣臣教旨, 奉安大內.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45쪽)  
 589) 1788년(정조 12), 116.0×170.0cm, 서울대학교 규장각 所藏, 教旨 984(522495).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의 책, 1986, 331쪽.  
 590) 1890년(고종 27), 112.0×171.0cm, 保寧 慶州金氏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寄託.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獻 寄贈寄託目錄 11 - 保寧 慶州金氏 寄託典籍-』, 2006, 27쪽.  
 591) 『高宗實錄』 26년(1889) 7월 18일(壬戌): 教曰, 春坊之職, 本自清雋,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拜人, 自本院撰出教書, 特爲頒宣事, 自今著式.  
 592) 『高宗實錄』 26년(1889) 8월 5일(戊寅): 命造成大朝鮮國寶·濬明之寶·同文之寶·欽文之寶·命德之寶·廣運之寶.  
 593) 『高宗實錄』 26년(1889) 10월 7일(己卯): 命春坊教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  
 594) 『离院條例』(장서각 K2-2035) 傳教: ○春坊之職, 本自清雋,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除人, 自本院撰麻宣教 ○春坊教旨,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

다.595) 여기에서 云云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은 세자시강원 관원의 중요성과 국왕이 당부하는 내용을 駢麗文으로 구성하였다. 寶印은 1889년(고종 26)에 처음으로 제작된 「濬明之寶」가 안보되어 있다.596) 춘방교서의 문서 양식은 寶印을 제외하면 각신교지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告身の 구성 요소와 敎書의 구성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고종이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특별히 대우하기 위하여 춘방교지의 제도를 시행할 때에 각신교지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圖 VI-8> 1892년(고종 29) 金商憲 春坊教旨<sup>597)</sup>

교서와 각신교지·춘방교지의 문서 양식을 1638년(인조 16) 金堉 使命訓諭敎書와 1788년(정조 12) 金憲 閣臣敎旨, 1892년(고종 29) 金商憲 春坊敎旨을 통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95) 『离院條例』(장서각 所藏, K2-2035) 官職: ○輔德以下新除時, 皆宜敎旨. [敎旨, 入直中製進, 繕寫, 入直典書官舉行. ○敎旨安濬明之寶, 寶請出時, 典書官詣承政院, 陪來本院, 而還納時同.] 【敎旨式】王若曰, 云云. 以某為侍講院某官知製敎者. [初行書敎旨二字, 後行書年號月日.]

596) 『承政院日記』 고종 26년(1889) 8월 5일(戊寅): 以司謁口傳下敎曰, 大朝鮮國寶·濬明之寶·同文之寶·欽文之寶·命德之寶·廣運之寶, 造成之節, 令本營戶曹舉行.

濬明之寶, 玉, 方三寸二分, 臺高一寸一分, 龜紐長四寸, 廣二寸七分, 高一寸四分, 刻深半分, 郭廣一分半, 安於春坊敎旨, 奉安大內.(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36쪽)

597) 1892년(고종 29), 109.0×156.0cm, 保寧 慶州金氏 所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寄託.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獻 寄贈寄託目錄 11 -保寧 慶州金氏 寄託典籍-』, 2006, 27쪽.

<表 VI-4> 敎書와 閣臣敎旨·春坊敎旨의 비교

	1638년(인조 16) 金堉 使命訓諭敎書	1788년(정조 12) 金憲 閣臣敎旨	1892년(고종 29) 金商憲 春坊敎旨
始面	敎守忠淸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金堉書	敎旨	敎旨
起頭語	王若曰	王若曰	王若曰
結辭	故茲敎示 想宜知悉	없음	없음
본문 주요 내용	茲授卿以守忠淸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以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憲爲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敎者	以宜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金商憲爲通訓大夫侍講院弼善知製敎者
발급 일자	崇德三年七月十六日	乾隆五十三年十二月二十八日	光緒十八年五月 日
寶印			
	施命之寶	濟哲之寶	濬明之寶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의 문서 양식에 교서의 문서 양식을 혼합하여 새롭게 만든 문서 제도이다. 기존의 告身에서는 성명과 새로 임명된 관직만을 기재하였지만,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교서의 본문에 사용된 駢麗文의 문체를 도입하여 규장각 관원과 세자시강원 관원을 특별히 待遇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각신교지·춘방교지와 마찬가지로 교서에서도 국왕이 관원을 특별히 待遇하기 위해 교서를 발급하는 사례와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 본 致仕敎書에서 국왕이 연로한 관원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로 임명할 때에 교서를 내려주는 경우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에 대하여 문서 양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교명과 축책, 각신교지와 춘방교지는 문서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서의 문서 양식을 반영하였다. 문서의 수취 대상이 국왕과 관련 있는 왕실 구성원이거나 규장각과 세자시강원의 관원이기 때문에 책봉하거나 임명하는 문서를 발급할 때에 교서의 문서 양식을 반영하였다. 불운비답은 국왕이 대신을 禮遇하는 측면에서 교서의 문서 양식을 반영한 경우로 국왕이 대신의 辭職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내용을 교서와 동일한 문서 양식으로 발급하였다. 운음과 훈유유서는 교서로 내리는 국왕의 명령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교서의 문서 양식을 일부 반영하였다. 이것은 교서가 국왕문서 가운데 대표적인 문서이고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왕의 명령을 교서 이외에 다른 국왕문서로 전달할 때에도 교서의 문서 양식을 반영한 것이다.

## 2. 敎書 관련 처벌 규정과 사례

조선시대 교서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룰 수 없었으며, 매우 위엄 있고 특별한 문서로 인식하였다. 조선시대 법전인 『經國大典』에서는 조정의 관원이 길에서 香祝·敎書·諭書·宣醞·宣牌 등을 만나면 말에 내려서 몸을 굽히며, 이를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국왕이 내린 香祝·宣醞·宣牌와 함께 교서와 유서를 존중하고 공경했던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sup>598)</sup> 법전에 규정된 조항 이외에 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할 경우나 지방의 관원들이 국왕이 내리는 교서를 소홀하게 대할 경우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서의 내용이 격식에 어긋난 경우에 교서의 발급에 참여한 관원들을 처벌하였다. 1577년(선조 10) 11월에 선조는 명종 연간에 尹任 등 大尹 세력을 몰아내는데 공을 세운 衛社功臣을 削勳하고 윤임 등의 죄를 신원할 것을 명하고, 이를 종묘

598) 『經國大典』 「禮典」 朝儀: 大·小員人, 道遇香祝·敎書·諭書·宣醞·宣牌之類, 下馬鞠躬, 齋奉人, 不下馬. [遇供御之物, 則拱立.]

『燕山君日記』 3년(1497) 8월 24일(癸巳): 命司諫院鞠姜謙, 正言洪潤德啓, 若道遇敎書及宣傳標信, 則雖宰相·臺諫, 皆當下馬. 若只聞傳敎而去者, 則其聞敎者當避馬. 今命鞠姜謙, 於義未安. 傳曰, 諺曰, 狗項聖旨. 如小小之事, 亦皆書之於紙, 揭而示之, 然後可敬乎. 此謬言也.

와 사직에 고하고 中外에 頒布하기 위하여 대제학에게 중외반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sup>599)</sup> 그러나 대제학 金貴榮이 제출한 중외반교서는 吏讀를 사용하여 違格이 있었고, 또한 僞勳을 삭훈하려는 선조의 뜻이 교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는 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sup>600)</sup> 승정원에서는 대제학 김귀영과 지제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고,<sup>601)</sup> 이에 대해 선조는 대제학과 지제교에게 공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추고할 것을 명하였다.<sup>602)</sup> 결국 이조판서 李後白이 위사공신을 삭훈하는 중외반교서를 제출하였고, 1577년(선조 10) 12월 1일에 선조는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sup>603)</sup>

두 번째로 교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간략하거나 번잡한 경우에도 교서를 제출한 관원을 처벌하였다. 1676년(숙종 2) 10월에 숙종은 김좌명을 현종의 배향공신으로 선정하고 지제교 洪萬容에게 김좌명의 배향공신교서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배향공신 교서에서 김좌명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만용을 처벌하였다.<sup>604)</sup> 1716년(숙종 42) 윤3월에 숙종은 강원도관찰사 洪重夏의 사명훈유교서에 ‘新祠甫建於湖西’라는 한 구절이 잘못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를 제출한 지제교 權世恒을 推考하고 다시 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sup>605)</sup> 1764년(영조 40) 3월에 영조는 경기도관찰사 南泰齊의 사명훈유교서에서 그 내용이 매우 번잡하였기 때문에 교서를 제출한 지제교 李基德을 從重推考하였다.<sup>606)</sup>

599) 『宣祖實錄』 10년(1577) 11월 28일(庚辰): 政院啓曰, 削勳復爵, 告宗廟社稷, 曉諭中外, 令大提學製進何如. 傳曰, 議大臣, 稟定爲之. 大臣啓曰, 蕩滌改正, 事體重大. 宜以先王悔悟, 國人顛望, 上殿鬱悶, 不可不改之意, 令大提學製進. 傳曰, 知道.

600) 『宣祖實錄』 10년(1577) 11월 29일(辛巳): 備忘記曰, 削勳大事也. 今不可不詳審而處之, 見此製進之文, 則用入吏讀, 如常時傳旨, 無乃事體不重乎. 予意則先以今日復爵削勳, 傳旨捧承, 傳于政院, 次述教書, 備陳俱錄踏寶, 曉諭中外何如. 當初定罪之時, 既以教書頒之, 及伸削之日, 亦以教書頒之, 恐尤合也. 且上告宗廟, 事體不可不重. 政院議大臣回啓. 大臣議啓, 上教允當.

601) 『宣祖實錄』 10년(1577) 11월 29일(辛巳): 政院啓曰, 罷勳頒教, 不可不十分用意, 亦不可頃刻留滯. 況自上承先王之志, 順懿殿之教, 誅首惡, 而伸至冤, 大慰一國之心, 以定萬世之公論. 此何等盛舉, 而昨日教書之製進, 既不體上意, 多有未盡, 且違格例, 至用吏讀, 自上更加發揮, 至於更製, 以此留時引日, 使大哉王言, 不即傳布, 其慢忽不職甚矣. 請大提學金貴榮罷職, 知製教推考.

602) 『宣祖實錄』 10년(1577) 11월 29일(辛巳): 司憲府啓, 大提學·知製教推考. 答曰, 竝行公推考可也.

603) 『宣祖修正實錄』 10년(1577) 12월 1일(癸未): 下教中外, 布告削僞勳之意. 教書曰, 國家值不幸之運, 群兇肆毒於曩時, … 開國承家, 永絕小人之禍. 故茲教示, 想宜知悉. 上始命頒教大提學金貴榮製進, 詞意拙略. 上曰, 此是國家大事, 當詞明義備, 以曉中外, 豈可草草如此乎. 乃改命李後白製進.

604) 『肅宗實錄』 2년(1676) 10월 8일(丁巳): 憲府啓曰, 金佐明持正論於邪議波蕩之中, 半生被齟齬於世, 而終不少撓, 其所樹立, 誠可嘉尚. 配享教書, 所當舉實明言, 而代述之官, 若有所諱者然, 請當該知製教從重推考, 禮論一款, 更令添入. 從之. 當該知製教洪萬容也. 遂添一句曰, 禮論紛爭, 獨守三年之說.

605) 『肅宗實錄』 42년(1716) 윤3월 24일(甲申): 上下教曰, 代撰王言, 所宜審慎, 而江原監司洪重夏教書中, 新祠甫建於湖西, [謂重夏曾按湖西, 民建生祠也.] 一句語, 極爲未安. 知製教權世恒從重推考, 使之改入.

606) 『承政院日記』 영조 40년(1764) 3월 29일(庚辰): 承旨讀奏新畿伯南泰齊教書, 李基德製進文訖. 上曰, 代撰王言, 其宜簡重, 故曾已申飭, 近者太簡, 今日知製教李基德所撰教書, 其涉太煩, 從重推考, 以警後人.

세 번째로 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서의 내용에 중요한 용어를 누락시킨 경우에 처벌하였다. 1560년(명종 15) 8월에 명종의 왕세자인 順懷世子(李暉)의 관례를 거행한 후에 관례를 기념하여 백성들에게 사면하는 내용의 중외반교서를 반포하였다.<sup>607)</sup> 그런데 중외반교서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면하는 내용에 ‘국가의 綱常과 관계된 범죄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절을 수록해야 하는데,<sup>608)</sup> 교서의 본문에 ‘綱常’ 두 글자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교서를 입계할 때에 담당했던 해당 승지와 승정원의 長官인 도승지, 그리고 교서를 書寫한 書寫官을 처벌할 것을 아뢰었다.<sup>609)</sup> 이에 대해 명종은 도승지는 추고하고, 해당 승지는 遞差하며, 교서서사관은 파직한 후에 추고하라고 하였다.<sup>610)</sup>

네 번째로 교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관원을 처벌하였는데, 특히 사명훈유교서의 경우에 관찰사가 국왕에게 하직할 때까지 교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아서 해당 제술관과 승지 등을 처벌하였다. 1676년(숙종 2) 9월에 충청도관찰사 李溟翼이 하직할 때에 제술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사명훈유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승정원에서도 啓下를 재촉하지 않아서 교서의 발급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해당 승지와 제술관을 從重推考할 것을 아뢰었다.<sup>611)</sup> 사명훈유교서 이외에 치사교서의 경우에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제술관을 처벌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 9월에 영조는 홍문관교리 吳遂元이 奉朝賀 崔奎瑞의 치사교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수원을 종종추고하고 곧바로 교서를 제출하여 올리게 하였다.<sup>612)</sup>

607) 『明宗實錄』 15년(1560) 8월 30일(癸亥): 上御仁政殿, 頒赦, 受百官賀禮. [王世子冠禮故也.]

608) 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閑良人等書. 王若曰, … 自某月某日昧爽以前, 除謀叛·大逆, 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 妻妾謀殺夫, 奴婢謀殺主, 謀故殺人, 魘魅·蠱毒, 關係國家綱常, 賊污·強竊盜外, 雜犯死罪以下, 徒·流·付處·安置·充軍, 已至配所, 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有除之. 敢以有旨前事相告言,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 故茲敎示, 想宜知悉. 某年某月日.

609) 『明宗實錄』 15년(1560) 8월 30일(癸亥): 諫院啓曰, 政院居喉舌之地, 所當十分詳慎, 而今茲大慶之日, 大霑宣敎之時, 大小臣民, 咸就賀班, 莫不聳聽, 敎書之中, 綱常二字闕焉, 聞者駭怪. 其所失非輕. 色承旨請遞. 都承旨以一院之長, 嘗不致察, 請命推考治罪. 答曰, 色承旨已命推考, 不須遞之. 都承旨推考, 如啓.

610) 『明宗實錄』 15년(1560) 8월 30일(癸亥): 憲府啓曰, … 政院居敷奏之地, 凡出納之事, 所當詳察. 況親臨頒赦之敎, 乃誕告四境, 尤加詳審, 而綱常二字, 落書於敎文之內, 終使論言虧缺, 物情極爲未便. 色承旨請先罷. 都承旨居一司之長, 不能檢察, 請遞. 書寫官亦當詳察, 而關重二字落書, 所失非輕. 請竝先罷後推. 答曰, 公論之發當矣. 都承旨已命推考, 不可遞也. 色承旨遞差. 李璫等及書寫官等, 先罷後推事, 如啓.

611) 『承政院日記』 숙종 2년(1676) 9월 2일(辛巳): 府啓, … 頃日忠淸監司李溟翼下直時, 旣入闕下之後, 以敎書未及啓下, 還爲出去, 翌日乃得下直. 監司未下直之前, 製述官當及期製進, 政院當催促啓下, 正書以待, 而不此之爲, 致令下直監司, 旣入而還出, 稽緩之責, 在所難免, 請當該承旨及製述官, 竝從重推考.

612)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 9월 30일(庚午): 備忘記, 傳于柳綏曰, 國綱解地, 事事謬緩, 以奉朝賀敎書製述官言之, 啓下單子, 已過五日, 而尙不製進, 事甚未安. 從重推考, 今日內使之製進.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 10월 2일(壬申): 敎致仕奉朝賀崔奎瑞書. 王若曰, 藐寡躬, 惟一德之是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찰사가 부임할 때에 그 지역의 지방 관원들은 교외에 나와서 교서와 관찰사를 맞이해야 하는데, 교서를 맞이하지 않은 관원들을 처벌하였다. 1524년(중종 19)에 새로 부임한 전라도관찰사 俞汝霖이 전주부에 도착하였는데, 文科 鄉試의 試官과 儒生考講의 差使員으로 광주와 나주에 있던 전주부윤 崔命昌은 즉시 돌아와서 관찰사와 사명훈유교서를 맞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헌부에서 최명창의 파직을 요청하였고,<sup>613)</sup> 중종은 講書를 칭탁하고 교외에 나와 교서를 맞이하지 않았던 죄를 물어 전주부윤 최명창을 파직하였다.<sup>614)</sup>

이상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교서와 관련된 처벌은 법전에 成文化된 규정보다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 수록된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大明律』을 형법에 기본 바탕으로 두었고 『대명률』의 「制書有違律」과 「棄毀制書律」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서에 대한 成文化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敎書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의 비교,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과 사례, 그리고 교서의 역사·양식·발급 과정·유형과 제도 등을 망라하여 조선시대 교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선시대 교서는 중국 당·송의 문서 제도에 영향을 받은 고려시대 교서를 수용하여 조선의 개국 직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오백여 년 동안 시행된 유구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에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국왕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교서 이외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예를

仰, … 益殫共貞之義, 毋孤篤棊之誠. 故茲敎示, 想宜知悉. 弘文館校理臣吳遂元製進.

613) 『中宗實錄』 19년(1524) 11월 22일(壬午): 憲府啓曰, 全州府尹崔命昌, 請於前監司李思鈞, 爲文科鄉試試官及各官儒生考講差使員, 橫行光·羅等州, 新監司俞汝霖到府時, 命昌尙不卽還迎命, 至巡察使入府後乃歸, 請肅拜敎書, 汝霖以爲不可, 遂推三公兄, 令都事推命昌, 乃曰, 若不考講, 是任置前監司之命. 新監司奉敎書而往, 雖輕蔑監司, 獨不尊敎書乎. 巡察使金克愾亦以命昌爲非, 尙不知其非以謂, 考講亦公事, 以公事往, 有何不可, 請罷命昌. 傳曰, 崔命昌二品宰相, 不可輕易罷之, 況推考云, 畢推後, 罷職爲當.

614) 『中宗實錄』 19년(1524) 12월 11일(辛丑): 傳曰, … 前者, 全州府尹崔命昌, 托稱講書, 不郊迎敎書, 故亦令推考, 當治其罪. 近觀識理, 宰相亦不畏朝廷, 如是之風, 不可長也. 崔命昌·成世昌竝罷之, 以懲後可也.

들어 교명·죽책·비답·윤음·훈유유서·각신교지·춘방교지의 시행과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교서는 국왕이 중앙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발급되었다. 교서로 전달되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서는 관찰사·유수·통제사·통어사 등을 임명할 때에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내려주는 사명훈유교서이다. 국왕은 사명훈유교서를 통해 지방의 관찰사·통제사·통어사에게 행정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주었으며, 소속 군현의 수령과 절도사·방어사 등의 장수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였다.

세 번째로 조선시대 교서는 국왕이 관원들과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사명훈유교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급된 교서는 포상과 관련된 교서와 중외에 반포하는 교서이다. 국왕은 공신을 녹훈하는 공신교서와 선왕의 배향공신에게 발급하는 배향공신교서를 관원들에게 내려줌으로써 조정에서 국왕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왕은 관원들의 충성을 유발하였다. 또한 국왕은 중외반교서를 통해 국가의 경사나 중요한 행사·의례 등을 전국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아울러 백성들에게 죄를 사면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네 번째로 조선시대 교서의 발급 과정은 승정원을 중심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교서는 단순히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製述·入啓·裁可·書寫·安寶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 발급되었다. 교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서제술관·담당 승지·교서서사관 등이 자신의 맡은 임무를 수행하였고, 각 과정마다 교서의 내용이나 격식을 검토하면서 교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또한 교서의 발급과 관련해서 해당 관원들이 처벌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교서로써 문서화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II. 결론

조선시대에 국왕은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령을 문서로 발급하여 관원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는 어떠한 유형의 명령이 전달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국왕의 명령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규명할 수 있다. 또한 국왕의 명령이 문서로 발급되는 과정에서 승정원·홍문관·예문관 등의 중앙 아문에서 수행한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조선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왕의 명령과 의지를 전달하는 문서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敎書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교서의 기원을 규명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교서가 시행된 사례를 밝혔으며, 교서의 양식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서의 발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교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유형과 제도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교서와 다른 국왕 문서를 비교하고, 교서의 처벌 규정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교서의 위상과 의의를 규명하였다. 본론의 각 章과 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서의 기원과 시행은 조선시대 교서에 영향을 준 고려시대 조서와 교서에 대하여 『高麗史』·『東文選』·『東國李相國集』 등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실물 문서로 유일하게 현전하고 있는 1360년(공민왕 9) 鄭光道 敎書의 문서 양식을 살펴보고, 寶印을 일부 규명하였으며, 조선시대에 편찬된 邑誌와 文集에 수록된 정광도 교서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교서의 시행은 조선이 개국한 직후인 태조 연간에 발급된 교서를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시대 전 시기 동안에 발급된 교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서의 양식은 始面, 본문의 起頭語와 結辭, 발급 일자 등의 문서식과 교서에 사용된 寶印과 敎書紙에 대하여 시기에 따라 양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문서식에서 시면은 ‘敎’字와 ‘書’字 사이에 수취자의 品階·官職·姓名 등을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양식은 종종 연간에 완성되었다. 시면을 기재하는 방식은 교서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명훈유교서는 임명된 관직을 기재하였고, 공신교서는 공신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이 밖에 각 교서마다 교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를 시면에 기재하였는데, 배향공신교서는 ‘配享臣’, 문묘종사교서에는 ‘從祀文廟’, 치사교서는 ‘致仕奉朝賀’, 상가교서는 ‘賞加’를 각각 기재하였다. 교서의 본문은 ‘王若曰’의 기두어와 ‘故茲敎示

想宜知悉'의 결사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전반부에는 수취자의 성품·행실·학문·명성·경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후반부에는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발급 일자는 중국의 연호와 월일을 기재하였는데, 수취자가 崇明排淸한 인물일 경우에는 明·淸의 연호 대신에 干支를 기재하였다. 寶印은 조선의 개국 직후에는 교서에 고려의 보인인 「高麗國王之印」을 사용하였고, 이후 「朝鮮王寶」·「朝鮮國王之印」·「國王信寶」·「施命之寶」·「施命」·「朝鮮國王之印」의 변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493년(성종 24) 9월부터 조선 후기까지 「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敎書紙는 조선 전기에 供上紙를 사용하였다가 조선 후기에 草注紙와 楮注紙로 변경되었다. 교서지의 규격은 조선 전기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길었지만,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긴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교서의 양식을 연구함으로써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를 정의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교서의 眞僞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서의 발급 과정은 국왕의 명령을 문서화하는 과정으로 1756년(영조 32년)에 발급된 宋時烈 文廟從祀敎書와 製進單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왕은 교서의 발급이 결정된 후에 예문관의 관원이나 지제교를 敎書製述官으로 임명하였다. 교서제술관은 교서의 본문을 제술하여 그 내용을 제진단자로 작성하였으며, 승정원의 승지는 제진단자를 국왕에게 入啓하였다. 국왕은 제진단자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裁可하였고, 이후 敎書書寫官이 제진단자의 내용을 書寫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왕이 「施命之寶」를 安寶함으로써 교서가 발급되었다. 일부 교서의 경우에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거나 교서 자체가 소실된 경우에 다시 발급되기도 하였다.

교서의 유형과 제도는 실물 문서와 도판으로 현전하는 조선시대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와 교서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각 교서의 특징과 관련 제도를 규명하였다. 국왕이 교서를 발급하는 사유는 크게 任命·褒賞·儀禮·中外頒布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항목 안에 세부 분류된 교서의 정의·수취자·전달 과정·문서식 등을 살펴보았다.

임명 관련 교서로는 使命訓諭敎書가 있는데, 사명훈유교서는 국왕이 한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관원에게 임명된 사실을 알리는 使命의 내용과 부임지를 잘 다스리라는 訓諭의 내용으로 내려주는 교서이다. 사명훈유교서는 觀察使·留守·統制使·統禦使·摠戎使·守禦使 등으로 임명된 관원에게 내려주었으며, 이들 관원이 임명될 때에 국왕이 교서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사명훈유교서는 조선시대 교서 가운데 가장 많이 발급되었다. 사명훈유교서는 관찰사 등의 관원이 부임지로 출발하기 전에 궁궐에서 辭朝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전달하였으며, 또한 '朝辭를 하지 말고 바로 부임하라(除朝

辭赴任)’는 국왕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부임지에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명훈유교서는 국왕이 중앙에서 지방을 통치하고 지방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급하였다.

포상 관련 교서로는 功臣敎書·賞加敎書·致仕敎書·賜几杖敎書가 있다. 공신교서는 조선의 개국, 반정을 통한 정권교체, 역모 및 반란의 진압, 전란 등과 같이 특정한 사건에 공을 세워 錄勳된 공신에게 내리는 교서이다. 조선시대에 開國功臣부터 揚武功臣까지 28번 공신이 녹훈될 때에 공신교서가 내려졌다. 공신교서는 다른 교서와 다르게 포상 내역과 함께 녹훈된 공신의 명단이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공신교서의 발급은 조선 전기에는 功臣都監에서 담당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錄勳都監에서 담당하였다. 상가교서는 功이 있는 관원의 품계를 올려줄 때에 내리는 교서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약 백여 년 동안 시행되었다. 국왕은 공신 녹훈, 善政, 군량·군기 마련, 오랑캐·명화적 체포 등의 경우에 상가교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공을 세운 당하관을 당상관으로 加資하거나 무관을 2품 이상으로 加資할 때에 상가교서를 내려주었다. 치사교서와 사궤장교서는 국왕이 연로한 대신을 禮遇하기 위하여 발급한 교서로 치사교서는 나이가 많은 대신이 관직을 사직하고 奉朝賀에 임명될 때 내려주는 교서이며, 사궤장교서는 연로한 대신에게 几와 杖을 下賜할 때에 내려주는 교서이다. 국왕은 이러한 포상 관련 교서를 발급함으로써 관원들의 충성을 유발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의례 관련 교서로는 국왕의 혼례와 왕세자의 관례, 그리고 종묘와 문묘의 제례를 거행할 때에 발급하는 교서로 納采敎書·納徵敎書·納幣敎書·告期敎書, 冠禮敎書, 配享功臣敎書, 宗廟配享敎書, 文廟從祀敎書가 있다. 납채교서·납징교서·납폐교서·고기교서는 국왕이 혼례를 거행하여 妃·嬪를 맞이할 때에 婚書를 대신하여 비·빈의 부친에게 내리는 교서이다. 국왕이 비와 빈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서를 통해 국왕 혼례의 절차를 전달하였다. 관례교서는 왕세자·왕세손이 관례를 거행할 때에 내리는 교서이다. 왕세자의 관례는 왕세자가 왕위 계승자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왕은 국가적인 의례로써 관례교서를 내려주었다. 배향공신교서는 재위 기간 동안에 선왕을 보좌한 공으로 배향공신에 선정된 관원에게 致祭를 지낼 때에 내리는 교서이며, 종묘배향교서는 종묘에 배향공신의 위패를 배향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 사실을 반포하는 교서이다. 문묘종사교서는 孔子와 四聖·孔門十哲·宋朝六賢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에 儒賢의 위패를 從祀할 때 국왕이 내려주는 교서이다.

중외반교서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儀禮와 祭享을 거행하거나 왕실에 慶事가 있을 때 국왕이 그 사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中外의 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에게 내리는 교서이다. 국왕은 중외반교서를 반포할 때에는 백성들의 죄를 赦宥하는 내용과 관원들을 포상하는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교서의 위상과 의의는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의 비교, 교서와 관련된 처벌 규정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교서와 다른 국왕문서의 비교는 국왕문서 가운데 교서와 문서 양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국왕문서를 선정하여 교서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교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왕문서 가운데 敕命과 竹冊, 批答, 綸音과 諭書, 閣臣教旨와 春坊教旨를 교서와 비교할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각의 문서에 기재된 始面·起頭語·結辭·寶印 등의 문서 양식과 본문에 수록된 내용, 문서의 발급 과정 등을 비교하였다. 교서와 관련된 처벌 사례는 내용이 격식에 어긋난 경우, 내용이 잘못되거나 간략하거나 번잡한 경우, 중요한 용어를 누락시킨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교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교서제술관과 해당 승지가 처벌을 받았다. 또한 지방의 관원이 관찰사에게 내린 사명훈유교서를 소홀하게 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다. 처벌 사례에서 교서를 발급하는 과정과 관련된 처벌이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국왕의 명령이나 의지를 교서로 문서화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고문서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시대 교서에 대하여 역사, 양식, 발급 과정, 유형과 제도, 위상과 의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교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서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각종 제도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서 이외에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인 綸音·批答·傳教·備忘記·有旨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왕과 승정원 사이에 문서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는 구조와 제도를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해 본다.

## 參考文獻

### 1. 원전자료

#### (1) 국내

『經國大典』

『高麗史』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 (장서각 K2-2218)

『冠巖全書』

『國朝功臣錄』 (장서각 K2-622, 규장각 16017, 국립중앙서관 BC古朝57-가738)

『國朝五禮儀』

『國恤謄錄』 (장서각 K2-2935)

『內閣日曆』

『錄勳都監儀軌』 (규장각 奎14946)

『雷淵集』

『大典會通』

『大韓禮典』 (장서각 K2-2123)

『東國李相國全集』

『東文選』

『(顯宗)祔廟都監都廳儀軌』 (장서각 K2-2227, 규장각 奎13541)

『(英祖)祔廟都監都廳儀軌』 (장서각 K2-2239, 규장각 奎13587)

『奮武錄勳都監儀軌』 (규장각 奎14935)

『賜几杖宴會圖帖』 (경기도박물관 所藏)

『三國史記』

『洗草宴謄錄』 (장서각 奎 K2-3090)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 (규장각 奎14583)

『純宗大王國恤儀註謄錄』 (장서각 K2-2974)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 (장서각 K2-2250)

『承政院日記』

『兩銓便攷』,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陽村集』  
『永嘉誌』  
『五峯集』  
『六典條例』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銀臺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銀臺便攷』 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儀註謄錄』 (장서각 K2-2135)  
『儀註謄錄續』 (장서각 K2-2136)  
『离院條例』 (장서각 K2-2035)  
『日省錄』  
『再造藩邦志』  
『箋文謄錄』 (규장각 奎 12990)  
『朝鮮王朝實錄』  
『拙翁集』  
『重峰集』  
『增補文獻備考』  
『春官通考』  
『春亭續集』  
『度支準折』  
『退憂堂集』  
『圃隱集』  
『憲宗大王國恤謄錄』 (장서각 K2-3031)  
『顯宗大王國恤謄錄』 (장서각 K2-3035)  
『扈聖宣武清難功臣都鑑儀軌』 (규장각 奎14924)  
『扈聖宣武原從功臣都鑑儀軌』 (규장각 奎14923)

## (2) 해외

『杜氏通典』  
『明史』  
『宋史』

『詩經』  
『新唐書』  
『禮記』  
『玉海』  
『晉書』  
『漢書』

## 2. 도록 및 자료집

경기도박물관, 『京畿觀察使』, 2010.  
경기도박물관, 『全州李氏(白軒相公派) 寄贈古文書』, 2003.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충청도 관찰사전』, 2003.  
과천문화원, 『정조시대 과천전』, 2007.  
국립고궁박물관,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2008.  
국립공주박물관, 『公州의 名家』, 2009.  
국립공주박물관, 『公州의 名家』 2, 2011.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국립국악원,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 2002.  
국립민속박물관, 『昌原黃氏 古文書』, 1998.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시대고문서』, 199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II -교령류 1-, 2006.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V -교령류 2-, 2007.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古文書』, 1997.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국립진주박물관, 『宣武功臣 金時敏 教書』, 2006.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백제군사박물관, 『문무겸전의 李森장군』, 2007.  
부산박물관, 『소장품도록』, 2005.  
부산박물관, 『반곡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 2009.

- 서울대학교 규장각, 『寶印符信總數』, 1994.
- 서울대학교 규장각, 『扈聖宣武清難功臣都監儀軌』, 1999.
-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上·下, 1981.
-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2 -官府文書-, 1987.
-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학술총서[3] 영조어필』, 2012.
- 수원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 2008.
- 수원화성박물관·용주사효행박물관, 『思悼世子』, 2012.
-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안동김씨 문정공파 기증유물』, 2009.
- 영남대학교 박물관, 『古文書』, 1993.
- 嶺南文化研究院, 『脫草·譯註 在嶺南日記』, 學民文化社, 2006.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上, 1935.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下, 1935.
-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續, 1937.
- 천안박물관, 『고령박씨 진사공파 기증유물』 I, 2012.
-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익 종가의 이야기』,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198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5 -義城金氏篇 1-, 198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9 -昌原黃氏篇-,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5 -河回 豊山柳氏篇(I)-,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45 -扶餘 恩山 咸陽朴氏篇-,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50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山書院篇(I)-,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西溪 朴世堂 宗宅 寄託典籍』, 200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5 -慶州 玉山 驪州李氏 獨樂堂篇-,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7 -羅州 會津 羅州林氏 滄溪後孫家篇-, 200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71 -利川 豊川任氏·楊州 光州鄭氏篇-, 200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寶印所儀軌』, 학연문화사, 2004.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7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 2005.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獻 寄贈寄託目錄』 11 -保寧 慶州金氏 寄託典籍-, 2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85 -大田 安東權氏 有懷堂宗宅編-, 2007.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名品選』, 2009.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92 -漆谷 石田 廣州李氏篇(I)-, 2009.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所藏 古文書大觀』 1 -王命, 上奏-, 2010.
-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조대왕』, 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가의 고문서』 9 -忠을 다하고 德을 쌓다(嚮忠內德) :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공신』,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1 -告身·王旨·教旨·令旨-,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教書·諭書-, 2013.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獻 寄贈寄託目錄』 19, 2013.
- 海州吳氏 貞武公派 宗中, 『世蹟』,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2014.
-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 화봉문고, 『문서와 글씨의 한마당』 -고문서·탁본·서첩·글씨-, 2013.
- 화성문화원·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사람들 정조를 만나다』, 2004.
- 화성시,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 화성시·화성문화원,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2008.
-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2010.

### 3. 논문 및 저서

- 권오영, 「조선 왕실 冠禮의 역사적 추이와 그 의미」, 『조선 왕실의 嘉禮』 01,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8.
- 김건우, 「규장각의 문서제도와 그 위상」, 『嶺南學』 2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12.
-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상황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문식, 「조선 왕실의 親迎禮 연구」, 『조선 왕실의 嘉禮』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백철, 「英祖의 綸音과 王政傳統 만들기」, 『藏書閣』 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김성갑, 「朝鮮時代 明文에 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3.
- 김철웅, 「고려시대 太廟와 原廟의 운영」, 『國史館論叢』 106, 國史編纂委員會, 2005.

- 노명호, 「高麗後期の 功臣錄券과 功臣教書」, 『古文書研究』 13, 한국고문서학회, 1998.
- 노명호 외, 「高麗後期の 功臣錄券과 功臣教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下)』,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노인환, 「조선시대 諭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인환, 「조선시대 功臣教書 연구 -문서식과 발급 과정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 노인환, 「조선후기 教書의 발급 과정 연구 -1756년(영조 32) 宋時烈 文廟從祀教書を 중심으로-」, 『한국문화』 6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 박병호, 『近世의 法과 法思想』, 도서출판 진원, 1996.
- 박봉주, 「조선시대 功臣 錄勳의 내용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 박상환, 『朝鮮時代 耆老政策 研究』, 해안, 2000.
-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教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教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教書-」, 『全北史學』 36, 전북사학회, 2010.
- 박성호, 「朝鮮初期 王命文書 研究 -經國大典體制 成立까지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재우, 「제2장 王命의 종류와 반포」, 『고려 국정운영의 체계와 왕권』, 신구문화사, 2005.
- 박정혜, 「朝鮮時代 賜几杖圖帖과 延諡圖帖」, 『美術史學研究』 231, 2001.
- 박찬수,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東洋學論叢編纂委員會, 1984.
- 박천식, 「고려 配享功臣의 制度的 性格과 그 特性」, 『전라문화논총』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89.
-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의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조선사연구』 3, 조선사연구회, 1994.
-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성인근, 『韓國印章史』, 다온샘, 2013.
- 손계영, 「教命의 형태 연구 -藏書閣 所藏 『懿昭世孫世孫冊封教命』과 『慶嬪金氏揀嬪冊封教命』을 중심으로-」, 『藏書閣』 1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손계영, 「朝鮮時代 文書紙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신병주, 「왕의 반쪽, 왕비의 탄생 -조선시대 왕실 혼례 엿보기-」, 『조선 국왕의 일생』,

글향아리, 2009.

- 심영환, 「高麗時代 獎諭敎書 樣式」, 『藏書閣』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심영환, 「몽골시대 高麗의 王命」, 『泰東古典研究』 29, 태동고전연구소, 2012.
- 심영환·노인환, 「조선시대 敎書의 淵源과 分類」, 『漢文學論集』 34, 근역한문학회, 2012.
- 심영환·이진희, 「조선시대 재발급 공신교서 양식 연구」, 『문화재』 6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심재권, 「국왕문서 ‘批答’의 연구」, 『古文書研究』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 유지영, 「조선시대 관원의 呈辭와 그 사례」, 『藏書閣』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研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 윤방언,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 문화재청, 2002.
- 이강욱 율김, 『銀臺條例』, 한국고전번역원, 2012.
- 이강한, 「14세기 高麗 太廟의 혁신과 변천」, 『진단학보』 109, 진단학회, 2010.
- 이미선, 「조선시대 後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 옥,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 -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藏書閣』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이존희, 『朝鮮時代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1990.
- 이진희, 「조선시대 改造本 功臣敎書의 粧纒 연구 -扈聖功臣敎書 및 靖社功臣敎書を 중심으로-」, 『藏書閣』 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神主·位版 題式의 변화 -明·淸의 교체를 기점으로」,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 이현진, 「조선시대 종묘의 부모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1.
-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 『民族文化』 16, 한성대학교 부설 민족문화연구소, 1999.
- 임민혁, 「敎書의 작성 및 성격」,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 임민혁, 「제1부 왕비의 간택과 책봉」,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2.
- 임승표, 「朝鮮時代 賞罰的 邑號陞降制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장병인,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2008.
- 장병인,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別宮親迎禮’의 성

- 립-], 『조선시대사학보』 55, 조선시대사학회, 2010.
- 장을연,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을연, 「冊文의 筆寫本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書誌學報』 33, 韓國書誌學會, 2009.
- 장을연, 「藏書閣 소장 冊文拓印本の 현황과 특징」, 『藏書閣』 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장을연, 「清代 조선왕실 冊封誥命과 조선 敎命의 형태 비교연구」, 『藏書閣』 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전경목, 「고문서학 연구 방법론과 활성화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정신문화연구』 9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조미은, 「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지두환, 「朝鮮前期 宗廟制度 研究」, 『韓國思想과 文化』 8, 修德文化社, 2000.
- 지두환, 「朝鮮後期 宗廟制度 變遷」, 『韓國學論叢』 26, 國民大學校韓國學研究所, 2004.
- 지두환, 『세계문화유산 종묘이야기』, 집문당, 2006.
- 최승희, 『改正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 최순권, 「高麗初期 五廟制의 運營」, 『歷史教育』 66, 역사교육연구회, 1998.
- 中村裕一, 『唐代制勅研究』, 汲古書院, 1991.
- 川西裕也, 「朝鮮初期における官教文書様式の變遷」, -頭辭と印章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205, 2007.
- 川西裕也, 「高麗末·朝鮮初における任命文書体系の再檢討」, 『朝鮮學報』 220, 朝鮮學會, 2011.
- 川西裕也, 『朝鮮中近世の公文書と國家』 -變革期の任命文書をめぐって-, 九州大學出版會, 2014.
- Toyoshima Yuka, 「고려시대의 문묘」,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 4. 전자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uigwe.museum.go.kr/>)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포털 (<http://www.kostma.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Web/>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 ABSTRACT

### Study on Gyoseo in Joseon Dynasty

Noh In Hwan

Major in Palae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studies Gyoseo(教書), the most authoritative document addressing the order and the will of the king in Joseon Dynasty, in the aspect of palaeography. I examined the origin of gyoseo in Joseon in the first place. And after focusing on the examples of its issuance in Goryeo and Joseon period, I turned to determine the form of it. Subsequently, I investigated the procedure of issuing gyoseo specifically and dealt with the categories and the documental institution of gyoseo with regard to actual documents and illustrations survived till today. In addition, I compared gyoseo with other royal documents before examining rules of punishment with actual cases. As a whole, I demonstrated the significance of gyoseo as well as the status of it among other royal documents through above-mentioned researches.

Gyoseo in Joseon period originated from the documental institution of Goryeo and China. Song Dynasty's Joseo(詔書), formerly Nonsachikseo(論事勅書) in Tang Dynasty, was introduced and adapted to become gyoseo in Goryeo. Later joseo in Goryeo went through partial changes in opening and concluding phrases due to Yuan's intervention of Goryeo's internal affairs and the influence of Ming's documental institution. Joseo and gyoseo in Goryeo period were issued to such cases as: conducting of all sorts of royal ceremonies; appointing of prime ministers 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fusing to accept government officials' resignation; registering a vassal of merit; accepting spiritual tablet called Sinju(神主) of the vassal of merit into Jongmyo(宗廟, Royal Ancestral Temple).

As to the documentary form of gyoseo, I examined the front page, the main text, the date of issue as a matter of format, along with the types of the royal seal(寶印)

and the papers used. Receiver's administrative grade, position and name were written between gyo(敎) and seo(書) on the front page of gyoseo. The main text consisted of 'wangyakwal(王若曰)' for opening phrases and 'Gojagyosi sangeuijsil(故茲教示 想宜知悉)' for concluding phrases. The first half of gyoseo described receiver's personality, behavior, scholarly achievement, reputation, and career, followed by the reason of its issuance in the second half. Chinese era name and date were used to indicate the date of issue, whereas era name was replaced with the sexagenary cycle in a few gyoseos. Direc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Joseon, Goryegukwangjiin(高麗國王之印) of Goryeo's royal seal was affixed to gyoseo. Joseonwangbo(朝鮮王寶), Joseongukwangjiin(朝鮮國王之印), Gukwangsinbo(國王信寶), Simyeongjibo(施命之寶), Simyeong(施命), and Joseongukwangjiin(朝鮮國王之印) were used one after another for the royal seal before Simyeongjibo was ultimately selected. In early days of Joseon, the paper supplied for gyoseo was called Gongsangji(供上紙) which became replaced with Chojuji(草注紙) and Jeujuji(楮注紙)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Regarding the process of issuing gyoseo, the king appointed a government official of Yemunwan(藝文館) or Jijegyo(知製敎) as Gyoseojesulgwan(敎書製述官) shortly after confirming issuing. Gyoseojesulgwan made a draft of the body of gyoseo and then wrote it in the form of Jejindanja(製進單子) which Seongji(承旨) from Seongjeongwon submitted to the king for review subsequently. As the king approved the message of jejindanja, Gyoseoseosagwan(敎書書寫官) copied it. Gyoseo was ultimately issued by the king's affixing the royal seal of Simeongjibo(施命之寶).

Pertaining to the categories and the documental institution of gyoseo, gyoseo in Joseon can generally be categorized into several genres of which the purposes were to appoint or reward the government officials, to perform royal ceremonies, and to announce the message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Related to the official appointment, Samyeonghunyu-gyoseo(使命訓諭敎書) was issued to newly appointed local administrators such as Gwanchalsa, Yusu, Tongjesa, and Tongeosa, informing them of the fact that they were designated and requesting them of good governance of the area concerned. The former message was called Samyeong(使命) and the latter, Hunyu(訓諭). The king took advantage of Samyeonghunyu-gyoseo to govern local areas from the center of Joseon as well as to control local military forces.

Gongsin-gyoseo(功臣教書), Sangga-gyoseo(賞加教書), Chisa-gyoseo(致仕教書), and Saguejang-gyoseo(賜几杖教書) were gyoseos issued for rewarding the government officials. Gongsin-gyoseo was issued to vassals of merit who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on certain occasions, for instance, the establishment of Joseon Dynasty, a change of regime by restoration, suppression of treason and revolt, or war. Sangga-gyoseo was issued to raise administrative grade of Danghagwan to Dangsangwan who had meritorious contributions to such events as good governance, arrangement of provisions and weapons, arrestment of foreign intruders and gangs and so on. Sangga-gyoseo was also issued to raise more than two administrative grades of a military official. Chisa-gyoseo and Saguejang-gyoseo were issued to treat elderly officials with honor. The former was issued to retiring administrators due to age to appoint them Bongjoha(奉朝賀), while the latter was issued to confer both Gue(几) and Jang(杖) upon the age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stead of accepting their Chisa(致仕). By issuing gyoseos for reward, the king triggered the government officials' fidelity, through which he could rule efficiently throughout the country.

Concerning gyoseo for royal ceremonies, Napchae-gyoseo(納采教書), Napjing-gyoseo(納徵教書), Nappye-gyoseo(納幣教書), Gogi-gyoseo(告期教書), Gwallye-gyoseo(冠禮教書), Baehyanggongsin-gyoseo(配享功臣教書), Jongmyobaehwang-gyoseo(宗廟配享教書), and Munmyojongsa-gyoseo(文廟從祀教書) were issued to perform Garye(嘉禮, festive court ceremony) for the king, Gwallye(冠禮, capping ceremony) for the crown prince and rituals at Jongmyo and Munmyo(文廟, National Confucian Shrine). Napchae-gyoseo, Napjing-gyoseo, Nappye-gyoseo, and Gogi-gyoseo were issued instead of Honseo(婚書, a wedding contract) to the father of queen or royal concubine when the king got married to them. Gwallye-gyoseo was issued when the crown prince or the eldest son of the crown prince had Gwallye. Baehyanggongsin-gyoseo was issued to confer Chije(致祭) to the government official who was selected Baehyanggongsin(配享功臣, a vassal of merit whose spiritual tablet called Sinju made acceptance into Jongmyo or Munmyo), due to being supportive to the late king. Jongmyobaehyang-gyoseo was issued to announce the ceremony that a wooden tablet of Baehyanggongsin made acceptance into Jongmyo. Munmyojongsa-gyoseo was issued to renowned scholars who attained the qualification of being sacrificed to in Munmyo in which wooden tablets of Confucius,

Saseong(四聖), Gongmunsiptcheol(孔門十哲), Songjoyukhyeon(宋朝六賢) were placed.

Jungoeban-gyoseo(中外頒教書) was issued to inform all his subject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of royal ceremonies, pleasant events, and ancestral rites. Its message was to forgive the subjects' sin or to reward the government officials.

In respect of the significance as well as the status of gyoseo, I compared it with other royal documents before examining rules of punishment with actual cases. Comparing gyoseo with Gyomyeong(教命), Jukchaek(竹冊), Bidap(批答), Yuneum(綸音), Yuseo(諭書), Gaksingyoji(閣臣教旨), and Chunbanggyoji(春坊教旨), I reviewed the influence of gyoseo to the document form and the institution of aforementioned royal documents. Through rules of punishment with actual cases related to gyoseo, I showed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for creating document as gyoseo to address the order and the will of the king.

Applying the paleographical method, I examined gyoseo in Joseon period focusing on its history, its form, the procedure of issuing, the categories and the documental institution, and the significance and the status of it among other royal documents. By doing so, I researched various documental institutions concerned with gyoseo in Joseon in a systematic and overall point of view.

Moreover, I would suggest that the study on the documents besides gyoseo, delivering the king's order such as Yuneum, Bidap, Jeongyo(傳教), Bimanggi(備忘記), and Yuji(有旨) and the system conveying the order by means of documentation between the king and Seungjeongwon(承政院) are also required on the basis of this paper.

Keywords : Gyoseo(教書), Samyeonghunu-gyoseo(使命訓諭教書), Gongsin-gyoseo(功臣教書), Sangga-gyoseo(賞加教書), Chisa-gyoseo(致仕教書), Saguejang-gyoseo(賜几杖教書), Napchae-gyoseo(納采教書), Napjing-gyoseo(納徵教書), Nappye-gyoseo(納幣教書), Gogi-gyoseo(告期教書), Gwallye-gyoseo(冠禮教書), Baehyanggongsin-gyoseo(配享功臣教書), Jongmyobaehyang-gyoseo(宗廟配享教書), Munmyojongsa-gyoseo(文廟從祀教書), Jungoeban-gyoseo(中外頒教書)

<附錄 1> 현전하는 朝鮮時代 敎書 목록

유형	任命	褒賞				儀禮				中外頒布	其他	합계
분류	使命訓諭敎書	功臣敎書	賞加敎書	致仕敎書	賜几杖敎書	納徵·納幣·告期敎書	冠禮敎書	配享功臣敎書	文廟從祀敎書	中外頒敎書	其他	
수량	110	74	13	4	1	3	2	4	5	2	7	225

1. 使命訓諭敎書 : 110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497년(연산군 3) 8월 8일	燕山君	權柱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84.0×158.2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2-1-1호
2	1538년(중종 33) 3월 3일	中宗	權楨	慶尙道觀察使	87.2×286.7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901-1호
3	1542년(중종 37)	中宗	[金緣]	□□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未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 -光山金氏 烏川古文書-, 1982, 1쪽
4	1543년(중종 38) 8월 10일	中宗	李彦迪	[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83.5×98.0	보물 제1473-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5 -慶州 玉山 驪州李氏 獨樂堂篇-, 2003, 7쪽
5	1592년(선조 25) 6월 1일	宣祖	金誠一	慶尙左道觀察使	88.0×135.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906-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5 -義城金氏篇 1-, 1989, 153쪽
6	1592년(선조 25) 12월 23일	宣祖	柳成龍	都體察使·豊原府院君	77.5×109.4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460-3-4호
7	1596년(선조 29) 2월 3일	宣祖	鄭述	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73.5×208.5	원주시립박물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8	1597년(선조 30) 7월 23일	宣祖	李舜臣	忠清·全羅·慶尙等三道水軍統制使	89.0×193.0	보물 제1564호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72~173쪽
9	1597년(선조 30) 8월 6일	宣祖	黃愼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86.0×22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9 -昌原黃氏篇-, 1990, 69~70쪽 국립민속박물관, 『昌原黃氏 古文書』, 1998, 53쪽
10	1617년(광해군 9) 3월 7일	光海君	鄭起龍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52.0×17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669-4호
11	1621년(광해군 13) 2월 25일	光海君	鄭起龍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80.0×30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669-4호
12	1628년(인조 6) 2월 16일	仁祖	李敬輿	公清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巡察使	95.5×32.3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262~263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3	1633년(인조 11) 1월 4일	仁祖	崔震立	行京畿水軍節度使·兼喬桐都 護府使·京畿公清黃海等水軍 統禦使	84.0× 20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50 -慶州 伊助 慶州崔氏·龍 山書院篇(1)-, 2000, 1~2쪽
14	1633년(인조 11) 2월 21일	仁祖	李敬輿	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	85.0× 306.5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9쪽
15	1633년(인조 11) 8월 27일	仁祖	吳翮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	未詳	海州吳氏 貞武公派 宗中, 『世蹟』,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2014, 112~113쪽
16	1637년(인조 15) 6월 21일	仁祖	呂爾徵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 使·巡察使·開城府江華府留守	109.0× 159.0	과천문화원, 『정조시대 과천전』, 2007, 80쪽
17	1638년(인조 16) 7월 16일	仁祖	金埜	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	92.0× 232.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54~55쪽
18	1639년(인조 17) 8월 29일	仁祖	元斗杓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 度使·都巡察使	82.0× 245.0	여주박물관 원주원씨 기증유물
19	1656년(효종 7) 8월 25일	孝宗	徐必遠	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	未詳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충청도 관찰사전』, 2003, 58쪽
20	1657년(효종 8) 7월 16일	孝宗	金佐明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 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 府留守	87.0× 361.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56 쪽
21	1658년(효종 9) 2월 20일	孝宗	元萬石	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 度使·巡察使	82.0× 291.0	여주박물관 원주원씨 기증유물
22	1663년(현종 4) 6월 7일	顯宗	吳挺一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 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 府留守	83.0× 480.0	경기도박물관, 『京畿觀察使』, 2010, 36~37쪽
23	1672년(현종 13)	顯宗	任有後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 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 府留守	110.0× 22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71 -利川 豊川任氏·楊州 光 州鄭氏篇-, 2004, 1~3쪽
24	1675년(숙종 1) 5월 13일	肅宗	鄭重徽	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大丘府使	100.4× 393.3	한국학중앙연구원, 『명가의 고문 서』 9 - 충을 다하고 덕을 쌓다 (嚮忠內德) : 해주정씨 해평부원 군 증가 -, 2012, 164~165쪽
25	1682년(숙종 8) 2월 19일	肅宗	呂聖齊	南漢山城守禦使	未詳	개인소장
26	1682년(숙종 8) 2월 25일	肅宗	元相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 節度使	96.0× 294.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58 쪽
27	1682년(숙종 8) 7월 24일	肅宗	吳斗寅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 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 府留守	未詳	海州吳氏 貞武公派 宗中, 『世蹟』,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2014, 120~121쪽
28	1686년(숙종 12) 11월 24일	肅宗	吳斗寅	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 壤府尹	未詳	海州吳氏 貞武公派 宗中, 『世蹟』, 에이팩스커뮤니케이션즈, 2014, 124~125쪽
29	1687년(숙종 13) 3월 10일	肅宗	尹時達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 使·喬桐府使	95.0× 271.0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古文 書』, 1997, 54~55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30	1690년(숙종 16) 8월 2일	肅宗	李昞命	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府使	90.5× 563.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92 -漆谷 石田 廣州李氏篇(1)-, 2009, 1~5쪽
31	1691년(숙종 17) 7월 2일	肅宗	朴慶後	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92.5× 39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45 -扶餘 恩山 咸陽朴氏篇-, 2000, 1~3쪽
32	1693년(숙종 19) 1월 26일	肅宗	朴慶後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92.0× 51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45 -扶餘 恩山 咸陽朴氏篇-, 2000, 4~7쪽
33	1694년(숙종 20) 5월 25일	肅宗	鄭重徽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	90.0× 320.8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증가 고문서
34	1696년(숙종 22) 11월 18일	肅宗	李德成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未詳	부산박물관, 『반국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 2009, 144~145쪽
35	1701년(숙종 27) 4월 19일	肅宗	李德成	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91.1× 458.0	부산박물관, 『반국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 2009, 148~149쪽
36	1702년(숙종 28) 3월 7일	肅宗	元德徽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91.0× 499.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58~60쪽
37	1704년(숙종 30) 2월 12일	肅宗	李德成	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91.0× 565.0	부산박물관, 『반국 이덕성, 강명과 풍력의 선비』, 2009, 152~153쪽
38	1704년(숙종 30) 6월 11일	肅宗	李濟	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未詳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42쪽
39	1705년(숙종 31) 9월 26일	肅宗	李濟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91.0× 73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42쪽
40	1709년(숙종 35) 9월 3일	肅宗	李濟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使	90.0× 466.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43쪽
41	1711년(숙종 37) 2월 2일	肅宗	李濟	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	85.0× 709.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44쪽
42	1724년(경종 4)	景宗	尹行教	開城府留守·兼管理使	88.3× 503.7	충남 논산 명재종택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43	1724년(영조 즉위년) 9월 10일	英祖	權以鎭	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府使	86.0× 495.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85 -大田 安東權氏 有懷堂宗宅編-, 2007, 1~3쪽
44	1727년(영조 3) 윤3월 24일	英祖	趙榮福	開城府留守·兼管理使	89.0× 500.0	개인소장
45	1727년(영조 3)	英祖	趙錫命	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88.0× 623.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71쪽
46	1733년(영조 9) 3월 13일	英祖	權以鎭	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館餉使·平壤府尹	82.3× 571.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85 -大田 安東權氏 有懷堂宗宅編-, 2007, 3~6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47	1734년(영조 10) 1월 13일	英祖	趙最壽	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89.0× 406.0	국립공주박물관, 『公州의 名家』 2, 2011, 176~177쪽
48	1739년(영조 15) 5월 5일	英祖	朴文秀	輸忠竭誠決幾奮武功臣·資憲大夫·行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咸興府尹·靈城君	86.8× 691.1	천안박물관, 『고령박씨 진사공파 기증유물』 1, 2012, 130~132쪽
49	1739년(영조 15) 6월	英祖	趙明謙	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	86.5× 750.0	육군박물관 소장
50	1759년(영조 35) 4월 3일	英祖	李成中	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	92.0× 344.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97쪽
51	1759년(영조 35) 5월 12일	英祖	金相福	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巡察使	92.0× 446.0	영남대학교 박물관, 『古文書』, 1993, 22~30쪽
52	1759년(영조 35) 9월 2일	英祖	李彝章	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165.0× 501.0	수원화성박물관·용주사효행박물관, 『思悼世子』, 2012, 50~51쪽
53	1761년(영조 37) 9월 15일	英祖	鄭弘淳	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98.4× 531.9	안성 동래정씨 표천 정홍순가 고문서
54	1761년(영조 37) 11월 22일	英祖	李最中	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	100.0× 369.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3~64쪽
55	1762년(영조 38) 10월 19일	英祖	鄭弘淳	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館餉使·平壤府尹	94.8× 273.4	안성 동래정씨 표천 정홍순가 고문서
56	1765년(영조 41) 6월 28일	英祖	元景濂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喬桐府使	92.0× 335.0	여주박물관 원주원씨 기증유물
57	1772년(영조 48) 8월 6일	英祖	鄭弘淳	南漢山城守禦使	102.4× 201.2	안성 동래정씨 표천 정홍순가 고문서
58	1773년(영조 49) 5월 2일	英祖	李最中	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103.0× 243.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4쪽
59	1775년(영조 51) 4월 2일	英祖	洪樂命	江華府留守·兼鎮撫使	未詳	개인소장
60	1776년(정조 즉위년) 9월 30일	正祖	鄭弘淳	南漢山城守禦使	110.5× 163.5	안성 동래정씨 표천 정홍순가 고문서
61	1777년(정조 1) 9월 30일	正祖	趙琰	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105.5× 439.0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古文書』, 1997, 56~57쪽
62	1779년(정조 3) 10월 22일	正祖	共樂彬	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	104.0× 303.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5~66쪽
63	1785년(정조 9) 1월 22일	正祖	李在學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101.0× 380.0	인천 용인이씨 이진택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64	1785년(정조 9) 12월 3일	正祖	金永綬	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未詳	안동김씨 통제사공 증중회 所藏
65	1787년(정조 11) 10월 8일	正祖	李崇祐	資憲大夫·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咸興府尹	116.0× 195.0	인천 용인이씨 이진택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66	1792년(정조 16) 7월 3일	正祖	金憲	資憲大夫·行咸鏡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咸 興府尹	115.0× 287.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6~67쪽
67	1796년(정조 20) 4월 28일	正祖	李性默	嘉善大夫·京畿水軍節度使·兼 三道統禦使·喬桐都護府使	107.0× 184.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7 쪽
68	1797년(정조 21) 3월 3일	正祖	李在學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京畿 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水原 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府留 守·廣州府留守·都巡察使	115.0× 225.0	인천 용인이씨 이진택 소장, 국 사편찬위원회
69	1798년(정조 22) 12월 20일	正祖	曹允大	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海州牧 使	105.0× 186.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215쪽
70	1799년(정조 23) 6월 9일	正祖	金勉柱	嘉善大夫·開城府留守·兼管理 使	113.0× 16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293쪽
71	1800년(순조 즉위년) 7월 7일	純祖	金祖淳	嘉善大夫·行弘文館副題學·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摠 戎使	110.0× 17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V -교령류 2-, 2007, 204쪽
72	1801년(순조 1) 1월 29일	純祖	金勉柱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兵馬 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 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 守·巡察使	116.0× 23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293~294쪽
73	1801년(순조 1) 2월 15일	純祖	金勉柱	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 使·平壤府尹	117.0× 226.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8 -廣州安氏·慶州金氏篇-, 1990, 294~295쪽
74	1802년(순조 2) 12월 18일	純祖	曹允大	資憲大夫·行水原府留守·兼摠 理使	116.5× 22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216쪽
75	1804년(순조 4) 4월 3일	純祖	申絢	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 牧使	未詳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76	1807년(순조 7) 11월 25일	純祖	鄭晚錫	嘉善大夫·公忠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 使	115.0× 218.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8~69쪽
77	1809년(순조 9) 4월 24일	純祖	鄭晚錫	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邱都 護府使	115.0× 246.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9 쪽
78	1811년(순조 11) 8월 19일	純祖	柳相祚	嘉善大夫·開城府留守·兼管理 使·豐安君	117.0× 189.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 成』 15 -河回 豊山柳氏篇(1)-, 1994, 136~137쪽
79	1812년(순조 12) 1월 16일	純祖	鄭晚錫	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 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 使·平壤府尹	114.0× 115.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84쪽
80	1812년(순조 12) 4월 28일	純祖	鄭晚錫	資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 使·平壤府尹	115.0× 183.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308~309 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81	1815년(순조 15) 6월 23일	純祖	申鴻周	嘉義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4.0× 245.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9~70쪽
82	1819년(순조 19) 3월 18일	純祖	鄭晚錫	正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	112.0× 214.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0~71쪽
83	1819년(순조 19) 3월 27일	純祖	趙萬元	嘉善大夫·江華府留守·兼鎮撫使	117.0× 172.0	화성시, 『돌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264쪽
84	1821년(순조 21) 9월 21일	純祖	尹魯東	嘉義大夫·江華府留守·兼鎮撫使	115.5× 169.1	강릉시립박물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85	1822년(순조 22) 1월 9일	純祖	尹魯東	資憲大夫·江華府留守·兼鎮撫使	115.0× 164.3	강릉시립박물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86	1825년(순조 25) 2월 19일	純祖	曹鳳振	資憲大夫·行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	116.5× 196.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208쪽
87	1832년(순조 32) 11월 17일	純祖	朴綺壽	資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	115.0× 155.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1~72쪽
88	1834년(순조 34) 10월 7일	純祖	曹鳳振	資憲大夫·行咸鏡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咸興府尹	116.0× 23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208쪽
89	1835년(헌종 1) 1월 5일	憲宗	金在三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117.0× 176.0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90	1837년(헌종 3) 12월 22일	憲宗	趙翼永	嘉善大夫·忠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115.2× 223.0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호남기록문화시스템
91	1840년(헌종 6) 4월 4일	憲宗	李奎鉉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廣州府留守·巡察使	116.2× 242.1	경기도박물관, 『京畿觀察使』, 2010, 36~37쪽
92	1846년(헌종 12) 3월 28일	憲宗	趙鶴年	資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	113.0× 143.0	화성문화원·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사람들 정조를 만나다』, 2004, 74쪽
93	1846년(헌종 12) 10월 4일	憲宗	趙鶴年	資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	114.0× 117.0	화성시, 『돌목조씨 소장 고문서』, 2006, 317쪽
94	1846년(헌종 12) 10월 6일	憲宗	朴宗吉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	112.0× 119.0	의정부 장암 반남박씨
95	1847년(헌종 13) 11월 11일	憲宗	趙翼永	正憲大夫·行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	114.0× 113.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72쪽
96	1853년(철종 4) 4월 21일	哲宗	吳取善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	113.6× 154.0	삼척시립박물관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97	1860년(철종 11) 5월 3일	哲宗	金炳壯	嘉義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奎章閣直提學·春秋館修撰官·知製教	113.0× 203.0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안동김씨 문정공파 기증유물』, 2009, 221쪽
98	1861년(철종 12) 2월 17일	哲宗	申觀浩	嘉善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1.0× 12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II -교령류 1-, 2006, 189쪽
99	1866년(고종 3) 3월 5일	高宗	金鍵	嘉善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0.0× 117.0	화성시·화성문화원,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2008, 216쪽
100	1866년(고종 3) 4월 24일	高宗	金鍵	資憲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1.0× 148.0	화성시·화성문화원,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2008, 220쪽
101	1867년(고종 4) 1월 12일	高宗	金鍵	正憲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0.5× 96.0	화성시·화성문화원,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2008, 224쪽
102	1869년(고종 6) 2월 18일	高宗	李載元	正憲大夫·知宗正卿府事·水原府留守·兼摠理使	110.0× 100.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2쪽
103	1870년(고종 7) 3월 18일	高宗	李載元	崇政大夫·知宗正卿府事·行水原府留守·兼摠理使·弘文館檢校副提學·奎章閣檢校直提學·知製教	92.0× 95.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2쪽
104	1871년(고종 8) 1월 24일	高宗	申應朝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	未詳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05	1872년(고종 9) 7월 14일	高宗	金在顯	資憲大夫·知中樞府事·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廣州府留守·開城府留守·都巡察使	114.0× 132.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II -교령류 1-, 2006, 106쪽
106	1874년(고종 11) 1월 13일	高宗	金在顯	資憲大夫·知中樞府事·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水原府留守·廣州府留守·開城府留守·都巡察使·經筵日講官	111.0× 110.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II -교령류 1-, 2006, 107쪽
107	1879년(고종 16) 2월 16일	高宗	鄭洛鎔	嘉善大夫·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	110.0× 112.0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호남기록문화시스템
108	1886년(고종 23) 1월 10일	高宗	尹榮信	資憲大夫·行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鈴春君	106.0× 80.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4쪽
109	1890년(고종 27) 3월 4일	高宗	宋世憲	嘉善大夫·江華府留守·兼鎮撫使·親軍沁營外使	117.0× 88.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4~75쪽
110	1890년(고종 27) 6월 7일	高宗	宋世憲	嘉義大夫·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公州牧使	116.0× 96.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75~76쪽

## 2. 功臣敎書 : 74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392년(태조 1) 10월	太祖	李濟	純忠佐命開國功臣 一等 錄勳	32.5×94.5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29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68~69쪽
2	1401년(태종 1) 2월	太宗	馬天牧	翊戴佐命功臣 三等 錄勳	33.5×90.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2154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續, 1937, 26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70~71쪽
3	1401년(태종 1) 2월	太宗	徐愈	翊戴佐命功臣 三等 錄勳	29.0×185.0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72~73쪽
4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許琮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一等 錄勳	30.0×122.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2151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續, 1937, 33쪽
5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金嶠	精忠出氣布義敵愾功臣 一等 錄勳	29.3×123.5	국가기록유산 경남 유형문화재 제313호
6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李從生	精忠出氣敵愾功臣 二等 錄勳	29.0×115.0	백제군사박물관, 『문무경전의 李森장군』, 2007, 6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74~75쪽
7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張末孫	精忠出氣敵愾功臣 二等 錄勳	30.0×15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60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76~77쪽
8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孫昭	精忠出氣敵愾功臣 二等 錄勳	30.6×167.0	국가기록유산 경북 유형문화재 제1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78~79쪽
9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李溥	精忠敵愾功臣 三等 錄勳	29.1×98.2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시대고문서』, 1993, 18~19쪽
10	1467년(세조 13) 11월	世祖	鄭種	精忠敵愾功臣 三等 錄勳	28.0×110.0	경남 고령 정연동
11	1472년(성종 3) 6월	成宗	洪允成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 一等 錄勳	未詳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94~95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80~82쪽
12	1472년(성종 3) 6월	成宗	李崇元	純誠明亮佐理功臣 三等 錄勳	28.0×153.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853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 上, 1935, 14쪽
13	1472년(성종 3) 6월	成宗	金吉通	純誠佐理功臣 四等 錄勳	30.9×145.7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71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83~85쪽
14	1472년(성종 3) 6월	成宗	李淑琦	純誠佐理功臣 四等 錄勳	27.0×139.0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2호 김천 구성면 장양공위사당
15	1507년(중종 2) 2월	中宗	白壽長	秉忠奮義靖國功臣 三等 錄勳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1347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6	1507년(중종 2) 2월	中宗	辛殷尹	奮義靖國功臣 四等 錄勳	30.3×222.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2152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集眞』續, 1937, 34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86~88쪽
17	1590년(선조 23) 8월	宣祖	柳成龍	輸忠翼謨光國功臣 三等 錄勳	46.5×174.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460-3-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89~91쪽
18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珣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8.7×109.5	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51-나49
19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好閔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9.2×297.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1860
20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柳成龍	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0.0×248.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60-1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92~95쪽
21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金應南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8.8×293.7	보물 1756호
22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山甫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7.5×227.0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96~97쪽
23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柳根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1.5×290.5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131
24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忠元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6.0×298.8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87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98~99쪽
25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洪進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0.0×26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308호
26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朴東亮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1680년(숙종 6) 改造	36.5×209.7	경기 유형문화재 제25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100~102쪽
27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沈岱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9.0×26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175호
28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朴崇元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37.7×276.0	국가기록유산 충북 유형문화재 제166호
29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鄭姬藩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1.8×210.3	수원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 2008, 52~53쪽
30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崔興源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 二等 錄勳	43.5×291.3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45~47쪽
31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憲國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36.5×155.0	보물 제1617호 국립대구박물관 所藏
32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任發英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39.3×297.5	국사편찬위원회 사자2011
33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高曦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967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739호
34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金良輔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34.1×184.3	국가기록유산 서울 유형문화재 제87호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35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公沂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39.0× 198.0	충북 유형문화재 제304호
36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鄭大吉	忠勤貞亮扈聖功臣 三等 錄勳	43.5× 291.3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 文書·王室文書-, 1986, 47~50쪽
37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舜臣	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 功臣 一等 錄勳	39.0× 287.8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56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03~105쪽
38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元均	効忠仗義迪毅協力宣武 功臣 一等 錄勳	37.9× 272.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13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06~107쪽
39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權應銖	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二等 錄勳	39.4× 280.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668-2호
40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金時敏	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 二等 錄勳	38.4× 287.0	보물 제1476호 국립진주박물관, 『宣武功臣 金時敏 敎 書』, 2006, 12~17쪽
41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柳思環	効忠仗義宣武功臣 三等 錄勳	30.5× 20.5 (帖裝)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 文書·王室文書-, 1986, 48~50쪽
42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光岳	効忠仗義宣武功臣 三等 錄勳	41.0× 22.3 (帖裝)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952호
43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李雲龍	効忠仗義宣武功臣 三等 錄勳	39.6× 191.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212호
44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洪可臣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 功臣 一等 錄勳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063
45	1604년(선조 37) 10월	宣祖	辛景行	奮忠出氣清難功臣 三等 錄勳	37.0× 253.0	보물 제138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08~109쪽
46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崔興源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 衛聖功臣 一等 錄勳	37.0× 232.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 文書·王室文書-, 1986, 50~54쪽
47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鄭琢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 衛聖功臣 一等 錄勳	37.9× 235.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494-2호
48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沈忠謙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 竭忠盡誠同德贊謨佐運 衛聖功臣 一等 錄勳	39.0× 325.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 文書, 관청문서-, 2004, 65쪽
49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李誠胤	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 功臣 二等 錄勳	38.7× 311.5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50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10~113쪽
50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黃愼	竭忠盡誠同德贊謨衛聖 功臣 二等 錄勳	36.0× 22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9 -昌原黃氏篇-, 1990, 70~72쪽 국립민속박물관, 『昌原黃氏 古文書』, 1998, 60~61쪽. 국립공주박물관, 『公州의 名家』 2, 2011, 246~247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51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柳夢寅	竭忠盡誠衛聖功臣 三等 錄勳	36.7×291.2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304호
52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朴晉	竭忠盡誠衛聖功臣 三等 錄勳	38.0×306.0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 문서, 관청문서-, 2004, 65쪽
53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成時憲	效忠奮義翼社功臣 三等 錄勳	35.8×176.0	국가기록유산 서울 유형문화재 제85호
54	1613년(광해군 5) 3월	光海君	尹重三	奮忠秉義亨難功臣 三等 錄勳	38.0×231.0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古文書』, 1997, 48~49쪽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 문서, 관청문서-, 2004, 66쪽
55	1625년(인조 3) 4월	仁祖	金塗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 一等 錄勳 1680년(숙종 6) 改造	40.0×291.0	경기 안산 순천김씨 所藏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56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具宏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 一等 錄勳 1680년(숙종 6) 改造	39.6×218.0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국왕·왕실 문서, 관청문서-, 2004, 66쪽
57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李重老	奮忠贊謨立紀靖社功臣 二等 錄勳	39.5×263.1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174-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114~115쪽
58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洪振道	奮忠贊謨靖社功臣 三等 錄勳	39.5×138.0	화성시·화성문화원, 『남양홍씨 정효공파』, 2010, 109쪽
59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兪伯曾	奮忠贊謨靖社功臣 三等 錄勳	40.1×235.9	국가기록유산 충북 유형문화재 제268호
60	1625년(인조 3) 4월	仁祖	申景裕	奮忠贊謨靖社功臣 三等 錄勳	37.0×193.0	경기 유형문화재 제118호
61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朴炆	奮忠贊謨靖社功臣 三等 錄勳 1681년(숙종 7) 改造	40.0×293.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계 박세당 종택 기탁전적』, 2002, 33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敎書·諭書-, 2013, 116~117쪽
62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柳頌	奮忠贊謨靖社功臣 三等 錄勳	43.0×284.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130
63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張晩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一等 錄勳	37.5×198.0	경기 유형문화재 제142호
64	1625년(인조 3) 4월	仁祖	鄭忠臣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一等 錄勳	41.0×27.5 (帖裝)	국사편찬위원회 사자0551
65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南以興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一等 錄勳	35.0×201.0	국가기록유산 중요민속자료 제21-5-3호
66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李守一	竭誠奮威出氣振武功臣 二等 錄勳	38.6×202.0	충북 유형문화재 제178-1호
67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南以雄	竭誠奮威振武功臣 三等 錄勳	38.0×260.0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충청도 관찰사전』, 2003, 56~57쪽
68	1625년(인조 3) 4월	仁祖	李休復	竭誠奮威振武功臣 三等 錄勳	38.0×261.4	국가기록유산 경남 유형문화재 제56호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69	1625년(인조 3) 4월	仁祖	崔應一	竭誠奮威振武功臣 三等 錄勳	35.0× 158.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 문서, 관청문서-, 2004, 67쪽
70	1680년(숙종 6) 8월	肅宗	金萬基	奮忠効義炳幾協謨保社 功臣 三等 錄勳 1689년(숙종 15) 罷勳 1694년(숙종 20) 改造	未詳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18~119쪽
71	1728년(영조 4) 7월	英祖	吳命恒	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 功臣 一等 錄勳	42.9× 289.5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17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20~123쪽
72	1728년(영조 4) 7월	英祖	李森	輸忠竭誠決幾揚武功臣 二等 錄勳	43.5× 274.0	백제군사박물관, 『문무경전의 李森장군』, 2007, 12쪽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24~125쪽
73	1728년(영조 4) 7월	英祖	金重萬	輸忠竭誠決幾奮武功臣 二等 錄勳	44.0× 286.0	경기 유형문화재 제110호
74	1728년(영조 4) 7월	英祖	朴東亨	輸忠竭誠決幾揚武功臣 二等 錄勳	34.8× 208.5	한국학중앙연구원, 『韓國古文書精選』 3 -敎書·諭書-, 2013, 126~127쪽

### 3. 賞加敎書 : 13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596년(선조 29) 7월 21일	宣祖	忠淸道洪州牧使 洪可臣	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84.0× 212.0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600
2	1604년(선조 37) 7월 17일	宣祖	申汝樑	戰功으로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78.5× 248.5	전남 유형문화재 147호
3	1611년(광해군 3) 1월 20일	光海君	海州牧使 李愼儀	백성들에게 善政을 베푼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未詳	全義李氏 所藏
4	1611년(광해군 3) 6월 4일	光海君	南海縣令 羅大用	戰船과 거북선을 마련한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280
5	1613년(광해군 5) 3월 20일	光海君	忠洪道水軍節度使 李止孝	군량과 군기를 마련한 공으로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86.5× 168.0	나주 함평이씨 이재홍 所藏, 국사편찬위원회
6	1616년(광해군 8) 2월 3일	光海君	昌原別將 全三達	召募의 임무를 다하고 士卒을 撫循하였으며 旗幟을 一新한 공으로 折衝將軍(정3품)으로 加資	未詳	용궁전씨 所藏
7	1616년(광해군 8) 8월 16일	光海君	富寧府使 宋德駟	평상시에 군사들을 잘 단속하고, 두 번이나 달아난 오랑캐 抄守希를 붙잡은 공을 세워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87.0× 157.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 문서, 관청문서-, 2004, 70쪽
8	1617년(광해군 9) 5월 12일	光海君	昌原府使 申之梯	明火賊 鄭大立를 붙잡은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85.0× 176.0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7 -義城 鵝州申氏 梧峯家門·虎溪家門篇-, 2005, 325~326쪽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9	1618년(광해군 10) 윤4월 21일	光海君	安興梁僉使 吳信男	海賊을 捕捉한 공으로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82.0×238.0	강진 덕호사 所藏, 국사편찬위원회
10	1622년(광해군 14) 8월 15일	光海君	行安州牧使·兼防禦使 南以興	明나라 監軍을 잘 대접한 공으로 資憲大夫(정2품)에 加資	83.0×202.0	국가기록유산 중요민속자료 제21-5-2호
11	1624년(인조 2) 7월 15일	仁祖	竭誠奮威 振武功臣·江東縣監 崔應一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되어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91.6×190.0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古文書』, 1997, 50~51쪽
12	1624년(인조 2) 7월 15일	仁祖	竭誠奮威 振武功臣·行順天郡守 李休復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되어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82.0×144.0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도천재 所藏
13	1684년(숙종 10) 8월 5일	肅宗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李師命	善治한 공으로 嘉義大夫(중2품)에 加資	88.0×338.0	화봉문고, 『문서와 글씨의 한마당 -고문서·탁본·서첩·글씨-』, 2013, 16~17쪽

#### 4. 致仕敎書 : 4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746년(영조 22) 7월 20일	英祖	金有慶	金有慶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569
2	1774년(영조 50) 6월 9일	英祖	李最中	李最中の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102.0×179.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5쪽
3	1860년(철종 11)	哲宗	趙冀永	趙冀永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111.2×153.5	국립중앙박물관, 『古文書』 -국왕·왕실문서, 관청문서-, 2004, 72쪽
4	철종연간 12월 17일	哲宗	李憲文	李憲文의 致仕를 허락하고 奉朝賀에 임명	112.0×152.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V -교령류 3-, 2008, 159쪽

#### 5. 賜几杖敎書 : 1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668년(현종 9) 11월 27일	顯宗	李景奭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李景奭에게 几杖을 下賜	未詳	경기도박물관 所藏

#### 6. 納幣·納徵·告期敎書 : 3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780년(정조 4) 3월 11일	正祖	尹昌胤	尹昌胤의 딸을 嬪으로 맞이할 때에 納幣禮를 거행(納幣敎書)	68.5×106.7	수원화성박물관 所藏
2	1802년(순조 2) 9월 20일	純祖	金祖淳	金祖淳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에 納徵禮를 거행(納徵敎書)	70.0×82.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7~68쪽
3	1802년(순조 2) 10월 3일	純祖	金祖淳	金祖淳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 때에 納徵禮를 거행(納徵敎書)	68.0×72.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68쪽

7. 冠禮敎書 : 2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727년(영조 3) 9월 9일	英祖	孝章世子 (李緯, 眞宗)	王世子(李緯, 眞宗) 의 冠禮를 거행	70.7× 28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8~10쪽
2	1882년(고종 19) 1월 20일	高宗	王世子 (李圻, 純宗)	王世子(李圻, 純宗) 의 冠禮를 거행	30.0× 4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10 -藏書閣篇-, 1992, 8쪽

8. 配享功臣敎書 : 4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651년(효종 2) 6월 30일	孝宗	李元翼	仁祖의 廟庭에 配享	88.5×364.0	충현박물관, 『오리 이원의 종가의 이야기』, 2005, 64쪽
2	1651년(효종 2) 6월 30일	孝宗	申景禎	仁祖의 廟庭에 配享	未詳	개인소장
3	1661년(현종 2) 6월 30일	顯宗	金尙憲	孝宗의 廟庭에 配享	83.0×483.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 王文書·王室文書-, 1986, 57~58쪽
4	1778년(정조 2) 4월	正祖	宋時烈	孝宗의 廟庭에 配享	118.5×714.0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270~271쪽

9. 文廟從祀敎書 : 5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cm)	출처
1	1717년(숙종 43) 5월 18일	肅宗	金長生	金長生을 文廟에 從祀	88.0×630.0	국가기록유산 충남 유형문화재 제128호
2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時烈	宋時烈을 文廟에 從祀	117.0×374.0	국립청주박물관, 『우암 송시열』, 2007, 266~267쪽
3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正祖	金麟厚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	104.0×400.0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78~179쪽
4	1796년(정조 20) 11월 7일	正祖	金麟厚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	111.0×365.0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0~181쪽
5	1883년(고종 20) 11월 20일	高宗	趙憲	趙憲을 文廟에 從祀	110.6×78.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7-4호

10. 中外頒敎書 : 2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 (cm)	출처
1	1796년(정조 20) 11월 9일	正祖	中外大小臣 僚耆老軍民 閑良人等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하였으 니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며, 본보기로 삼고 교화될 것을 명령함	103.0× 380.0	국립광주박물관, 『하서 김 인후와 필암서원』, 2007, 182~183쪽
2	1890년(고종 27) 12월 7일	高宗	中外大小臣 僚耆老軍民 閑良人等	翼宗과 神貞王후의 尊號를 追上한 것을 알리고, 12월 7 일 이전의 죄를 사면하며, 관 원들에게 한 資級을 높여줌	88.0× 75.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 文書』 1 -國王文書·王室 文書-, 1986, 76~78쪽

11. 其他 : 7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크기 (cm)	출처
1	1433년(세종 15) 3월 22일	世宗	李澄石	助戰節制使 李澄石에게 국경을 침략하는 婆猪江 일대의 野人을 토벌하는 것을 명하는 敎書	71.5× 86.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1-4호
2	1567년(선조 즉위년) 11월 16일	宣祖	李滉	知中樞府事 李滉의 辭職을 不允하는 批答敎書	105.3× 353.8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
3	1568년(선조 1) 4월 2일	宣祖	李滉	議政府右贊成 李滉의 辭職을 不允하는 批答敎書	87.5× 508.5	眞城李氏 上溪宗宅 所藏
4	1592년(선조 25) 8월 15일	宣祖	趙憲	忠淸道義兵將 趙憲에게 왜군의 형세를 살피고 주변 郡縣과 義兵의 상황을 보고하며, 더욱 힘써 왜군을 섬멸할 것을 敦諭하고 褒獎하는 敎書	82.0× 111.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07-3호
5	1596년(선조 29) 9월 15일	宣祖	慶尙道閑山島·兼三道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李舜臣以下諸陣	統制使 李舜臣 以下 여러 陣의 군사들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며 노고를 위로하는 宣諭犒賞敎書	82.0× 213.0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564호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2011, 148~149쪽
6	1596년(선조 29) 9월 15일	宣祖	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應瑞以下諸陣	慶尙右兵使 金應瑞 以下 여러 陣의 군사들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며 노고를 위로하는 宣諭犒賞敎書	80.5× 336.0	부산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5, 307쪽
7	1792년(정조 16)	正祖	無學大師	開宗立教 普照法眼 廣濟功德 翊命興運 持世護國 東方第一大法師의 法號를 내리는 贈號敎書	未詳	국사편찬위원회 사자 0316

<附錄 2>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文集 등에 수록된 朝鮮時代 敎書 목록

○ 賞加敎書 : 17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製述	출처
1	1596년(선조 29) 7월 21일	宣祖	忠淸道洪州牧使 洪可臣	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宋諄	『晚全集』 卷6 附錄
2	[1599년(선조 32)]	宣祖	公州牧使 金尙寓	善治의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鄭曄	『守夢集』 卷7 敎書
3	[1605~1607년 (선조 38~40)]	宣祖	羅州牧使 俞大禎	錢穀과 甲兵과 軍器를 완비한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金塗	『北渚集』 別集 雜著
4	[1610년(광해군 2) 5월]	光海君	朔寧郡守 申應槩	광해군의 세자 시절에 가르친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崔起南	『晚退軒遺稿』 附錄
5	1610년(광해군 2) 11월	光海君	白翎叅使 金立信	國事に 마음을 다하여 공적을 이룬 것이 이미 현저하게 들어났기 때문에 折衝將軍(정3품)에 加資	趙希逸	『竹陰集』 卷11 應製
6	1611년(광해군 3) 6월 4일	光海君	南海縣令 羅大用	戰船과 거북선을 마련한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趙希逸	『竹陰集』 卷11 應製
7	1612년(광해군 4) 3월	光海君	吉州牧使 鄭文字	北道の 儒生들이 上疏를 올려 稱頌한 功으로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徐潛行	『農圃集』 卷2 附錄
8	[1616년(광해군 8)]	光海君	慶興府使 閔沔	부임지를 잘 다스린 공으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趙縝韓	『玄洲集』 卷10
9	1620년(광해군 12) 10월	光海君	五道贊書使 李時發	삼년 동안 변경에서 勤勞한 공으로 資憲大夫(정2품)에 加資	未詳	『碧梧遺稿』 卷8 附錄
10	1623년(인조 1) 윤10월	仁祖	南原府使 鄭蘊	永昌大君의 罪를 논할 때 直諫하였으므로 通政大夫(정3품)에 加資	未詳	『桐溪集』 附錄 卷2 敎書
11	[1623년(인조 1)]	仁祖	靖社功臣 坡州牧使 朴孝立	靖社功臣 2等으로 錄勳되어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李明漢	『白洲集』 卷13 應製錄 下
12	[1623년(인조 1)]	仁祖	靖社功臣 柳舜翼	靖社功臣 3等으로 錄勳되어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趙翼	『浦渚集』 卷28 敎書
13	1624년(인조 2) 7월 15일	仁祖	鄭忠信	振武功臣 1等으로 錄勳되어 正憲大夫(정2품)에 加資	未詳	『晚雲集』 附錄 卷1 敎書
14	[1624년(인조 2)]	仁祖	振武功臣·資憲大夫·行黃州牧使·兼兵馬節度使 邊滄	振武功臣 2等으로 錄勳되어 資憲大夫(정2품)에 加資	李忔	『雪汀集』 卷5
15	[1624년(인조 2)]	仁祖	振武功臣·咸鏡南道節度使 申景瑗	振武功臣 3等으로 錄勳되어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姜碩期	『月塘集』 卷5 應製錄
16	[1624년(인조 2)]	仁祖	黃海監司 林愔	李适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嘉善大夫(중2품)에 加資	李明漢	『白洲集』 卷13 應製錄 下
17	1684년(숙종 10) 8월 5일	肅宗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全州府尹 李師命	善治한 공으로 嘉義大夫(중2품)에 加資	崔錫鼎	『明谷集』 卷9 駢儷

○ 致仕教書 : 59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598년(선조 31)	宣祖	沈守慶	鄭曄	『守夢集』 卷7 教書
2	1603년(선조 36) 6월	宣祖	鄭琢	未詳	『藥圃集』 卷7 附錄
3	1669년(현종 10)	顯宗	李澥	南九萬	『藥泉集』 第14 應製錄
4	1683년(숙종 9)	肅宗	宋時烈	趙持謙	『宋子大全』 附錄 卷1 教書, 『迂齋集』 卷5 教書
5	1693년(숙종 19) 5월 7일	肅宗	李觀徵	睦林重	『承政院日記』
6	1724년(영조 즉위년) 10월 2일	英祖	崔奎瑞	吳遂元	『承政院日記』
7	1730년(영조 6) 2월 4일	英祖	沈檀	未詳	『承政院日記』
8	1733년(영조 9) 2월 3일	英祖	李光佐	曹命教	『承政院日記』
9	1733년(영조 9) 2월 5일	英祖	閔鎮遠	未詳	『承政院日記』
10	1733년(영조 9) 7월 1일	英祖	李世瑾	鄭羽良	『承政院日記』
11	1736년(영조 12) 4월 8일	英祖	李台佐	曹命教	『承政院日記』
12	1742년(영조 18) 3월 7일	英祖	李宜顯	尹汲	『承政院日記』
13	1745년(영조 21) 9월 3일	英祖	李秉常	尹汲	『承政院日記』
14	1746년(영조 22) 2월 1일	英祖	朴弼琦	吳彦儒	『承政院日記』
15	1746년(영조 22) 7월 20일	英祖	金有慶	洪啓禧	『承政院日記』
16	1746년(영조 22) 11월 3일	英祖	尹陽來	趙明鼎	『承政院日記』
17	1760년(영조 36) 1월 21일	英祖	李喆輔	李瀾	『承政院日記』
18	1760년(영조 36) 2월 3일	英祖	俞拓基	李殷	『承政院日記』
19	1760년(영조 36) 2월 9일	英祖	洪重徵	趙懋	『承政院日記』
20	1762년(영조 38) 9월 14일	英祖	金尙魯	尹冕東	『承政院日記』
21	1764년(영조 40) 10월 2일	英祖	韓師得	李壽勛	『承政院日記』
22	1765년(영조 41) 10월 18일	英祖	洪啓禧	李命植	『承政院日記』
23	1767년(영조 43) 1월 6일	英祖	朴聖源	李鎮恒	『承政院日記』
24	1767년(영조 43) 1월 11일	英祖	金尙翼	任琰	『承政院日記』
25	1769년(영조 45) 5월 22일	英祖	洪象漢	洪良浩	『承政院日記』, 『耳溪集』 卷22 教書
26	1770년(영조 46) 1월 13일	英祖	李燮元	未詳	『承政院日記』
27	1770년(영조 46) 2월 22일	英祖	鄭宗	未詳	『承政院日記』
28	1770년(영조 46) 3월 27일	英祖	洪鳳漢	沈頤之	『承政院日記』
29	1770년(영조 46) 9월 12일	英祖	鄭宗	未詳	『承政院日記』
30	1772년(영조 48) 1월 9일	英祖	洪重孝	金蕃耆	『承政院日記』
31	1772년(영조 48) 1월 9일	英祖	南泰著	任希教	『承政院日記』
32	1772년(영조 48) 12월 24일	英祖	李光溥	未詳	『承政院日記』
33	1773년(영조 49) 3월 12일	英祖	金始煥	鄭晚淳	『承政院日記』
34	1773년(영조 49) 3월 27일	英祖	金致仁	御製	『承政院日記』
35	1774년(영조 50) 6월 9일	英祖	李最中	南柱老	『承政院日記』
36	1776년(정조 즉위년) 9월 23일	正祖	金致仁	李在學	『承政院日記』
37	1779년(정조 3) 9월 28일	正祖	洪國榮	徐命膺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38	1779년(정조 3) 9월 28일	正祖	洪國榮	黃景源	『承政院日記』
39	1780년(정조 4) 10월 24일	正祖	趙重晦	未詳	『承政院日記』
40	1788년(정조 12) 4월 16일	正祖	鄭述祚	未詳	『承政院日記』, 『碩齋稿』 卷13 內制隨錄
41	1791년(정조 15) 1월 9일	正祖	鄭存謙	徐榮輔	『承政院日記』, 『竹石館遺集』 3冊 教書
42	1795년(정조 19) 10월 8일	正祖	洪秀輔	崔光泰	『承政院日記』
43	1796년(정조 20) 1월 6일	正祖	具允明	尹益烈	『承政院日記』
44	1797년(정조 21) 6월 9일	正祖	李命植	金履喬	『承政院日記』
45	1808년(순조 8) 2월 10일	純祖	李敬一	權焄	『承政院日記』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제술	출처
46	1812년(순조 12) 4월 24일	純祖	金履翼	李顯默	『承政院日記』
47	1818년(순조 18) 5월 26일	純祖	李庚運	任存常	『承政院日記』
48	1826년(순조 26) 1월 22일	純祖	洪義浩	朴英載	『承政院日記』
49	1826년(순조 26) 6월 30일	純祖	金履陽	朴來謙	『承政院日記』
50	1827년(순조 27) 2월 16일	純祖	李肇源	洪晚燮	『承政院日記』
51	1833년(순조 33) 5월 22일	純祖	南公鞮	金學性	『承政院日記』
52	1839년(헌종 5) 8월 16일	憲宗	徐有槩	南秉哲	『承政院日記』
53	1843년(헌종 9)	憲宗	朴綺壽	李裕元	『嘉梧藁略』 10冊 應製文
54	1843년(헌종 9) 9월 22일	憲宗	朴綺壽	徐有薰	『承政院日記』
55	1865년(고종 2) 1월 19일	高宗	金興根	李載冕	『承政院日記』
56	1866년(고종 3) 4월 21일	高宗	尹致羲	金奎弘	『承政院日記』
57	1872년(고종 9)	高宗	柳厚祚	申佐模	『澹人集』 卷10 教書
58	1880년(고종 17) 2월 3일	高宗	姜洙	丁弘燮	『承政院日記』
59	1891년(고종 28) 11월 18일	高宗	金在顯	吳正根	『承政院日記』

○ 賜几杖教書 : 26건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424년(세종 6) 12월 10일	世宗	柳廷顯	未詳	『世宗實錄』
2	1424년(세종 11) 6월 24일	世宗	孟思誠	未詳	『世宗實錄』
3	1424년(세종 11) 6월 24일	世宗	閔汝翼	未詳	『世宗實錄』
4	1424년(세종 11) 6월 24일	世宗	權軫	未詳	『世宗實錄』
5	1439년(세종 21) 5월 25일	世宗	許稠	未詳	『世宗實錄』, 『敬齋遺稿』 卷2 教書
6	1439년(세종 21) 5월 25일	世宗	宋居信	未詳	『世宗實錄』
7	1439년(세종 21) 5월 25일	世宗	趙末生	未詳	『世宗實錄』
8	1522년(중종 17) 2월 18일	中宗	高荊山	未詳	『中宗實錄』
9	1527년(중종 22) 3월 17일	中宗	張順孫	未詳	『中宗實錄』
10	1531년(중종 26) 2월 7일	中宗	鄭光弼	未詳	『中宗實錄』
11	1539년(중종 34) 1월 2일	中宗	柳溥	洪暹	『忍齋集』 卷4 雜著
12	1548년(명종 3) 9월 29일	明宗	洪彦弼	朴忠元	『明宗實錄』, 『默齋集』 附錄 卷3
13	1585년(선조 18) 10월 1일	宣祖	盧守愼	尹覃休	『蘇齋集』 年譜 附錄 賜几杖教書
14	1615년(광해군 7) 2월 7일	光海君	鄭仁弘		『來庵先生文集』 卷14 附錄
15	1623년(인조 1) 9월 6일	仁祖	李元翼	趙緯韓	『梧里集』 「附錄」 卷3 教諭書, 『玄洲集』 卷11 教, 《李元翼賜几杖圖帖》
16	1668년(현종 9) 11월 27일	顯宗	李景爽	南二星	『白軒集』 卷52 賜几杖識感錄, 《李景爽賜几杖圖帖》
17	1675년(숙종 1) 12월 25일	肅宗	許穆	李夏鎭	『記言』 年譜 卷2 附錄, 『六寓堂遺稿』 4冊
18	1689년(숙종 15) 12월 21일	肅宗	權大運	李瑞雨	『承政院日記』, 『松坡集』 卷11 教諭
19	1741년(영조 17) 8월 7일	英祖	朴弼成	李匡輔	『承政院日記』
20	1784년(정조 8) 9월 6일	正祖	李楡	朴祐源	『承政院日記』
21	1797년(정조 21) 4월 24일	正祖	洪樂性	金近淳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22	1825년(순조 25) 3월 13일	純祖	金思穆	尹秉烈	『承政院日記』
23	1844년(헌종 10) 1월 16일	憲宗	金履陽	趙道淳	『承政院日記』
24	1845년(헌종 11) 3월 19일	憲宗	趙萬永	李裕元	『承政院日記』, 『嘉梧藁略』 10冊 應製文
25	1862년(철종 13)	哲宗	鄭元容	金學性	『經山集』 附錄 卷3 回榜日賜几杖教書
26	1866년(고종 3) 3월 10일	高宗	金左根	趙慶鎬	『承政院日記』

○ 冠禮敎書 : 11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제술	출처
1	1610년(광해군 2) 5월 6일	光海君	王世子 (李祘)	未詳	『光海君日記』, 『冊禮都監儀軌』
2	1651년(효종 2) 8월 9일	孝宗	王世子 (李棼, 顯宗)	黃辰	『孝宗實錄』, 『漫浪集』 卷6 敎書, 『列聖誌狀通紀』 卷19 冠禮敎命文
3	1670년(현종 11) 3월 9일	顯宗	王世子 (李焞, 肅宗)	趙復陽	『顯宗實錄』, 『承政院日記』, 『松谷集』 卷7 敎命文, 『列聖誌狀通紀』 卷20 冠禮敎命文
4	1695년(숙종 21) 4월 18일	肅宗	王世子 (李昉, 景宗)	朴泰尙	『肅宗實錄』, 『列聖誌狀通紀』 卷21 冠禮敎命文
5	1727년(영조 3) 9월 9일	英祖	孝章世子 (李緯, 眞宗)	李光佐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列聖誌狀通紀』 卷23 冠禮敎命文
6	1743년(영조 19) 3월 17일	英祖	思悼世子 (李愔, 莊祖)	元景夏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蒼霞集』 卷10 應製錄
7	1761년(영조 37) 3월 18일	英祖	王世孫 (李祘, 正祖)	金陽澤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列聖誌狀通紀』 卷24 冠禮敎命文
8	1800년(정조 24) 2월 2일	正祖	王世子 (李玢, 純祖)	未詳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純祖冠禮冊儲都監儀軌』(규장각奎 13119)
9	1819년(순조 19) 3월 20일	純祖	孝明世子 (李昊, 翼宗)	未詳	『純祖實錄』
10	1882년(고종 19) 1월 20일	高宗	王世子 (李坻, 純宗)	未詳	『高宗實錄』, 『東宮日錄』 卷9(장서각 K2-50), 『春坊日記』 卷8(장서각 K2-304)
11	1907년(광무 11) 3월 11일	高宗	英親王 (李垠)	未詳	『日記』 卷9(장서각 K2-249), 『儀註瞻錄』 卷10(장서각 K2-2134), 『英親王冠禮笏記』(장서각 K2-2665)

○ 賜祭敎書 : 20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製述	출처
1	1418년(태종 18) 3월 3일	太宗	誠寧大君	卞季良	『太宗實錄』, 『東文選』 卷24 敎書
2	1419년(세종 1) 12월 17일	太宗(上王)	南在	未詳	『世宗實錄』, 『龜亭遺稿』 上 附錄
3	1419년(세종 1) 12월 19일	世宗	南在	未詳	『世宗實錄』, 『龜亭遺稿』 上 附錄
4	1424년(세종 6) 2월 2일	世宗	貞善公主	未詳	『世宗實錄』
5	1424년(세종 6) 2월 13일	世宗	金承雲	未詳	『世宗實錄』
6	1424년(세종 6) 7월 18일	世宗	趙庸	未詳	『世宗實錄』
7	1425년(세종 7) 2월 23일	世宗	安天保	未詳	『世宗實錄』
8	1425년(세종 7) 6월 17일	世宗	李從茂	未詳	『世宗實錄』
9	1425년(세종 7) 윤7월 12일	世宗	韓雍	未詳	『世宗實錄』
10	1426년(세종 8) 11월 27일	世宗	順靜宅主 金氏	未詳	『世宗實錄』
11	1433년(세종 15) 1월 25일	世宗	兪尙智	未詳	『世宗實錄』
12	1433년(세종 15) 7월 6일	世宗	康佑	未詳	『世宗實錄』
13	1434년(세종 16) 1월 11일	世宗	成揜	未詳	『世宗實錄』
14	1434년(세종 16) 1월 28일	世宗	李尙興	未詳	『世宗實錄』
15	1434년(세종 16) 2월 1일	世宗	李漸	未詳	『世宗實錄』
16	1434년(세종 16) 7월 7일	世宗	延嗣宗	未詳	『世宗實錄』
17	1434년(세종 16) 7월 20일	世宗	鄭招	未詳	『世宗實錄』
18	1434년(세종 16) 10월 9일	世宗	鄭以吾	未詳	『世宗實錄』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製述	출처
19	1434년(세종 16) 10월 18일	世宗	安壽山	未詳	『世宗實錄』
20	1434년(세종 16) 11월 6일	世宗	權希達	未詳	『世宗實錄』

○ 配享功臣敎書 : 53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제술	출처
1	1421년(세종 3) 12월 18일	世宗	李芳毅	定宗의 廟庭 配享	未詳	『世宗實錄』
2	1422년(세종 4) 1월 5일	世宗	南在	太祖의 廟庭 配享	未詳	『世宗實錄』
3		世宗	南閔		未詳	『世宗實錄』
4		世宗	李濟		未詳	『世宗實錄』
5	1424년(세종 6) 7월 11일	世宗	河崙	太宗의 廟庭 配享	未詳	『世宗實錄』
6		世宗	趙英茂		未詳	『世宗實錄』
7		世宗	鄭擢		未詳	『世宗實錄』
8		世宗	李天祐		未詳	『世宗實錄』
9	1452년(문종 2) 2월 12일	世宗	李來	世宗의 廟庭 配享	未詳	『世宗實錄』
10		文宗	黃喜		未詳	『文宗實錄』
11		文宗	許稱		未詳	『文宗實錄』
12		文宗	崔潤德		未詳	『文宗實錄』
13		文宗	申概		未詳	『文宗實錄』
14	文宗	李隨	未詳	『文宗實錄』		
15	1569년(선조 2)	宣祖	李彥迪	明宗의 廟庭 配享	未詳	『晦齋集』 晦齋先生年譜
16	1610년(광해군 2)	光海君	李滉	宣祖의 廟庭 配享	李垞	『蒼石先生文集』 卷4 敎書
17		光海君	李浚慶		崔暉	『訥齋先生文集』 卷1 敎文, 『東阜先生遺稿』 附錄
18	1651년(효종 2) 6월 30일	孝宗	李元翼	仁祖의 廟庭 配享	蔡裕後	『承政院日記』, 『梧里先生文集附錄』 卷3 敎諭書, 『湖州先生集』 卷5 敎書, 『廟庭文廟配享敎書錄』
19		孝宗	金塗		申冕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0		孝宗	申欽		李之恒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1		孝宗	李貴		黃辰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漫浪集』 卷6 敎書
22		孝宗	申景禎		李海昌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3		孝宗	李曙		李應著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4	1661년(현종 2) 6월 23일	顯宗	金集	孝宗의 廟庭 配享	俞榮	『顯宗改修實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敎書錄』, 『愼獨齋先生遺稿』 卷14 附錄
25		顯宗	金尙憲		趙復陽	『顯宗改修實錄』, 『承政院日記』, 『松谷先生集』 卷7 敎書,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6	1676년(숙종 2)	肅宗	趙綱	顯宗의 廟庭 配享	權愈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7		肅宗	金佐明		洪萬容	『廟庭文廟配享敎書錄』
28	1680년(숙종 6) 3월 19일	肅宗	鄭太和	肅宗의 廟庭 配享	金錫胄	『承政院日記』, 『陽坡遺稿』 附錄
29	景宗	南九萬	尹淳		『承政院日記』	
30	1722년(경종 2) 8월	景宗	崔錫鼎		李德壽	『承政院日記』
31		景宗	尹趾完		李眞儒	『承政院日記』
32		景宗	朴世采		沈珙	『承政院日記』
33	1778년(정조 2) 4월	正祖	宋時烈	孝宗의 廟庭 追配	金憲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宋子大全附錄』 卷1 敎書, 『廟庭文廟配享敎書錄』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제술	출처
34	1778년(정조 2) 5월	正祖	閔鏡遠	英祖의 廟庭 配享	沈有鎭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35		正祖	趙文命		林蕃喆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鶴巖集』 冊6 附錄, 『廟庭文廟配享教書錄』
36		正祖	金在魯		金憲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37		正祖	金昌集		金憲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辛壬紀年提要』 四忠不桃錄, 『廟庭文廟配享教書錄』
38		正祖	崔奎瑞		李在學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39	1802년(순조 2) 7월	純祖	俞彥鎬	正祖의 廟庭 配享	金近淳	『承政院日記』
40	純祖	金鍾秀	李教信		『承政院日記』, 『夢梧金公年譜』 卷2 年譜	
41	1833년(순조 33) 6월 29일	純祖	金祖淳	正祖의 廟庭 配享	吳取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2	1836년(헌종 2) 12월	憲宗	李時秀	純祖의 廟庭 配享	李殷相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3		憲宗	李履喬		金學性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4		憲宗	趙得永		權大肯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5		憲宗	金載瓚		金洙根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6	[1851년(철종 2)]	哲宗	李相瓚	憲宗의 廟庭 配享	曹錫輿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7		哲宗	趙寅永		金炳國	『廟庭文廟配享教書錄』
48	1866년(고종 3) 2월 1일	高宗	金鍾秀	正祖의 廟庭 復享	趙慶鎬	『承政院日記』, 『雲裳集』 卷9 御製代撰
49	1875년(고종 12) 12월 15일	高宗	趙秉龜	翼宗의 廟庭 配享	未詳	『承政院日記』
50	1921년 3월	純宗	閔泳煥	高宗의 廟庭 配享	吳正根	『祔廟主監儀軌』 卷下
51		純宗	朴珪壽		趙漢元	『祔廟主監儀軌』 卷下
52		純宗	申應朝		朴經遠	『祔廟主監儀軌』 卷下
53		純宗	李敦宇		李範世	『祔廟主監儀軌』 卷下

○ 宗廟配享教書 : 17건

번호	발급시기	발급	내용	제술	출처
1	1421년(세종 3) 12월 18일	世宗	定宗의 廟庭에 益安大君 李芳毅를 配享	未詳	『世宗實錄』
2	1422년(세종 4) 1월 9일	世宗	太祖의 廟庭에 南在·李濟·南閔을 追配	未詳	『世宗實錄』
3	1424년(세종 6) 7월 12일	世宗	太宗의 廟庭에 河崙·趙英茂·鄭擢·李天祐·李來를 配享	未詳	『世宗實錄』
4	1452년(문종 2) 4월 10일	文宗	世宗의 廟庭에 黃喜·許稱·崔潤德·申概·李隨를 配享	未詳	『文宗實錄』
5	1651년(효종 2) 7월 7일	孝宗	仁祖의 廟庭에 李元翼·申欽·金塗·李貴·申景禎·李曙를 配享	金宗一	『廟庭文廟配享教書錄』
6	1661년(현종 2) 7월 8일	顯宗	孝宗의 廟庭에 金尙憲·金集을 配享	姜栢年	『承政院日記』, 『雪峯遺稿』 卷22 諭教書, 『廟庭文廟配享教書錄』
7	1676년(숙종 2) 10월 15일	肅宗	顯宗의 廟庭에 趙綱·金佐明을 配享	權塔	『廟庭文廟配享教書錄』
8	1680년(숙종 6) 4월 8일	肅宗	顯宗의 廟庭에 鄭太和를 追配	崔錫鼎	『陽坡遺稿』 附錄

번호	발급시기	발급	내용	제술	출처
9	1722년(경종 2) 8월 9일	景宗	肅宗의 廟庭에 南九萬·朴世采·尹趾完·崔錫鼎을 配享	李廷濟	『承政院日記』
10	1778년(정조 2) 5월 2일	正祖	孝宗의 廟庭에 宋時烈을 追配하고, 英祖의 廟庭에 金昌集·崔奎瑞·閔鎮遠·趙文命·金在魯를 配享	南鶴聞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11	1802년(순조 2) 8월 9일	純祖	正祖의 廟庭에 金鍾秀·俞彥鎬를 配享	李存秀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12	1837년(헌종 3) 1월 6일	憲宗	純祖의 廟庭에 李時秀·金載瓚·金履喬·趙得永을 配享	李繪九	『承政院日記』, 『廟庭文廟配享教書錄』
13	1851년(철종 2) 8월 6일	哲宗	憲宗의 廟庭에 李相瓚·趙寅永을 配享	閔泳緯	『廟庭文廟配享教書錄』
14	1866년(고종 3) 2월 5일	高宗	正祖의 廟庭에 金鍾秀를 復享	趙慶鎬	『承政院日記』
15	1866년(고종 3) 2월 5일	高宗	哲宗의 廟庭에 李憲球·益平君 李羲·金洙根을 配享	金奎弘	『承政院日記』
16	1875년(고종 12) 12월 19일	高宗	翼宗의 廟庭에 南公轍·金鏞·趙秉龜를 追配	徐胄淳	『承政院日記』
17	1921년 3월 31일	純宗	高宗의 廟庭에 朴珪壽·申應朝·李敦宇·閔泳煥을 配享	鄭萬朝	『純宗實錄附錄』, 『祔廟主監儀軌』 卷下

○ 文廟從祀教書 : 9건

번호	발급 일자	발급	수취	내용	제술	출처
1	1682년(숙종 8) 5월	肅宗	李珥	李珥를 文廟에 從祀	李敏敘	『承政院日記』, 『栗谷全書』 卷37 附錄, 『西河集』 卷11 教書
2	1682년(숙종 8) 5월	肅宗	成渾	成渾을 文廟에 從祀	金萬重	『西浦集』 卷9 教書
3	1717년(숙종 43) 5월 18일	肅宗	金長生	金長生을 文廟에 從祀	宋相琦	『玉吾齋集』 卷12 教書
4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時烈	宋時烈을 文廟에 從祀	南有容	『承政院日記』, 『宋子大全』 附錄 卷1, 『雷淵集』 卷11 應製文
5	1756년(영조 32) 2월	英祖	宋浚吉	宋浚吉을 文廟에 從祀	南有容	『承政院日記』, 『雷淵集』 卷11 應製文
6	1764년(영조 40) 5월 25일	英祖	朴世采	朴世采를 文廟에 從祀	尹汲	『承政院日記』
7	1796년(정조 20) 10월 26일	正祖	金麟厚	金麟厚를 文廟에 從祀	具庠	『正祖實錄』, 『承政院日記』, 『河西集』 卷首
8	1883년(고종 20) 11월	高宗	趙憲	趙憲을 文廟에 從祀	韓章錫	『眉山集』 卷6 應製文
9	1883년(고종 20) 11월	高宗	金集	金集을 文廟에 從祀	韓章錫	『眉山集』 卷6 應製文